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I 마카오

제1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제2장 검역제도	6
제1절 검역제도 일반	6
제2절 수입 지침	13
제3절 허가증 신청 지침	16
제4절 주의사항	35
제3장 관세제도	44
제1절 수출입제도	44
제2절 관세·통관제도	45
제4장 라벨링제도	46
제1절 라벨작성 기준 제정	46
제5장 수출현안	54
제1절 행정장관 지시	54
제2절 식품안전법	59
제3절 소비자 보호 법률	70
제4절 제한량 행정법규	73

II 말레이시아

제1장 통관제도	111
제1절 통관 일반사항	111
제2절 통관 절차	113
제3절 할랄인증	122
제4절 기타 통관 및 수입 제도	134

목 차

C O N T E N T S

제2장 검역제도	138
제1절 검역 일반사항	138
제2절 신선농산물 검역	139
제3절 기타 검역관련 제도	144
제3장 관세제도	148
제4장 라벨링제도	151
제1절 라벨링 일반 사항	151
제2절 라벨링 형태와 방법	153
제3절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156
제5장 부적합 사례	161
제6장 수출현안	163
부록 :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ST)	166

III

필리핀

제1장 식품법	175
제2장 수입규제	178
제1절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181
제2절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	182
제3절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182
제4절 살아있는 동물 수입에 대한 규제	183
제5절 생선 및 해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183
제6절 청과물 수입에 대한 규제	185
제7절 애완동물 사료 수입에 대한 규제	186
제8절 유전자 조작 식품	186
제9절 식품 영양소 강화에 관한 법률	187
제10절 저작권 및 상표에 관한 법률	187

제3장 원산지 표지	191
제4장 가공식품 안전관리	193
제5장 식품 라벨링	196
제1절 식품 라벨링	196
제2절 포장 및 용기에 대한 규제	198
제3절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	198
제4절 살충제 및 기타 오염 물질	198

IV 아랍에미리트

제1장 개괄	203
제2장 통관제도	211
제3장 검역제도	226
제4장 관세제도	232
제5장 라벨링제도	238
제6장 통관문제사례	243
제7장 수출현안	245

V 미얀마

제1장 통관제도	251
제1절 통관제도 일반	251
제2절 운송	257
제3절 원산지 규정	265
제2장 관세제도	269

목 차

C O N T E N T S

제1절 관세 및 부가가치세	269
제2절 비관세장벽	272
제3장 검역제도	273
제1절 식물검역 규정	273
제4장 라벨링제도	278
제1절 라벨표시 의무 강화	278
제2절 소비자 보호법 라벨표시 관련 규정	278
제3절 소비자 보호법 라벨표시 사항 정리	279

VI

아르헨티나

제1장 통관제도	283
제1절 수입통관 절차	283
제2절 수입업자 등록	283
제3절 사전수입신고	284
제4절 서류 및 물품 심사	285
제2장 검역제도	289
제1절 검역제도 일반	289
제2절 일반 검역 검사법	290
제3절 식물위생 검사	291
제4절 Healthy Origin 증명서	292
제5절 식품 첨가제법	292
제6절 식품수입 허가	293
제3장 관세제도	298
제1절 관세제도 일반	298
제2절 관세율	299
제4장 라벨링제도	300
제1절 식품 라벨링 규정	300

제2절 필수 영양 라벨 정보	302
제3절 기타 특정한 라벨 요건	304
제5장 수출현안	307

VII 캐나다

제1장 통관제도	313
제1절 수입통관 절차	313
제2절 통관 절차별 세부 내역	313
제3절 식품 통관 규정 및 관련 기관	317
제4절 원산지 증명	317
제5절 수입 통제 품목	318
제6절 관련 기관 정보	319
제2장 검역제도	321
제1절 개요	321
제2절 주요 품목 검역 조건	322
제3장 관세제도	325
제1절 개요	325
제2절 관세 내용	325
제4장 라벨링제도	327
제1절 라벨링 관련 부서	327
제2절 라벨링 기본 요건	328
제5장 통관문제사례	333
제1절 육류 및 육류 가공품	333
제2절 신선농산물 사례	333
제3절 수산물 사례	334
제4절 기타 사례	336
제5절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 조건	337

목 차

C O N T E N T S

제6장 수출현안	339
제1절 2016년 수출 전년 대비 30% 감소	339
제2절 주요품목 수출 동향	341
부 록	343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마카오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수출현안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단속 화물 및 검역

□ 우선 허가 단속 화물

- 수출 / 수입 허가단속 화물은 (255 /2016호 행정장관 지시), 반드시 관련 증서발급 기관에서 수출/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함
- 수출 - 표 A (포함 품목: 할당 제도 제한에는 방직 및 기성복의류 제품, 음향CD설비, 무기 및 탄약, 폭발물 등)
- 수입 - 표 B (포함 품목: 동식물, 식품, 동물 약 제품, 화학품, 소비세 과세품, 음향 CD 설비생산 및 원재료, 무선전화통신기, 무기 및 탄약 등)

□ 위생검역과 식물검역

- 생물
 - 동물, 가금류, 파충류 등의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정총서에 수입라이센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생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 가능
- 식물
 - 식물(뿌리), 줄기, 배아, 종자, 과실, 포자 등의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검역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 식품
 - 육류(신선, 냉장 혹은 훈제), 소시지, 어류(관상어 제외) 및 해산물, 유제품, 가금류,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얼음 수입 시 반드시 민정총서 수입허가 및 위생검역을 받아야 함

- 식용채소, 과일, 버섯종류, 사탕수수, 생선알젓 등은 신청허가증이 필요 없지만 반드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민정총서에 위생검역을 신청하여 해당 품목이 식용 가능함을 증명해야 함
- 행정장관이 지시한 제 255/2016호 첨부문건 1 <개인 자가 사용 또는 소비 화물>에 따라, 개인이 제한수량만큼 휴대 수입 가능함

2. 통관 프로세스

□ 증서발급 기관

- 수입증서 발급
 - 민정총서 : A조 (동식물, 식품)
 - 위생국 : B조 (의약품, 화학품)
 - 경제국 : C조 (궤련, 주류, 영상 및 음향설비 및 원재료)
 - 전신관리국 : D조 (무선수신기, 레이더 및 GPS)
 - 마카오치안경찰국 : E조(무기, 탄약, 폭죽, 불꽃)
 - 교통사무국 : F조 (자동차)

□ 수입통관/통관 프로그램

- 마카오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제 255/2016호 행정장관 지시 중 표 B에 기재한 화물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수입허가를 신청하고 화물 인수 당일 필요 문서와 함께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해야 함
- 표 B외의 화물을 수입할 때에는 다만 화물인수 당일 수입신고서와 필요 문서를 갖고,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면 됨
-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 단속 제한 화물은 반드시 민정총서의 검역을 받아야 함. 당사는 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필요문서와 함께 관련 수속을 할 수 있음

□ 환적통관/통관프로세스

- 환적제도 제한 화물은 마카오 행정특별구에 반입과 반출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화물 도착일로부터 계산하며 예외 상황에서 세관은 위의 기간에서 180일

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단 한차례만 연장 가능함

- 환적신고세에는 화물상태와 화물저장위치, 그리고 그 장소는 반드시 세관의 감시를 받는 곳이어야 하며 세관 허가 전에는 환적 화물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혹은 재포장할 수 없음
- 환적 제 255/2016호 행정장관 지시 중 수출표(표A) 혹은 수입표(표B) 중의 적재된 화물은 허가경영 환적업체에서 환적 가능함
- 환적 제 255/2016호 행정장관 지시 중 첨부 3에서 규정한 위생검역 혹은 식품검역 단속 화물은 반드시 민정총서 검역을 통과해야 함

3. 기타사항

□ 우편 발송

- 우편 발송 방식으로 대외무역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외무역법> 규정(경제 3/2016호 법률 개정의 제 7/2003호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수출 제 255/2016호 행정장관이 제시한 표 A가 가리키는 화물 및 수입동일 지시표 B가 가리키는 화물은 반드시 관련 권한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 혹은 환적하고 위생검역 단속 화물은 민정총서의 위생검역을 받아야 함
- 우정총국은 세관판사처를 운영하며 화물발송자의 세관통관을 편리하게 함

□ 구비서류

- 발급받은 허가증 혹은 작성 완료된 세관신고서(관련활동에 근거)
- 해상운송/항공운수 선화증권 혹은 기타 유사 문서
- 신분증명문서
- 영수증, 공문, 위탁서, 화물명세서, 기타 문서(필요시)

※ 참조: http://www.customs.gov.mo/cn/customs1.html#customs1_3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 제행정법규 40/2004호: 위생 검역 및 식물 검역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 (5)항에 근거하여 행정회의 의견을 듣고 본 행정법규를 제정함

□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목적

- 1) 본 행정법규는 민정총서가 화물에 대해 진행되는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에 대해 규정함
- 2) 위 항에서 가리키는 화물은 제 225/2003호 행정장관이 지시한 제 3항에 기재되어 있음

○ 제2조 정의

- 본 행정법규의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음
 - 1) 도매무역, 자연인 혹은 법인이 자신의 명의 및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생산, 수입 혹은 물건을 구입하고 또한 그 화물을 판매, 전매 혹은 기타 도매상, 소매상, 가공업자, 전문업자 혹은 대중화물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 2) 소매무역, 자연인 혹은 법인이 자신의 명의 및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상투적인 방식으로 구매 혹은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말함
 - 3) 마카오도매시장(이하 약칭 도매시장), 주로 접수, 저장 및 과일, 사탕수수, 채소, 살아있는 가금류, 품종이 작은 식용 가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알류, 그리고 화물에 대해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

4) 감찰 실체, 행정정관이 지명 파견한 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한 감찰책임자 및 감찰하는 특별실체의 법정 의무와 합동 의무 준수정황의 실체

○ 제3조 판매금지

- 관련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민정총서의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화물은 다음의 기타 원인으로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대중에게 판매해서는 안 됨

- 1) 변질하고 썩었거나 위조했을 경우
- 2) 더럽거나 메스껍고 기생충이 있거나 혹은 병원체가 있을 때
- 3) 병 증상이 있거나 혹은 병충해가 있을 때
- 4) 감염된 적이 있거나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 5) 첨가제를 함유하고 기타 물질 혹은 변질로 인해 섭취 불가능 할 때
- 6) 식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수입 혹은 도살 하지 않은 경우

○ 제4조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의 장소 및 방식

- 1) 제11조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반드시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화물은 관문, 도매시장 혹은 민정총서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민정총서 권한 인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2) 화물의 위생검역 및 식품검역은 무작위 샘플링, 분할 또는 민정총서에서 지정한 기타 방식으로 진행함
- 3) 민정총서는 《민정총서의 비용, 수금 및 가격표》의 규정에 따라 화물이익자에게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 비용을 징수함

○ 제5조 감찰 및 위생검역

- 1) 제1조에서 가리키는 위생검역 작업은 수의 또는 관련 기술자가 집행하고 조사인원이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행정모니터링, 현장기술검사 및 화학실험실 모니터링 등 작업과 조치를 함
 - 대중소비화물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 화물의 처리, 포장 및 운송이 양호한 위생조건 및 오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임
 - 감찰과 시설 및 시설과 관련된 위생청결 규정의 준수 현황

2) 감찰 및 위생검역에 포함하는 항목들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동물전염병 침입 및 위생방역사업 그리고 질병을 막고 질병을 소멸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업이며, 주관 부문이 제정한 전염병 감찰 및 제어방안임

○ 제6조 감찰 및 식물검역

- 제1조에서 가리키는 식물검역사업은 식물병리학자, 곤충학자, 생물학자 혹은 관련 기술자가 집행하고 조사인원이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행정모니터링, 현장 기술검사 및 화학실험실 모니터링 등 작업과 조치를 함

- 1) 각종 식물이 병충해에 걸리거나 기타 병원체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전파 위험을 감소시킴
- 2)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 유무, 대중소비의 식물 및 기타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보증함
- 3) 식물 및 그 제품의 처리, 포장 및 운송이 양호한 위생조건 및 오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임
- 4) 시설의 감찰 및 설비 관련 위생청결 준수 현황

○ 제7조 행동 및 조치

1) 민정총서 권한 인원은 업무집행 시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음

- 관련 대외무역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민정총서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화물
- 샘플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화학 실험함
- 공무를 집행할 때 사업에 필요한 주요문서를 열람하고 더욱이 영수증 및 위생검역 및 식품검역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효과적으로 공무집행에 필요한 자료 및 상세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경찰당국, 행정당국 및 사법당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 시 방해와 반항의 정황
- 적절한 위생과 식물검역보호조치 및 감찰 관련 준수 현황

2) 만약 청결, 위생 및 식품안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 혹은 형사 처분 이외에 아래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음

- 화물 입국금지
 - 화물을 원산지로 반송
 - 소각
 - 강제 격리기간 압력을 가함
 - 화물에 대해 특별처리를 하여 위생 및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게 함
 - 포장에 대해 봉인함
 - 허가 화물은 조건이 되면 공업가공장소로 운반
 - 영향을 받은 모든 화물을 판매금지하거나 혹은 모두 회수
 - 화물의 저장, 운송 혹은 전시의 전문표준 강화
 - 소독
 - 벌레와 쥐를 소멸
 - 예방접종 혹은 기타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물에 대해 식별을 강화
 - 동물의 숙식 및 청결의 전문표준을 강화
 - 동물소각
- 제8조 부담
- 감찰 및 검사기간 화물을 수집하여 검사를 진행할 때 화물 혹은 장소 소유주에게 화물가격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제7조의 조치로 인해 비용 및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유주가 부담함
- 제9조 협력 의무
- 모든 사람은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 작업 시 민정총서 권한인원과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표명 신분의 인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명령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함
- 제2장 도매시장의 조성
- 제10조 도매시장
- 1) 민정총서의 전개 활동 외에 도매시장에서 다음의 대중소비의 도매활동을 할 수 있음
 - 접수, 저장, 나누어 팔거나 과일 및 사탕수수 판매

- 접수, 저장, 나누어 팔거나, 채소 판매
 - 접수, 저장, 나누어 팔거나,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 및 품종이 작은 살아있는 식용 동물 판매
 - 가금류 도살
 - 접수, 저장, 나누어 팔기 및 알류 판매
 - 2) 도매 계약은 도매시장 내에서 진행되는 기타 보충 혹은 보조성 활동 및 서비스를 명확하게 해줌
 - 3) 도살 후 소매하는 가금류 및 관련 위생검역은 도매시장의 가금류 도살센터에서 진행함
- 제11조 유일한 장소
- 1) 상기 제1조 2항부터 5항에서 가리키는 화물의 도매무역은 반드시 도매시장 내에서 진행해야 하고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은 엄격히 금지함
 - 2) 민정총서의 관련 규정 외 도매시장 내에서 상기 제1조 2항부터 5항에서 가리키는 화물에 대해서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해야 함
- 제12조 도매범위
- 1) 도매시장의 관리 및 전문경영은 도매계약 전문방식으로 특별 허가 실체에 도매하나 제4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 위에서 말한 전문경영제도는 도매시장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별 허가 실체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혹은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화물의 도매시장 진입은 금지함
 - 3) 특별 허가 실체가 대응능력이 없거나 혹은 민정총서 권한 인원이 정당한 지시를 내린 상황 하에서 제10조 제 1항의 화물의 접수, 저장, 분할 판매 및 판매를 거절할 수 있음
 - 4) 도매시장의 가금류 도살센터의 관리 및 경영은 민정총서가 책임짐
- 제13조 도매시장의 사용
- 1) 소매상, 도매상, 기타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및 민정총서 부속 부문은 모두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2) 도매시장을 점용 및 사용하는 자는 관련 활동에 종사할 때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

- 하고 또한 도매시장의 관리 및 경영규칙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함
- 3) 관련 도매시장 시설에 진입하고 점용하고 사용하는 조건은 반드시 등기신청 혹은 협정한 후 서면계약을 해야 함
 - 4) 특별 허가 실체는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민정총서의 위생검역 및 식품검역을 진행하는 인원들이 사용하게 함
 - 5) 주관 실체의 허가 없이는 도매시장 시설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 제14조 비용

- 1) 아래비용 외 특허실체는 경제활동 참여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 서비스 및 설비, 혹은 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어떠한 활동이든 임대료 혹은 대가를 받으면 안됨
 - 도매시장 장소 임대료는 점용 및 사용계약 권리인이 지불함
 - 도매시장 관리비, 공동장소의 청결서비스 및 보안비는 점용 및 사용계약의 권리인이 지불함
 - 도매시장시설 내 가금류 및 품종이 작은 동물의 접수 및 저장비용은 서비스 사용자가 지불함
 - 진입하는 차량마다 매월 진입 및 통행료 지불해야 하고 주관 공공부문 및 특별 허가 실체 인원의 차량은 제외
- 2) 민정총서는 가금류 도살센터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서 수도세 및 전기세를 받음

□ 제3장 위법 행위

○ 제15조

- 화물을 지정 장소로 운송하지 않은 경우
 - 1) 마카오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오고 반드시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화물은 세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한 문서를 갖고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는 장소로 이동해야 함
 - 2) 제11조에서 가리키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온 화물은 생산자, 소유인 혹은 소지인은 도매시장으로 이동해야 함
 - 3)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을 어긴 자, 지정장소에 화물을 이동하지 않는 자는 \$1,000.00(마카오화폐 1천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

물을 압수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귀속시킴

4) 화물을 지정장소로 이동했지만 제1항의 서류가 없는 자에게는 \$1,000.00(마카오화폐 1천원)의 벌금을 부과함

○ 제16조 도매시장 외 장소에서 도매무역 진행

- 제11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 장소에서 도매무역을 진행한 자는 화물판매가격과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5,000.00(마카오 화폐 5천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을 압수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귀속으로 함

○ 제17조 화물의 침범법

- 마카오특별행정구 외 지역에서 온 화물을 관문에서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 장소로 이동해 있는 기간 동안 그 화물에 대해 침범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책임 외에 화물가격과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1,000.00(마카오화폐 1천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을 압수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귀속시킴

○ 제18조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운송

- 1)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 장소로 이동하는 화물은 검사 받기 수월하도록 화물을 놓아 두고 포장에 화물명칭을 표기해 놓아야 함
- 2) 화물은 침범받지 않도록 운송해야하기에 화물차량에는 반드시 차문이 있어야 하며 관문의 주관부문에서 봉인 부착을 해야 함
- 3) 운송차량은 청결유지를 해야 하고 양호한 위생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고정 텐트 및 그물망으로 운송화물을 보호해야 함
- 4) 이상의 규정을 어긴 자에게 \$1,000.00(마카오 화폐 1천원)의 벌금을 부과함

○ 제19조 처벌직권

- 민정총서관리위원회 주식은 본 규정 처벌직권이 있으며 수권의 관련 규정의 따라 관리위원회 기타 구성원에게 전수할 수 있음

○ 제20조 절차

- 본 장에서 가리키는 위법행위 처리절차는 제7/2003호 법률 규정에 따르고 10월 4일 제52/99/M호 법령을 보충 적용하며 《행정절차법전》의 규정을 따름

□ 제4장 마지막 규정

- 제21조 도매시장의 추가 규칙
 - 효과적으로 본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도매시장 사용과 경영의 보충규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정장관의 지시와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제22조 폐지

폐지 :

 - 1) 1월 25일 제 2/99/M호 법령
 - 2) 3월 15일 제 80/99/M호 훈령
- 제23조 효력 발생
 - 본 행정법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2004년 12월 14일, 행정장관 허후화)
 - ※ 참조: http://bo.io.gov.mo/bo/i/2004/51/regadm40_cn.asp

제2절 수입 지침

1. 식용농산물수입지침(채소, 과일)

- 본 법률은 제 7/2003호 및 제 452/2011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근거하며, 농산물 수입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강제적으로 위생검역을 받아야 함
- 그 중 도매형식으로 운영하는 채소는 도매시장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도매무역 및 검사검역을 받아야 하고, 민정총서는 마카오 각 입구관문의 검사검역작업을 책임져야 함
- 본 지침의 목적은 위에서 말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에게 제공하는 일반성 지침이고 의문이 있을 경우 본서에 문의함
 - * 여행객은 1kg 이하의 자신이 사용할 박과류 및 과일을 지니고 입국할 수 있고 검사점역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신고절차

- 1) 수입상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이미 작성한 수입신고서(인무국에서 판매) 및 복사본 1부
 - 업체류일 경우 원산지 정부가 발급한 농약사용보고서 및 김독카드 혹은 관련 위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류번호란에 경제국 관제 대외무역활동 등기번호를 표기해야 함
 - 도매를 위한 수입이 아닐 경우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해야 함
- 2) 수입상은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면 민정총서 위생감독부에 수입을 신고하고 위생검역을 예약할 수 있음
- 3) 신청인은 민정총서 도장을 찍은 신고서복사본을 지니고 자체로 세관통관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서 복사본을 지니고 예약한 시간에 위생검역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주소 : 본마카오남완대마로762-804호 중화광장2자빌딩 민정총서종합서비스센터(위생감독사무)
 - 전화 : (853) 2833 7676, 8795 2643, 8795 2646
 - 팩스 : (853) 8795 2655
 - 비용
 - a) 제 268/2003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분경제 109/2005호 행정정관 지시수정) 검역비용은 검역 받는 식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결정함
 - b) 제 1/2012호 행정장관 지시에 따라 2012년도 《민정총서의 비용, 징수 및 가격표》 제 92조, 제 94조부터 제 97조에서 규정한 검역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 주의사항
 - a) 품종이 특수하면 학명을 표기해야 함
 - b)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품종으로 국제무역공약의 제약을 받는 물건은 반드시 경제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c) 도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례를 준수해야 함
 - d) 본부의 검역인원은 수입농산품의 샘플을 취하여 검측해야 함
 - e) 수입상은 마카오 기타 관련 법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f) 화물을 수입할 때 화물과 제공한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할 때 유효한 위생증명

혹은 검역검사증명이 불합격일 경우 화물의 통과는 거부되며 원래의 산지로 반송함. 이로 인한 손실 및 비용은 수입자가 책임져야 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1>

2. 육류, 산짐승 및 기타 동물 수입 지침

- 마카오법률 제 7/2003호 및 제 452/2011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근거하여 육류, 산 짐승 및 기타 동물원 제품 수입은 반드시 신고하고 강제적 위생검역을 받아야 함
- 그 중 도매형식으로 운영하는 살아있는 가금류, 야생동물류 등 작은 동물 및 알류는 반드시 도매시장에 진입하여 도매무역 및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고, 민정총서는 마카오 각 관문의 검역검사사업을 책임지고 있음
- 본 팜플렛의 목적은 상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며 의문이 있을 경우 본서에 문의 바람.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수입상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법률 제 7/2003호 및 제 452/2011호 행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동한 화물의 요구에 따라 관련 화물의 수입허가 및 수입신고서(인무국 판매) 및 복사본 1부
 - 화물의 국제위생증명서류
 - 신고 서류 번호 란에 경제국관계 무역활동 등기번호를 표기
 - 냉장육류, 급속냉동육류 혹은 육류제품은 반드시 본서에서 발급한 수입냉장육류, 급속냉동육류 혹은 육류제품 장소등기를 제출해야 함
 - 살아있는 가금류는 반드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증명을 제출해야 함
 - 도매용도가 아닌 수입자는 반드시 증명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성명을 해야 함
 - 2) 수입상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1일전에 민정총서 위생검독부에 수입검역예약을 할 수 있음
 - 3) 신청인은 본서의 도장이 날인된 허가증 혹은 세관신고 복사본을 지니고 자체로 세관통관을 진행하거나 허가증 및 신고서 복사본을 지니고 예약한 장소에서 검역을 대기함
 - 지점 : 마카오 남완대마로762-804호 중화광장2자빌딩 민정총서종합서비스중심 民(위생감독사무)

- 전화 : (853) 2833 7676, 8795 2643, 8795 2646
 - 팩스 : (853) 8795 2655
 - 비용
 - a) 제 268/2003호 행정장관 지시(부분경제 109/2005호 행정장관 지시 수정),
검역비용은 검역식품의 종류 및 수량에 근거하여 정함
 - b) 제 1/2012호 행정장관 지시, 2012년도, 《민정총서의 비용, 징수 및 가격
표》 제92조, 제94조부터 제97조에서 정한 검역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 주요사항
 - a) 야생동물 혹은 특수한 품종은 반드시 학명을 표기해야 함
 - b)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공약 규제 종은 반드시 경제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c) 도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례를 준수해야 함
 - d) 검역인원은 화물이 마카오에 도착 후 검역을 진행함
 - e) 모든 수입식품은 응당 제 50/92/M호 법령(경제 7/2004호 행정법규 및 제
56/94/M호 법령수정) 관련 식품라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f) 수입상은 마카오 기타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함
 - g) 화물을 수입할 때, 화물과 제공한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유효한 위생증명
을 제시하지 않거나 검역증명 불합격 시 화물의 통과를 거부함 수입상은 이로
인한 모든 손실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2>

제3절 허가증 신청 지침

1. 어획판매허가증 신청 지침

- 어획판매점포허가증은 시정조례 제17조 “발급규정”에서 규정하고 각 신청인이 어획
판매점포의 상세한 내역을 요해하려면 아래의 지침을 제공하고 경영인들은 참조바람

○ 시설 및 설비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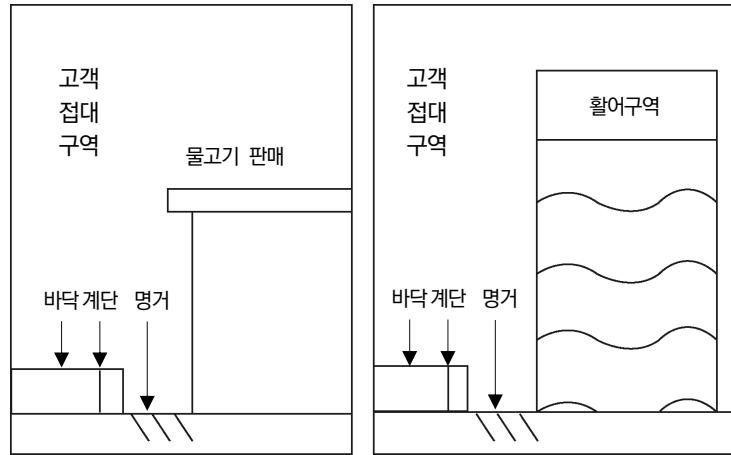
- 1) 신청인은 3부의 1:100점포시설, 설비평면도부분, 만약 건축구조가 수정되었다면 따로 공무국에서 발급한 공정합법화도면을 첨부해야 함 도면은 아래의 자료를 가리킴
 - 예비, 판매, 처리 및 저장장소
 - 세척과 공구설비의 보관지역
 - 화장실, 싱크대 및 배수장치
 - 모든 대형 및 고정설비의 위치(예를 들면 작업대, 냉장고 등), 그리고 기타 보조 설비의 위치(예를 들면 에어컨, 펌프, 냄새여과시스템 등)
- 2) 벽에 밝은 색의 타일 또는 기타 세척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며, 최저 높이는 1.8미터
- 3) 지면은 평평하고 경사지며 방수뿐만 아니라 세척 소독이 어렵지 않아야 함
- 4) 배수시스템에는 고체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5) 배수시스템은 반드시 공공위생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함
- 6) 독립적인 접대, 예비, 판매, 처리 및 보관의 장소, 또한 적당한 설비 및 기구
- 7) 각각 해산물처리 공구, 청결과 소독용품 및 도구비치 장소를 지정 설치해야 함
- 8) 효과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예비, 판매, 처리 및 보관구역에 오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함
- 9) 보유 및 접대, 예비, 판매, 처리 및 보관 장소는 화장실과 뚜렷하게 구분한 분리구역에 있어야 함
- 10) 적당 및 운영이 완벽한 냉장설비 및 그 설비에는 온도 눈금이 있어야 함
- 11) 절단에 사용하는 작업대가 평평하고 세척과 방수가 가능해야 하며, 오래 사용하더라도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또한 싱크대가 있어야 하고(쓰레기 찌꺼기 분리시설), 작업대 둘레 높이는 7cm, 또한 하수도과 밀봉 연결을 해야 함
- 12) 얇은 접시, 캐비닛, 칼 및 커터는 세척 가능해야 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녹방지 재료를 사용해야 함
- 13) 벌레와 쥐를 막는 시스템 시설
- 14) 수도물 공급설비
- 15) 매일 정비 및 청결작업을 해야 함 모든 이동 가능한 설비는 모두 지표면에서 15cm 높이의 스텐레스 받침대에 올려놓아야 함

○ 위생청결 방안

- 1) 진열한 어획 혹은 기타 해산물은 정연하게 정리하고 대중과 분리한 전문구역에 놓아두어야 함
- 2) 활어는 적당한 수조에 보관하고 예를 들면 수조 내벽은 세척이 쉬운 깨끗한 재료 (예를 들면 타일)를 사용하고 흐르는 물과 산소, 여과 및 소독시설이 있는 수조여야 함
- 3) 냉장어획 혹은 기타 해산물은 얼음이 가득한 얇은 쟁반에 담아 냉동고에 보관하고 쟁반은 물이 빠지는 기능과 하수도와는 밀봉 연결을 해야 함
- 4) 도마, 칼 및 장대는 매일 세척하여 위생을 유지해야 하고 파손되어서는 안됨
- 5) 위생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판매를 금지하고 사전 검역검사가 없이는 어획 및 기타 해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 6) 기타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금지
- 7) 염료 및 방부제 혹은 기타 어획물의 색상 혹은 신선도를 가리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됨
- 8) 장소 내 적당한 위치에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물고기 비늘, 내장, 새우 및 기타 갑각류의 껍데기는 따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함
- 9) 쓰레기는 청결회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소각 장소까지 운반하여 처리함
- 10) 점포 내에서 동물을 기를 수 없음
- 11) 최소 3개월간의 화물 명세서를 보관해야 함

○ 환경위생 방안

- 1) 격리된 방에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봉투에 쓰레기를 담는다.
- 2) 발생한 쓰레기는 청결회사를 통해 매일 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장까지 옮겨 처리함
- 3) 활어를 판매하거나 전시하거나 고객 접대구역에는 반드시 명거 및 계단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고객접대구역은 판매 및 활어전시대보다 높아야 하고 단계식 계단은 적어도 10cm 높이어야 함



- 4) 대외장소의 가장자리 위치에는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장소 내 작업 장소는 모두 공공거리, 공공보행로 혹은 공공통로보다 낮아야 하고 계단을 설치해서는 안됨
- 5) 모든 물빠짐 명거에는 여과망과 사이편이 있어야 하면 정기적으로 여과망내의 고체 폐기물을 깨끗이 정리해야 함
- 6) 장소 내에 배수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공공오수망에 연결하여 배출함
- 7) 장소 내 기타 지역인 비 손님 접대구역은 유리, 벽돌담 혹은 기타 깨끗하고 부식되지 않고 녹이 슬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공공가도와 밀폐 분리되어야 함
- 8)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제냉기는 장소 안과 바깥에 설치 가능하고 모두 방음커버, 방진, 격열 설비를 설치해야 함
- 9) 장소 내에 완벽한 냄새제거 처리시스템을 구축함 예를 들면 통풍설비, 펌프설비(흡기 덮개, 환풍기)및(활성탄소를 이용하여 여과하는 등), 또한 공공도로와 입출입이 되고 충분한 바람량의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관련 설비도면 및 기술참수를 제공하여 허가증 발급 때 심사를 받아야 함
- 10) 최소 설치 장소는 반드시 1.5평방의 손님접대구역이 있어야 하고 접대구역은 최소 폭이 0.8m이다. 또한 모든 면적 및 폭 계산은 대지 및 공간상 거리도 포함함
- 11) 운영 장소는 민가주택, 학교, 주거시설, 정부기관과 반드시 일정한 공간거리가 있어야 함
 - 독립점포(어획제품 단일 판매 점포): 점포 외벽 천장이 (다락방이 있다면 다락방

천장으로 계산)주민, 학교, 주거시설,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5m 공간거리가 있어야 함

- 상점 내 점포: 상점 내 독립적인 공간 및 슈퍼 내 판매구역은 주민, 학교, 주거시설, 정부기관과 반드시 5m 이상 공간거리가 있어야 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3>

2. 채소판매 허가증 신청지침

- 채소판매허가증은 시정조례 제17조 “발급규정”에서 규정하고 각 신청인은 채소판매 점포의 상세한 내용을 요해하려면 아래의 지침을 제공하고 경영인들은 참조 바람
- 시설 및 설비방면
 - 1) 신청인은 3부의 1:100점포시설, 설비평면도부분을 준비하고 만약 건축구조가 수정되었다면 공무국에서 발급한 공정합법화 도면을 첨부해야 함
 - 2) 예비, 판매, 처리 및 저장장소(비고 확인)
 - 3) 건물 아래 높이는 최소 2.5m.
 - 4) 벽은 2m 높이의 타일을 깔고, 임시로 에나멜 페인트를 칠함(에나멜 페인트 유효기간 1년)
 - 5) 지면은 평평하고, 방수 및 세척 소독이 용이하게 함
 - 6) 적합한 하수도체계, 여과망을 설치하고 하수도와 밀봉 연결을 해야 함
 - 7) 천장 및 타일위의 벽은 페인트칠을 하여 외관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함
 - 8) 적합한 통풍시설, 조명 및 흡기시스템이 있어야 함
 - 9) 다층 스텐레스진열대에 진열함
 - 10) 점포 내에서는 고객이 서서 제품을 고르도록 함
 - 11) 문, 창문, 난간 및 기타 설비에서 페인트가 벗겨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됨
 - 12) 점포경영면적은 200평방자
 - 구별이 명확한 독립적인 공간을 세척 및 정리용으로 함
 - 보행도로와 접근지역에 명거를 설치함
- 위생청결 방면
 - 1) 점포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청결회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장까지

옮겨 처리함 공공쓰레기시설 안에 내버려두면 안되고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여 증명해야 함

- 2) 점포 내에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충분한 공간에 비치해 두어야 함
- 3) 쓰레기통 안에 봉투를 넣어 쓰레기를 담아야 함

○ 식품위생 방면

- 1) 조치를 취하여 파리, 쥐, 바퀴벌레 및 기타 유독 유해한 곤충 등의 번식조건을 차단함
- 2) 설비 및 도구의 양호한 위생조건을 유지해야 함
- 3) 식품 중 어떠한 인체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됨
- 4) 지저분하고 변질한 채소는 판매금지임
- 5) 검역을 받지 않은 채소는 판매금지임
- 6) 공공지역을 점유하면서 채소를 팔아서는 안됨
- 7) 점포 내에서 애완동물을 길러서는 안됨
- 8) 화장실 안에서 도구 및 공구 및 채소를 세척하거나 가공해서는 안됨
- 9) 물은 음용 수준의 위생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10) 점포는 반드시 최근 3개월 물건 원산지 서류를 보관해야 함
- 11) 만약 동시에 감독 관리 받는 물건, 예를 들면 고기류, 고기류 제품, 가금류, 어획, 동물 등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비고: 점포 내에서 기타 경영항목 혹은 활동 시 본서위원회에서 따로 평가를 진행해야 함

* 첨부된 샘플 참고, 단 위의 조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



- 벽 아래 및 지하는 타일을 깔거나 보드블록을 깔아야 함
- 스테인리스 전시대
- 세탁이 가능한 방염테이프를 사용
- 서로 다른 채소는 분리시켜 놓아야 함
- 가격을 명시해야 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4>

3. 냉장신선가금류 허가증 신청 지침

- 본 총서에서 냉장신선 가금류 판매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 본 총서 동물약회는 관련 점포에 가서 냉장신선 가금류 판매기준에 부합되는지 감찰함
- 당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영업 가능하고 허가증은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함
- 토지공무운송국 및 소방국의 의견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1) 만약 이미 건설 완공한 건물 내에 설치하면 건물관리등기소에서 발급한 관련 단위 업권증명이 있어야 함
 - 3 부 원본(숙칭 집 조사 종이)
 - 2) 3부 비례 1/1000 점포의 평면도면 복사본 (숙칭 바닥도면)

- 3) 3부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 설비배치 비례 1/100 점포 평면도면 복사본 및 관련 비망록 설명서
 - 4) 관련 단위 원래의 토지공무운송국에서 심사 발급한 건축도면 3부 원본(문제가 있을 때 722488 로 문의)
- 점포는 반드시 최근 1개월 물품 명세서를 보관해야 함
 - 점포는 본 항목 3의 첨부 1~4의 《냉장신선가금류점포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시설 및 설비의 요구
 - 위생청결 및 판매조건
 - 환경위생요구
 - 방화안전지침 본 총서는 허가증 발급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총서 인원은 관련 점포를 방문하여 조건에 부합되는지 검사함
- 1) 지점 및 설비의 위생청결 조건
 - 벽은 반드시 타일 혹은 대리석으로 하거나 기타 평평하고 물이 새지 않고 충격을 버틸 수 있고 쉽게 부패하지 않고 세척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 기타 부분 및 천장은 밝은 색을 사용하고 물이나 비누 등으로 세척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 화장실은 판매 혹은 보관 장소와 분리하고 독립적인 통풍시설이 있어야 하고 청결함을 유지해야 함. 점주는 입구에 스프링, 슬라이딩, 에어브레이크를 도어에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해야 함. 용량이 크고 성능이 양호한 냉장고를 설치하여 판매할 신선냉장 가금류를 보관해야 함
 - 2) 판매위생 조건
 - 냉장신선가금류는 냉장고 이외의 곳에 저장해서는 안됨
 - 냉장고의 온도는 항상 4도를 유지해야 함
 - 냉장고 내부온도를 가리키는 온도계를 설치해야 함
 - 냉장설비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닫았을 때 완전 밀폐할 수 있어야 함
 - 냉장신선가금류를 판매할 때 소매상은 직접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 소비자에게 건네주어야 함
 - 점포의 환경은 청결위생을 유지해야 함
 - 사용하는 공구와 그릇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함

3) 상세한 내용은 첨부 1~4 참조

- 첨부 1: 냉장신선가금류 판매점포에 대한 요구 사항
- 시설 및 설비 요구 사항
 - 1) 장소, 설비 및 기구의 청결위생조건이 양호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함
 - 2) 적절한 통풍 및 조명시설
 - 3) 적절한 방충 및 쥐를 막는 시스템 시설
 - 4) 타일을 깔 벽 혹은 기타 세척 가능한 재료는 적어도 1.8 m 높이어야 하고, 건물 아래 높이는 적어도 2.5m이어야 함
 - 5) 기타 제품 및 업무와 분리된 독립 공간
 - 6) 평평하고 경사지며 방수 뿐만 아니라 세척이 어렵지 않은 바닥
 - 7) 적합한 하수도체계, 여과망을 설치하고 하수도와 밀봉 연결을 해야 함
 - 8) 판매하는 곳과 분리된 화장실
 - 9) 운영조건이 완비한 냉장시설(온도계 부착)
 - 10) 육류절단 테이블은 평평하고 방수, 충돌, 부패가 안되는 세척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야 함
 - 11) 판매지점은 적당한 폭이 있어야 하고 원활하고 막힘이 없어야 함
- 첨부 2: 냉장가금류점포에 대한 요구사항
- 위생청결 및 판매조건
 - 1) 냉장가금류는 청결하고 항온 보존해야 하며 보관 및 전시는 냉장고 안에 해야 함 (항상 0℃~4℃ 사이)를 유지하는 위생조건하에서 보관, 가공 및 판매해야 함
 - 2) 냉장신선가금류는 대중전용구역 및 문 옆 혹은 판매장소 입구에 두어서는 안됨
 - 3) 각종 냉장신선 가금류는 종류별로 보관하고 고기와 내장은 따로 분리 보관해야 함
 - 4) 냉장 및 냉동한 가금류를 신선육으로 판매해서는 안됨
 - 5)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수입한 냉장가금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변질한 가금류는 판매하면 안됨. 점포는 최근 1개월 물건명세서를 보관해야 함
 - 6) 냉장가금류는 반드시 독립포장을 해야 하고 생산일자를 부착해야 함 포장은 위생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하고 흰담피지, 랩, 테이프로 봉하고 식용일자를 표기해야 함

- 7) 고기류의 변질을 막거나 유지, 강화하기 위해 천연 혹은 합성생물 혹은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말아야 함
 - 8) 화장실에 공구와 설비를 그리고 가금류를 가공 및 보관하지 말아야 함
 - 9) 폐기물은 봉투에 잘 넣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함
 - 10) 지폐는 고기류와 접촉을 하면 안됨
- 첨부 3: 냉동가금류점포에 대한 요구 사항
 - 환경위생요구
 - 1) 냉동가금류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는 제냉 및 발열기가 내는 소음문제에 주의해야 함 점포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냉 및 발열기에 소음방지 커버를 사용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2) 명거 및 실내명거를 설치하여 해동 시에 시정조례 01/90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3) 점포에서 생긴 쓰레기는 청결회사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점포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적당한 곳에 쓰레기통을 비치해 두어야 함
 - 4) 점포영업 때, 반드시 마카오의 모든 적용 법례를 준수하고 특히 소음법령 4)12) 54/94/M 제 6조 및 시정조례 제 1/90호를 준수해야 하며 마카오 시내에 배출하는 액체 및 기체의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함
 - 5) 허가증 신청 때, 토지공무운송국 및 소방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토지공무운송국의 지시에 근거하여 제 79/85/M호 법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공정문제는 당국에 제출하여 공정계획을 수정하고 당국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 함
 - 소방국의 의견에 따라 방화 안전범위 상에서 점포는 현행 《방화안전규범》의 규정 및 당국이 제공한 의견들을 준수해야 함(첨부 참고 지침)
 - 첨부 4: 냉동가금류판매점포에 대한 요구사항
 - 방화안전지침
 - 현행 《방화안전규범》 중에는 명확하게 냉동가금류 판매 점포 방화 안전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판매종류는 고위험 방화위험이 있음 더욱이 이러한 장소의 주요시설은 전력사용을 위주로 하기에 제 V 사용조(상업용도)를 사용하도록 건의함

- 관련 점포들은 6월 9일 제 24/95/M호 법령에서 심사 비준한 《방화안전규범》 및 기타 본 지역에서 적용하는 전문법례의 규정을 참조바람
 - 점포 내에 소방시스템이 있고 그 설계도 심사비준에 부합되면 한 부의 유효한 운영 증명서를 교부함
 - 점포 내에 소방시스템이 없으면 아래의 정황에서 관련된 소방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총면적이 400 평방미터보다 크거나 혹은 용적이 1400 입방미터보다 큰 고정자동 살수식 소화시스템을 설치해야 함(제52조)
 - 총면적이 200평방미터보다 크거나 혹은 용적이700입방미터보다 크거나1400입방 미터보다 작을 때 화재자동탐지시스템을 설치함(제53조)
 - 점포 내 대피출입구의 거리는 제13조의 도표 VIII규정을 따라야 함 출구에 “이동 문”이라고 적혀있으면 수동방식으로 그 문을 열수 있음
 - 대피출구 및 통로(주요도로를 참조)은 제12조 VI 의 규정을 따라야 함(제12조). 점 포와 인근주택의 유일한 출구에는 1m 넘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재빨 리 확산되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줌(제14조)
 -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은 MO급 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함(다락방을 보관용도로 만 사용하고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 다락방의 계단자재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 음) (제17조)
 - 전력시설의 설치는 화재방지도 주의해야 하고 화재만연에도 주의해야 함(제32조)
 - 가연성자재를 사용하여 칸막이벽, 천장,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사용한 부분의 자재 는 합격품이거나 방화안전제품(F.R.P)이어야 함. 이로 하여 방화능력을 제고하고 가연성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음(제3조)
 - 보관실에 보관하는 물품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물건이면 안되고 화재위험이 있는 활 동을 하여서도 안됨. 특히 액체 및 가연성기체용기를 보관해서는 안됨(제83조)
 - 출구에(대피통로)에는 장기적으로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함(참고 《방화안전규범》)
- 첨부 1: 특징
- 녹색바탕에 흰색 도안 혹은 문자 및 긴급조명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시는 마땅 히 위치가 적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차 없이 대피출구에 안전하게 가도록 지시 해야 함. 공기조절 파이프는 비 가연성 재료로 설계하고 제작해야 하며 설치 시 고 정자동살수방화시스템의 운영에 방해를 주면 안됨

- 소화기는 매 200평방미터에 한 대를 설치해야 하고 각 통로 혹은 기타 장소에 놓아야 하며 각 소화기사이의 거리는 15 m를 초과하지 않음. 모든 관련 인원은 화재 발생 시 적극적인 행동 및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대피출구 및 통로를 알아야 하고 대피통로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막힘이 없게 해야 함
- 비고: 이러한 건의는 일상 판매 장소에도 적용됨. 예를 들면 면적이 크거나 환경요인이 특수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적 의견을 들어야 함(만약 대형 냉장실을 설치할 경우 위에서 규정한 《방화안전규범》 제4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5>

4. 냉동육류판매신청서지침

- 본 총서에 냉동육류판매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함
- 본서 수의사는 관련점포를 방문하여 냉장신선육 판매조건에 부합되는지 조사함
- 당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영업 가능하고 허가증은 잘 보이는 곳에 걸어야 함
- 토지공무운송국 및 소방국의 의견을 구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1) 만약 이미 건설완공한 건물 내에 설치하면 건물관리등기소에서 발급한 관련 단위 업권증명이 있어야 함
 - 3부 원본(속칭 집 조사 종이)
 - 2) 3부 비례 1/1000 점포의 평면도면 복사본(속칭 바닥도면)
 - 3) 3부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 설비배치 비례 1/100 점포 평면도면 복사본 및 관련 비망록설명서
 - 4) 관련단위 원래의 토지공무운송국에서 심사발급한 건축도면 3부 원본(문제가 있을 때 722488로 문의)
- 점포는 반드시 최근 1개월 물품 명세서를 보관해야 함
- 점포는 본 항목 3의 첨부 1~4의 《냉장신선육류점포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시설 및 설비의 요구

- 위생청결 및 판매조건
- 환경위생요구
- 방화안전지침 본 총서는 허가증 발급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총서 인원은 관련점포를 방문하여 조건에 부합되는지 검사함

1) 지점 및 설비의 위생청결 조건

- 벽은 반드시 타일 혹은 대리석으로 하거나 기타 평평하고 물이 새지 않고 충격을 버틸 수 있고 쉽게 부패하지 않고 세척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 기타 부분 및 천장은 밝은 색을 사용하고 1.8m보다 높아야 하고 물이나 비누 등으로 세척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
- 바닥은 평평하고 물이 새지 않고 세척 가능해야 함
- 화장실은 판매 혹은 보관 장소와 분리하고 독립적인 통풍시설이 있어야 하고 청결함을 유지해야 함
- 점주는 입구에 스프링, 슬라이딩, 에어브레이크를 도어에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해야 함
- 용량이 크고 성능이 양호한 냉장고를 설치하여 판매할 신선냉장 육류를 보관해야 함

2) 판매 위생조건

- 냉장신선육류는 냉장고 이외의 곳에 저장해서는 안됨
- 냉장고의 온도는 항상 4도를 유지해야 함
- 냉장고 내부온도를 가리키는 온도계를 설치해야 함
- 냉장설비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닫았을 때 완전 밀폐할 수 있어야 함
- 냉장신선육류를 판매할 때 소매상은 직접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 소비자에게 건네주어야 함
- 점포환경은 청결위생을 유지해야 함
- 사용하는 공구와 그릇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함

3) 상세한 내용은 첨부1~4 참조

- 첨부 2: 냉장신선육류 판매점포에 대한 요구사항
- 시설 및 설비 요구 사항

- 1) 장소, 설비 및 기구의 청결위생조건이 양호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함
 - 2) 적절한 통풍 및 조명시설
 - 3) 벌레 및 쥐를 막는 시스템 시설
 - 4) 타일을 깔 벽 혹은 기타 세척 가능한 재료는 적어도 1.8 m 높이어야 하고, 건물 아래 높이는 적어도 2.5m이어야 함
 - 5) 기타 제품 및 업무와 분리된 독립 공간
 - 6) 평평하고 경사지며 방수 뿐만 아니라 세척이 어렵지 않은 바닥
 - 7) 적합한 하수도체계, 여과망을 설치하고 하수도와 밀봉 연결을 해야 함
 - 8) 판매하는 곳과 분리된 화장실
 - 9) 운영조건이完비한 냉장시설(온도계 부착)
 - 10) 육류절단 테이블은 평평하고 방수, 충돌, 부패가 안되는 세척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함
 - 11) 판매지점은 적당한 폭이어야 하고 원활하고 막힘이 없어야 함
- 첨부 2: 냉장육류점포에 대한 요구사항
- 위생청결 및 판매조건
- 1) 냉장육류는 청결하고 향온 보존해야 하며 보관 및 전시는 냉장고 안에 해야 함. 항상 0℃~4℃ 사이를 유지하는 위생조건하에서 보관, 가공 및 판매해야 함
 - 2) 냉장육류는 대중전용구역 및 문 옆 혹은 판매장소 입구에 두어서는 안됨
 - 3) 각종 냉장육류는 종류별로 보관하고 고기와 내장은 따로 분리 보관해야 함
 - 4) 냉장 및 냉동한 육류를 신선육으로 판매해서는 안됨
 - 5)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수입한 냉장육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변질한 육류는 판매하면 안됨. 점포는 최근 1개월 물건 명세서를 보관해야 함
 - 6) 냉장육류는 반드시 독립포장을 해야 하고 생산일자를 부착해야 함 포장은 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인체에 위해가 없어야 하고 흰땀피지, 랩, 테이프로 봉하고 식용일자를 표기해야 함
 - 7) 고기류의 변질을 막거나 유지, 강화하기 위해 천연 혹은 합성생물 혹은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말아야 함
 - 8) 화장실에 공구와 설비를 그리고 육류를 가공 및 보관하지 말아야 함

- 9) 폐기물은 봉투에 잘 넣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함
- 10) 지폐는 고기류와 접촉을 하면 안됨
- 첨부 3: 냉동육류점포에 대한 요구사항
- 환경위생요구
 - 1) 냉동육류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는 제냉 및 발열기가 내는 소음문제에 주의해야 함. 점포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냉 및 발열기에 소음방지 커버를 사용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2) 명거 및 실내명거를 설치하여 해동 시에 시정조례 01/90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3) 점포에서 생긴 쓰레기는 청결회사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점포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적당한 곳에 쓰레기통을 비치해 두어야 함
 - 4) 점포영업때, 반드시 마카오의 모든 적용 법례를 준수하고, 특히 소음법령 4)12) 54/94/M 제 6조 및 시정조례 제 1/90호를 준수해야 하며 마카오시내에 배출하는 액체 및 기체의 관련규정도 준수해야 함
 - 5) 허가증 신청 때, 토지공무운송국 및 소방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토지공무운송국의 지시에 근거하여 제 79/85/M호 법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공정문제는 당국에 제출하여 공정계획을 수정하고 당국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 함
 - 소방국의 의견에 따라 방화 안전범위 상에서 점포는 현행 《방화안전규범》의 규정 및 당국이 제공한 의견들을 준수해야 함(첨부 참고 지침)
- 첨부 4: 냉동육류 판매점포에 대한 요구사항
- 방화안전지침
 - 현행 《방화안전규범》 중에는 명확하게 냉동가금류 판매점포 방화안전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판매종류는 고위험 방화위험이 있음. 더욱이 이러한 장소의 주요 시설은 전력사용을 위주로 하기에 제 V 사용조(상업용도)를 사용하도록 건의함
 - 관련 점포들은 6월 9일 제 24/95/M호 법령에서 심사 비준한 《방화안전규범》 및 기타 본 지역에서 적용하는 전문법례의 규정을 참조바람
 - 특히 점포 내에 소방시스템이 있고 그 설계도 심사비준에 부합되면 한부의 유효한

운영증명서를 교부함

- 점포 내에 소방시스템이 없으면 아래의 정황에서 관련된 소방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총면적이 400평방미터보다 크거나 혹은 용적이 1400입방미터보다 큰 고정자동살수식 소화시스템을 설치해야 함(제52조)
- 총면적이 200평방미터보다 크거나 혹은 용적이 700입방미터보다 크거나 1400입방미터보다 작을 때 화재자동탐지시스템을 설치함(제53조)
- 점포 내 대피출입구의 거리는 제 13조의 도표 VIII규정을 따라야 함. 출구에 “이동문”이라고 적혀있으면 수동방식으로 그 문을 열수 있음
- 대피출구 및 통로(주요도로를 참조)는 제12조 VI 의 규정을 따라야 함(제12조). 점포와 인근주택의 유일한 출구에는 1미터 넘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재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줌(제14조)
-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은 MO급 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함(다락방을 보관용도로만 사용하고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 다락방의 계단자재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음)(제17조)
- 전력시설의 설치는 화재방지에도 주의해야 하고 화재만연에도 주의해야 함(제32조)
- 가연성자재를 사용하여 칸막이벽, 천장,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사용한 부분의 자재는 합격품이거나 방화안전제품(F.R.P)이어야 함. 이로 하여금 방화능력을 제고하고 가연성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음(제3조)
- 보관실에 보관하는 물품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물건이면 안되고 화재위험이 있는 활동을 하여서도 안됨. 특히 액체 및 가연성기체용기를 보관해서는 안됨(제83조)
- 출구(대피통로)에는 장기적으로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함(참고 《방화안전규범》)

○ 첨부 1: 특징

- 녹색바탕에 흰색 도안 혹은 문자)및 긴급조명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시는 마땅히 위치가 적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차 없이 대피출구에 안전하게 가도록 지시해야 함
- 공기조절파이프는 비 가연성 재료로 설계하고 제작해야 하며 설치 시 고정자동살수 방화시스템의 운영에 방해를 주면 안됨
- 소화기는 매 200평방미터에 한대를 설치해야 하고 각 통로 혹은 기타 장소에 놓아야 하며 각 소화기 사이의 거리는 15 m를 초과하지 않음. 모든 관련 인원은 화재 발생 시 적극적인 행동 및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대피출구 및 통로를 알

- 아야 하고 대피통로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막힘이 없게 해야 함
- 비고: 이러한 건의는 일상 판매장소에도 적용됨. 특별한 장소, 예를 들면 면적이 크거나 환경요인이 특수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적 의견을 들어야 함(만약 대형 냉장실을 설치할 경우 위에서 규정한 《방화안전규범》 제4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참고 사진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6>

5. 냉동육류판매 허가증 신청 지침

- 냉동육류판매 허가증은 시정조례 제17조 “발급규정”에서 규정하고 각 신청인은 채소판매점포의 상세한 내용을 요해하려면 아래의 지침을 제공하고 경영인들은 참조바란다.
- 시설 및 설비 방면
 - 1) 신청인은 1:100점포시설, 설비평면도부분을 준비하고 만약 건축구조가 수정되었다면 공무국에서 발급한 공정합법화 도면을 첨부해야 함
 - 2) 운영환경은 유독 혹은 비위생적인 업무 및 냄새배출, 먼지, 담배 및 연기가 있는 장소와 분리되어 있어야 함
 - 3) 충분한 공간에서 보관, 수작업, 배합, 절단, 진열 및 판매 활동을 해야 함
 - 4) 적합한 통풍시설, 조명 및 흡기시스템이 있어야 함
 - 5) 지면은 평평하고, 방수 및 세척 소독이 어렵지 않아야 함
 - 6) 건물 아래 높이는 최소 2.5m

- 7) 타일을 칸 벽 혹은 기타 세척 가능한 재료는 최소 1.8 m 높이어야 하고, 기타 부분 및 천장은 밝은 색 계통으로 세척이 쉬운 페인트로 칠해야 함
 - 8) 화장실은 판매 혹은 보관 장소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통풍시설이 있어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함
 - 9) 점주는 입구에 스프링, 슬라이딩, 에어브레이크를 도어에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해야 함
 - 10) 용량이 크고 성능이 양호한 냉장고를 설치하여 판매할 냉동육류를 보관해야 함 그리고 물 제거 장치는 반드시 하수도와 연결해야 함
 - 11) 운영조건이完비한 냉장시설(온도계 부착)
 - 12) 적당한 방충 및 쥐를 방지하는 햇볕이 드는 설비가 있어야 함
 - 13) 육류절단 테이블은 평평하고 방수, 충돌, 부패가 안되는 세척 가능한 재재를 사용해야 함
 - 14) 적합한 하수도체계, 여과망을 설치하고 하수도와 밀봉 연결을 해야 함
 - 15) 냉동창고는 반드시 공기조절실과 통해야 하지만 결코 외부와 직접 통해서는 안됨
 - 16) 냉동창고마다 발송대기 박스를 두는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이러한 박스는 냉동트럭이 도착한 후 냉동창고에서 꺼낸다.
 - 17) 냉동창고의 위생조건
 - 냉동창고 주변 지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정연해야 함
 - 냉동창고의 바닥, 벽, 천장 및 문은 항상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피스톤식 물 제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모든 박스는 반드시 받침대 위거나 화물 수납장 위에 진열하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적어도 10cm 떼어 놓아야 하며 벽으로부터 적어도 15cm 떼어 놓아야 하며 천장으로부터 적어도 50cm 떼어 놓아야 함
 - 박스는 구역에 따라 진열하고 각 구역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냉동실에서 제품을 출고하거나 혹은 제품을 입고할 때 편리함
 - 환풍기가 배출하는 찬 공기의 자유로운 유동은 어떠한 방해도 받아서는 안됨
- 청결 및 환경위생
- 1) 점포에서 생긴 쓰레기는 청결회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장까지 옮겨 처리함 공공쓰레기시설 안에 내버려두면 안되고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여 증명해야 함

- 2) 점포 내에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충분한 공간에 비치해 두어야 함
 - 3) 쓰레기통 안에 봉투를 넣어 쓰레기를 담는다.
 - 4)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는 제냉 및 발열기가 내는 소음문제에 주의해야 함
점포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냉 및 발열기에 소음방지 커버를 사용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위생판매 방면
- 1) 장소, 설비 및 기구는 위생청결을 유지해야 함
 - 2) 모든 육류는 원래 포장을 유지하고 혹은 원래 포장이 훼손되었을 경우 비닐봉투로 포장함
 - 3) 냉동고기는 냉장시설이 없는 곳에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못함
 - 4) 판매 때 설정할 냉장설비는 반드시 아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함
 - 냉장육류는 0℃~4℃ 사이
 - 급속 냉동 육류는 영하 18℃ 이하
 - 육류제품은 0℃~10℃ 사이
 - 5) 고기류의 변질을 막거나 유지, 강화하기 위해 천연 혹은 합성생물 혹은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말아야 함
 - 6)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수입한 냉동육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변질한 냉동육류는 판매하면 안됨
 - 7) 냉동육류는 반드시 독립포장을 해야 하고 생산일자를 부착해야 함
포장은 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인체에 위해가 없어야 하고 흰담피지, 랩, 비닐봉투로 봉하고 식용일자를 표기해야 함
 - 8) 각종 냉동육류는 분류에 따라 보관하고 고기 및 내장은 따로 분리하고 날 것과 익힌 음식은 따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
 - 9) 지폐는 고기류와 접촉을 하면 안됨
 - 10) 고기를 처리하거나 절단할 때는 10℃~15℃의 온도에서 작업해야 함
 - 11) 사용하는 공구와 그릇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함
 - 12) 화장실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함
 - 13) 점포는 반드시 최근 3개월 화물명세서를 보관해야 함
 - 14) 점포에서 애원동물을 길러서는 안됨

15) 개인위생을 청결히 해야 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7>

제4절 주의사항

□ 육류 소매상 및 수입상에 대한 권고

- 보건 및 위생을 위하여 육류는 항상 양호한 위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소매상

- 화물구매 방면
 - 1) 신용이 양호한 공급상에게서 물건을 들여와야 함
 - 2) 외포장이 훼손된 육류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함
 - 3) 포장외면에 표기된 유통기한, 포장일자 및 원산지 등 자료에 주의해야 함
- 화물 전시 및 판매 방면
 - 1) 냉동육류는 냉장고 이외의 장소에 전시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함
 - 2) 많은 양의 육류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 냉장고의 부하로 인해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이로 인해 냉장고의 온도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 3) 다른 종류의 냉동육은 분리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함
 - 4) 냉장고 외면에 온도계가 있어야 하고 판매자가 수시로 온도의 변화를 살필 수 있음
 - 5) 냉장고 문은 항상 밀폐상태를 유지해야 함
 - 6) 냉장고는 항상 위생청결을 유지하고 냉동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함
 - 7) 날것과 익은 음식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비닐봉투나 그릇에 밀봉하여 보관하여 교차감염을 막아야 함
 - 8) 화물의 유통기간 일자를 주의하고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육류절단 방면

- 1) 육류의 절단은 반드시 가공작업실에서 진행해야 함
 - 2) 육류절단 칼, 칼도마 및 절단기는 위생청결을 유지해야 함
 - 3) 육류 및 내장의 절단은 분리하여 처리하고 교차감염을 막아야 함
 - 4) 다른 칼과 도마 및 절단기를 사용하여 날것과 익은 육류를 처리해야 함
 - 5) 모든 사용한 도구는 매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해야 함
- 점포 및 작업인원 위생에 대한 요구
- 1) 점포는 정기적으로 방충, 쥐를 소멸해야 함
 - 2) 정기적으로 점포 내 환경청결 및 소독을 해야 함
 - 3) 작업자의 개인위생의식을 함양하고 증대해야 함
 - 4) 만약 작업자의 손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재빨리 싸매거나 장갑을 착용해야 함
- 운송 방면
- 1) 육류의 운송은 밀폐식 트럭으로 운송해야 하고 특히 냉동육류는 냉동시설이 있는 화물차로 운송해야 하기에 화물의 위생을 확보해야 함
 - 2) 육류를 담는 포장박스 및 그릇은 위생청결을 유지해야 함
 - 3) 화물트럭은 매번 사용 후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함

- 수입상

- 화물구매 방면 :
- 1) 신용이 양호한 공급상에게서 물건을 들여와야 함
 - 2) 외포장이 훼손된 육류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함
 - 3) 포장 외면에 표기된 유통기한, 포장일자 및 원산지 등 자료에 주의해야 함
- 운송 방면
- 1) 육류의 운송은 밀폐식 트럭으로 운송해야 하고 특히 냉동육류는 냉동시설이 있는 화물차로 운송해야 하기에 화물의 위생을 확보해야 함
 - 2) 냉동육류제품은 화물을 내릴 때 저온 환경에서 재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제품이 녹는 현상이 없도록 위생에 주의해야 함
- 냉동육류 화물저장 방면

- 1) 냉장육류 및 급속냉동육류제품은 적당한 온도의 냉동창고에서 보관해야 함
 - 2) 냉동창고에는 온도검측장치가 설치되어 온도의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문인원이 정기적으로 온도기록을 해야 함
 - 3) 냉동창고 내의 화물은 정연하게 선반위에 놓아야 하고 바닥에 마음대로 놓아서는 안됨
 - 4) 화물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육류가공 및 절단 방법
- 1) 육류의 절단은 반드시 가공작업실에서 진행해야 함
 - 2) 가공작업실에 냉동설비가 있어야 하고 15℃ 이하가 가장 적합하고 육류절단 칼, 칼도마 및 절단기는 위생청결을 유지해야 함
 - 3) 육류 및 내장의 절단은 분리하여 처리하고 교차감염을 막아야 함
 - 4) 다른 칼과 칼도마 및 절단기를 사용하여 날것과 익은 육류를 처리해야 함
 - 5) 가공작업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함
- 작업인원위생에 대한 요구
- 1) 점포는 정기적으로 방충, 쥐를 소멸해야 함
 - 2) 정기적으로 점포 내 철저한 환경청결 및 소독을 해야 함
 - 3) 작업자의 개인위생의식을 배양하고 증가해야 함
 - 4) 만약 작업자의 손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재빨리 싸매거나 장갑을 착용해야 함
- 전염병이 있는 경우 식품처리를 하면 안됨
-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8>

□ 육류제품 판매점포 및 위생 주의사항

- 식품위생 방면
- 1) 식품보관, 처리 및 절단은 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2) 식품보관용기는 반드시 덮개를 닫거나 랩으로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함
 - 3) 날것과 익은 음식은 반드시 분리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익은 음식은 위에 날 것은 아래에 보관해야 함

- 4) 냉장고 윗부분의 온도는 0℃~4℃를 유지해야 하고, 윗 부분은 0℃ 이하를 유지해야 함
 - 5) 날것과 익은 음식을 처리할 때 다른 칼과 도마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함
 - 6)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한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됨
 - 7) 전시대는 유리판이나 플라스틱판으로 가려야 하고, 음식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개인위생 방면
- 1) 작업할 때 청결한 의복과 에이프런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함
 - 2) 고기를 썰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을 권장함
 - 3) 만약 작업자의 손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재빨리 싸매거나 장갑을 착용해야 함
 - 4)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식품오염의 위험성이 있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5) 장염에 걸렸거나, 화농성피부염 혹은 감기증상이 있을 경우 식품을 접촉, 처리하지 말아야 함
 - 6) 양호한 위생습관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고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고 코를 후비지 말아야 함
 - 7) 손으로 지폐를 만졌으면 즉시 손을 씻고 식품을 처리해야 함
- 설비시설 위생 방면
- 1) 칼, 칼도마, 금속그릇은 자주 세척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함
 - 2) 도마 같은 경우 균열이 생기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함
 - 3) 위생이 깨끗한 박스나 장소에 조리 도구를 놓아야 하고 신문지로 조리 도구를 싸서 보관하면 안됨
 - 4) 점포 및 주위 환경은 반드시 청결을 유지해야 함
 - 5) 음식물찌꺼기 및 쓰레기는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쓰레기통을 세척해야 함
 - 6) 정기적으로 방충 및 쥐를 소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7) 정기적으로 냉장고 서리를 제거하고 세척해야 하고 냉동기능의 정상적인 가동을

확보해야 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9>

□ 육류처리/육류제품위생에 대한 주의사항

○ 개인위생 방면

- 1) 양호한 개인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식품을 처리하고 배합하거나 할 때 반드시 철저히 손을 씻어야 함
- 2) 깨끗한 작업복, 에이프런, 마스크, 모자 및 장갑을 착용해야 함
- 3) 식품을 처리 및 배합할 때 양손에 장식품을 착용해서는 안됨
- 4) 손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즉시 상처를 싸매고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장갑을 교체해야 함
- 5) 손으로 지폐, 입, 코 및 머리카락을 만지면 즉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그 후에 식품을 접촉하거나 처리할 수 있음
- 6) 장염에 걸렸거나, 화농성피부염 혹은 감기증상이 있을 경우 식품을 접촉, 처리하지 말아야 함
- 7) 식품 처리범위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가래를 뱉으면 안됨
- 8) 화장실에 다녀온 후 꼭 손을 씻어야 함

○ 장소, 설비, 시설, 위생 방면

- 1) 육류처리/육류제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건조하고 위생적이어야 함. 환경온도는 항상 15℃ 이하를 유지해야 함
- 2) 모든 설비(칼, 도마 및 각종 용기 등) 및 설비(바닥, 벽 등)를 사용 후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함
- 3) 도마에 균열이 생기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함
- 4) 칼을 놓는 박스나 장소는 항상 위생청결을 유지해야 함
- 5) 냉동고, 냉장고 및 보관 장소는 매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서리를 제거해야 함
- 6) 음식물찌꺼기 및 쓰레기는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은 단독으로 비치하여 식품 오염을 피해야 함
- 7) 쓰레기통에 비닐봉투를 넣어두고 덮개를 항상 덮어두고, 매일 쓰레기통을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함

- 8) 방충 및 쥐 소멸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방역 회사를 불러 방역작업을 해야 함
- 9) 각종 세척제, 살충제 및 기타 화학용품은 단독으로 보관하고 여러 종류의 식품과 함께 보관하면 절대 안됨
- 10) 애완동물은 작업장에 진입금지임
- 식품위생 방면
 - 1) 날것과 익은 음식을 처리할 때 다른 칼과 도마를 분리해서 처리하여 교차오염을 피해야 함
 - 2) 날것과 익은 음식은 반드시 분리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익은 음식은 위에 날 것은 아래에 보관해야 함
 - 3) 식품보관용기는 덮개로 덮어두거나 랍으로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함
 - 4) 냉장고의 온도는 항상 0℃~4℃를 유지해야 하고 냉동고의 온도는 항상 -18℃이하여야 함
 - 5) 식품 종류에 따라 냉장고, 냉동고 혹은 냉장실에 보관해야 함
 - 6) 통조림이거나 건물은 바닥과 벽에서 최소 15cm(약 6인치)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함
 - 7)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변질한 식품을 팔면 안됨.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화물을 처리해야 함
 - 8) 전시대는 유리판이나 플라스틱판으로 가려야 하고, 음식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야 함
- 양 손을 씻는 순서
 - 1) 깨끗한 물로 손 적시기
 - 2) 비누 사용하기
 - 3) 양 손을 20초간 꼼꼼하게 비비기(필요할 때 손톱 세척솔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씻어 손톱의 위생청결을 유지해야 함)
 - 4) 양 손을 철저히 씻기
 - 5) 휴지로 닦거나 헤어드라이어로 양손을 말리기
 - 6) 휴지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물을 제거하기
- 그릇 청결과 소독은 다음과 같은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함

- 1) 음식물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닦아내기
- 2) 깨끗한 물로 씻기
- 3)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기
- 4) 깨끗한 물로 씻기
- 5) 끓는 물 혹은 소독제로 소독하기(소독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표기된 안전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함)
- 6) 자연바람으로 건조하거나 깨끗한 물로 다시 세척하기(소독제에 표기된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10>

□ 도매 및 소매 어획인원

- 도매 및 소매 어획인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함
 - 1) 장소 내의 시설 및 설비의 환경위생청결을 유지해야 함
 - 2) 어획물을 담았던 그릇, 공구 및 관련 설비는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함
 - 3) 자주 세척하고 소독하고 수조의 여과기 및 여과기 스펀지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함
 - 4) 양어장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함
 - 깨끗한 물로 자주 갈아줘야 함
 - 소금물로 바다 물고기 양식
 - 5) 어류는 조개류와 분리하여 진열 및 보관
 - 6) 조개류를 양식할 때 청결위생을 유지해야 함
 - 7) 양식수조 내 물고기중류 투입 밀도
 - 8) 병이 든 물고기 발견 시 즉시 꺼내고 폐기해야 함
 - 9) 냉장신선물고기는 적당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함 예를 들면 얼음을 더하거나 냉장하거나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보관해야 함
 - 10) 변질된 해산물은 판매금지임
 - 11) 쓰레기는 적절히 처리해야 함
 - 12) 양호한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어획물 처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 13) 수입상은 원산지 불명 어획물은 구매하지 않아야 함
 - 14) 소매상은 믿을 수 있는 공급상에게서 구매해야 함

- 콜레라는 자연계 물속에서 존재하고 4~5℃의 물속에서 60일간 생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여름에 활발함. 콜레라는 갑작스레 발작하는 급성 세균성 장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 전염되고 불결한 환경에서 더더욱 전염이 빠름. 콜레라는 예방이 특히 중요한데, 개인과 음식, 환경위생이 가장 중요함.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11>

□ 수입허제제품의 위생지침



進口臘味製品的衛生指引

臘味是中國傳統食品，在冬季尤其受歡迎，而外國亦有相類似的食品。為此，特別製作此衛生指引，供食品行業及入口商參考。現時市面上出售的臘味有臘腸、臘肉及臘鴨等等，由於所用的醃製配方各有不同，所以在外表、質感及味道方面各有不同的特色。臘味的製造方法，主要是以醃料處理肉類或家禽，醃料通常包括鹽、糖、酒，以及加入有規定限量的食品添加劑。當肉類、調味料及食品添加劑攪拌混和後，接著便會進行風乾程序，而風乾的溫度、濕度及時間都會直接影響製成品的質量。不合格及劣質的臘味可能存在著水份含量、食鹽含量、酸價、防腐劑含量及標籤等問題，因此入口商須謹慎選擇生產商，才可進行購貨。

食品衛生方面

1. 向信譽良好的生產商購貨：
 - 所謂良好的生產商基本必須在生產地有註冊，受當地權限部門衛生監管，並能夠提供製成產品的衛生證明文件。而有認可衛生質量控制體系(例如GMP、HACCP)的生產商，其生產過程中的衛生質量較有保證，同時亦可嘗試向生產商索取產品的檢驗結果報告，檢驗項目包括水份含量、食鹽含量、酸價等等，以了解其產品的質量。
2. 入口的臘味製品應符合以下要求：
 - 2.1 產品包裝要密封無破損。
 - 2.2 產品包裝上應有明確的標籤，而標籤上須列明產品名稱；加工廠的名稱、註冊編號、地址；生產日期、保質期、原料表及淨重量等，且符合衛生證書上的資料；同時亦須符合本澳標籤法的規定。

2.3 產品須附有原產地權限當局的官方衛生證明文件。

2.4 衛生證明文件須明確註明：

臘味製品的種類；

註冊出口企業名稱；

加工廠名稱、註冊編號及地址；

衛生證明文件有效日期及簽發日期；

產品運送日期、生產日期、食用期限、生產/批次

編號；

2.5 經檢驗合格後的產品方可進入本澳市場流通；

運輸及貯存方面

1. 運輸貨車須保持清潔衛生；而車廂內牆應採用平滑而不滲水的材料，以便清潔消毒；
2. 在運輸過程中，須注意溫度及濕度的變化，避免陽光直接照射及雨水淋濕貨品，而運輸用具應保持乾爽；
3. 需要長時間存放的臘味製品應貯存於冷藏庫或雪櫃內；較短時間者，則可放置在溫度較低且乾爽的貨倉內，以防品質變差；
4. 倉庫內之貨品應包裝好，存放在不銹鋼架或隔板上，並且應與地面及鄰近牆壁保持一定距離，切勿將貨品直接存放在地面上；
5. 倉庫內應設有防蟲及防鼠設備；
6. 倉庫內的地面應為防水、可清洗，以及平坦、無缺口、略為傾斜，以便清潔及排水；
7. 倉庫內的牆壁應鋪上瓷磚至2米高，或臨時髹上磁漆，其餘部份及天花板應採用易於清洗的防水及耐用材料，以防剝落。(磁漆有效期為一年)
8. 倉庫內應具有適當的通風、照明系統，以及裝有抽氣、除濕或空調等設備，以保持室內溫度及濕度均符合存放貨品。

民政總署

綜合服務中心 衛生監督事務

地址：本澳南灣大馬路 762-804 號

中華廣場 2 字樓

電話：(853) 337676、7952643 & 7952646

傳真：(853) 7952655

網址：www.iacm.gov.mo

민정총서
위생감독부 식품위생검역처

○ 수입훈제제품의 위생지침

훈제음식은 중국 전통식품으로서 겨울이 되면 더 환영받음. 외국에도 유사한 식품들이 있음. 이 때문에 특별히 본 위생지침을 제작하여 식품업계 및 상인들이 참고하도록 함.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훈제제품은 훈제장차, 훈제고기 및 훈제오리 등이 있음. 만드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에 표면, 질감 및 맛에서 각자 다른 특색이 있음. 훈제 제조방법은 주로 담그는 재료로 육류와 가공육을 처리하고 담그는 재료는 소금, 설탕, 술 및 기타 규정 제한량의 식품첨가제를 넣음. 육류, 조미료 및 식품첨가제를 혼합한 후 바람에 말리는 절차를 거치는데 바람에 말리는 온도 및 시간은 직접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결정함. 불합격 및 낮은 품질의 훈제 제품은 수분 함량, 소금 함량, 산도, 방부제 함량 및 라벨 표기 등에 문제가 있음. 이 때문에 수입상은 신중하게 생산업체를 선택하여 구매해야 함.

○ 식품위생 방안

신용이 좋은 생산업체에서 구매함. 신용이 좋은 생산업체라 함은 반드시 영업등기하고, 현지 위생감독부문의 허가를 받고 생산한 제품의 위생증명서류를 제공가능한 업체를 말함. 또한 위생품질통제체계(예를 들면 GMP, ACCP)의 생산업체는 생산과정 중의 위생품질 보증이 있고 생산업체에서 제공받은 제품검사결과보고서는 수분 함량, 소금 함량, 산도 등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 수입 훈제제품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상품포장은 밀봉 상태여야 하고 훼손이 없어야 함
- 상품포장에는 명확한 표기를 해야 함
- 제품명칭, 가공업체 명칭, 등기번호, 주소, 생산일자, 유통기한, 원재표 및 순중량 등. 또한 위생에 부합되어야 하고 마카오 제품 라벨법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함

○ 제품에는 원산지 당국의 위생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위생증명서류

- 훈제제품의 종류
- 등기수출업체명칭
- 가공업체명칭, 등기번호 및 주소
- 위생증거서류 유효일자 및 발급일자
- 상품운송일자,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 로트번호(검역을 통과한 제품은 마카오 시장에서 유통 가능함)

○ 운송 및 보관

- 운송화물차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차량 내부는 평평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세척 소독이 가능해야 함
- 운송 과정 중 온도의 변화와 직사광선을 피하고 제품이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차량은 항상 건조함을 유지해야 함
- 장시간 보관하는 훈제제품은 냉동창고/냉장고에 보관하고 짧은 시간 보관할 경우 온도가 비교적 낮은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여 제품이 변질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창고 내의 화물은 포장을 해서 보관하고 스테인리스 혹은 선반 위에 보관하고 바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로 제품을 맨 바닥에 놓아서는 안됨
- 창고 내 벌레, 쥐를 잡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창고 내 바닥은 방수, 평평하고 조금 경사지고 세척 소독 및 배수에 가능해야 함
- 창고 내 벽의 타일은 적어도 2미터 높이어야 하고 페인트칠을 할 경우 기타부분 및 천장은 세척 가능한 내구성이 강한 페인트를 사용하고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함(페인트 유효기간은 1년)
- 창고 내에는 적절한 환기시설과 조명, 제습 및 에어컨 등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실내온도는 제품보관에 부합되는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함

민정총서 종합서비스센터 위생감독사무
본 마카오남완대마로 762-804호 중화광장 2자빌딩
○전화:853337676, 7952643&7952646
○팩스: 853 7952655
○인터넷홈페이지: www.iacm.gov.mo

※ 참조: <http://www.iacm.gov.mo/sis/guide/show.asp?id=12>

제3장 관세제도

제1절 수출입제도

- 수출관리제도
 - 수출은 수출허가서, 수출면허 또는 원산지증명서 중 1가지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허가
 - 쿼터협정국으로 수출되는 섬유류 및 의류는 사전수출허가를 득해야 함. 허가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수료(본선 인도 가격의 1.2%) 납부
 - 섬유쿼터협정국 : 미국, 캐나다, EU,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 GSP 공여국 :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EU,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 수입관리제도
 - 마카오는 자유무역항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수량규제는 없고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다만, 주류, 담배, 자동차에 대하여 소비세가 부과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CIF가격의 20~50% 증가세 부과
 - 수입허가는 경제부에서 담당. 통상 90일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
- 수입제한품목
 - 알콜류, 가축, 육류, 커피, 담배, 폭발물, 무기류, 마약류, 의약품, 연료용유류, 화공품, 기계류 및 엔진류, 전기설비, 금속류, 차량, X-Ray기

제2절 관세·통관제도

- 관세기준
 - 수출입 품목분류는 4단위까지 HS분류와 동일하고 5~8단위는 마카오 자체기준 (CMCE)에 따름
 - 수출입관리 목적 외에는 CMCE, 수출입통계 목적에는 SITC를 사용함
- 관세율 : 자유무역항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일부품목에 대해 종가세 및 소비세 부과
 - 마카오는 화장품의 경우 홍콩과 같이 일반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며 별도로 요구되는 제품 인증 역시 없음. 단,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CGMP(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생산 공장에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이 요구되기도 함.
 - 마카오는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출입 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 절차가 없고 수입상품에 대한 수량규제가 없으며 일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또한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영세율에 관한 내용은 마카오에 적용이 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마카오 세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마카오 세관(Macau Customs)
 - 전화: 2855 9944 / 이메일: info@customs.gov.mo
 - 홈페이지: www.customs.gov.mo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작성 기준 제정

□ 제50/92/M호 법률: 소비자에게 조리된 음식 제공 시 라벨작성 기준 수정

- 제품 포장 상의 재료 및 설명 표기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보 전달 측면에서 제품의 중요한 특징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와 관련 제품의 주요자료를 통하여 시장 및 제품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보장함
- 제품의 주요자료에는 제품의 성질, 성분, 함량, 유효기간, 보관 및 사용조건 등이 포함됨
- 본 법규는 식품 라벨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비사전포장식품에 적용됨
- 본 법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임. 이는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제품의 상업유통에서 불공평과 사기성 경쟁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에 대해 자문회 의견을 청취한 후, 총독은 《마카오조직정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지역에서 법률 효력이 있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지시함
- 제1조 (적용범위)
 - 1) 본 법규에 따라 포장/비사전포장식품 라벨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아래의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2) 본 법규는 비사전포장신천제품에 적용되지 않음*
 - 3) 본 법규는 알코올 함량이 5% 초과하는 음료에 적용되지 않음**

* 기 수정-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이미 수정-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2조(정의)

1) 본 법규의 규정에 따른 용어의 의미**

- 라벨: 모든 자료 및 설명에는 포장을 포함하여 브랜드종이, 라벨, 리본, 보틀링, 카드 또는 부속파일에 관련 제품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제조 상표나 상업상표를 부착해야 함
- 식품: 어떠한 식용의 처리/비처리물질(예를 들어, 음료 및 껌 등의 제품은 제조, 준비과정 중 사용된 성분)을 표기해야 함
- 포장: 적재, 포장, 식품 보호용기 또는 포장지
- 사전포장식품: 사전포장식품 판매 시, 완포장 혹은 일부포장 식품을 판매할 때 포장을 뜯지 않으면 식품을 사용할 수 없음
- 성분: 제조 또는 식품 배합 때 식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고의로 넣는 식품첨가제를 포함하는 물질. 이러한 물질은 제조과정 중 변질될 수 있으나 여전히 존재함**
- 식품첨가제: 영양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물질. 이 자체는 식품이 아니고 식품의 고유한 성분도 없지만 취득, 처리, 포장, 운송, 저장에 이르는 임의의 유통과정 중 특수한 효과를 냄. 이러한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면 식품에 전화물이 생기게 하거나 식품을 변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 기본 유통기한: 식품을 적당한 보존 조건 하에서 보존하는 기한
- 순중량: 포장된 제품의 중량
- 로트: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 제조,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단위 총 수량
- 신선식품/쉽게 변질되는 식품: 냉장 처리 이외에 어떠한 보관 처리도 하지 않은 동, 식물 자체 및 가공 식품은 보존 기간이 짧음*

2) 식품첨가제: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음**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이미 수정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3조(라벨상의 표기)

- 1) 사전포장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함
 - 제품명
 - 성분목록
 - 기본 유통기한
 - 라벨 책임자 또는 수입상의 이름, 사업명 혹은 회사명 및 주소
 - 순중량
 - 식별자료
- 2) 본 법규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정황일 때 사전포장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다음의 항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원산지
 - 보관 및 사용조건
 - 사용방법
- 3) 비사전포장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다음의 항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판매명*
 - (제14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원산지*
 - 식별자료*
 - 기본 유통기한*
- 4) 다음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예를 들어 가게 및 푸드트럭, 업무가 인스턴트 음식을 제작하는 상황에서는 상기 규정을 면제함
 -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 이미 수정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4조(판매명)

- 1)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하고, 허위성이나 오도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제품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됨
- 2) 제조상표, 상업상표 혹은 가상의 명칭을 사용해선 안됨. 하지만 유명하거나 쉽게 관련 상품을 연상시키는 브랜드는 제외됨*
- 3) 판매명에 훈제, 농축, 재제조, 재조합, 분말형, 건조, 급속냉동 등의 표기가 있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때, 처리상황 혹은 특정 처리방법을 표기해야 함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제5조**(성분목록)

- 1) 식품성분목록에 아래의 특정 식품성분 및 첨가제의 명칭을 표기해야 함
- 2) 상기 규정에 따라 첨가제의 명칭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특성도 표기해야 함
- 3) 식품첨가제의 특정 명칭 및 첨가제 분류방식은 행정장관이 제정함

** 이미 수정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6조(표기성분 면제)

아래의 식품은 성분표기가 필요 없음

- a) 단일성분 제품
- b) 신선채소 및 과일
- c) 이산화탄소 외 기타 성분을 넣지 않은 사이다에는 정확한 특징을 표기해야 함
- d) 단일기초생산 식초에는 기타 성분을 넣지 않음
- e) 발효우유 및 소기름 버터류 식품은 유류제품, 효소 및 제조 등으로 식품에 반드시 필요한 미생물배양기 또는 비 신선 및 비 가공 버터제조에 필요한 소금을 제외하고 기타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제7조(기본유통기한)

- 1) 다음의 사항에 따라 정확한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함
 - 쉽게 변질되는 식품은 「유통기한 전에 섭취」
 - 일자를 명시하였을 경우, 「유통기한 전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음」
 - 기타 상황인 경우, 「최대한 유통기한 내에 섭취」
- 2) 전항에서 규정한 자료는 첨부 II와 같이 포르투갈어, 중국어 및 영어로 기재하고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함*
- 3) 기본 유통기한은 아라비아숫자로 일, 월, 년 순서로 기재하고 월별은 포르투갈어 혹은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며 다음의 표준에 따라야 함*
 - 식품보관기간 최대 3개월, 월별일자 표기*
 - 식품보관기한은 3개월에서 8개월, 월별일자 표기*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제8조(사용언어)

-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자료는 반드시 포르투갈어, 중국어 혹은 영어 중 한 가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7조 제 2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2) 만일 현지 생산된 사전포장식품이라면 반드시 포르투갈어와 중국어가 병기되어야 함
- 제9조(유통기간 표기 면제)
- 상반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의 상황에서는 기본 유통기한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 1) 신선과일 및 채소
 - 2) 빵, 케익류 및 제조 후 2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제품
 - 3) 식초
 - 4) 소금
 - 5) 고체사탕
 - 6) 사탕, 향료 및 색소로 구성된 사탕류 제품
 - 7) 껌 및 씹어 먹는 제품
 - 8) 기본 유통기한이 18개월 이상인 경우 제조일자 표기
-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제10조(라벨작성 실체)
- 1) 제 3조 제 1항의 4는 내부시장에서 내놓은 관련 사전포장식품이며 특히 수입상, 본 지역 제조상 혹은 소매상임*
 - 2) 제 3조 제 2항에 규정한 비사전포장식품 제출 자료는 소매상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제11조(순증량)
- 사전포장식품의 순증량은 도량형 제도에 따라야 하며 액체 제품은 용량으로 하고 기타 제품은 증량으로 함
- 제12조(로트 식별)
- 1) 상황에 따라 식품생산자, 제조자 또는 포장하는 자가 정함
 - 2) 식별 식품에 속하는 로트에 “L”을 표기하고 관련 라벨자료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
- 제13조*(로트 표기 면제)

- 기본 유통기한을 상표에 표기했을 경우 관련 표기를 식품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일자는 정확하게 월별, 일별로 표기하도록 함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제14조(원산지)

- 원산지 정보가 없을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식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제15조*(보존 및 사용 특별조건)

- 특별 보존 조건을 식품라벨에 표기할 경우 반드시 목적을 표기해야 함

* 이미 수정 - 열람 : 제 56/94/M호 법령

○ 제16조(사용방법)

- 제품의 정확한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식품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함

○ 제17조**(라벨 인쇄 및 유지)

- 1) 식품라벨에 표기된 정보의 삭제를 금하며 알기 쉬운 문자로 인쇄/제작해야 함. 분명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고 기타 정보나 그림으로 가려서는 안됨
- 2) 식품 라벨 자료는 삭제 불가

** 이미 수정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18조(감사)

- 1) 경제부는 경영활동 감사청을 통해 본 법규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할 권한이 있음
- 2) 기타 감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이 부당한 사건을 발견하면 즉시 경제부에 보고하고 이송해야 함

○ 제19조**(제재)

- 1)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라벨에 본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는 상기 식품 판매금액과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1,000(마카오 화폐 1천원) 이상 \$50,000(마카오 화폐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2) 기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였을 경우 \$1,000(마카오 화폐 1천원) 이상 \$10,000(마카오 화폐 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3)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기본 유통기한 라벨에 다른 라벨을 부착하거나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등 유통기한을 숨겨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였을 경우 \$1,000(마카오 화폐 1천원) 이상 \$10,000(마카오 화폐 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4) 위 경우의 식품은 압수되어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귀속됨
- 5) 범행을 거듭할 경우 벌금의 최소한도를 4분의 1 인상하며, 최고 한도는 변하지 않음
- 6)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같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누적 범죄에 해당됨

** 이미 수정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20조(절차 및 권한)

- 1) 경제부는 경제활동 감사청을 통하여 본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예심청구를 제출할 수 있음
- 2) 청구를 제출한 후 위법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변호사 선임을 하도록 하며 등기우편 발송 후 3일째에 우편이 도착한 것으로 간주함
- 3) 제재 시행은 경제부장관의 권한이며 관련 서류와 함께 경제활동 감사의견서를 붙여 보고하여 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 4) 위 기관이 처벌을 내릴 때 총독에게 필요한 청원을 할 수 있고 효력중지 청원은 통지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이미 폐지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21조(벌금 납부)

- 1) 벌금은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처벌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2) 제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제부는 벌금처벌증명서를 세무집행처에 송부하고 강제로 징수함**

** 이미 수정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22조(벌금 귀속)

- 본 법규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본 지역으로 귀속시킴

○ 제23조(시효)

- 1) 본 법규에서 규정한 벌금 부과제재 절차시효는 위법행위일로부터 2년임

- 2) 벌금의 시효기간은 처벌지시 확정일로부터 4년 후에 만료됨**
- 3) 시효는 다음 상황 시 중단됨
 - 위법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지시결정 혹은 조치를 통지하거나 혹은 절차범위 내에서 통지를 하였을 경우
 - 위법자가 변호권을 행사하고 특히 성명을 발표하거나 경찰당국 혹은 행정당국에 일정한 증명조치를 취할 경우(검사 및 수색 등)
- 4) 권한 당국이 벌금을 집행할 때 벌금시효는 중단됨
- 5) 시효가 중단된 후 새로운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됨
- 6) 절차 시작 시 또한 시효 정상기간 및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될 시 관련 절차 및 벌금 시효는 소멸됨

** 이미 개정 - 열람 : 제 7/2004호 행정법규

○ 제24조(형사절차보류)

- 본 법규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는 형사 책임에 문제가 없음

○ 제 25조(효력개시)

- 1) 본 법규는 발표일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됨
- 2) 위 항에 규정이 있지만 본 법규 효력 발생 후 180일 내에 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전포장식품의 시장 투입은 허용됨
- 3) 위 항의 규정은 기본유통기한을 표기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1992년 8월 11일 통과, 명령반포, 총독 웨이치리(위기립))

■ 표 ■ 포르투갈어, 중국어, 영어로 기본 유통기한에 사용하는 문구를 표기함
(제7조 제2항)

포르투갈어	중국어	영어
«Consumir at ...»	유통기한 전에 섭취	«Use by»
«Consumir de prefer ncia antes d5)..»	유통기한 전에 섭취했을 때 가장 맛있다	«Best before»
«Consumir de prefer ncia antes do fim d5)..»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섭취	«Best before en4)..»

참조: http://bo.io.gov.mo/bo/i/92/33/declei50_cn.asp

제5장 수출현안

제1절 행정장관 지시

□ 제 255/2016호 행정장관 지시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0조에서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고 또 제3/2016호 법률이 수정한 제 7/2003호 법률 《대외무역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제19/2016호 행정법규에서 수정한 제 28/2003호 행정법규 《대외무역 활동규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시를 내림
 - 1) 이번 지시의 구성부분인 첨부 I 및 II는 자가 사용 혹은 소비로 수입하는 화물이며 직접 운반하거나 휴대수화물, 그리고 본 표 제III에 제시한 한사람이 매일 휴대할 수 있는 화물의 수입수량은 제7/2003호 법률에서 규정한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음
 - 2) 제7/2003호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가리키는 수출표 및 수입표는 본 지시를 구성한 첨부 2에 있으며 각각 약칭하여 표 A 및 표 B라고 함
 - 3) 민정총서는 수입 및 환적화물에 대해 본 지시 구성부분 첨부 3의 화물에 대해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진행할 수 있는 직권이 있음
 - 4) 폐지 :
 - 제452/2011호 행정장관지시
 - 제45/2012호 행정장관지시
 - 제27/2015호 행정장관지시
 - 제191/2015호 행정장관지시
 - 본 지시는 제3/2016호 법률 《수정 제7/2003호 법률 〈대외무역법〉》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됨(2016년 7월 20일 행정장관 최세안)

Ⅰ 표 Ⅰ 수출표 및 수입표(제255/2016호 행정장관 지시 제2항 지시자)

■ 표B(수입표)

I	II	III
조별	화물명칭	마카오대외무역화물분류표/조정제도 번호(NCEM/SH)제 5수정판
A	수생무척추동물(갑각동물 및 연체동물 제외), 살아있고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소금물에 불리고, 훈제수생무척추동물(갑각동물 및 연체동물 제외) 훈제 전 혹은 훈제과정 중 익힌 여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동물 및 연체동물 제외)의 고운분말, 굵은 분말 및 알맹이는 식용이다	ex. 0308(0308.11.10.부터 0308.19.10, 0308.21.10부터 0308.29.10, 0308.30.11부터 0308.30.20 및 0308.90.11부터 0308.90.20)
	분유류 및 우유, 비농축 및 당 무첨가 혹은 기타 감미료	0401
	요구르트, 응고분유류 및 우유, 요구르트, 요구르트술 및 기타 발효 혹은 요구르트류 및 우유, 농축 혹은 당 함유 혹은 기타감미료 혹은 향료 혹은 과일 건과류 혹은 코코 첨가를 막론	0403
	우유 및 기타 유류에서 추출한 지방 및 기름: 젓	0405
	치즈(치즈) 및 응유	ex.0406(0406.10.00 및 0406.30.00부터0406.90.00)
	알류, 도살, 신선, 양조 혹은 익힘	0407
	소시지 및 유사제품, 고기류, 내장류 혹은 피로 만든 제품, 이러한 제품으로 만든 조제식품	1601
	돼지발족둔육(소시지)및 절편육, 조제 및 보관	1602.41.10 및 1602.41.90
	부채살 및 절편육, 조제 및 보관	1602.42.10 및 1602.42.90
	아이스크림 및 기타 빙제 식품, 코코함유 유무 막론	2105.00.00
	유동 동물원	9508.10.20
B	아기분유	0402.21.20 및 1901.10.10
	aminosulfonic acid	2806.20.00
	붕소 산화물: 붕산	2810.00.00
	상업용 calcium hypochlorite 및 기타 calcium hypochlorite	2828.10.00
	Sodium chloride	2837.11.10. 및 2837.11.20

I	II	III	
조별	화물명칭	마카오대외무역화물분류표/조정제도 번호(NCEM/SH)제 5수정판	
	Potassium chloride 및 기타 나트륨 이외의 산화물	2837.19.11, 2837.19.12 및 2837.19.90	
	sodium tetrahydrate arihvcfrous NazBsih	2840.11.10	
	Silver nitrate	2843.21.00	
	방사성화학원소 및 방사성 동위원소(분열가능과 전환가능한 화학원소 및 동위 원소) 및 기타 화합물: 상술한 제품의 혼합물 및 찌꺼기	2844	
	제 28.44절 이외의 동위 원소: 해당 동위원소의 무기 혹은 유기화합, 화학적 정의 유무 막론.	2845	
	Hydrogen Peroxide 카르바미드 응고 유무 막론	2847.00.00	
	활성약물원료	2853.00.10	
	A	살아있는 동물	제1장
	소고기, 신선 혹은 냉장	0201	
	소고기, 냉동	0202	
	돼지고기, 신선, 냉장 혹은 냉동	0203	
	면양 혹은 염소고기, 신선, 냉장 혹은 냉동	0204	
	말, 혹은 신선, 냉장 혹은 냉동	0205	
	소 돼지 면양 염소 말 돼지 안짍 소나 양 등의 내장 신선, 냉장 혹은 냉동	0206	
제01.05절의 가금육 및 식용 내장 신선, 냉장 혹은 냉동	0207		
기타 고기류 및 식용 내장 신선, 냉장 혹은 냉동	0208		
돼지지방, 비계 및 가금류지방, 조리지 않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추출하지 않은 신선, 냉장 혹은 냉동	0209.1010 및 0209.90.10		
육류 및 식용내장	ex.0210(0210.11.10.부터 0210.20.00)		
활어	ex.0301(0301.91.00부터 0301.99.99)		
물고기 신선육은 냉장. 제03.04절의 생선살고기 및 기타 어류는 불포함	0302		

I	II	III
조별	화물명칭	마카오대외무역화물분류표/조정제도 번호(NCEM/SH)제 5수정판
	물고기, 냉동, 제03.04절의 생선살코기 및 기타어류는 불포함	0303
	생선살코기 및 기타어류(다진유무를 막론하고) 신선, 냉 장혹은 냉동	0304
	훈제연어, 살코기 포함	0305.42.00
	동태, 건조, 식용어류내장제외, 훈제는 아님.	0305.51.00
	갑각동물, 등껍질유무 막론하고, 살아있고,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갑각동물, 등껍질유무 막론, 훈제 전 혹은 훈제과정 중 익힌 여부: 갑각동물, 등껍질이 있고 찌거나 물에 삶거나 냉장, 냉동, 건조를 막론하고: 갑각동물의 고운분말, 굵은 분말 및 알 맹이는 식용이다.	ex.0306(0306.11.00부터 0306.17.90 및 0306.21.40부터 0306.29.90)
	연체동물, 등껍질 유무 막론하고 살아있고,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연체동물, 등껍질 유무 막론하고 훈제 전 혹은 훈제 과정 중 익힌 여부: 연체동물의 고운분말, 굵은 분말 및 알맹이는 식용이다.	ex. 0307/(0307.11.10.부터 0307.41.90, 0307.49.50,) 0307.51.10부터 0307.59.10 0307.60.11부터 0307.60.20 0307.71.10부터 0307.79.10 0307.81.10부터 0307.89.10 0307.91.30부터 0307.99.80)

주: “ex.”는 부분임을 뜻함

표 1 반드시 위생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화물표

(제 255/2016호 행정장관 지시 제 3항 지시자)

I 화물명칭	II 마카오대외무역화물분류표/ 조정제도번호(NCEM/SH)제5수정판
살아있는 동물	제1장
육류 및 식용내장	제2장
물고기, 갑각동물,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제0301.11.00 및 0301.19.00 항목의 관상어 제외	제3장
유류제품, 제0402.21.20 항의 애기분유제외, 가금알, 천연벌꿀, 나열하지 않은 식용동물제품	제4장
동물(물고기제외)창자, 방광 및 위, 전체 및 부분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혹은 훈제	0504.00.00
나열하지 않은 동물제품	0511.10.00 및 0511.99.00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뿌리잎 및 근경, 휴면, 중, 장 중, 혹은, 개화 중, 치커리 및 근뿌리, 단 제12.12절의 뿌리 제외	0601
기타 살아있는 식물(근류포함)보간, 껌꽃이, 삼지, 버섯류	0602
신선한 꽃다발 제작 절화 및 꽃봉오리	0603.11.00부터 0603.19.00
신선한 식물줄기와 잎 및 기타 부분, 꽃과 꽃봉오리가 없음, 풀, 이끼 및 지의류, 꽃다발을 만들거나 장식용	ex.0604.20.00
식용채소 및 근류 근경, 냉동 및 냉장 식물 제외	제7장
식용과일 및 견과류, 굴류과일 및 참외외피, 냉동 및 냉장 과일, 껍질이 있는 견과류 제외	제8장
종자, 과실 및 포자, 파종에 사용	1209
신선한 사탕수수	ex.1212.93.00
돼지지방(돼지기름 포함) 및 가금지방, 제02.09혹은 15.03에 나열한 제품 제외	1501
소시지 및 유사제품, 고기류, 내장류혹은 피로 만든 제품, 이러한 제품으로 만든 조제식품	1601
조제 혹은 내장 물고기, 젓갈 및 어란으로 만든 젓갈 대체품	16.04
갑각동물,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혹은 냉장	1605
애기분유(제19장 주석의 규정에 부합), 기타 분유(제19장 주석의 규정에 부합)	1901.10.20 및 1901.90.20
아이스크림 및 기타 빙제식품, 코코함유 유무 막론	2105.00.00
소매하는 고양이 강아지 사료	2309.10.11, 2309.10.19 2309.10.91, 2309.10.99
동물 및 식물비료, 상호 혼합 혹은 화학처리 유무 막론, 혼합 혹은 화학처리방식으로 동물 혹은 식물제품으로 만든 비료	3101.00.00
유동동물원	9508.10.20

참조: http://bo.io.gov.mo/bo/i/2016/30/despce_cn.asp#255

주: 아래의 링크를 참조/대조하거나 화물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 : <http://www.dse3.gov.mo/NCEM.asp>

제2절 식품안전법

1. 제5/2013호 법률: 식품안전법

-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 71조 (1)항에 근거하여 본 법률을 제정함
 - 식품안전법은 2013년 10월 20일 효력을 발생했고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의 감독관리, 식품안전위험의 예방, 통제와 대응조치 및 식품안전사고의 처리 제도를 규정했음. 업계는 합법적으로 생산경영안전의 식품을 생산할 책임이 있고 입출입 기록 혹은 관련 명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민정총서는 식품안전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함
 - 식품안전법(제5/2013호 법률)
 - 식품안전법 홍보전단지
 - 유해식품생산경영죄
 - 행정위법행위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5)항 및 제 5/2013호 법률 《식품안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보충행정법규를 제정했음
 - 제13/2013호 행정법규 - 식품 중 동물약 최고 잔류 제한량
 - 제6/2014호 행정법규 - 식품 중 금지물질 명세서
 - 제16/2014호 행정법규 - 식품 중 방사성 물질 최고 제한량
 - 제16/2015호 행정법규 - 아이 분유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 제3/2016호 행정법규 - 수정 제6/2014호 행정법규 《식품 중 금지물질 명세서》
 - 제2/2016호 행정법규 - 유류 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 제13/2016호 행정법규 - 식품 중 진균독 최고 제한량
- ※ 참조: <http://www.foodsafety.gov.mo/c/news/detail2.aspx?id=8cf9481b-669b-415b-8623-cec3c40955a4>

○ 유해식품 생산경영죄

민정총서	식품안전국
유해식품생산경영죄	
<p>다음과 같은 식품을 생산경영하여 타인의 신체건강에 위해를 끼쳤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최고 5년 징역 혹은 최고 600일의 벌금을 부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식품원료료 혹은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을 첨가했을 경우 (2) 식품첨가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폐기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4) 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및 기타 신체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함유한 경우 (5) 병사, 독살 혹은 사인불명 동물고기를 사용한 경우 (6) 법에 따라 반드시 검역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불합격을 받은 물질의 식품 (7) 위조, 부패 및 변질된 식품 (8) 기타 성분 및 원소를 제거하여 영양가가 현저히 떨어진 식품 	
식품안전국 전용회선 2833-8181	

※ 참조: [http://www.iacm.gov.mo/ShowFil5\)ashx?p=foodsafetyinfo/docleaflet/635580424753579.pdf](http://www.iacm.gov.mo/ShowFil5)ashx?p=foodsafetyinfo/docleaflet/635580424753579.pdf)

○ 행정위법행위

민정총서	식품안전국
행정위법행위	
<p>다음의 식품을 생산경영하여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행정위법행위를 구성하기에 5만원부터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식품 원료 혹은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을 첨가했을 경우 (2) 폐기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병사, 독살 혹은 사인불명 동물고기를 사용한 경우 (4) 법에 따라 반드시 검역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불합격을 받은 물질의 식품 (5) 위조, 부패 및 변질된 식품 (6)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안전국 전용회선 2833-8181	

※ 참조: [http://www.iacm.gov.mo/ShowFil5\)ashx?p=foodsafetyinfo/docleaflet/635580427905792.pdf](http://www.iacm.gov.mo/ShowFil5)ashx?p=foodsafetyinfo/docleaflet/635580427905792.pdf)

□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목적

- 식품안전의 감독관리, 식품안전위험을 예방, 제어 및 대응하고 식품안전사고의 처리 매커니즘을 규범화하고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률을 제정함

○ 제2조 적용범위

- 1) 본 법률은 식품생산경영 및 생산경영과정 중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에 적용됨
- 2) 본 법률은 중약재를 포함한 약물은 포함하지 않음 11월 14일 제53/94/M호 법령 제13조 제5항에서 가리키는 중약방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중약재를 가리킴

○ 제3조 정의

- 본 법률의 규정에 적용하는 아래 용어의 정의

- 1) 식품 : 어떠한 식용의 처리 혹은 비처리 물질, 예를 들어 음료 및 껌 등 제품은 제조, 준비 및 과정 중 사용하는 성분을 표기해야 함
- 2) 식품첨가제 : 영양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물질. 이 자체는 식품이 아니고 식품의 고유한 성분도 없지만 취득, 처리, 포장, 운송, 저장에 이르는 임의의 유통과정 중 특수한 효과를 냄. 이러한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면 식품에 전화물이 생기게 하거나 식품을 변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 3) 식품관련제품 : 식품생산경영시설, 설비 혹은 공구를 포함하고 식품의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및 소독제 및 음식조리기구를 말함
- 4) 생산경영 : 대중에게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생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수입, 수출, 환적, 저장, 판매, 공급, 판매하기 위한 전시 또는 일정 방식으로 식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5) 식품안전 : 식품은 무독, 무해하고 영양가치가 있어야 하며 인체 건강에 어떠한 경우에도 급성, 악성 또는 만성위해를 끼쳐서는 안됨
- 6) 식품안전사고 : 식물중독, 식원성질병, 식품오염 등 관련 식품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 가능한 사고를 말함
- 7) 중대식품안전사고 : 인체 건강, 경제활동 및 사회질서에 엄중 및 심각한 영향을

조성하거나 조성 가능한 식품안전사고

○ 제4조 직권

- 1) 민정총서는 본 법률의 준수상황을 책임지기 때문에 다음의 직권을 보유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관리감독사업 총괄함
 - 식품안전정책 제출건의를 제정함
 - 식품 생산경영장소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
 - 샘플을 수집하고 시험하고 식품의 안정성을 검사함
 - 식품안전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함
 - 식품안전사고의 응급대응책을 편성함
 - 식품안전사고를 조사 및 처리함
 - 예방 및 제어 조치를 취함
 -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관련 식품안전 지침을 발송함
 - 식품안전의 위험 정도와 범위공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이 식품의 원산지, 생산경영자 혹은 장소의 명칭 등을 제공함
 - 대외에 식품안전사고의 처리 상황을 반포하고 사고로 인한 식품안전 위험에 대해 설명함
 - 식품안전 영역에서 국가 혹은 지방 주관당국, 관련 국제조직 및 기타 국가 및 지역 관련부문과 밀접히 연계하고 더욱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보하거나 획득함
 - 식품안전교육 및 선전교육 추진
- 2) 민정총서의 감찰인원은 공무집행 시 공공당국의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경찰당국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기 조사의 목적 혹은 공무 집행 시 반대 혹은 항거의 정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3) 위 항에서 가리키는 감찰인원은 공무집행할 때 신분을 밝힐 권한이 있음
 - 법에 따라 생산경영지점 및 장소에 진입하여 검사함
 -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샘플제공을 요구하고 검사에 사용함
- 4) 식품의 안정성 실험과 검사, 그리고 필요할 때는 민정총서에 전문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본 지역 혹은 타 지역의 전문기구에서 실험과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제5조 의무

- 1) 민정총서가 감찰직무를 수행할 때 제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공공 혹은 개인 실체는 모두 협조를 할 의무가 있음
- 2) 위생국, 관광국 및 경제국은 식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순찰 및 검사하는 민정총서에 협조할 특별의무가 있음
- 3) 식품생산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음
 -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경영을 해야 함
 - 효과적인 식품안전 내부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함
 - 지정기간 내에 제품 입출입기록 혹은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 식품안전위험이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한 경우 민정총서에 통보해야 함
 - 식품안전에 위험한 식품은 적시에 회수해야 함

○ 제6조 공공실체간의 정보소통

- 1) 어떠한 공공실체가 직무수행 시 식품안전위험 조짐이 보이거나 혹은 본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 민정총서에 통지해야 함
- 2) 민정총서는 식품안전위험에 관련된 정보 혹은 본 법률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알게 된 경우 관련 공공실체에게 전달함

□ 제2장 예방 및 통제

○ 제7조 식품안전표준

- 1) 식품생산경영 및 생산경영과정 중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면 모두 반드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해야 함
- 2) 식품안전표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식품 중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 동물약 잔류, 중금속, 방사성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을 해치는 물질의 제한량 규정
 -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범위 및 용량
 - 영아와 유아, 기타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요구
 - 식품생산경영과정의 위생요구
 - 식품안전과 관련된 품질요구
- 3) 식품안전표준은 보충성 행정법규로 제정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마카오특별행정

- 구성명서》의 행정정관이 지시하고 수정함
- 제8조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 1) 민정총서는 식품생산경영,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의 사용과정 중 병원성미생물, 오염물, 유독유해물질 및 요소에 대해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에 관련 결과를 공포함
 - 2) 민정총서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에 근거하여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고 대중에게 경고함
 - 제9조 예방 및 통제 조치
 - 1) 식품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면 민정총서는 정도와 범위에 따라 단독으로 명령하거나 혹은 함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함, 그러나 다음의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청결하고 소독 및 개선 관련 지점, 장소, 시설, 설비 혹은 공구
 - 식품 혹은 식품첨가제 회수
 - 잠정적 금지 혹은 생산경영 및 사용제한
 - 잠정적 정지장소은행
 - 봉인
 - 보전성 압수
 - 폐기, 하지만 다른 조치를 취하여도 식품안전위험자를 제거하지 못할 때
 - 기타 제거 혹은 식품안전위험을 줄이는 특별처리
 - 2) 본조에서 귀정한 각 항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필요, 적정수준 및 기정목표에 부합됨을 원칙으로 준수해야 함
 - 제10조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 1)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 혹은 발생 가능성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행정장관은 기타 법률이 부여한 권한 이외에 어떤 종류의 업계, 장소, 식품, 식품첨가제 혹은 식품 관련 제품에 명령을 내려 위의 조항에서 제시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 위에서 말한 조치는 《마카오특별행정구공보》에 행정장관의 지시로 공포함
 - 제11조 해제조치
 - 제9조 및 위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식품안전위험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경

우 조치를 취한 실체는 즉시 관련조치를 해제하도록 명령함

○ 제12조 보상

- 1) 본 법률의 집행은 개인 실체에 대해 샘플을 수집하여 검사 측정을 진행하기에 시기에 따라 지불해야 함 만약 관련 시기를 모르면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함. 단, 법률규정에 보상하지 않아도 됨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 식품의 생산경영지점 혹은 장소가 식품안전사고에 관련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샘플을 수집하여 검사 측정함

□ 제3장 처벌제도

○ 제1절 형사책임

○ 제13조 유해식품경영죄

- 1) 다음의 식품을 생산경영하여 타인의 신체건강에 위험을 초래했을 경우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고 600일의 벌금을 부과함
 - 비식품원료료 혹은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을 첨가했을 경우
 - 식품첨가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폐기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및 기타 신체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함유한 경우
 - 병사, 독살 혹은 사인불명 동물고기를 사용한 경우
 - 법에 따라 반드시 검역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불합격을 받은 물질의 식품
 - 위조, 부패 및 변질된 식품
 - 기타성분 및 원소를 제거하여 영양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식품
- 2) 이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최고 1년 징역에 처하거나 최고 120일의 벌금을 부과함
- 3) 만약 두 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쳤을 경우 타인을 해쳤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저 및 최고량은 모두 1/3 가중됨

○ 제14조 위령죄

- 1) 직무를 수행하는 감찰인원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 위령죄를 구성함

-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하는 조치자의 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중위령죄를 구성함
- 제15조 형벌에 처하는 본형
 - 1) 만약 유해식품을 생산경영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다음과 같은 본형에 처함
 - 벌금
 - 법원이 명령하는 해산
 - 2) 벌금은 일수로 정하고 최고일수는 600일이다.
 - 3) 벌금의 일수는 마카오화폐로 250원부터 1만5천원이다.
- 제16조 부가죄
 - 1) 유해식품 생산경영죄를 범한 자는 개인 혹은 법인을 막론하고 단독 혹은 합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형에 처함
 - 어떤 직업 혹은 업무에 종사를 금지하고 그 기간은 1년부터 3년임
 - 협의 참가 혹은 공개입찰참가를 박탈하고 그 기간은 1년부터 3년임
 - 교역회 및 전시판매회에 참가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그 기간은 1년부터 3년임
 - 공공실체가 발급하는 수당 및 우대 권리를 박탈하고 그 기간은 1년부터 3년임
 - 해당 장소를 폐쇄하고 그 기간은 1개월부터 1년임
 - 해당 장소를 영구 봉쇄함
 - 2) 법인에 대해 상기 부가죄를 처하는 외에 발취방식으로 마카오특별행정구에 한부의 중국어 신문 혹은 포르투갈어 신문에 재판 소식을 공개하고 업무장소에 대중들이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로 공고를 내어 재판을 공고해야 함
부착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체 비용은 형을 확정받은 자가 부담함
- 제17조 감정증거
 - 1) 유해식품생산경영범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정 중 반드시 감정증거를 제출해야 함
 - 2) 감정증거는 반드시 법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에 진행하고 용의자, 검찰원, 보조인 및 민사당사자는 모두 각각 1명씩 파견하여 신임하는 기술고문이 있는 현장에서 협조감정을 진행함
 - 3) 기술고문은 감정을 완료 후 지명 파견을 한 후에야 감정보고의 내용을 알 수 있음
 - 4) 기술고문의 증인 증언은 감정증거의 효력을 지니고 있음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상의 무효로 되기에 반드시 재판증
 언 청구 종결 전 혹은 조사지시를 완결 조사완결 지시를 통지 후 5일 이내에 논쟁
 을 제기해야 함
- 제18조 적용
 - 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형법전》 제269조에 규정한 식품유관범죄에 적용됨
 - 제2절 행정처벌
 - 제19조 행정위법행위
 - 1) 다음의 식품을 생산경영하고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행정위법행
 위가 구성되고 마카오화폐 5만원부터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 제13조 제1항 (1), (3), (5)부터 (7)항에서 가리키는 식품
 - 제13조 제1항 (2), (4) 및 (8)항에서 가리키는 식품,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
 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 2) 생산경영자가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마카오화폐 2
 만원부터 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 3) 동일한 사건으로 본 조항 및 기타법규에서 제정한 행정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이 비교적 중한 행정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함
 - 제20조 부가처벌
 - 1) 위에서 규정한 행정법규 행위에 대해 1개월부터 1년의 부가처벌을 함
 -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함
 - 장소를 폐쇄함
 - 2) 민정총서는 반드시 부가처벌을 부과 시 기타 감찰 관련 업무 책임 혹은 장소의 실
 체에게 통지해야 함
 - 제21조 처벌 직권
 - 본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위법절차를 제기하는 것은 민정총서의 직권이다.
 - 본 절에서 규정한 벌금 및 부과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민정총서관리위원회 주석의
 직권이다.
 - 제22조 누범

- 1) 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의 행정결정이 이미 불가상소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행정위법행위를 하는 자를 누범이라고 함
 - 2) 만약 누범인 경우,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부과 벌금의 최저 한도는 1/4 높이고 최고 한도는 그대로 유지함
- 제23조 벌금납부 및 강제징수
 - 1) 벌금은 처벌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함
 - 2) 규정한 기한 내에 자원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집행절차의 규정에 따라 처벌결정증명을 집행명의로 강제 징수함
 - 제24조 벌금의 귀속
 -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법행위로 인해 징수한 벌금은 민정총서의 수입으로 귀속함
 - 제3절 공동규정
 - 제25조 처벌하지 않음
 - 당국이 행동을 개시하거나 혹은 타인이 고발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기 전에 제13조 혹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과 식품관련 제품을 회수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음
 - 1) 민정총국에 식품 혹은 식품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수량 및 소재 장소도 신고함
 - 2) 식품 혹은 식품관련 제품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먹는 것을 피함
 - 제26조 법인의 책임
 - 1) 법인,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설립자 및 법률 성격이 없는 동아리 및 특별위원회는 모두 그 기관 혹은 대표가 단체이익을 위해 본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2) 만약 행위자가 권한자의 정확한 명령 혹은 지시를 거역했을 경우 위에서 말한 책임을 배제함
 - 3) 제1항에서 가리키는 실체의 책임은 관련 행위자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음
 - 제27조 벌금납부 혹은 벌금책임
 - 1) 위법자가 법인일 경우,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혹은 기타 방식의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 벌금 혹은 범금의 납부는 해당 법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짐

- 2) 법률 성격이 없는 동아리 혹은 특별위원회에 벌금을 부과했을 경우 벌금은 해당 단체 혹은 위원회 공동재산으로 납부하고 공동재산이 없거나 혹은 공동재산이 부족한 경우 각 사원 혹은 위원의 재산을 연대책임의 방식으로 지불함

○ 제28조 노동관계

- 노동관계는 관련실체가 제15조 제1항 (2)항의 규정으로 인해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하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 혹은 제20조에서 규정한 부가처벌로 종료되었을 경우 법률은 효력을 발생하여 중지됨 이러한 중지는 고용주책임의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노동계약을 해제함

□ 제4장 마지막 규정

○ 제29조 보충 법률

- 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안은 《형법전》, 《형사소송법전》, 《행정절차법전》 및 10월 4일 제 52/99/M호 법령 號 《행정위법행위의 일반제도 및 절차》의 규정에 보충 적용됨

○ 제30조 폐지

- 7월 15일 제6/96/M호 법률 《공공위생방해 및 경제위법행위 법률제도》 제7조, 제20조부터 제22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를 폐지함

○ 제31조 효력 발생

- 본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함
(2013년 3월 27일 통과, 입법화 주석 류작화)
(2013년 4월 5일 서명하고 명령 공포, 행정장관 최세안)

※ 참조: http://bo.io.gov.mo/bo/i/2013/17/lei05_cn.asp

제3절 소비자 보호 법률

1. 제12/88/M호 법률: 소비자 보호

- 행정당국은 경제 및 사회적 범위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 8월 22일 제29/81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위원회를 설립하고 사기성의 홍보, 경쟁의 제한 및 불충실한 행위 및 경제와 공공위생의 위반에 대해 적당 특별법률 조치의 대상으로 간주함
- 《미카오조직정관》 제31조 1항 A)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회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조문을 제정함

□ 제1장 개요

- 제1조(일반보호 책임)
 -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이고 특히 본 법률의 규정을 집행해야 함
- 제2조(소비자 정의)
 - 본 법률의 목적이고, 직업특징이 경제활동의 개인 혹은 단체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개인사용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소비자로 간주함

□ 제2장 소비자의 권리 및 위험예방

- 제3조(소비자의 권리)
 - 소비자는 권리가 있음
 - 1) 건강의 보호 및 안전을 받고 물품과 서비스의 홍보 혹은 공급의 불충실 혹은 불규칙적인 행위를 방지함
 - 2) 지도를 받고 자료를 얻음
 - 3) 이익손해의 위협에 대항을 요구함
 - 4) 개인 및 단체의 손실을 예방하고 배상신청을 요구함
 - 5) 공평취득을 받아들임
 - 6) 법률 혹은 행정상의 권익제정에 참여함

- 제4조(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 제공의 금지)
 - 1) 정상 혹은 예견 가능한 정황 하에서 사용할 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주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제공 금지
 - 2) 행정당국은 위 항에서 가리키는 서비스의 제공 및 물품의 공급을 저지하고 필요시에는 후자에 대해 압수를 함
- 제5조(위험의 일반 예방)
 - 1) 소비자의 건강 혹은 안전을 위하여 정상 혹은 예견 가능한 사용위험 물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2) 행정당국은 정기적으로 유독 혹은 위험물질, 그리고 준 첨가 식품첨가제, 색소 및 방부제를 공포해야 함
 - 3) 본 법률은 부속법례로 제정됨
 -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물품 및 서비스, 특히 기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설비의 공급 및 사용
 - 식물 혹은 위생물품의 제조, 포장, 라벨, 보관, 수공제조, 운송, 저장 및 판매의 보호 및 청결은 반드시 규칙을 준수해야 함
 - 동물제조식품은 공업냉동창고에 보존하는 조건
 - 사전포장제품의 라벨에는 관련 유통기간 설명 및 조건이 표기되어야 함
- 제6조(위험특별예방)
 - 위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물품 및 서비스는 관제 및 위험특별조치 대상임
 - 1) 사전포장 식품
 - 2) 냉장식품
 - 3) 식품과 접촉한 용품 및 물건
 - 4) 약물
 - 5) 화학비료 및 살충제
 - 6) 정신병치료약물 및 일반 유독 혹은 위험물품
 - 7) 화장품 및 세수용품
 - 8) 수의사가 사용한 물건

- 9) 동물사양 식품
 - 10) 내구 물품 및 도구
 - 11) 기동차량
 - 12) 방직품
 - 13) 놀이감 및 어린이 게임품
- 제7조(계약을 정할 때 동등 및 충실한 권리를 요구하다)
 - 계약을 할 때 소비자는 동등 및 충실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 1) 형식이 있는 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규칙 방법의 판매홍보로 인해 냉정한 계약조건 평가를 방해하고 자유로 계약체결의 결정을 내림
 - 2)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정하고 그 목적은 물품 혹은 서비스제공의 계약조건임
 - 3) 명문 없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제공은 돈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됨
 - 4) 내구물품 취득권리가 있는 물품 공급자는 물건이 판매 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에는 공급제품 일반평균 사용기한내 부품의 공급도 포함됨
 - 5) 물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거나 혹은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손실로 인해 배상하여야 함
 - 제8조(획득 지도권이 있다)
 - 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지도를 받게 함
 - 제9조(자료 취득권이 있다)
 - 1) 계약체결을 결정하기 전에 소비자는 관련 제공물품과 서비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경쟁물품 및 서비스 중 정확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최적의 정황 하에서 물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2) 판매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라벨과 광고에서 홍보한 관련 물품의 성질, 성분, 질량, 유효기간, 용도, 사용방법, 가격 및 기타 중요 특징의 자료들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함
 - 3) 생산자, 제조자, 수입자, 도매인, 포장자, 저장인 및 소매인 혹은 서비스 제공자는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생산에서 소모에 이르는 각 고리마다 또한 물품이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제공해야 함
 - 4) 자료제공의 책임은 제조비밀이 법률보호를 받지 못함은 이유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됨

- 제10조(공정권리취득 접수)
 - 소송서류의 비용은 본 구역 법원 권한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본 법률을 위반하고 관제법례법규 때문에 생긴 손실로 인한 사전비용은 면제받음
- 제11조(참여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법률 혹은 행정사에 제정한 권리와 이익권리에 참여할 수 있고 대표방식으로 행사함

□ 제3장 및 제4장*

- * 이미 폐지 - 열람 : 제 4/95/M호 법률
- 1988년 5월 26일 심사 비준
(주석송옥생 1988년 6월 4일 반포, 탁반행, 총독 문례치)
- ※ 참조: http://bo.io.gov.mo/bo/i/88/24/lei12_cn.asp

제4절 제한량 행정법규

1. 행정법규

- 제13/2016호 행정법규: 식품중 진균독소 최고 제한량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 (5)항 및 제5/2013호 법 《식품안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충성 행정법규를 제정함
- 제1조 목적
 - 1) 본 행정법규에서는 식품 중 진균독소 최고 제한량을 제정하여 식품의 위생안전을 보장함
 - 2) 《식품중 진균독소 최고제한 도표》를 심사 비준하고 해당 도표를 본 행정법규 구성부분의 첨부로 함
- 제2조 정의

- 본 법규의 규정에 따른 다음 용어의 의미
 - 1) “진균독소”은 진균의 생장 번식과정 중에서 생기는 제2차 유독 대사산물이다.
 - 2) “최고 제한량”은 진균독소가 식품의 식용부분 중 법정 최고 제한량이고 그 수준은 $\mu\text{g}/\text{kg}$ 로 표기함
 - 3) “식용 가능한 부분”은 식품원료에서 비식용부분을 제거한 나머지 식용 가능한 부분을 말함
- 제3조 최고 제한량
 - 최고 제한량은 반드시 제1조 제2항 목록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제4조 효력 발생
 - 본 행정법규는 공포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2016년 5월 20일 제정하고 명령 공포, 행정장관 최세안)

표 식품중 진독균 최고 제한량 도표

(제1조 제1항 지시자)

식품중 진독균	식품종류	최고 제한량	단위
아플라톡신	옥수수 및 그 제품	20	$\mu\text{g}/\text{kg}$
	벼, 입쌀	10	$\mu\text{g}/\text{kg}$
	밀, 보리, 기타 곡물	5	$\mu\text{g}/\text{kg}$
	밀면가루, 귀리, 기타탈피 곡물	5	$\mu\text{g}/\text{kg}$
	케이크 빵류 굽는 제품	5	$\mu\text{g}/\text{kg}$
	기타 곡물제품	5	$\mu\text{g}/\text{kg}$
	땅콩 및 그 제품	20	$\mu\text{g}/\text{kg}$
	땅콩외 기타 볶음견과류와 씨드류 및 그 제품	5	$\mu\text{g}/\text{kg}$
	땅콩기름, 옥수수기름	20	$\mu\text{g}/\text{kg}$
	땅콩기름과 옥수수 기름외 기타 식물유지	10	$\mu\text{g}/\text{kg}$
	콩류	5	$\mu\text{g}/\text{kg}$
	발효콩제품	5	$\mu\text{g}/\text{kg}$
아플라톡신	간장, 식초, 식량으로 양조하는 조미간장	5	$\mu\text{g}/\text{kg}$
	콩을 주원료로 하는 아기분유	0.5(a)	$\mu\text{g}/\text{kg}$
	콩을 주원료로 하는 어린이 분유	0.5(a)	$\mu\text{g}/\text{kg}$
	곡물류 어린이 보조식품	0.5	$\mu\text{g}/\text{kg}$

식품중 진독군	식품종류	최고 제한량	단위
아플라톡신 M1	우유 및 유제품	0,5(b)	µg/kg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기 분유	0,5(a)	µg/kg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어린이 분유 및 아기 분유	0,5(a)	µg/kg
오크라톡신	곡물	5	µg/kg
	곡물 밀링 가공품	5	µg/kg
	콩류 및 콩류를 갈아만든 가루	5	µg/kg
	로스팅 원두 및 커피가루	5	µg/kg
파틀린	사과제품, 산사제품	50	µg/kg
	사과 혹은 산사를 원료로 하는 주스 혹은 주스음료	50	µg/kg

주 : (a)말린 분말로 계산

(b)우유는 액체로 계산, 우유가루는 배합 후 환산

참조: http://bo.io.gov.mo/bo/i/2016/22/regadm13_cn.asp

□ 제2/2016호 행정법규: 유류제품 중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 (5)항 및 제5/2013호 법률 《식품 안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충성 행정법 규를 제정함

○ 제1조 목적 및 범위

- 1) 본 행정법규에서는 유류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의 제한량을 규정하여 식품 위생안전을 보장함
- 2) 《유류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도표》를 심사비준하고 본 행정법규의 구성부분에 첨부함
- 3) 본 행정법규의 아래의 유류식품에 적용됨
 - 초고온 멸균우유
 - 파스퇴르우유
 - 조제우유
 - 발효우유

○ 제2조 정의

- 본 법규의 규정에 따른 아래 용어의 의미

- 1) “유류제품”은 동물의 우유를 기본 원료로 가공한 식품
 - 2) “병원성미생물”은 식물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가리키고 식품 내에서 독소를 방출하는 미생물, 사람의 창자를 감염시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포함함
 - 3) “초고온 멸균우유”는 생우유 혹은 양젖을 원료로 환원우유를 첨가 혹은 불첨가하여 연속유동의 상태에서 적어도 132°C까지 짧은 시간 지속하여 멸균 및 무균 포장공정으로 만든 액체제품임
 - 4) “파스퇴르우유”는 생우유 혹은 양젖을 원료로 파스퇴르 살균공정으로 만든 제품임
 - 5) “조제우유”는 생우유, 양젖 혹은 환원우유를 주원료로 기타원료, 식품첨가제 혹은 영양강화제를 첨가하여 파스퇴르 살균 혹은 멸균의 적절한 공정으로 만든 액체제품임
 - 6) “발효우유”는 생우유, 양젖, 혹은 분유를 주원료로 기타원료, 식품첨가제 혹은 영양강화제를 첨가 혹은 비첨가로 파스퇴르 살균, 발효 후 만든 pH 수치를 낮춘 제품임 요구르트(치즈)를 포함함
 - 7) “환원우유”는 건조 혹은 농축상태의 유류식품에 일정한 비례로 물을 첨가하여 액체상태로 만든 우유임
- 제3조 제한량
 - 제한량은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도표의 규정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제4조 효력 발생
 - 본 행정법규는 공포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2016년 1월 29일 제정, 명령 공포, 행정장관 최세안)

표 | 유류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도표
(제1조 제2항 지시자)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살모넬라균	검출되면 안됨
황색포도알균및 기타 CNS포도알균	
단구성 리스테리아	

※ 참조: http://bo.io.gov.mo/bo/i/2016/06/regadm02_cn.asp

□ 제6/2014호 행정법규: 식품 중 금지물질 목록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5)항 및 제5/2013호 법률 《식품 안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충성 행정법규를 제정함
- 제1조 목적
 - 1) 본 행정법규는 식품 중 금지물질 목록을 제정하여 식품의 위생안전을 보장함
 - 2) 《식품 중 금지물질 목록》을 심사 비준하고 해당 목록은 본 행정법규 구성부분의 첨부로 함
- 제2조 효력 발생
 - 본 행정법규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2014년 2월 21일 제정하고 명령 공포, 행정장관 최세안)

┃ 표 ┃ 식품 중 금지물질 목록

(제1조 제2항 지시자)

한글 명칭	포르투갈어 명칭	영어 명칭
말라카이트 그린 그린그린그린	Verde malaquita	Malachite green
니트로푸란	Nitrofurano	Nitrofuran
디에틸stil베스트롤	Dietilestilbestrol	Diethylstilbestrol
클로람페니콜	Cloranfenicol	Chloramphenicol
멜라민	Melamina	Melamine
소단홍	Corantes Sudão	Sudan Dyes
붕사 및 붕산	Bórax ou ácido bórico	Borax or Boric Acid

※ 참조: http://bo.io.gov.mo/bo/i/2014/09/regadm06_cn.asp

□ 제16/2015호 행정법규: 영아분유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 영아분유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 (5)항 및 제5/2013호 법률 《식품 안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충성 행정법

규를 제정함

○ 제 1조 목적 및 범위

- 1) 본 행정법규는 영아분유중의 병원성 미생물의 제한량을 제정하여 식품의 위생안전을 보장함
- 2) 《영아분유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도표》를 심시 비준하고, 본 행정법규의 구성부분에 첨부함
- 3) 본 행정법규에 적용되는 영아분유는 포장 후부터 개봉 전까지의 어떠한 분말형태의 최종 제품을 가리킴

○ 제2조 정의

- 본 법규의 규정에 따른 아래 용어의 의미

- 1) “영아”는 12개월 연령 혹은 이하의 사람을 가리킴
- 2) “영아분유”는 영아가 출생 후부터 이유식을 먹는 최초 수개월까지의 영양요구에 근거하여 특별 제조한 분말형 모유 대체품임
- 3) “병원성 미생물”은 식물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가리키고 식품 내에서 독소를 방출하는 미생물, 사람의 창자를 감염시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포함함

○ 제3조 제한량 표준

- 제한량 표준은 제1조 제2항 도표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제4조 효력 발생

- 본 행정법규는 공포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2015년 10월 15일 제정, 명령 공포, 행정장관 최세안)

Ⅰ 표 Ⅰ 영아분유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도표

병원성 미생물	제한량
Bntorobater sakazakii	검출되어서는 안됨
살모넬라균	

※ 참조: http://bo.io.gov.mo/bo/i/2015/43/regadm16_cn.asp

□ 제16/2014 호 행정법규: 식품중 방사성 물질 최고 제한량

○ 제1조 목적

- 1) 본 행정법규는 식품 중 방사성물질의 제한량을 제정하여 식품의 위생안전을 보장함
- 2) 《식품중 방사성 물질 제한량 도표》를 심사비준하고 본 행정법규의 구성부분에 첨부함

○ 제2조 정의

- 본 법규의 규정에 따른 다음 용어의 의미 :

- 1) “방사성물질”은 원자의 자발적 붕괴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화학원소임
- 2) “최고 제한량”은 식품주의 방사성 핵소의 법정 최고 방사성 활동 농도는 Bq/kg 로 표시함

○ 제3조 최고 제한량

- 최고 제한량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제4조 효력 발생

- 본 행정법규는 공포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2014년 6월 27일 제정, 명령공포, 행정장관 최세안)

▮ 표 ▮ 식품 중 방사성 핵소 최고제한량 도표

(제1조 제2항 지시자)

식품종류	식품중 방사성 핵소	최고제한량	단위
영아식품	요오드-131	100	Bq/kg
	세슘-134, 세슘-137	1000	Bq/kg
기타식품	요오드131	100	Bq/kg
	세슘-134, 세슘-137	1000	Bq/kg

※ 참조: http://bo.io.gov.mo/bo/i/2014/34/regadm16_cn.asp

□ 제13/2013호 행정법규: 식품 중 동물약 최고 잔류제한량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50조(5)항 및 제5/2013호 법률 《식품안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보충성 행정법규를 제정함
- 제1조 목적 및 범위
 - 1) 본 행정법규는 식품 중 동물약 잔류 최고제한량을 제정하여 식품의 위생안전을 보장함
 - 2) 《식품중 동물약 잔류 최고제한량》을 심사비준하고 본 행정법규의 구성부분에 첨부함
 - 3) 본 행정법규는 동물 종류의 식용부분의 동물약 잔류 최고제한량에 대해 규정하였고 그 식용부분이라 함은 수입, 가공 혹은 판매단계임
- 제2조 정의
 - 본 법규의 규정에 따른 다음 용어의 의미
 - 1) “잔류동물약”은 식용동물에게 약을 준 후 해당 동물의 식용부분에 잔류하는 어떠한 약물 및 기타 관련 대사산물
 - 2) “잔류 최고제한량”은 식품 내 혹은 표면에 잔류한 동물약 잔류 최고 농도이며, 해당 농도는 mg/kg, µg/kg, mg/L, µg/L로 표기함
- 제3조 최고 잔류량
 - 최고잔류량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제4조 효력 발생
 - 본 행정법규는 제5/2013호 법률 《식품안전법》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효함 (2013년 5월 10일 제정 명령 공포, 행정장관 최세안)

표 1 《식품중 동물약 최고 잔류량》 도표

(제1조 제2항 지시자)

약물종류	약물명칭	약물영문명칭	식용 동물	부분	최고 잔류 제한량	단위
페니실린류	벤자틴 페니실린	Benzylpenicillin	소	근육	50	µg/kg
			소	신장	50	µg/kg
			소	간	50	µg/kg
			소	우유	4	µg/L
			돼지	근육	50	µg/kg
			돼지	신장	50	µg/kg
			돼지	간	50	µg/kg
			닭	근육	50	µg/kg
			닭	신장	50	µg/kg
			닭	간	50	µg/kg
세팔로스포린	세프티오퍼	Ceftiofur	소	우유	100	µg/L
			소	근육	1000	µg/kg
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돼지	근육	200	µg/kg
			돼지	간	600	µg/kg
			돼지	신장	1200	µg/kg
			면양	근육	200	µg/kg
			면양	간	600	µg/kg
			면양	우유	100	µg/L
			면양	신장	1200	µg/kg
			가금	근육	200	µg/kg
			가금	간	600	µg/kg
			가금	신장	1200	µg/kg
			가금	알	400	µg/kg
			물고기	근육	200	µg/kg
			새우	근육	200	µg/kg
마이크로이드 안티바이오티스	타일로신	Tylosin	소	우유	100	µg/L
			닭	알	300	µg/kg
β-흥분제	클렌부테롤	Clenbuterol	말	신장	0.6	µg/kg
플로르퀴놀론	다노플록사신	Danofloxacin	소	근육	200	µg/kg
			소	신장	400	µg/kg

약물종류	약물명칭	약물영문명칭	식용 동물	부분	최고 잔류 제한량	단위
플로르퀴놀론	다노플록사신	Danofloxacin	소	간	400	µg/kg
			소	지방	100	µg/kg
			돼지	근육	100	µg/kg
			돼지	신장	200	µg/kg
			돼지	지방	100	µg/kg
			닭	근육	200	µg/kg
			닭	신장	400	µg/kg
			닭	간	400	µg/kg
			닭	지방	100	µg/kg
퀴놀론계	플루메퀸	Flumequine	소	근육	500	µg/kg
			소	신장	3000	µg/kg
			소	간	500	µg/kg
			소	지방	1000	µg/kg
			돼지	근육	500	µg/kg
			돼지	신장	3000	µg/kg
			돼지	간	500	µg/kg
			돼지	지방	1000	µg/kg
			면양	근육	500	µg/kg
			면양	신장	3000	µg/kg
			면양	간	500	µg/kg
			면양	지방	1000	µg/kg
			닭	근육	500	µg/kg
			닭	신장	3000	µg/kg
			닭	간	500	µg/kg
			송어	근육	500	µg/kg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겐타마이신	Gentamicin	소	근육	100	µg/kg
			소	신장	5000	µg/kg
			소	간	2000	µg/kg
			면양	시장	10000	µg/kg
			면양	간	500	µg/kg
			면양	지방	500	µg/kg
			산양	근육	500	µg/kg

약물종류	약물명칭	약물영문명칭	식용 동물	부분	최고 잔류 제한량	단위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네오마이신	Neomycin	산양	신장	10000	μg/kg
			산양	간	500	μg/kg
			산양	지방	500	μg/kg
			닭	근육	500	μg/kg
			닭	신장	10000	μg/kg
			닭	간	500	μg/kg
			닭	지방	500	μg/kg
			칠면조	근육	500	μg/kg
			칠면조	신장	10000	μg/kg
			칠면조	간	500	μg/kg
			칠면조	지방	500	μg/kg
			오리	근육	500	μg/kg
			오리	신장	10000	μg/kg
			오리	간	500	μg/kg
			오리	지방	500	μg/kg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소	근육	200	μg/kg
			소	간	600	μg/kg
			소	신장	1200	μg/kg
			소	우유	100	μg/L
			돼지	근육	200	μg/kg
			돼지	간	600	μg/kg
			돼지	신장	1200	μg/kg
			면양	근육	200	μg/kg
			면양	간	600	μg/kg
			면양	우유	100	μg/L
			면양	신장	1200	μg/kg
			가금	근육	200	μg/kg
			가금	간	600	μg/kg
세팔로스포린	세프티오퍼	Ceftiofur	소	신장	6000	μg/kg
			소	간	2000	μg/kg
			소	지방	2000	μg/kg
			돼지	신장	6000	μg/kg
			돼지	간	2000	μg/kg

약물종류	약물명칭	약물영문명칭	식용 동물	부분	최고 잔류 제한량	단위
세팔로스포린	세프티오퍼	Ceftiofur	돼지	근육	1000	µg/kg
			돼지	지방	2000	µg/kg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Chlortetracycline	소	근육	200	µg/kg
			소	간	600	µg/kg
			소	신장	1200	µg/kg
			소	우유	100	µg/L
			돼지	근육	200	µg/kg
			돼지	간	600	µg/kg
			돼지	신장	1200	µg/kg
			면양	근육	200	µg/kg
			면양	간	600	µg/kg
			면양	우유	100	µg/L
			면양	신장	1200	µg/kg
			가금류	근육	200	µg/kg
			가금류	간	600	µg/kg
			가금류	신장	1200	µg/kg
			가금류	알	400	µg/kg
			물고기	근육	200	µg/kg
			새우	근육	200	µg/kg
			β-흥분제류	클렌부테롤	Clenbuterol	소
소	신장	0.6				µg/kg
소	간	0.6				µg/kg
소	근육	0.2				µg/kg
소	지방	0.2				µg/kg
말	간	0.6				µg/kg
말	근육	0.2				µg/kg
말	근육	0.2				µg/kg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겐타마이신	Gentamicin	소	지방	100	µg/kg
			소	우유	200	µg/L
			돼지	근육	100	µg/kg
			돼지	신장	5000	µg/kg
			돼지	간	2000	µg/kg
			돼지	지방	100	µg/kg

약물종류	약물명칭	약물영문명칭	식용 동물	부분	최고 잔류 제한량	단위
마이크로이드 안티바이오티스	이버멕틴	Ivermectin	소	간	100	µg/kg
			소	지방	40	µg/kg
			소	우유	10	µg/L
			돼지	간	15	µg/kg
			돼지	지방	20	µg/kg
			면양	간	15	µg/kg
			면양	지방	20	µg/kg
린코마이신계	린코마이신	Lincomycin	소	우유	150	µg/L
			돼지	근육	200	µg/kg
			돼지	신장	1500	µg/kg
			돼지	간	500	µg/kg
			돼지	지방	100	µg/kg
			닭	근육	200	µg/kg
			닭	신장	500	µg/kg
			닭	간	500	µg/kg
			닭	지방	100	µg/kg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네오마이신	Neomycin	소	근육	500	µg/kg
			소	신장	10000	µg/kg
			소	간	500	µg/kg
			소	지방	500	µg/kg
			소	우유	1500	µg/L
			돼지	근육	500	µg/kg
			돼지	신장	10000	µg/kg
			돼지	간	500	µg/kg
			돼지	지방	500	µg/kg
			면양	근육	500	µg/kg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가금
가금	알	400				µg/kg
물고기	근육	200				µg/kg
새우	근육	200				µg/kg
β-흥분제류	락토파민 염산염	Ractopamine hydrochloride	소	간	40	µg/kg

약물종류	약물명칭	약물영문명칭	식용 동물	부분	최고 잔류 제한량	단위
β-흥분제류	락토파민 염산염	Ractopamine hydrochloride	소	신장	90	μg/kg
			소	근육	10	μg/kg
			소	지방	10	μg/kg
			돼지	간	40	μg/kg
			돼지	신장	90	μg/kg
			돼지	근육	10	μg/kg
			돼지	지방	10	μg/kg
퀴놀론계	사라프로사신	Sarafloxacin	닭	근육	10	μg/kg
			닭	신장	80	μg/kg
			닭	간	80	μg/kg
			닭	지방	20	μg/kg
			칠면조	근육	10	μg/kg
			칠면조	신장	80	μg/kg
			칠면조	간	80	μg/kg
			칠면조	지방	20	μg/kg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스펙티노마이신	Spectinomycin	소	근육	500	μg/kg
			소	신장	5000	μg/kg
			소	간	2000	μg/kg
			소	지방	2000	μg/kg
			소	우유	200	μg/L
			돼지	근육	500	μg/kg
			돼지	신장	5000	μg/kg
			돼지	간	2000	μg/kg
			돼지	지방	2000	μg/kg
			면양	근육	500	μg/kg
			면양	신장	5000	μg/kg
			면양	간	2000	μg/kg
			면양	지방	2000	μg/kg
			닭	근육	500	μg/kg
			닭	신장	5000	μg/kg
			닭	간	2000	μg/kg
닭	지방	2000	μg/kg			

약물종류	약물명칭	약물영문명칭	식용 동물	부분	최고 잔류 제한량	단위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스펙티노마이신	Spectinomycin	닭	알	2000	µg/kg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	소	근육	600	µg/kg
			소	간	600	µg/kg
			소	신장	1000	µg/kg
			소	지방	600	µg/kg
			소	우유	200	µg/L
			돼지	근육	600	µg/kg
			돼지	간	600	µg/kg
			돼지	신장	1000	µg/kg
			돼지	지방	600	µg/kg
			면양	근육	600	µg/kg
			면양	간	600	µg/kg
			면양	신장	1000	µg/kg
			면양	지방	600	µg/kg
			면양	우유	200	µg/L
			닭	근육	600	µg/kg
			닭	간	600	µg/kg
			닭	신장	1000	µg/kg
닭	지방	600	µg/kg			
술폰아미드	sulfa메타진	Sulfamethazine (Sulfadimidine)	기타동물	지방	100	µg/kg
			기타동물	신장	100	µg/kg
			기타동물	근육	100	µg/kg
			기타동물	간	100	µg/kg
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소	근육	200	µg/kg
			소	간	600	µg/kg
			소	신장	1200	µg/kg
			소	우유	100	µg/L

※ 참조: http://bo.io.gov.mo/bo/i/2013/24/regadm13_cn.asp#13

2. 행정장관 지시

□ 제556/2009호 행정장관 지시

- 일반식품첨가제의 특정명칭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성질로 정한 성능 및 부가 성능 분류표를 공포
 -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기본법》 제50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11월 20일 제56/94/M호 법령 및 제7/2004호, 행정법규수정의 8월 17일 제50/92/M호 법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제정하고 본 지시를 내림
 - 1) 일반 식품 첨가제의 특정명칭을 본 지시의 첨부1로 함
 - 2) 식품첨가제의 사용성질로 정한 성능 및 부가성능 분류를 본 지시 첨부 2로 함
 - 3) 이상의 두개 조항이 가리키는 첨부는 본 지시의 구성부분에 속함
 - 4) 폐지 제223/2005호 행정장관 지시
 - 5) 본 지시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2009년 12월 29일, 행정장관 최세안)

Ⅰ 일반 식품첨가제의 특정 명칭 Ⅰ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Abelmoschus manihot gum			20,019
아세실팜칼륨	950	E950	19,011
빙초산	260	E260	01,107
아세트산과 지방산글리세리드(초산과 지방산글리세리드, 아세틸렌 모노, 글리세리드지방산	472a	E472A	10,027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1422	E1422	20,031
아세틸인산이전분	1414	E1414	20,015
아세틸산화전분	1451	E1451	
산 처리 전분	1401	E1401	20,032
Acorn shell brown			08,126
아드픽에씨드	355	E355	01,109
한천	406	E406	20,001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알라닌	639		12.006
알긴산	400	E400	
알리탐	956		19.013
알칼리 처리 전분	1402	E1402	
알루라레드AC	129	E129	08.012
황산알루미늄암모늄	523	E523	06.005
황산알루미늄칼륨	522	E522	06.004
규산알루미늄	559	E559	
아마란스(아마란스 알루미늄 레이트)	123	E123	08.001
아세트산 암모늄	264	E264	
Ammonium alginate	403	E403	
탄산 암모늄	503(i)	E503(i)	
염화암모늄	510	E510	
탄산수소암모늄	503(ii)	E503(ii)	06.002
수산화 암모늄	527	E527	
젖산 암모늄	328	E328	
인산암모늄	452(v)	E452(v)	
지질산암모늄	442	E442	10.033
디아스타아제	1100	E1100	11.033
아나토 색소	160b	E160b	08.144
안토시아닌	163	E163	
대나무 황산화물			04.019
5'-구아닐산칼슘	629	E629	
5'-이노신산칼슘	633	E633	
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634	E634	
아세트산칼슘	263	E263	
알긴사칼슘	404	E404	
알루미늄칼슘규소산	556	E556	
아스코르브산칼슘	302	E302	04.009
벤조산칼슘	213	E213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탄산칼슘	170(i)	E170(i)	13.006
염화칼슘	509	E509	18.002
구연산칼슘	333	E333	
Calcium cyclamatc	952(ii)	E952(ii)	
Calcium dihydrogen diphosphate	450(vii)	E450(vii)	
EDTA칼슘2나트륨	385	E385	
페로사이안화칼슘	538	E538	
글루콘산칼슘	578	E578	
글루타민산염칼슘(D,L)	623	E623	
Calcium hydrogen sulphate	227	E227	
수산화칼슘	526	E526	01.202
젖산칼슘	327	E327	01.310
말산칼슘(D,L)	352(ii)	E352(ii)	
산화칼슘	529	E529	
과산화칼슘	930		13.007
다인산칼슘	452(iv)	E452(iv)	
프로피온산칼슘	282	E282	17.005
antioxidant of glycyrrhiza			04.008
artemisia gum			20.037
아스코르브산	300	E300	04.014
아스코빌팔미테이트	304	E304(i)	04.011
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305	E304(ii)	
아스파르테임	951	E951	19.004
아조디카본아미드	927a	E927	13.004
basella rubra red			08.121
밀랍	901	E901	
비트레드	162	E162	08.101
랍벤조익애씨드	210	E210	17.001
과산화벤조일	928		13.001
Black Bean red			08.114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black cuttant 추출물	163(iii)		
black cuttant red			08.122
bleached starch	1403	E1403	
Bone phosphate	542		
브릴리언트 블루 FCF	133	E133	08.007
브로멜라인	1101(iii)		
buddicia yellow(mi-mong yellow)			08.139
스타이렌뷰타다이엔고무			07.002
부틸 히드록시아니솔(BHA)	320	E320	04.001
BUTYLETED HUDROXYTOLUENE(BHT)	321	E321	04.002
카페인			00.007
Calcium saccharin	954(ii)	E954(ii)	
규산칼슘	552	E552	
Calcium sorbete	203	E203	
스테아르산칼슘	470		10.039
스테아릴젯산칼슘	482(i)	E482(i)	10.009
황산칼슘	516	E516	18.001
칸델릴라왁스	902	E902	
칸타크산틴	161g	E161g	
카프릴 모노글리세리드			17.031
Caramael colour, class I-plain(caramel I-plain)	150a	E150a	08.108
Caramel colour, class II-caustic sulphite process(caramel II-caustic sulphite process)	150b	E150b	
Caramel colour, class III-ammonia process (caramel III-ammonia process)	150c	E150c	08.110
Caramel colour, class IV-ammonia sulphite process(caramel IV-sulphite ammonia process)	150d	E150d	08.109
이산화탄소	290	E290	17.014 17.015 17.016 17.017
암적색(카민 코치닐)	120	E120	08.145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카아르모이신(아조루빈)	122	E122	08.013
카르나우바 왁스	903	E903	14.008
Carob bean gum	410	E410	20.023
카로틴	160a	E160a	
B-카로틴(브라케스리아 트리스포라)	160(iii)		
B-카로틴(합성)	160(i)	E160(i)	08.010
카로틴, 천연 추출물(B-카로틴, 야채)	160(ii)	E160(ii)	08.010
β-아포-8'-카로티날	160e	E160e	
β-아포-8'-카로틴산, 메틸 또는 에틸 에스테르	160f	E160f	
카라기난	407	E407	20.007
홍화황색소(carthamins yellow shfflower yellow)			08.103
Casein calcium peptide(ccp)			00.015
Casein phosphopeptides(cpp)			00.016
피마자유	1503		
Chilli orange(paprika orange)			08.107
키틴			20.018
염소	925	E925	
이산화염소(안정화된 이산화염소, 이산화염소 용액을 안정화시킴)	926	E926	17.028
엽록소	140	E140	
클로로필 구리복합체, 나트륨 및 칼륨 염류	141(ii)	E141(ii)	08.009
클로로필, 구리복합체	141(i)	E141(i)	
콜린 염류 및 에스테르	1001		
신남알데히드			17.012
시트르산	330	E330	01.101
글리세롤의 시트르산 및 지방산 에스테르	472c	E472c	10.032
Cocoa husk pigment			08.118
Coreopsis yellow			08.113
Cowberry red			08.105
커큐민	100(i)	E100(i)	08.132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커드란	424		20.042
시클라메이트(사이클람산-및 칼륨나트륨, 칼슘염)	952	E952	
사이클람산	952(i)	E952(i)	
알파-사이클로덱스트린	457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459	E459	20.024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	458		
L-시스테인 및 그 히드로클로라이드- 나트륨 및 칼륨 염류	920	E920	13.003
탈아세탈화 키틴(키토산)			20.026
탈수소아세트산	265		17.009
덱스트라나아제			11.006
덱스트린, white and yellow roasted starch	1400	E1400	
Diacetyl tartaric acid esters of mono-및 diglycerides(DATEM)(Diacetyl tartaric 및 fatty acid esters of glycerol)	472e	E472e	10.010
Diammonium orthophosphate	342(ii)		
Dicalcium diphosphate	450(vi)	E450(vi)	
Dicalcium orthophosphate	341(ii)	E341(ii)	06.006
인산수소칼슘			
2,4-디클로로페녹시 초산			17.027
디라우릴치오디프로피오네이트	389		04.012
Dimagnesium orthophosphate	343(ii)	E343(ii)	
디메칠 디카보디네이트	242	E242	17.033
디페닐 에테르(디페닐옥시드)			17.022
Dipotassium 5'-guanylate	628	E628	
Dipotassium 5'-inosinate	632	E632	
Dipotassium orthophosphate(dipotassium hydrogen phosphate)	340(ii)	E340(ii)	15.009
Dipotassium tartrate	336(ii)	E336(ii)	
Disodium diphosphate(sodium acid pyrophosphate,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450(i)	E450(i)	15.008
Disodium, ethylene-diamine tetra-acetate	386		18.005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인산수고이나트륨(disodium orthophosphate)	339(ii)	E339(ii)	15.006
디소듐 5-구아닐산이나트륨	627	E627	12.002
디소듐 5-이노신산이나트륨	631	E631	12.003
디소듐 5-ribonnous citrate	635	E635	12.004
디소듐 stannous citrate			18.006
석신산이나트륨	364(ii)		12.005
디소듐타트레이트	335(ii)	E335(ii)	
인산이전분	1412	E1412	20.034
Dodecyl dimethyl benzyl ammonium bromide			17.026
DSA-5			03.002
Emulsifying silicon oil			03.001
Enzyme treated starches	1405		
에리스리톨	968	E968	19.018
Erythrosine erythrosine aluminium lake	127	E127	08.003
에톡시퀸	324		17.010
에틸셀룰로오스	462	E462	
에틸파라-히드록시 벤조에이트	214	E214	17.007
Ethyl hydroxyethyl cellulose	467		
패스트그린 fcf	143	E143	
Fenugreek gum			20.035
구연산 철 암모늄	381	E381	
글루콘산제일철	579	E579	16.203
Ferrous lactate	585	E585	16.202
포름산	236	E236	
후노란(gloiopeltis furcated)	297	E297	01.110
갈락토만난			20.040
Gardenia bluc			00.014
치자황색소	165		08.123
젤라틴	164		08.112
젤란검	428		20.002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Gleditsia sinensis lam gum	418	E418	20.027
Gluditsia sinensis lam gum			20.029
글로코아밀라아제			11.004
글루코노-8-락톤	575	E575	18.007
Glucose oxidase from aspergillus niger var	1102		
L(+)-글루탐산	620	E620	
글루타르알데히드			17.025
글리세롤(glycerine)	422		15.014
Glycerol esters of partially hydrogenated wood rosin(glycerol ester of hydrogenated rosin)			10.013
Glycerol esters of wood rosin	445	E445	10.012
Glycine	640	E640	12.007
Glycyrrhiza, ammonium glycyrrhizinate, monopotassium&triptassium glycyrrhizina	958	E958	19.009, 19.012, 19.010
포도과피추출색소	163(ii)	E163(ii)	08.135
Green s	142	E142	
Gromwell pigment(gromwell red)			08.140
과이액지	314	E314	
구아닐산 5	626	E626	
구아검	412	E412	20.025
아리비아고무(acacia gum)	414	E414	20.008
핵사메틸렌테트라민	239	E239	
4-hecylresorcinol	586	E586	04.013
Hippophac rhamnoides yellow			08.124
염산	507	E507	01.108
과산화수소			17.020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463	E463	
하이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	1442	E1442	20.016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	464	E464	20.028
하이드록시프로필스타치	1440	E1440	20.014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Lce structuring protein			00.020
Immobilized glucose isomerase preparation			11.002
인디고틴(indigo carmine)indigotine aluminium lake	132	E132	08.008
이노신산(5-inosinic acid)	630	E630	
Insoluble polyvinylpyrrolidone	1202	E1202	18.008
흑산화철	172(i)	E172(i)	08.014
산화철안료	172(ii)	E172(ii)	08.015
산화철 옐로	172(iii)	E172(iii)	
이소아스크로브산(erythorbic acid)	315	E315	04.004
아이소말트(isomaltitol)	953	E953	
Isomerized lactose syrup			00.003
Isopropyl citrates	384		
Jujube pigment			08.133
카라야 고무	416	E416	
마우분	425	E425	
Lac dye red(lac red)			08.104
젖산(L,D-and DL)	270	E270	01.102
Lactic and fatty acid esters of glycerol	472	E472	10.031
락티톨	966	E966	19.014
락토펜린		E1440	00.019
라우르산			00.011
레시틴 (phospholipid)	322	E322	04.010
감초			19.009
Licorice root antioxidant			04.008
Linseed gum			20.020
리파아제	1104		
Lp-han-kuo extract			19.015
루테인	161b	E161b	
리코펜	160d	E160d	
라이소자임	1105	E1105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Magnesium carboneta	504(i)	E504(i)	13.005
염화마그네슘	511	E511	18.003
글루콘산마그네슘	580		
글루타민산마그네슘	625	E625	
탄산수소마그네슘	504(ii)	E504(ii)	
수산화마그네슘	528	E528	
Magnesium lactate(DL)	329		
산화마그네슘	530	E530	
규산마그네슘	553(i)	E553(i)	
스테아린산마그네슘	470		02.006
Maize yellow(Com yellow)			08.116
말릭 에시드(DL)	296	E296	01.104
Maltitol and maltitol syrup	965	E965	19.005
말톨	636		
마니톨(D-mannitol)	421	E421	19.017
Masona chinensis benth extract			18.009
Metatartaric acid	353	E353	01.105
메틸셀룰로스	461	E461	
메틸에틸셀룰로스	465	E465	
화학메틸	218	E218	17.032
결정셀룰로스	460(i)	E460(i)	02.005
마이크로그리스탈린락스	905c(i)	E905c(i)	
미네랄오일(hige viscosity)	905d		
광유 (mediun&low viscosity class I)	905e		
올리브유화왁스	905a		14.003
mixed tocopherols concentrate	306	E306	
Mixed tocopherols phospholipid			10.019
Monascus red			08.120
L-글루탐산노모암모늄	624	E624	
감초추출물			19.012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Monoammonium orthophosphate(ammonium digydrogen phosphate)	342(i)		
Monoammonium orthophosphate(calcium dihydrogen phosphate)	341(i)	E341(i)	15.007
Mano(di,tri)glycerides(mono(di,tri)glycerids of fatty acids)	471	E471	10.006
Monomagnesium phosphate	343(i)	E343(i)	
L-글루탐산칼륨	622	E622	
Monopotassium glucyrrhinate			19.010
Monopotassium orthophosphate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340(i)	E340(i)	15.010
Monopotassium sartrate	336(i)	E336(i)	
L-글루탐산일나트륨(MSG)	621	E621	12.001
Monosodium orthophosphate(sodium dihydrogen phosphate)	339(i)	E339(i)	15.005
Monosodium tartrate	335(i)	E335(i)	
인산일전분	1410	E1410	
Morpholine fatty acid sale(fruit wax)			14.004
Mulberry red			08.129
B-나프톨			17.021
나타마이신(pimaricin)	235	E235	17.030
natural amaranthus red			08.130
nature red			08.127
네오탐	961		19.019
New red (new red aluminium lake)			08.004
니신	234	E234	17.019
질소	941	E941	
아산화질소	942	E942	
Octyl and decyl glycerate(glyceryl caprylate-caprate)			10.008
Octyphenol polyoxyethylene			14.006
Orange yellow			08.143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오르트페닐 페놀	231	E231	
Oxidized hydroxypropyl starch			20.033
산화 녹말	1404	E1404	20.030
옥시스테아린	387	E387	00.017
팔라티노오스(isomaltulose)			19.003
파파인	1101(ii)		11.001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160	E160	00.012
Paprika orange			08.107
Paprika red			08.106
파라핀 왁스	905c(ii)		14.002
Peanut skin red			08.134
펙티나아제			11.005
펙틴	440	E440	20.006
Pentaerythritol ester of wood rosin			14.005
Pentapotassium triphosphate	451(ii)	E451(ii)	
Pentasodium triphosphate(sodium tripolyphosphate)	451(i)	E451(i)	15.003
4-페닐 부텐			17.024
Phosphate distarch phosphate	1413	E1413	20.017
인산 (orthophosphoric acid)	338	E338	01.106
피트산 (inositol hexaphosphoric acid), dsodium phytate			04.006
플리덱스트로스(polydextroses A and N)	1200	E1200	20.022
사이클로메티콘(Dimethyl polysiloxane)	900a	E900a	03.007
폴리에틸렌글리콜	1521		14.012
Polyglycerol esters of fatty acids	475	E475	10.022
Polyglycerol monostearate, polyglycerol monooleate			
Polyglycerol polyricinoleate(PGPR)(polyglycerol esters of interesteified ricinoleic acid)	476	E476	10.029
폴리글리시톨시럽	964		
Polyoxyethylcne Polyoxypropylene amine ether(BAPE)			03.004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Polyxyethylene polyoxy propylene pentaerythritol ether(PPE)			03.003
Polyxyethylene (20) sorbitan monolaurate(polysorbate20)	432	E432	10.025
Polyxyethylene (20) sorbitan monolaurate(polysorbate40)	434	E434	10.026
Polyxyethylene (20) sorbitan monolaurate(polysorbate60)	435	E435	10.015
Polyxyethylene (20) sorbitan monolaurate(polysorbate80)	433	E433	10.016
Polyxyethylene (20) sorbitan monolaurate(polysorbate65)	436	E436	
Polyoxyethylene xylitan monostearate			10.017
Polyoxypropylene glycerol ether(GP)			03.005
Polyoxypropylene oxyethylene glycerol ether(GPE)			03.006
다중 인산	452	E452	
아세트산비닐수지			07.001
Polyvinyl alcobol	1203		14.010
Polyvinyl lpyrrolidone	1201	E1201	
폰소 4R(ponceau 4R aluminum lake, cochineal red A)	124	E124	08.002
초산칼륨	261	E261	
알긴산칼륨	402	E402	20.005
Potassium ascorbate	303		
Potassium benzoatc	212	E212	
Potassium bisulphate	228	E228	
중타르타르산칼륨	336	E336	06.007
탄산칼륨	501(i)	E501(i)	01.301
염화칼륨	508	E508	00.008
구연산칼륨	332	E332	
Potassium dihydrogen citrate (monopotassium citrate)	332(i)	E332(i)	
Potassium fettocyanide	536	E536	02.001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글루콘산칼륨	577	E577	
탄산수소칼륨	501(ii)	E501(ii)	01.307
Potassium hydrogen malate	351(i)		
수산화칼륨	525	E525	01.203
Potassium inosinate (Dipotassium 5-inosinate)	632	E632	
락트산칼륨	326	E326	15.011
말산칼륨	351(ii)	E351(ii)	
Potassium metabisulphite	224	E224	05.002
질산칼륨	252	E252	09.003
아질산칼륨	249	E249	09.004
과망간산칼륨			00.001
일인산 칼륨	340	E340	
다중인산칼륨	452(ii)	E452(ii)	
프로피온산칼륨	283	E283	
Potassium saccharin	954(iii)	E954(iii)	
타르타르산나트륨칼륨	337	E337	
소르빈산칼륨	202	E202	17.004
스테아르산칼륨	470(i)	E470(i)	10.028
황산칼륨	515	E515	
아황산칼륨	225		
분말셀룰로스	460(ii)	E460(ii)	
Processed eucheuma seaweed (PES)	407a	E407a	
프로페인	944	E944	
프로피온산	280	E280	17.029
갈산프로필(PG)	310	E310	04.003
Propyl b-hydroxybenzoate	216	E216	17.008
프로필렌글리콜	1520	E1520	18.004
알신산프로필렌글리콜	405	E405	20.010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477	E477	10.020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프로테아제(A, Oryzae var)	1101(i)		
플루란	1204	E1204	14.011
Quillaia extracts	999	E999	
Quillaia extract type I	999(i)		
Quillaia extract type II	999(iii)		
퀴놀린 옐로	104	104	08.016
적무색소			08.117
Red kojic rice			08.119
Red rice red			08.111
리보오스 5-인산에스터나트륨	101(ii)	101(ii)	
리보플라빈	101(i)	101(i)	
리보플라빈(bacillus subtilis)	101(iii)	101(iii)	
Rosa laevigata michx brown			08.131
Roselle red(hibiscetin)			08.125
로즈메리추출물			04.017
사카린	954(i)	954(i)	
사카린 (and sodium, potassium calcium salts)	954	954	
Salts of fatty acids(with base, Al, Ca, Na, Mg, K and NH ₄)	470	470	
Salts of myristic palmitic & stearic acids with ammonia calcium potassium and sodium	470(i)	470(i)	
Salts of oleic acid with calcium potassium and sodium	470(ii)	470(ii)	
Secondary butyl amine			17.011
Sesbania gum(tian jing gum)			20.021
셀락	904	904	14.001
이산화규소(amorphous)	551	551	02.004
실리콘유			03.001
아세트산나트륨	262(i)	E262(i)	00.013
알긴산나트륨	401	E401	20.004
Sodium aluminosilicate	554	E554	02.002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아스코르브산나트륨	301	E301	
벤조산나트륨	211	E211	17.002
탄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500(ii)	E500(ii)	06.001
Sodium calcium polyphosphate	452(iii)	E452(iii)	
탄산나트륨	500	E500	
탄산나트륨	500(i)	E500(i)	01.302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ellulose gum)	466	E466	20.003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cross-linked cellulose gum)	468	E468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enzymatically (hydrolyzed)(cellulose gum, enzymatically hydrolyzed)	469	E469	
카복시메틸스타치 나트륨			20.012
카제인 나트륨			10.002
구연산 나트륨	331	E331	
시클라멘산나트륨	952(iv)	E952(iv)	19.002
쇼둠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266		17.009(ii)
이초산나트륨	262(ii)	E262(ii)	17.013
Sodium dihydrogen citrate(monosodium citrate)	331(i)	E331(i)	01.306
p-하이드록시벤조산에틸	215	E215	
페로시안화나트륨	535	E535	02.008
Sodium fumarates	365		
클루콘산나트륨	576	E576	
Sodium hydrogen malate	350(i)	E350(i)	
Sodium hydrogen sulphite(sodium bisulfate)	222	E222	05.006
디티온산나트륨(sodium hyposulfite)			05.005
수산화 나트륨	524	E524	01.201
Sodium isoascobate	316	E316	04.018
Sodium lactate	325	E325	15.012
말산나트륨	350(ii)	E350(ii)	
메타 중아황산나트륨	223	E223	05.003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Sodium methyl p-hydroxybenzoate	219	E219	
질산나트륨	251	E251	09.001
아질산나트륨	250	E250	09.002
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17.023
Sodium o-phenylphenol(sodium ortho-phenylphenol)	232	E232	
폴리아크릴산나트륨			20.036
플리인산나트륨(sodium hexametaphosphate)	452(i)	E452(i)	15.002
프로피온산나트륨	281	E281	17.006
히드록시벤조산	217	E217	
사카린나트륨	954(iv)	E954(iv)	19.001
세스퀴탄산나트륨	500(iii)	E500(iii)	01.035
소르브산 나트륨	201		
전분인산나트륨			20.013
스테아릴젯산나트륨	481(i)	E481(i)	10.011
황산 소다, 망초	514	E514	
Sodium sulphite	221	E221	05.004
디오황산나트륨	539		
소르빈산	200	E200	17.003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span20)	493	E493	10.024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span80)	494	E494	10.005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span40)	495	E495	10.008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span60)	491	E491	10.003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span65)	492	E492	10.004
Sorbitol and sorbitol syrub	420	E420	19.006
Sorghum red(kaoliang colour			08.115
Spiruline blue (algae blue lina blue)			08.137
염화제일주석	512	E512	
아세트산전분	1420	E1420	20.039
Starch aluminium octenyl succinate			20.038
Starch sodium octenylsuccinate	1450	E1450	10.030

특정명칭	국제번호 프로그램	유럽연맹 사용	중국사용
	INS식별번호(1)	E로 시작하는 식별번호(2)	GB식별번호(3)
Stearic acid(octadecanoic acid)	570		14.009
Strary citrate	484		
스테비오사이드	960		19.008
숙신산	363	E363	
Succinylated monoglycerides	472g		10.038
수크랄로스(trichlorogalactosucrose)	955	E955	19.016
Sucrose acetate isobutyrate	444	E444	10.014
자당지방산에스터	473	E473	10.001
유황(sulfur)			05.007
이황산가스	220	E220	05.001
식용황색 제5호 (orange yellow s, sunset yellow aluminum lake)	110	E110	08.006
텔크	553(iii)	E553(iii)	02.007
타마린드검(tamarind polysaccharide gum)			20.011
Tanoak brown			08.128
타라검	417	E417	20.041
타타르산(L(+)-)	334	E334	01.103
황색4호 (tartrazine aluminum lake)	102	E102	08.005
Tea green pigment			08.142
차 폴리페놀(TP)			04.005
Tea yellow pigment			08.141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TBHQ)	319	E319	04.007
Tetrapotassium diphosphate	450(v)	E450(v)	
피로인산나트륨 (tetrasodium pyrophosphate, sodium pyrophosphate)	450(iii)	E450(iii)	15.004
타우마틴	957	E957	
Thermally oxidized soya bean oil with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TOSOM)	479	E479	

■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 공보 제1조- 제2기 2010년 1월 11일 ■

			17,018
티아벤다졸 (TBZ)	233	E233	
티오디프로피온산	388		08,011
이산화티타늄	171	E171	
토코페롤 (alpha-토코페롤)	307	E307	
d-alpha-토코페롤	307a		
토코페롤(혼합형)	307b		
dl-alpha-토코페롤	307c		04,016
트라가칸트 고무	413	E413	
트라이아세틴	1518	E1518	
Triammonum citrate(시트르산암모늄)	380	E380	
Tricalcium citrate	333(iii)	E333(iii)	
Tricalcium orthophosphate	341(iii)	E341(iii)	02,003
트리에칠시트레이트	1505	E1505	
Trimagnesium orthophosphate	343(iii)		
Tripolyglycol monostrate			10,021
트리칼륨스트르산	332(ii)	E332(ii)	01,304
트라이포타슘 포스페이트	340(iii)	E340(iii)	01,308
시트르산삼나트륨(시트르산나트륨)	331(iii)	E331(iii)	01,303
Trisodium diphosphate	450(ii)	E450(ii)	
인산삼나트륨	339(iii)	E339(iii)	15,001
터메릭	100(ii)		08,102
하니베리			08,136
불포화지방산			10,036
모노글리세리드			
카본블랙	153	E153	08,138
크산탄	415	E415	20,009
xylitan monostearate			10,007
키실리톨	967	E967	19,007
황산아연			00,018

- (1) 식품법전위원회는 식품첨가제 국제번호시스템의 “INS” 식별번호를 사용함
- (2) 유럽연맹은 “E”를 시작으로 하는 식별번호를 사용함
- (3) 중국은 “GB” 식별번호를 사용함

■ 식품첨가제의 사용성질로 정한 성능 및 그 부가성능 분류표 ■

성능분류	
산 · 산미료	증미제
산도조절제 · 산, 알칼리 · 완충제 · 산도조절제	밀가루 개량제 · 표백제 · 반죽개량제 · 밀가루 개량제
소포제	기포제 · 발포제 · 공기주입제
고결방지제 · 고결방지제 · 점착방지제 · 건조제 · 살포제 · 박리제	겔 형성제
항산화제 · 항산화제 · antioxidant synergist · 금속이온봉쇄제	광택제 · 피막제 · 밀봉제 · 광택제
증량제 · 증량제 · 충전제	수분유지 · 보수제 · 유탈제
추잉 껌 기초제	변성전분
착색제(색소)	방부제 · 향미생물 방부제 · 곰팡이 방지제 · bacteriophage control agent · 화학소독제-wine maturing agent · 소독제
색소유지제 · colour fixative · 색소안정제	공기주입제(추진제)
효소표지	팽창제 · 발효제 · 팽창제
유화제 · 유화제 · 가소제 · 분산제 · 표면활성제 · 유탈제	안정제 · 점착제 · 경화제 · 보수제 · 기포안정제
유화제염류 · melding salt · 금속이온봉쇄제	김미료 · 감미제 · 글루토오스 · 영양글루토오스
경화제 (응고제)	증미제 · 점도증가제 · texturizer · 점착 촉진제
향료(식용향료, 조미제)	

※ 참조: http://bo.io.gov.mo/bo/i/2010/02/despce_cn.asp#556

□ 참고 사이트

- 마카오 정부 포털 <http://www.gov.mo/>
- 마카오 식품안전센터 <http://www.foodsafety.gov.mo/>
- 마카오 위생감독부 <http://www.iacm.gov.mo/>
- 마카오 세관 <http://www.customs.gov.mo/>
- 마카오 민정총서 <http://gb.iacm.gov.mo/>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말레이시아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부적합 사례

제6장 수출현안

부록 :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ST)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 일반사항

1. 진입장벽

□ 수입허가(IP)

-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 혹은 수입허가 상품은 관세법 1967, 관세령 1998에 규정되어 있다. 종교적, 환경적 이유(First Schedule), 치안 또는 환경적 이유(Second Schedule),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제한상품(Third Schedule),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이 수입요령에 의해 증명서,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상품(Fourth Schedule)로 구분된다. 알콜음료, 애완동물, 건강식품, 육류, 육류제품, 식물제품, 가금류, 가금류제품 등을 수입 시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공육류는 수의서비스국의 면허승인이 필요하다. 몇몇 특정 식물 품목의 수입 시에는 수입 허가증과 식물위생 검사증이 필요하다. 그 품목에는 옥수수, 콩, 가공 혹은 가공되지 않은 코코아 및 커피, 타바코, 면, 감귤류, 바나나, 건초, 그리고 기타 동물 사료 부산물 등이 있다.

□ 식품 라벨링

- 말레이시아는 식품의 라벨링에 대해서 엄격하고 규격화된 규정(Food Regulations 1985)을 정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말레이시아 규격에 맞게 라벨링 해야 하며, 라벨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정보 및 명시해서는 안 될 정보 또한 정해 놓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가공육류, 생선, 소스, 음료, 과자류 제품별 라벨링 기준과 각종 식품의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다.

□ 할랄인증

-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이므로 육류 제품 혹은 육류 포함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은 과일류 및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식품은 주로 할랄인증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할랄인증(JAKIM)을 가장 정통성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에는 JAKIM의 인증마크 부착이 가장 좋지만, 2013년 7월 1일부로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MF) 할랄인증이 인정을 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육류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할랄인증을 받는 추세이다.

2. 농림 및 식품 수입절차 흐름도

□ 수입 절차

┃ 말레이시아 수입 절차 5단계 ┃

1	수출계약	거래선 발굴 계약진행
2	서류준비	수입신고 서류준비 품목별 추가 서류 확인 원산지 증명서 준비
3	선적/ 운송	관세사 통해 수출통관 진행 포워딩 업체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 물품 도착 시 적하 목록 제출
4	수입신고 / 검역	수입신고 진행 : 수입신고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수입 규제 및 금지 품목 확인 필수 품목 별로 검역 진행 (식물성 / 동물성)
5	통관 / 국내유통	Customs Golden Client 제도로 통관을 간편화 수입관세와 세금납부 (한·ASEAN FTA적용, 소비세와 판매세 부과)

Ⅱ 말레이시아 수입부대 여건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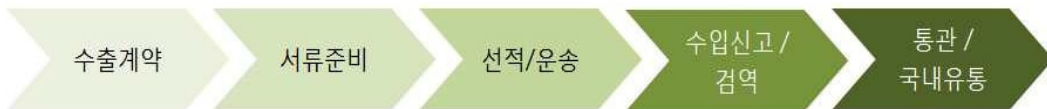
구분	서류 준비	항만, 터미널 처리	통관수속	내륙운송	필요서류
소요 기간	3일	2일	1일	2일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포장목록
소모 금액	120 달러	120달러	60달러	260 달러	

* 출처: Doing Business 2014

제2절 통관 절차

□ 수입 단계별 준비 및 처리사항

- 말레이시아로 식품 수출은 계약에서부터 통관, 국내 유통까지 아래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1) 수출계약

(1) 거래선 발굴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Trade Directory)36), 각 국의 무역 관련기관 또는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한다.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한다.

(2) 계약 진행

충분히 수출 가격을 검토한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비즈니스 오퍼)를 제출한다. 구매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 차례 카운터오퍼 (Counter offer)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조건을 명시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류 준비

(1) 수입신고 준비

말레이시아의 수입품은 모두 Custom No.1 양식으로 수입신고를 한다. 수입신고서는 관할 수입지역의 관세청에 제출한다. 수입신고의 기재내용과 세관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수입신고서 기재 내용〉

- 계좌번호, 제품포장에 대한 설명, 가치, 수량, 무게, 원산지, 최종 목적지를 기술한다.

〈세관 제출 서류〉

- 세관 신고 양식(Custom No.1)
- 입국 권한 증명에 필요한 문서
- 상업 송장
- 포장목록
- 원산지 증명서

(2) 품목별 준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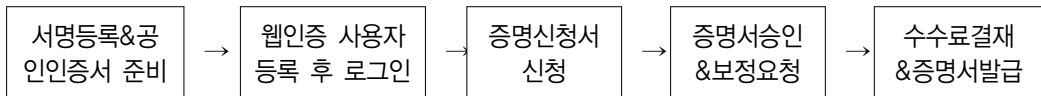
품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추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육류(가금육 포함) : 육류 및 가금육 수출증서(FSIS Form 9060-5), 할랄 수출인증서, 수입허가서(IP), 수의검역부의 허가증 (수의검역부소관)
- 식물성 식품 : 식물 위생 증명서, 수입허가서, 검역해충 검사 및 식물 위생 규제 준수 인증서(농업부 소관)

(3) 원산지 증명서 필요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체결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자특

해 원산지증명서(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ePCO)도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서류 발급 절차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 서비스 센터에 상세히 나와 있다.



* 출처 : 대한 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 서비스 센터 URL 참조
(http://cert.korcham.net/html/origin2/co01_05.jsp)

3) 선적 / 운송

(1)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업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한다. 기업이 수출통관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하면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unipass.or.kr)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 운송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진다.

(3) 물품도착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도착하면, 일정기간 이내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선박 : 물품도착 후 24시간 이내 제출한다.
- 항공기·철도 : 항공기와 철도가 도착한 시점에 세관 공무원의 요청 있을 때 제출한다.
- 자동차 : 수입지 도착할 때 제출한다.

4) 수입신고 / 검역

(1) 수입신고 진행 및 검역 실시

말레이시아는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고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타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 허가를 받으면 제품의 검역이 실시된다.

(2) 수입 규제 및 금지품목 확인 필수

수입신고 전, 수출상품이 수입규제 혹은 금지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입 규제나 금지 품목에 해당되면, 수입 허가(IP)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 신청은 무료다. 말레이시아 관세법(Customs Act 1967)에 따라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군은 4가지로 구분되며, 품목 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부 기관이 다르다. 수입 허가 취득은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만이 가능하다.

- 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한시적인 수입제한이 필요한 품목 : 쌀(농무부), 설탕(건강복지부), 소금(건강복지부)
- ② 조건부 금지 품목 : 전분, 양배추, 볶지 않은 커피(통상 산업부)
- ③ 수입 방법에 조건이 첨부되는 품목 : 육류, 모든 형태의 액체우유 및 유제품(수의검역부)
- ④ 완전 수입 금지 품목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와 과일류 금지

(3) 모든 수입식품 신고는 다강네트(Dagang Net)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다강네트(Dagang Net)란1〉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운영하고 있음. 이 기관의 운영 서비스가 'Dagang Net'이며 수출입자들이 전자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출입자들이 전자 통관 서비스(ePermit 포함) 이용 가능
<http://www.dagangnet.com/>

〈다강네트(Dagang Net)이용한 식품 수입허가 신청절차〉

ePermit 시스템을 통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 → MAQIS 책임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증 → MAQIS 책임자는 허가 신청서를 승인 → 승인 내용을 세관 정보 시스템에 전송

(4) 품목별로 검역 진행

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 검역처(Malays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s, MAQIS)에서 수입식품 검역을 총괄한다. 검역 수행기관은 품목마다 다르며, 크게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제품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체 물품 중 약 5% 정도만 물품검사를 실시하며 대부분의 물품이 검사 없이 통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적발될 경우 수입허가가 취소되고, 3년 소급적용하여 벌금이 부과된다.

(5) 식물성 수입식품의 검역 상세사항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은 ‘유해성 농작물 규정 법안 1981’에 따라 현행 식물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검역소에 도착하기 4일 전에 식물위생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말레이시아의 농업부 장관이 발행한 수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식물성제품의 검역은 다강네트를 이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식물 및 식물성 제품 검역절차〉

- 주관 : 농업부의 작물보호 및 식물검역부서 검역진행
- 절차 : 농업부에 검역 신청을 한 뒤, 검역 비용(15MYR)을 납부 → 검역이 승인되면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됨
- 기간 : 검역신청부터 승인까지 최대 5일 소요
 - 비용 : 모든 식물성 제품은 15MYR이 청구됨

(6) 동물성 수입식품의 검역 상세사항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제품은 ‘도살법1975’에 따라 ‘할랄(HALAL)인증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개발부서(JAKIM)가 인정한 도살장에서만 도살된 제품이어야 한다. 동물성 제품의 검역도 다강네트를 이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육류-돼지고기 제외〉

- 주관 : 수의검역부에서 검역진행
- 절차 : 수의검역부에 검역을 신청한 뒤, 검역비용을 납부함 → 해당제품의 검역이 승인되면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가 발행됨 → 승인내역과 증명서가 세관에 통지된다.
- 기간 : 검역신청부터 승인까지 1일 소요
- 비용 : 동물성 제품은 품목마다 검역비용이 다름, 품목별 비용은 하단의 URL참조
(<http://www.mytradelink.gov.my/documents/10179/17675/Veterinary%20-%20HQ%20-%20Charges.pdf>)
- 라벨링 표기사항 : 도살장, 정육포장공장의 지정번호, 생산일자, 도살형태 등을 표기해야 한다.

5) 통관 / 국내 유통

(1) 말레이시아의 간편화된 통관제도

말레이시아는 Customs Golden Client 제도를 통해 통관절차를 간편화하였다. 또한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 목록 등의 서류제출 및 선박 도착 예상을 확정하면 선통관도 가능하다. 모든 통관절차를 마친 화물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말레이시아로 유통된다.

* Customs Golden Client 제도란?

최소한의 데이터와 서류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며, 관세의 정기적 사후납부가 가능하다.

(2) 수입관세 및 세금 납부

모든 관세와 세금은 제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납부한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한국 제품은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다. 수입품의 세금은 일부 품목에 한해 판매세와 소비세가 부과되

오니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 * 말레이시아 관세 검색 사이트 : <http://tariff.customs.gov.my/>
- 판매세는 0~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 맥주, 포도주, 알콜 제품에는 2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 수입과징금 부과 품목 : 생선, 곡물, 소금(CIF²)의 5% 부과

6) 라벨링

(1) 방법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제품의 라벨링은 말레이시아어와 영어의 병기가 가능하다. 일부 식품은 Nutritional Labeling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기재 내용은 식품의 영양요소 정보이며, 포장지에 기재하면 된다.

- * Nutritional Labeling 의무표시 해당품목 : 시리얼, 제빵류, 우유 및 분유, 통조림, 육류, 과일주스, 샐러드드레싱, 마요네즈, 청량음료
- * Nutritional Labeling 표기내용 특이사항
 - 에너지량은 킬로칼로리(kcal), 킬로줄(KJ), 100g당 또는 100ml당, per package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 단백질, 식이성 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 지방은 100g당 또는 100ml당, per package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 병에 담아서 파는 음료는 총 설탕의 양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 Carbohydrateg
 - Total sugarsg
 - 병에 담아서 파는 음료는 총 설탕의 양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 Carbohydrateg
 - Total sugarsg
 - Alchol 7kcal/g (29kj)
 - Organic acid 3kcal/g (13kj)
 - Dietary fibre 2kcal/g (8.5kj)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 * 육류제품의 라벨링 표기사항 : 동물성 식품은 반드시 할랄(HALAL)인증을 표기해야 한다.
- * 혼합, 육류, 알콜 식품은 혼합, 육류, 알콜이 함유(6포인트)되었다고 타 기재사항(4포인트)보다 눈에 띄게 표시한다.

(2) 가공식품의 라벨링 표기 예시 및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품명 ② 수입업체 정보 ③ 종량 ④ 수입 및 유통업체 ⑤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양정보 ② 열량 ③ 단백질 ④ 지방 ⑤ 탄수화물 ⑥ 나트륨 ⑦ 재료 ⑧ 보관방법 	

7) 수입식품 검사기관

(1) 수출입식품 검역처(Malays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s, MAQIS)
 주요 업무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식물·수산물의 병충해와 오염도를 검사하는 곳으로 말레이시아의 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는 검역처 업무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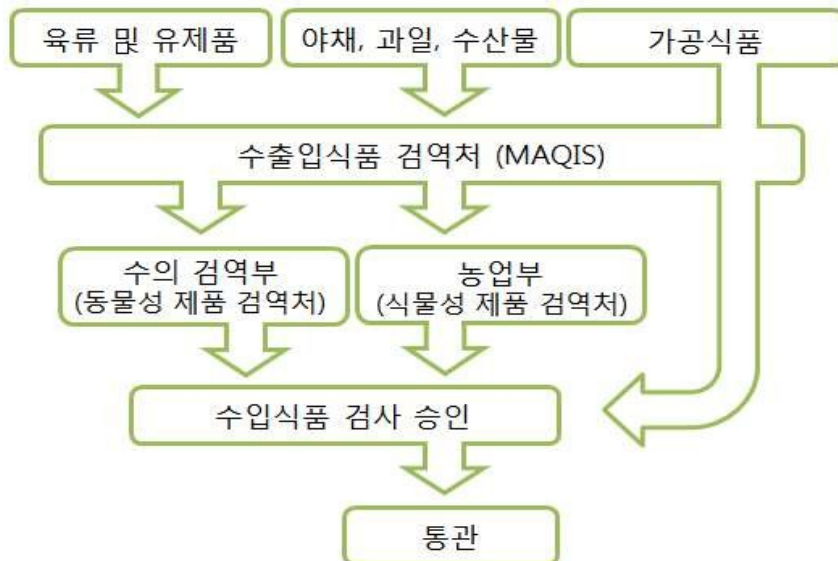
(2) 수의 검역부(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주요 업무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검

역이 승인된 제품에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한다.

(3) 농업부의 농업기반사업(Paddy and Rice Industry Division)

주요 업무 : 쌀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부서로 특별히 수입쌀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8) 품목별 수입절차



* 품목별 수입절차 요약

- 수입식품 검역처에서 식품 수입을 허가하며, 수입허가를 받으면 제품 검역이 진행된다.
- 육류 및 유제품 : 수입식품 검사에 승인을 받으면 동물건강증명서가 발급됨, 검역비용이 품목마다 다름, 최대 1일 소요된다.
- 채소, 과일, 수산물 : 식물성 제품은 모두 검역비용인 15RM를 납부, 최대 5일 소요된다.
- 쌀 : 최대 3일 소요, 별도의 비용은 없다.
- 가공식품 : 특이부서 없이 수입식품 검역처에서 검역 진행한다.

제3절 할랄인증

□ 할랄인증 기준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말레이시아 표준관리부(DSM) 산하의 말레이시아 표준 개발청(Malaysian Standard Development System)에서 할랄 관련 규정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MS)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할랄인증기준	구 분	주요내용
MS 1500 : 2009	식품	할랄식품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 관련 지침
MS 2594 : 2015	식수	식수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요건
MS 1900 : 2005	품질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MS 2424 : 2012	의약품	건강 보조제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 취급 기준
MS 2200:PART1:2008	화장품	화장품 제조 및 관리 지침
MS 2610 : 2015	서비스	할랄 관광 및 서비스 제공시 관리지침
MS 2300 : 2009	가치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조직 설립 및 관리 시스템 기준
MS 2400-1:2010	운송	제품 및 화물의 운송 요건
MS 2400-2:2010	저장	배달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창고 저장 관련 지침
MS 2400-3:2010	소매	소매단계에서 할랄 무결성 관리 요건

- (1) 말레이시아 표준(MS) 1500: 2009 할랄 식품 -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 - 일반 지침

말레이시아 표준은 식품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할랄 식품(영양 보조제 포함)의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침은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할랄 식품, 할랄 식품 거래 및 할랄 식품 사업이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JAKIM이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는 사항이다.

- (2) 말레이시아 표준(MS) 2594:2015, 식수 처리에 사용되는 할랄 화학물질
말레이시아 표준(MS) 2594:2015은 말레이시아 식수 처리에 사용되는 할랄 화학

물질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수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이슬람 율법, 관련 규정 혹은 관련 사항에 대한 말레이시아 법규와 함께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 말레이시아 표준(MS) 1900:2005, 품질 관리 시스템 - 이슬람 관점에서의 요건
말레이시아 표준(MS) 1900:2005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일관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본 표준은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며, 동시에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이다.

- (4) 말레이시아 표준(MS) 2424: 2012 할랄 의약품 - 일반 지침

말레이시아 표준(MS) 2424: 2012은 건강 보조제를 포함한 할랄 의약품을 제조 및 취급하는 제약 산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의약품, 의약품 거래 및 관련 산업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

- (5) 말레이시아 표준(MS) 2200 : 이슬람 소비재, 1 장 : 2008, 화장품 및 개인 관리 - 일반 지침

해당 표준은 할랄 화장품 및 개인 관리 산업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과 기본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정한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지침 및 화장품 제조에 관한 지침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

- (6) 말레이시아 표준(MS) 2400 시리즈 - 할랄란-토이반(Halalan-Toyyiban)³⁾ 보증

i) 말레이시아 표준(MS) 2400-1: 2010, 할랄란-토이반(Halalan-Toyyiban) 보증 - 제품의 수송 혹은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관리 요건

3) 허용되며(Permissible) 건강에 좋고(Wholesome) 안전하며(Safe) 양질(Quality)이라는 의미

말레이시아 표준(MS) 2400-1: 2010은 다양한 운송 형태를 통해 취급되는 제품 및 화물의 할랄란-토이반(halalan-toyyiban) 무결성이 보증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ii) 말레이시아 표준(MS) 2400 - 2:2010, 할랄란-토이반(Halalan-Toyyiban) 보증 - 창고 저장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 요건

말레이시아 표준(MS) 2400 - 2:2010은 수취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창고 저장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할랄란-토이반(halalan-toyyiban) 무결성이 보증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iii) 말레이시아 표준(MS) 2400 - 3:2010, 할랄란-토이반(Halalan-Toyyiban) 보증 - 소매 관리 요건

말레이시아 표준(MS) 2400 - 3:2010은 소매 단계에서 할랄란-토이반(halalan-toyyiban) 무결성이 보증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7) 말레이시아 표준(MS) 2610:2015, 무슬림 친화적接客 서비스 - 요건

말레이시아 표준(MS) 2610:2015은 숙박 시설의 소재지, 투어 패키지 및 관광 가이드와 관련해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할랄 관광 시설, 그리고 할랄 제품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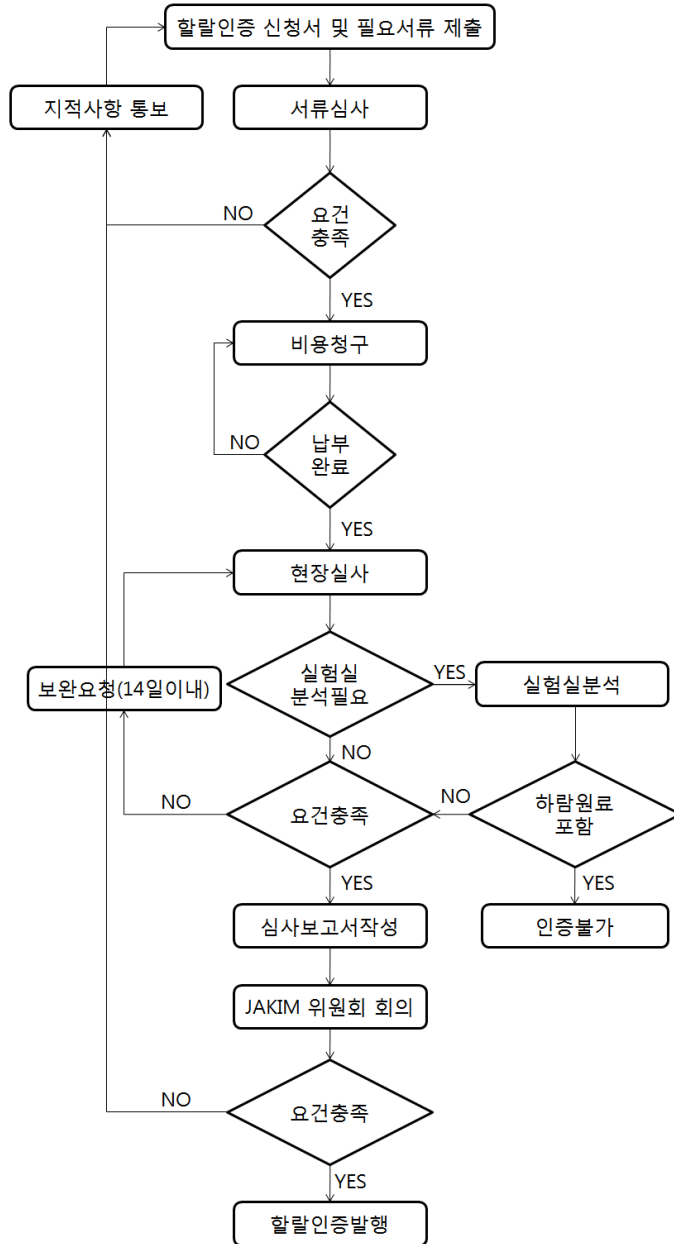
이는 무슬림 친화적 관광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스파 및 마사지 등과 같은 건강 및 미용 시설, 제품 혹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말레이시아 표준(MS) 2300: 2009, 가치 기반 관리 시스템 - 이슬람 관점에서의 요건

말레이시아 표준(MS) 2300: 2009은 지침과 인증 요건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표준은 해당 기관들이 이슬람의 가치에 기반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할랄인증 절차

○ JAKIM으로부터 할랄인증 획득절차



(1) 할랄인증 희망 업체의 사전 준비사항

업체는 신청 전에 할랄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신청서 및 제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해야만이 서류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2) 할랄보장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

할랄인증 제품 생산업체가 할랄 무결성을 갖추기 위해 개발 및 시행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할랄보장시스템은 아래의 사항들을 갖춰야 한다.

- 내부할랄위원회(Internal Halal Committee)를 설립하여 할랄보장시스템을 개발 및 시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최소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2인은 관리자급의 무슬림이어야 한다.
- 최소 1년에 한번 할랄 무결성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내부할랄위원회 구성원 변경, 모니터링 스케줄 변경, 운영/공급망의 변경사항 발생 시 할랄 무결성에 문제가 없는지 내부할랄위원회 검토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 내부할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할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조공정 중 할랄 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작성해야 한다.
- 전체 제조공정들의 흐름도를 만들어야 한다.
- 할랄 무결성을 위협하는 사항들이 발생 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 할랄에 부적합한 사항들의 징후가 발생 시 보완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할랄보장시스템에 관련된 문서 및 활동기록들을 최소 1년 이상 문서로 남겨야 한다.
 - 할랄보장시스템 매뉴얼
 - 내부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 및 구성원들의 의무
 - 내부 감사위원회 미팅 기록
 - 할랄 무결성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들
 - 모니터링 절차 및 보완작업 설명서
- 할랄 무결성을 상실한 제품에 대한 제품 리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 할랄보장시스템은 모든 제조공정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3) 할랄인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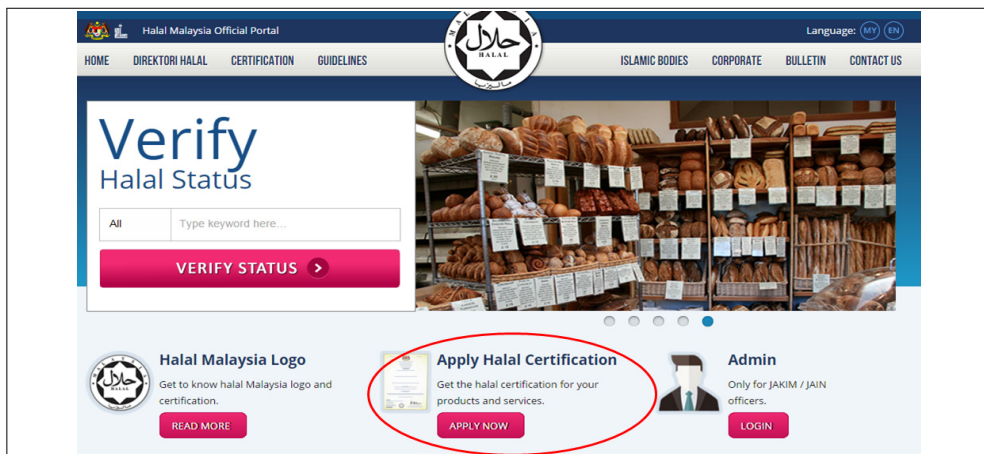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신청서와 아래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현재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앞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① 우편 신청 방법

- 접수 주소 : HAB HALAL DIVISION,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Aras 1 & 3, Menara PJH NO. 2 Jalan Tun Abdul Razak, Presint 2, 62100 Putrajaya, Malaysia.
- 연락처 : Tel)60-3-8892-5000, 5001, Fax)60-3-8892-5005
E-Mail) pr_halal@islam.gov.my

②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www.halal.gov.my
- 할랄인증을 신청 하려면 위 사이트를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신청 시 필요내용 및 등록(제출) 서류

- 회사명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제조 라이선스
- 제품명과 제품설명
- 포장재료 타입
- 제품 라벨/디자인
- 식품원료
- 식품 원료 공급업체/제조업체 이름과 주소
- 식품원료의 할랄상태, 필수 식품원료의 설명서 또는 할랄인증서(만약 해당될 경우)
- 제조과정 순서도와 생산 절차
- HACCP, ISO, GHP, GMP, TQM 등과 같은 다른 인증서
- 생산국가의 식약청 발급 제조허가서(건강식품과 화장품)
- 공장 및 부지 지도
- 배치도
- 육류 및 육류기반 제품용 말레이시아 수의국의 수입허가서 사본
- 연간 손익계산서 사본
- 기간이 유효한 식품원료의 할랄인증 사본 및 제품설명서 사본
- 생산 공장/식당/도축장에서 근무하는 2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시민권자⁴⁾ 신분증 및 제안서 사본
- 도축을 위한 도축 자격증
- 도축장을 위한 수의국 발급 VHC(도축장만)
- 기간 만료된 할랄인증서 사본

* 위 서류들은 서면심사 및 향후 JAKIM이 현장 실사 시 감사할 내용들로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한다.

(4) 수수료 납부

JAKIM이 할랄인증 신청서 및 제서류 접수 후 JAKIM의 요구에 따라 신청업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제품 및 레스토랑의 수, 그리고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수수료 이외에도 현장 실사를 위한 실사자들의 항공비, 숙박비, 교통비 등

4) 해외 업체의 경우 2명 이상의 무슬림을 고용하면 된다. 만약 한국과 같은 무슬림 고용이 어려운 국가들의 경우 내부할랄위원회 회원들이 JAKIM의 할랄교육을 받아야 하며,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 또는 JAKIM 강사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이 가능하다.

을 신청업체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① 가공산업

- 업체 규모에 따른 인증 수수료

산업체	단위: 링깃 (RM)
소기업	100.00 / 연간(USD 23)
중소기업	400.00 / 연간(USD 92)
다국적기업	700.00 / 연간(USD 161)

* 인증수수료 적용기준

산업체	상세 사항
소기업	· 직원 수 최대 50인 · 예를 들어: 지방 기업 혹은 마을 산업
중소기업	· 연 매출 500,000 링깃(USD 115,000) 이상 · 직원 수 최대150인
다국적기업	· 몇몇 국가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 연 매출 2500만 링깃(USD 5,750,000) 이상 · 직원 150인 이상

* 아세안 국가의 경우 제조업체별 2,100 RM이며 비아세안 국가일 경우 USD2,100이며 할랄인증 실사단 교통, 숙박비도 신청기업에서 부담한다.

② 식품 취급 사업장 / 도축장

가) 도축장

산업체	단위: 링깃 (RM)
소규모	100.00 / 연간(USD 23)
중간 규모	400.00 / 연간(USD 92)
대규모	700.00 / 연간(USD 161)

* 인증수수료 적용기준

산업체	상세 사항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도살하는 닭의 수: < 3,000 · 매일 도살하는 염소의 수: < 500 · 매일 도살하는 소의 수: < 50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도살하는 닭의 수: Between 3,000 - 10,000 · 매일 도살하는 염소의 수: <500 - 700 사이 · 매일 도살하는 소의 수: <50 - 100 사이
다국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도살하는 닭의 수: >10,000 · 매일 도살하는 염소의 수: >700 사이 · 매일 도살하는 소의 수: >100 사이

나) 레스토랑 / 식품 취급 사업장 / 케이터링 및 호텔

산업체	단위: 링깃 (RM)
각 업체	100.00 / 연간(USD 23)
각각의 주방 별 - 호텔의 경우	100.00 / 연간(USD 23)
각각의 레스토랑 별 - 호텔의 경우	100.00 / 연간(USD 23)

(5) 현장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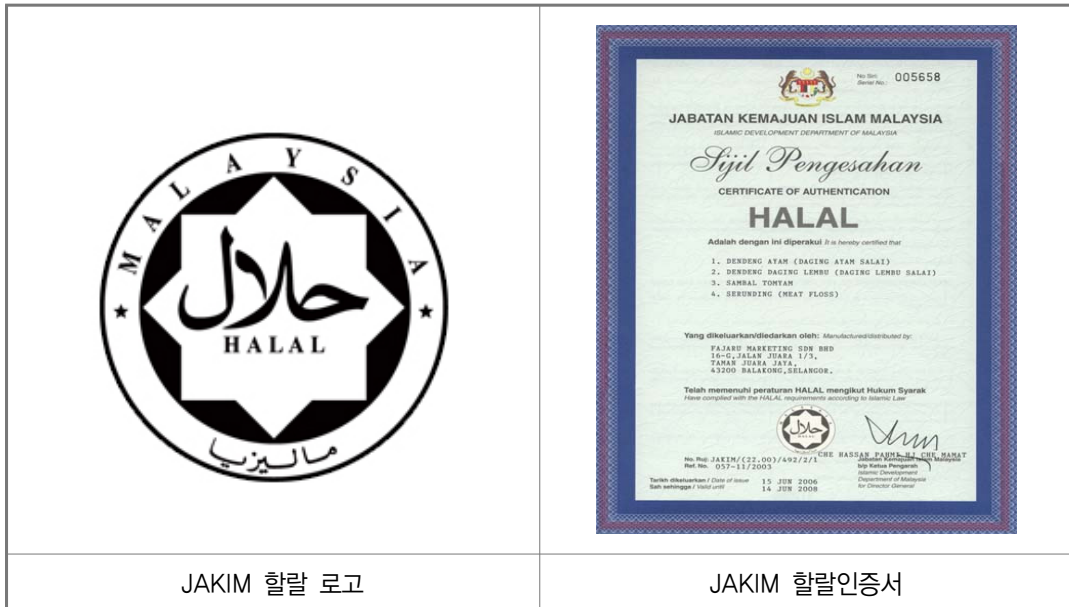
수수료 납부 및 서면감사 통과 후 업체와 JAKIM이 협의하여 현장 감사 날짜를 정한다. 현장 감사 시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지 않는지 확인한다. 샘플링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 실험실 분석에 들어간다.

(6) 검토 및 승인 회의

현장 감사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JAKIM 위원회에 제출하고 JAKIM위원회의 심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할랄인증 발급을 승인한다.

(7) 인증서 발급

JAKIM위원회의 승인이 나는 경우 JAKIM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 발급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2~3개월⁵⁾이 소요된다.



할랄 로고는 JAKIM에서 발급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로고 중심부의 원 내부에 8각 별모양
- 별 모양 중심부에 다음과 같은 아랍어 표기 - “حلال”
- 아랍어 아래 로마 알파벳으로 “HALAL(할랄)” 표기
- 로고의 테두리 원 부분에 로마 알파벳으로 “Malaysia(말레이시아)”라고 표기 및 아랍어로 ماليزيا 라고 표기
- 2개의 작은 5각 별이 로마 알파벳으로 씌어진 글자의 양 쪽에 자리잡고 있음

(8) 모니터링 및 갱신

JAKIM은 할랄인증을 받은 이후에 해당 제조업체,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도축장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JAKIM은 인증기간 동안 모든 할랄 표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2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JAKIM이 제시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 5) 할랄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JAKIM이 요청한 서류 및 준비사항에 문제가 없을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2~3개월이나, 실제 사례에 비춰봤을 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됨

- 해당 식품 제조업체,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도축장은 할랄 제품만을 생산, 제조, 판매 및 유통해야 한다.
- 신청자들은 반드시 할랄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할랄원료를 공급하거나 혹은 할랄인증 받은 공급자와 거래해야 한다.
- 모든 측면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다국적 기업 혹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기업 내에 내부 할랄 감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한 사람의 이슬람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할랄 인증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반드시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가진 2인의 무슬림 노동자⁶⁾를 조리 시설 부분 / 식품의 취급 / 식품 가공 부분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 제품의 제조, 취급, 가공, 포장 혹은 운송 과정에서 반드시 청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비할랄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구 혹은 시설은 반드시 청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청결하지 못한 물질 혹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개입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할랄 제품만을 이용해 운송해야 한다.
- 해당 업체는 우수건강식품 제조기준(GMP)에 따라 도구, 운송, 생산 시설 및 주변 지역의 청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과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직원들이 채용 전에 정부가 인정한 의료 시설에서 TY2 백신을 접종⁷⁾해야 한다.
 - 모든 직원들이 건강 관리와 개인 위생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질병을 앓고 있거나 주사를 맞은 직원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은 반드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직원들이 맨손으로 원료 혹은 반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흡연, 식사, 음료 섭취 혹은 기타 생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반

6) 해외 업체의 경우 2명 이상의 무슬림을 고용하면 된다. 만약 한국과 같은 무슬림 고용이 어려운 국가들의 경우 내부할랄위원회 회원들이 JAKIM의 할랄교육을 받아야 하며,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 또는 JAKIM 강사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이 가능하다.

7) Anti-typhoid injection : 장티푸스 백신

드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장소는 생산 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 생산 시설에 출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공장 내에서 착용하는 특수복을 착용해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은 특수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관리 절차 및 개인 건강관리 기준에 따라 청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들, 정규직 직원, 방문객 및 기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모든 직원들은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의복, 모자, 마스크, 장갑 및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 모든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식품 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기 전
 -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 원료 혹은 오염된 물질을 처리한 이후
- 식품 가공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보석 혹은 액세서리, 시계 등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직원들은 항상 “체크 포인트(검사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모든 직원들은 할랄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식품 가공 시설에서는 종교 경배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9) 할랄 라벨링 위반시 처벌⁸⁾

- ① 할랄이 아닌데 할랄 라벨링을 하고 판매할 경우
 - (개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링깃(USD 23,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다 적용받을 수 있음
 - (업체) 25만 링깃(USD 57,500) 이하의 벌금
- ② 할랄라벨링을 하거나 할랄제품임을 설명하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 중에 할랄제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성분이 들어가거나 위생 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성분이 들어간 경우

8) 근거 : Trade Descriptions Ord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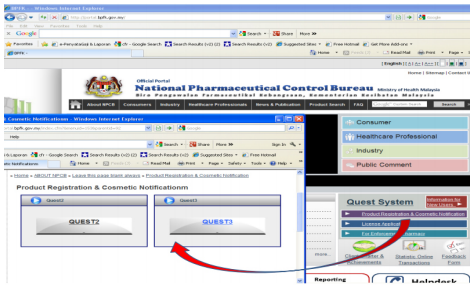
- (개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링깃(USD 23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음
- (업체) 5백만 링깃(USD 1,150,000) 이하의 벌금

제4절 기타 통관 및 수입 제도

□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약재의 말레이시아 국가의약관리국 등록

- 모든 수입 식품은 정해진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전국의 28개의 입국지점에서 무작위로 샘플링 및 검사를 받게 된다. 인체에 부적절한 요인이 발견될 경우 폐기 처분된다.
- 수입 육류 및 육류 관련제품, 우유 및 유제품, 돈육 및 돈육 관련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수입항에서 수의검역국의 권한을 위임 받은 담당관들의 수의학적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 수의검역국은 무작위 샘플 수집 및 실험실 테스트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식품 화물을 반송, 폐기, 역류할 수 있다.
- 건강식품 및 약용 식품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등록이 필요하다. 육류 및 우유, 그 외 관련 제품에는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 말레이시아에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약재 포함) 등록은 Quest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Quest 시스템은 국가의약관리국(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 NPCB) 홈페이지 www.bpfk.gov.my에서 접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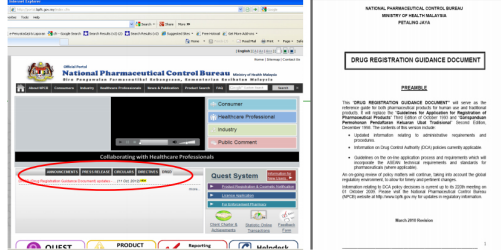
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
<http://www.bpfk.gov.my> – Quest 3



▲온라인 의약품 등록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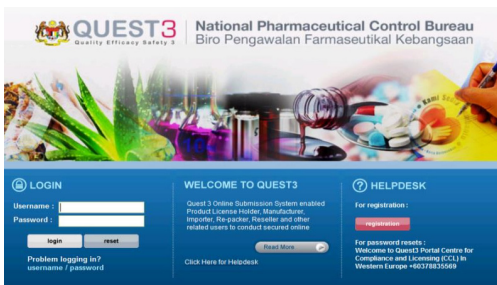
1) 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 :
<http://www.bpfk.gov.my> – Regulatory Information

2) Drug Registration Guidance Doc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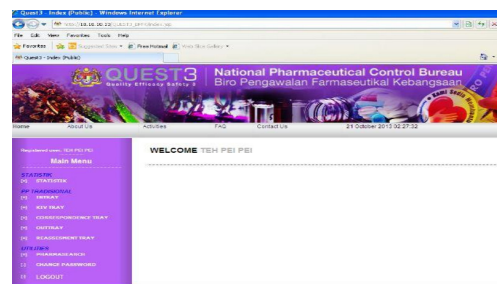


▲제품 등록 안내

- Quest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함. 사용자 등록 시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에서 발급받은 기업 등록증, 신분증, 승인 공문(Letter of Authorization) 등이 필요하다.



▲로그인 전 화면



▲로그인 후 화면

- 등록 진행 과정
 - 사전심사 → 등록비 지불 → 감독관 심층 평가 → NPCB 내 제품평가위원회 회의 → 의약품리국(Drug Control Authority) 회의 → MALxxxxxxxxN/T 형태의 등록번호 부여
- 제품등록번호(Product Registration Number)는 5년간 유효하며, 의약품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품등록번호에는 전통약재(Traditional Medicine)의 경우 T, 건강보조제(Health Supplements)의 경우 H의 약자가 포함된다.
- 등록비용 : 조제약품 RM1,000 / 건강보조식품 RM1,000 / 전통약품 RM500
- 실험실 검사 비용 : 조제약품 RM1,200~2,000 / 건강보조식품 RM1,200 ~ 2,000 / 전통약품 RM700
- 보안을 위해 제품등록번호 라벨링에 홀로그램 메디태그(MediTag) 사용으로 변화 중인 추세이다.



●Both overt (visible) and covert (hidden)



▲제품 등록번호 라벨링 홀로그램 메디태그

* 출처: www.pmda.go.jp/files/000204338.pdf

□ GPL(Grading, Packaging, Labelling) Regulation

- 농업품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FAMA(Federal Agricultural Marketing Authority) 기준을 추가로 따라야 한다. 2008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 GPL(등급, 포장, 라벨) 규제로 인해 FAMA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등급지정,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하여 관리할 권한이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전국 수출, 수입, 도소매 업체에 모두 적용되며 쌀을 포함한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 등급지정

- GPL규제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에 생산, 제조 및 유통되는 농산품은 등급 지정이 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프리미엄 등급, 1등급, 그리고 2등급으로 분류된다.
- 등급지정의 목표는 제품의 품질과 신선함을 통일화 및 규격화 하는데 있다.

○ 포장

- 제조 및 수입된 농산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판매가 가능하다.
 - 1) 농산품에 대한 포장된 양이 표기가 되어야한다.
 - 2) 포장된 제품 당 30KG 초과 불가
 - 3) 제품의 포장은 최소한 운송 및 배송중 손상방지 및 위생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 4) 제품 포장은 내용물의 품질을 변화시키는 재료사용을 금지한다.
 - 5) 이미 시장에 유통된 포장을 재사용 할 경우 붙어있던 라벨을 삭제 및 지우고 다시 검증 받아야 한다.

○ 표기 및 라벨링

- 모든 농산품은 라벨링이 되어야 하며 크기는 11cm x 7cm보다 작으면 안되며 명확히 보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 라벨링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수입, 수출, 에이전트, 제조사 혹은 유통업체의 회사명과 주소
 - 2) 농산품에 대한 표준 등급
 - 3) 생산 및 제조국가
 - 4) 농산품의 크기 및 포장된 제품의 무게
- GPL 규제의 목표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시장경쟁력 향상, 등급 표준화를 통한 시장의 투명성 강조, 수출시장의 강화, 해외 수입품에 대한 덤핑 방지 그리고 제조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에 있다.

* 출처 : http://www.fama.gov.my/en/pengenalan_3p#.VAmo1RbkrP0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검역 일반사항

□ 수입식품 검역 절차



□ 품목별 검역 관련 서류

1) 육류(가금육 포함)

- ① 건전한 육류와 가금육 수출 증서(FSIS Form 9060-5)
- ② 할랄 수출 인증서, 수입 허가서(IP)
- ③ 수의서비스국(DVS :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의 허가증
- ④ FSIS양식의 내용 증명서를 FSIS Form 9060-5와 함께 제출

* 수입 육류 및 육류 가공 식품, 유제품,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식품은 입국 즉시 검역 및 검열 서비스(MAQIS)에서 지정한 가축/식품 검열관이 확인 및 임의 샘플링으로 검사하여 반입금지, 파기 및 필요시 보류된다.

* 돼지고기 제품 : '11. 7월부터, DVS에서 수출국의 돼지고기 도축 현장 검열을 시행한다. 오직 DVS에서 검열되고 승인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만 수입 가능하다. 현장 검열을 위하여 해외 도축장은 장소마다 \$1600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모든 검열기간 동안의 여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수산제품

- ①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수입 허가서(IP)
- ② 연방 혹은 도시 건강관리 기관이 발급한 소비 안전에 대한 명세서
- ③ 항생물질 유무에 대한 명세서(새우, 갑각류 및 다른 어류)

3) 식물성 견과류

- ① 식물위생 증명서(PC), 수입 허가서(IP)
- ② 해충검역검사 및 식물위생 규제 준수 인증서

* 식물성 제품은 농업유해식물규제법(수입/수출관련) 1981을 따르며 수입 허가는 농업부 소관이다. 식물성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은 수출국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수입업자는 사전에 공급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제2절 신선농산물 검역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

- 식품 및 육류 제품과 같은 모든 신선 농산물은 말레이시아 내로 반입되기 전에 특정 위생 및 식품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검역 및 검사를 실시한다. 검역 및 검사 실시 결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압수하여 폐기한다.
- 식물, 동물, 뼈, 생선, 농작물, 흙, 미생물 등과 같은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 (MAQIS)가 해충, 질병 및 오염 물질 존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수입 품목이 발급된 수입 면허 혹은 수입 허가서의 내용과 동일한 수입 조건이 보장되도록 한다.
- 수입된 위탁물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 (MAQIS)가 물리적 검사를 실시한다.
 - 수입 제품이 해충, 질병 혹은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수입 물품은 등급이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수입 물품은 사전 처리 및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축산 부류의 수입은 할랄인증이 필요하다.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는 말레이시아 농업청(Department of Agriculture of Malaysia) 산하 기관으로 각 검역소에 수입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배를 검사하고 모든 허가, 면허, 그리고 인증에 관한 사항이 2011 보건부 및 검역서비스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검역 제품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가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 검사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위치해 있는 검역소 혹은 반입장에서 실시된다. 검사 시설의 종류는 검역소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아래 표를 참고한다.

번호	검역소	검사 시설(Animals and Produce)
1	KLIA, 셀랑고르(Selangor)	소, 버팔로, 염소, 양
2	펠라부항 클랑(Pelabuhan Klang), 셀랑고르(Selangor)	소, 버팔로, 염소, 양
3	파당 베사르(Padang Besar)	소, 버팔로, 염소, 양
4	부킷 카유 히탐(Bukit Kayu Hitam)	소, 버팔로, 염소, 양
5	세르당(Serdang)	모든 식물

*출처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

검역 관련 수입요건 및 비용

- 대부분의 식물 및 농산물은 1976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 of 1976) 및 1981 검역규정(Quarantine Regulations of 1981)에 따라 수입 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된다. 본 법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채소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만약 질병 혹은 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검역법에 따라 수입 품목을 규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는 몇

가지 수입 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품목은 말레이시아가 미리 정해 놓은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농산물의 수입 요건 ▣

종류	수입 요건
고무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및 PEQ (반입 후 검역)
야자유, 코코넛 및 야자과	
코코아 및 코코아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는 기타 식물, 붐바카새애 코코아 및 벽오동과 포함)*과	
아프리카 코코아 지역의 모든 나무 종	
파인애플 (Ananascosmosus)	
모든 케레당(Keledang) 종* (Artocarpus)	
차 (Camellia sinensis)	
모든 감귤 종	
모든 커피 종	
모든 콜라사시아(Colocasia) 및 잔토소마(Zanthosoma) 종 (Tato)	
모든 타피오카 종	
고구마	
모든 람부탄 종 (Rambutan)	
모든 담배 종 (Tobacco)	
모든 후추과 (Pepper)	
모든 사탕수수 종 (sugarcane)	
옥수수	
감자	
모든 생강 종	
딸기, 사과, 포도와 같은 기타의 과일 나무	
모든 망고 종	

* 출처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

종류	수입 요건
열대 아메리카 지역의 모든 나무 종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와 SALB 질병이 없는 국가에서 중간 검역 그리고 PEQ (반입 후 검역).
모든 콩 종 (모든 지상 취재 콩류)*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모든 (무사 및 알리드 제네라(Musa and allied genera) (바나나, 플란타인스, 및 마닐라)* 종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및 PEQ (반입 후 검역) - 조직 배양 형태의 상업적 수입만 가능, 배양된 조직 및 수출국의 모실험실에 대한 검역
모든 난초과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및 PEQ (반입 후 검역). - 조직 배양 형태의 상업적 수입만 가능
쌀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및 PEQ (반입 후 검역). - 연구 목적으로만 수입 가능
파파야 (Carica papaya) *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및 PEQ (반입 후 검역). - 조직 배양 형태의 상업적 수입만 가능, 배양된 조직 및 수출국의 모실험실에 대한 검역
फल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조경 수종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채소 씨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꽃 씨	수입 허가, 식물 위생증명서
한 번도 수입된 적 없거나 허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나무	해충 위해 분석 대상, 식물의 반입이 허용된 경우, 혹은 PEQ (반입 후 검역)이 적용되는 경우, 혹은 연구 목적으로만 허가되는 경우, 혹은 상업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경우

*출처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

■ 검역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는 검사 및 검역 대상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아래 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과하는 식물 및 신선 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비용에 대한 사항이다.

번호	농산물 종류	수량	영업일 검사 비용	주말 및 공휴일 검사 비용
1	생 채소	1st 1,000kg	1.00 링깃(RM)	2.00 링깃(RM)
		이후 추가되는 매 1000kg당	0.50 링깃(RM)	1.00 링깃(RM)
2	생 과일	1st 1,000kg	2.00 링깃(RM)	4.00 링깃(RM)
		이후 추가되는 매 1,000kg당	1.00 링깃(RM)	2.00 링깃(RM)
3	케라틴	1st 500 stalks	2.00 링깃(RM)	4.00 링깃(RM)
		이후 추가되는 500 줄기당	1.00 링깃(RM)	2.00 링깃(RM)
4	땅콩	1st 1,000kg	1.00 링깃(RM)	2.00 링깃(RM)
		이후 추가되는 매 1,000kg당	0.50 링깃(RM)	1.00 링깃(RM)
5	코코넛	1st 1,000kg	2.00 링깃(RM)	4.00 링깃(RM)
		이후 추가되는 매 1,000kg당	1.00 링깃(RM)	2.00 링깃(RM)
6	커피 콩	1st 1,000kg	2.00 링깃(RM)	4.00 링깃(RM)
		이후 추가되는 매 1,000kg당	1.00 링깃(RM)	2.00 링깃(RM)
7	사탕수수	1st 1,000kg	1.00 링깃(RM)	2.00 링깃(RM)
		이후 추가되는 매 1,000kg당	0.50 링깃(RM)	1.00 링깃(RM)

* 출처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

1링깃 = 0.23USD

검사 대상 농산물의 중량에 따라 검역 각 단계 별로 비용이 발생된다. 검역소에서 의 보관 비용으로 1000kg당 하루에 25.00링깃이 부과된다. 검역 절차 이후에 수입 허가서 혹은 면허 발급에 대해서도 건당 15.00링깃의 비용이 발생된다.

검역 절차 별 비용은 아래와 같다.

번호	구분	요율
1	감독 절차 : 배송 및 에스코트	1.00 링깃(RM) / kg 시간당 10.00 링깃(RM)
2	보관을 위해 검역소 배송	일당 10.00 링깃(RM)
3	검역 완료 건 폐기	2.00 링깃(RM) / kg
4	냉장 시설 보관	일당 10.00 링깃(RM) /kg

* 출처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

1링깃 = 0.23USD

□ 검역 및 통관 기관

- Malaysian Agriculture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MAQIS)
 - 웹사이트 : www.maqis.gov.my
 - 관련 법 규정
 - The Plant Quarantine Act 1976 (Act 167)
 - The Plant Quarantine Regulations 1981 (amendment 1986)
 - MAQIS Bill 2011
 - Customs Order (Prohibition of Exports) 1998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CITES) Act 2008

제3절 기타 검역관련 제도

□ 흙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특수 규정

- 흙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은 별도로 수입 허가를 획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금지된다. 이는 흙에는 다양한 동물성 및 식물성 해충과 잡초 씨앗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흙에 포함되어 있는 해충에는 박테리아, 식물 바이러스 및 곰팡이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해롭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거리낌없이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 말레이시아 농업청 (DoAM)은 1976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 of 1976) 및 1981 식물검역규정(Plant Quarantine Regulation of 1981)에 따라 수입된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를 발급한다. 수입 허가의 발급 여부는 말레이시아 농업청 (DoAM)이 실시하는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1) 일반 수입

수입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농업청 (DoAM)에 전자적 방법 혹은 우편으로 제출한다. 신청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PQ 8a : 전파 및 연구 목적으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신청서
- PQ 8b : 상업적 혹은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신청서
- PQ 8c : 유익한 미생물/ 생물학적 제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서
- PQ 8d : 토양 배양 혹은 발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서

신청서는 반드시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비 15링깃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조건부 수입

1976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 of 1976), 1981 식물검역규정(Plant Quarantine Regulation of 1981) 그리고 식물검역법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라 흙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신규 수입 식물 및 식물 제품은 말레이시아 농업청(DoAM)이 실시하는 해충위험분석(PRA)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적 없는 새로운 상품
- 기존에 수입을 허용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 새로운 상품 형태
- 기존의 수입 조건이 해당 국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어 기존 수입 정보 개정
- 반입시 규제 항목 혹은 기타 오염물질 검출 -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유예
- 수출 국가에 해충이 확산되었다는 신뢰서 있는 보고서, 해당 수출국에서 수출된 모든 수입품은 즉시 유예

해충위험분석(PRA)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레이시아 농업청(DoAM)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 업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포워딩 업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수출 업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제품/ 상품/ 위탁물 학명/ 식물학상명 (속 및 종)
- 제품/ 상품/ 위탁물 일반 명칭
- 원산국
- 수입 제품/ 상품/ 위탁물 원산지 (농장/ 재배장 혹은 해당 제품/ 위탁물이 생산된 곳의 이름과 주소)
- 수입 제품/ 상품/ 위탁물 형태에 대한 설명(예: 씨앗, 생 과일, 묘목 등).
- 해당 수입 제품/ 상품/ 위탁물이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LMO)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관세 코드 (HS 코드)
- 제품/ 상품/ 위탁물의 명확한 사진
- 제품/ 상품/ 위탁물 포장재 (예: 마대, 비닐 봉지 등)
- 묘목의 길이 (18인치 이하), 가능하다면
- 수입 목적 (예: 소비/ 재배/ 가공/ 동물 사료/ 연구/ 상업적 목적 등)
- 수입량
- 연간 수입 빈도
- 말레이시아 반입 장소
- 운송 수단 (육상/ 해상/ 항공)
- 수입 방법 (화물/ 택배/ 인편)
- 수입 과정 중 수입 제품/ 상품/ 위탁물 보관 방법
- 검역 이후 수입 제품/ 위탁물이 최종적으로 저장된 곳과의 거리/ 포장은 수출국에서 출국지점에서 실시
- 말레이시아 창고/ 저장 장소의 최종 주소 (예: 자유무역지구)
- 말레이시아 농장/ 재배지의 이름과 주소 (재배 목적인 경우)

- 수출 첫 단계에서 최종 단계까지의 흐름도/ 수출 국가의 출국 지점에서 말레이시아의 반입 지점까지
 - 제품/ 상품/ 위탁물이 수출된 국가의원산지(농장/ 재배지/ 식물 공장/ 사업장/ 연구소)
 - 수집 센터
 - 실험 센터
 - 가공 센터
 - 포장 센터
 - 수출 국가에서 검역을 실시하기 전 및 실시한 후 제품/ 상품/ 위탁물의 저장 장소
 - 기타 관련 정보 및 사진을 함께 제출
- 발/ 농장 기록
- 수출 국가에서 제품/ 상품/ 위탁물에 대해 실시된 처리의 유형
- 수출 국가의 출국 지점을 통과한 수출 날짜부터 말레이시아의 반입 지점에 도착한 반입 날짜까지의 기간(날의 수)
- 원산지 증명서 (C/O)
- 수출 국가의 국립식물 검역소(NPPO)가 발급한 식물 위생증명서 (PC) 사본, 학/ 식물학명
- 경유 (다음 도착 국가를 명시)
- 재수출 (다음 도착 국가를 명시)
- 수입 국가 (말레이시아 외)

해충위험분석(PRA)을 국제식물위생조치기준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ISPMs)의 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해충위험분석(PRA)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사용하여 제품과 관련된 해충을 범주화 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유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유입 가능성에 의한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엄격한 평가
- 유입의 의한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엄격한 평가
-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완화 방법 상세화

제3장 관세제도

□ 관세제도 일반

- 말레이시아 관세청 (RMC)은 관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말레이시아로 유입 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가 정한 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말레이시아 관세청 (RMC)은 간접세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 마약이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관세청 (RMC)은 1967년 관세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식품 수입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 말레이시아 관세청 (RMC)은 1988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개발하여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HS코드 즉,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거래되는 제품의 명칭과 이름을 표준화해 제공하고 있다.
- 이 시스템 하에서, 관세청은 HS 분류를 기반으로 관세 목록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오리’는 HS 코드 상에 010513번으로 분류되며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 세계 200개 관세청들이 010513번을 ‘오리’로 인식한다. 신선 농산물은 “식물 및 동물”로 분류되며 말레이시아 관세청 (RMC) 및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 (MAQIS)가 검역을 실시한다.
- 식품 수입에 관한 사항은 말레이시아 보건부(Malaysian Ministry of Health)가 관리하며 식품의 수입과 관련된 요건을 규제하기 위해 보건부 산하에 식품안전품질부 (FSQD)를 설치하고 있다.
- 수입 제품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다수의 국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 기관들은 알코올 음료, 동물 식품, 건강 식품, 의약품, 육류, 채소 및 가금류 수입 관련 허가 및 면허를 제공한다.

- 수입 업체들은 수입 제품에 대하여 수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수입 업체들은 스스로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기관을 통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통관 수속 서식
 - 반입 권리에 대한 증거, 예: 선하 증권
 - 상업 송장 또는 견적 송장(상업 송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포장 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 등과 같은 상품의 반입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서류
- 수입 제품 규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수단은 관세로, 일반적으로 관세는 0% ~ 50% 사이에 적용된다. 관세는 종가 운임(AV rate)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제품의 과세 가격에 대해 백분율(%)로 적용된다. 그러나, 원료, 기계, 주요 식량, 식료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 되더라도 극히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 * 말레이시아 관세 정보 사이트 : <http://tariff.customs.gov.my/>
- 2003년, 아세안(ASEAN)-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2006년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사이에 상품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 수입 절차 진행을 위해 요구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식품 수출 업체들은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 상에 수출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로 수입되어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건부 산하에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원산지로 반송될 수 있다.

□ 수산물 수입 관세

- 말레이시아, 한-ASEAN FTA 협정 관세적용으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철폐
- 말레이시아의 수산물(Fish & fish products) 양허 관세율은 7.7% 수준이나, MFN 실행 세율은 0.7% 수준임
 - MFN 기준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0%인 가운데, 일부 가공품의 경우 5~15%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한편 한국산 수산물의 경우 한-ASEAN FTA 협정 관세적용으로 모든 품목의 수입 관세가 철폐됨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 일반 사항

- 식품안전 프로그램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입 식품의 포장과 라벨링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되기 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라벨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는 1983 식품법 및 규정에 따른 디자인과 라벨 내용이 포함된다. 가공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이름과 식품에 대한 설명
- 원료 목록
- 영양 정보
- 식품 첨가제 명시
- 중량
- 유통 기한
- 제조 업체 및 수입 업체 연락처
- 원산지

□ 사용 언어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제조 혹은 포장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수입 식품의 경우 말레이시아어 혹은 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라벨링에 관한 상세 사항

- 식품에 대한 적절한 명칭 혹은 주 원료의 일반적인 이름을 포함하는 식품 설명. ‘적

절한 명칭(appropriate designation)'은 이름 또는 설명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포괄적 이름 혹은 설명일 수 없으며, 잠재 고객들이 해당 식품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벨의 글자는 눈에 띄어야 하며, 시각성을 강조하고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내용과 비교해 더 눈에 띄어야 한다.

- 혼합 식품의 경우, 경우에 따라 혼합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러한 단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품의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 '혼합' (식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 삽입)
 - '혼합된' (식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 삽입)
 - 단 '혼합' 이나 '혼합된' 이라는 단어는 본 규정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혼합 제품의 적절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소고기 혹은 돈육 혹은 그러한 육류의 파생품 또는 비계를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그러한 소고기 혹은 돈육 혹은 그러한 육류의 파생품 또는 비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한다.
 - “포함 (소고기 혹은 돈육 혹은 그러한 육류의 파생품 또는 비계)”
 - 혹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다른 단어
-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의 경우, 선(serif)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문자 굵은 글씨로 그리고 6 포인트 이상 크기의 글씨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 '알콜 포함'
 - 혹은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진 단어. 이와 같은 설명은 식품의 적절한 명칭 바로 아래 기재되어야 한다.
- 물, 식품 첨가제 그리고 영양 보조제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그러한 각각의 구성 요소의 적절한 명칭을 중량의 큰 순서별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구성 요소의 백분율을 함께 표기한다.
- 식품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그러한 식품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소 혹은 향미료의 경우, 일반적인 이름으로 표기하거나 혹은 식품 첨가제의 화학명이 포함되어 있는 적절한 명칭으로 표기되는 경우에만 해당 첨가제를 포함하는 것이 허용된다(해당 식품 첨가제의 종류 표기). 최소 순 중량, 부피 또는 내용물의

수를 포장에 표기; 액체 식품인 경우, 해당 식품의 최소 고형량 표기

- 수입 식품의 경우, 제조 업체, 포장 업체, 제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혹은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말레이시아 수입 업체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식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단 이와 관련해, 전보 주소, 코드 주소, 우체국 사서함 주소 혹은 뚜껑이나 밀봉 장치에 표기되어 있는 제조 업체, 포장 업체, 수입 업체 혹은 판매처의 상표는 충분하지 않다.
- 위 5, 6, 7 번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은 4 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제2절 라벨링 형태와 방법

□ 라벨링 형태와 방법

- 위에 요구되는 사항들은 라벨에 뚜렷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 라벨에 표시되는 사항은 10 포인트 이상 크기의 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포장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장에 나타나 있는 다른 것과 동일하게 눈에 띄어야 한다.
- 모든 라벨은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 있게 포장지에 표시되거나 혹은 포장지에 영구적으로 강력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포장이 투명한 재질인 경우 라벨이 안쪽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다. 포장에 담아 있는 음식은 직접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직접 소비되는 경우 원래의 껍질 혹은 내부 포장재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라벨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라벨은 추가적인 포장 위에 덧붙여 있어야 한다.
-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도량형의 기호를 제외하고, 라벨에 표기되는 모든 글자 혹은 표시는 대문자로 작성해야 하거나 혹은 글자의 높이를 모두 소문자로 한다. 혹은 모든 글자가 균일하거나 소문자로 적어야 하는 글자의 경우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 제품의 포장이 작아서 글자 크기 요건에 부합되는 크기의 글자로 라벨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작은 글씨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 크기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로

큰 글자로 라벨을 작성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글자 크기가 2 포인트보다 작을 수는 없다.

- 모든 글자는 배경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날짜 표기

- 식품 포장과 관련해, 날짜를 영구적으로 표기하거나 포장이나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에 새겨야 한다. 혹은 경우에 따라 유통 기한이나 최소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기한다.
- 추가적인 규정으로, ‘유통 기한’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권장하는 저장 방법을 준수해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유통 기한이 경과했을 때에는 제품의 품질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최소 사용 가능한 기간’은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권장하는 저장 방법을 준수해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유통 기한이 경과했을 때에는 제품의 특정한 품질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와 같은 표기는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품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코드 형태의 날짜 표기는 날짜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 판매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 혹은 제품의 다른 곳에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날짜를 표기하거나 새겨야 한다.
 - “EXPIRY DATE” or “EXP DATE” (날짜를 ‘날, 월, 연’ 순으로 혹은 월과 년을 표기한다)
 - “USE BY” (날짜를 ‘날, 월, 연’ 순으로 혹은 월과 년을 표기한다)
 - “CONSUME BY” 또는 “CONS BY” (날짜를 ‘날, 월, 연’ 순으로 혹은 월과 년을 표기한다)
 - 식품에 따라서 최소 사용 가능 기한을 “BEST BEFORE” 또는 “BEST BEF”으로 표기한다. (날짜를 ‘날, 월, 연’ 순으로 혹은 월과 년을 표기한다)
- 본 규정에 적용되는 식품 표기 일자의 유효성은 저장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라벨에 반드시 권장하는 저장 방법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 날짜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누구도 아래의 식품을 제조, 판매, 광고를 할 수 없다.

□ 날짜 표기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식품

- 비스킷, 빵
- 유아 및 어린이용 통조림 음식, 시리얼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밀크 코코아, 그리고 건조 코코넛
- 코코넛 크림, 코코넛 밀크, 코코넛 페이스트, 그리고 코코넛 크림 파우더,
- 밀폐 용기에 포장된 마가린 이외의 식용 지방, 식용 기름
- 유통기한 18개월 이하에 해당되는 식품 첨가제
- 영아용 분유
- 액체 계란, 액체 계란 노른자, 액체 계란 흰자, 건조 계란, 건조 계란 노른자, 그리고 건조 계란 흰자
- 날짜 표기를 요하는 식품의 저에너지 형태
- 밀폐 용기에 포장되어 있지 않는 육류
- 딱딱한 치즈 이외의 우유 혹은 유제품
- 비탄산 청량음료 및 비탄산 초고온살균(U.H.T) 청량음료
- 영양 보조제 혹은 식품으로 판매되는 영양 보조제
- 저온 살균된 과일 주스
- 저온 살균된 채소 주스
- 땅콩 버터
- 소스
- 세리 카야(Seri kaya)⁹⁾
- 특수 목적 식품

9)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주로 먹는 코코넛 잼으로 빵과 함께 먹는다.

- 특정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혹은 특정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 그러한 물질이 규정에 따라 특정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
 - 소비자들이 식품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물질인 경우
 - 해당 식품에 동일한 특성을 부여하는 다른 대체 물질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물질의 특성을 동일하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기한 경우 제외
- 특정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혹은 특정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시는 영양에 관계된 사항으로 영양소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영양 표시에 관한 규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영양소 함량 표기
 - 영양소 비교 표기
 - 영양소 기능 표기, 그리고
 - 농축, 강화 및 기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표기

제3절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 영양소 표기에 관한 특정 요건

- 1) 본 규정에서 식품 포장과 관련된 영양소 표기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2) 다음 식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양소 표기를 해야 한다.
 - 시리얼 식품
 - 다양한 종류의 빵
 - 다양한 우유 및 분유, 이에는 가당 연유, 무가당 연유 및 발효유
 - 통조림 육류
 - 통조림 생선
 - 통조림 채소

- 통조림 과일 및 다양한 통조림 과일 주스
 - 샐러드 드레싱 및 마요네즈
 - 다양한 종류의 청량 음료, 이에는 식물성 음료, 두유 및 콩으로 만든 음료
- 3) 위 2)번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의 라벨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열량, 이는 킬로칼로리(kcal) 혹은 킬로줄(KJ)로 표기해야 하며, 포장의 일 인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00g 혹은 100 ml당 열량으로 표기하거나 여러 번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된 경우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표기한다.
 - 단백질, 탄소화물(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소화물) 및 지방의 경우 포장의 일 인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00g 혹은 100 ml당 열량으로 표기하거나 여러 번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된 경우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표기한다.
- 4)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음료의 경우 라벨에 총 설탕 함량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 탄소화물 ...g
 - 총 당류 ...g
- 5) 지방산 표기와 관련해, 포화 지방, 단일 불포화 지방, 다가 불포화 지방 및 트랜스 지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 지방g
 - ~의 함유
 - 단일 불포화 지방g
 - 다가 불포화 지방g
 - 포화 지방g
 - 트랜스 지방....g.
- 6) 표기되는 에너지의 양은 다음과 같은 변환 계수를 이용해 계산해야 한다
- 당질 4kcal/g (17 kJ)
 - 단백질 4kcal/g (17 kJ)
 - 지방 9kcal/g (37 kJ)
 - 알코올 (에탄올) 7kcal/g (29 kJ)
 - 유기산 3kcal/g (13 kJ)

- 식이 섬유 2kcal/g (8.5kJ)

7) 표기되는 단백질의 양은 다음과 같은 변환 계수를 이용해 계산해야 한다

$$\text{단백질} = \text{총 켈달 질소(Kjeldahl Nitrogen)} \times \text{식품별 변환 계수}$$

8) 위 7)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품 별 변환 계수는 아래와 같다

식품	변환 계수
통밀, 밀가루, 말린 밀	5.83
밀가루, 중수율 혹은 저수율	5.70
마카로니, 스파게티, 밀 파스타	5.70
겨	6.31
쌀	5.95
호밀, 보리, 귀리	5.83
땅콩	5.46
콩, 씨앗, 밀가루, 혹은 제품	6.25
아몬드	5.18
브라질 너트	5.71
코코넛, 캐슈넛, 견과류	5.3
우유 및 유제품	6.38
깨, 홍화, 해바라기	5.3
마가린, 버터	6.38
기타 식품	6.25
통밀, 밀가루, 말린 밀	5.83
밀가루, 중수율 혹은 저수율	5.70

9) 본 규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 영양소기준치(NRV)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및 미네랄만 기재하며, 영양소 기준치(NRV)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비타민 및 미네랄의 경우 청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영양 기준치(NRV)의 5% 이상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및 미네랄만 기재한다.

- 10) 비타민 및 미네랄에 대한 숫자 정보는 100g 혹은 100ml 당 함양 혹은 일 인분 기준으로 포장된 경우 한 팩 기준으로 표기한다; 또한, 이는 영양 기준치(NRV)에 대한 백분율(%)을 100g 혹은 100ml 당 함양 혹은 일 인분 기준으로 포장된 경우 한 팩 기준으로 표기할 수 있다.
- 11) 영양 기준치(NRV)에 대한 백분율(%)로 표기된 비타민 및 미네랄에 대한 숫자 정보는 라벨링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Ⅱ 영양 기준치(NRV) Ⅱ

비타민	값
비타민 A (ug)	800
비타민 D (ug)	5
비타민 C (ug)	60
비타민 E (ug)	10
티아민 (mg)	1.4
리보플라빈 (mg)	1.6
니아신 (mg)	18
비타민 B6 (mg)	2
엽산 (ug)	200
비타민 B12 (ug)	1
칼슘 (mg)	800
마그네슘 (mg)	300
철분 (mg)	14
아연 (mg)	15
요오드 (ug)	150

- 12) 식품 포장에 부착되는 라벨에 콜레스테롤 혹은 식이섬유의 함양을 표기하는 경우, 콜레스테롤의 함양은 100g 혹은 100ml 당 함유되어 있는 양을 mg으로 표기하거나 일 인분씩 포장된 경우 한 팩 당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mg으로 표기한다. 식이섬유의 경우 100g 혹은 100ml 당 함유되어 있는 양을 g으로 표기하

- 거나 일 인분씩 포장된 경우 한 팩 당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g으로 표기한다
- 13) 위의 2번에 기재되어 있는 식품 이외의 식품의 영양소 라벨의 경우 위 3번을 적용한다.
 - 14) 식품의 영양소를 표기할 때에 위 3번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소 라벨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또한 영양소로 표기되어 있는 다른 영양소의 양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5장 부적합 사례

□ 반입 거부 사례

○ 신선농산물

- 반입이 거부되는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은 관련 법규 위반이나 오염된 경우에 해당된다. 반입 거부의 경우 이에 대한 실행은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가 진행한다.
- 검역 절차는 해당 건의 말레이시아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만약 특정 선적 건에서 위해한 미생물 혹은 박테리아가 발생된다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추가적인 검사가 실시될 때까지 해당 건의 반입을 제한한다.
- 2015년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는 미국산 갈라(Gala) 사과 및 그라니 스미스(Granny Smith) 사과에 대해 반입을 제한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사과들의 리스테리아 박테리아(Listeriosis bacteria) 오염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다.

○ 가공식품

- 가공식품의 반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입 문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위해한 박테리아 혹은 미생물이 발견된 경우 또는 할랄 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 만약 타 국가의 당국에 의해 제품이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도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증명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한다. 2014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식품업체 동원의 양반 브랜드 전복죽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캐나다 식품 검역 당국이 해당 제품이 유해한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에 오염되었다고 발표한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보툴리누스균은 흙이나 오염된 식품에 발견되는 균이다. 보툴리누스균이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인체에 위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보툴리누스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독 증상으로는 구토, 혈액으로, 현기증, 시력 감퇴, 구강 건조, 호흡 부전 및 마비

등이 있다. 캐나다 및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작년 캐나다 보건 당국의 이와 같은 발표가 있는 이후 동원의 해당 제품을 전량 철수시켰다.

제6장 수출현안

□ 유제품 수출여건

- 한국산 유제품 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유제품 검역협정 체결
 - 2014년 9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한국산 유제품 수출 검역·위생협의를 시작하여 2015년 6월 22일 검역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한국산 유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길이 열렸음
 - 한국산 유제품 수출조건
 - 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할랄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 농업부 수의국(DVS)에 제조업체로 등록하면 수출이 가능
 - 단, 구제역 미발생 농장에서 출하한 원유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함
- * 현재 말레이시아 수의국에 등록된 업체 및 유제품은 A사 멸균유 9종, B사 바나나 맛 우유 3종임

■ 말레이시아 수의국 유제품 수출업체 등록현황 ■

국가명	등록업체수	등록유형	국가명	등록업체수	등록유형
중국	1	연유	독일	1	분유
인도	2	버터	케냐	1	낙타유
인도네시아	3	연유, 치즈, 우유, 가공유	태국	3	조제분유, 우유, 아이스크림
이란	1	우유, 치즈, 발효유, 크림	UAE	2	우유, 아이스크림, 낙타유
우루과이	1	치즈, 가공치즈	한국	2	우유, 가공우유, 아이스크림

- 말레이시아 유제품 쿼터 운영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유제품 중에서 TRQ품목은 HS코드 0401에 한해서 운영

- 품목분류(HS 코드) : 0401
 -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
 - ▶ WTO 일반협정 관세 : 20%(In Quouta), 50%(Out Quouta)
 - ▶ 한-아세안 FTA협정 관세 : 0%(In Quouta), 50%(Out Quouta)
- 쿼터 운영 현황
 - ▶ 배정기관 : 농업부 수의국
 - ▶ 배정절차 : 제조업체 등록(수출업체) → 쿼터신청(수입업체) → 쿼터배정(농업부 수의국)
 - ▶ 배정기준
 - 국가별 연간 수입 쿼터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쿼터 신청업체 기준으로 배정
 - * 신규 쿼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5만 리터 부여

○ 최근 3개년 유제품 쿼터현황

- 2015년

HS CODE	구 분	단위	저율 관세율 (%)	고율 관세율 (%)	쿼터량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0401.10 100	지방함유량 1% 미만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1,087,019 사바주 : 300,000 사라왁주 : 420,000
0401.20 100	지방함유량 1~6%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3,777,311 사바주 : 500,000 사라왁주 : 735,707
0401.40 110	지방함유량 6~10%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1,092,436 사바주 : 1,010,000

- 2014년

HS CODE	구 분	단 위	저율 관세율 (%)	고율 관세율 (%)	쿼터량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0401.10 110	지방함유량 1% 미만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1,069,128 사바주 : 300,000 사라왁주 : 420,000
0401.20 110	지방함유량 1~6%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3,727,677 사바주 : 500,000 사라왁주 : 735,707
0401.40 110	지방함유량 6~10%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1,071,620 사바주 : 1,010,000

- 2013년

HS CODE	구 분	단 위	저율 관세율 (%)	고율 관세율 (%)	쿼터량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0401.10 110	지방함유량 1% 미만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1,051,010 사바주 : 300,000 사라왁주 : 420,404
0401.20 110	지방함유량 1~6%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3,678,535 사바주 : 500,000 사라왁주 : 735,707
0401.30 110	지방함유량 6% 이상 -액상형태	Liter	20	50	서말레이시아 : 1,051,010 사바주 : 1,010,000



부록 :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ST)

□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 GST)란?

-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인 상품서비스세를 도입하였다.
- 상품 서비스세(Goods and Sales Tax, GST)는 국내 소비에 대한 단계별 세금이다. GST는 특별히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과세 가능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과 서비스에도 GST가 부과된다.
- 세금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중간업자들에 의해 단계별로 납부된다. GST는 생산 및 유통 사슬 전체에 걸쳐 납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GST 그 자체로는 중간업자들의 비용이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재무제표에도 비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 말레이시아에서 상품 서비스세에 따라 등록된 자는 “등록인(registered person)”이라 한다. 등록인은 자신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과세 가능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비롯된 GST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각 단계에서 더해진 부가가치에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s Tax, GST) 개요

- '15년 4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 상품서비스세가 도입되어 기존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대체하였다.
- 표준 세율은 6%이나 의료 서비스, 항공운임, 쌀, 소금, 커피, 육류, 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면세가 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된다.

○ '15년 4월 이전 적용 조세방법

- 서비스세 : 과세자가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부과된다. 과세 서비스의 예로는 호텔 운영, 식당 운영, 주점 및 커피숍 운영, 보험사 운영, 통신사 운영, 자문 및 전문 기업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세율은 6%이다.
- 판매세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거나 국내 소비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과세 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수출품은 제외된다. 기존 판매세율은 5~10% 사이이다.

□ GST 과세의무 대상

- 과세 가능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연간 50만 RM을 초과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등록인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 매출이 50만 RM 이하인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선택할 수 있다.
- 등록 업체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때, 등록 업체에 의해 GST가 부과, 징수된다. 부과된 GST는 매출세액이라 한다. 비등록 소매업체는 자신이 공급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할 수 없다.

□ 일반 소매업체의 GST

- 표준세율 상품에 부과되는 GST 6%

항 목	비 용
상품 가치	RM 100.00
6% GST	RM 6.00
합 계	RM 106.00

○ 매출세액

- 등록 소매업체는 자신이 공급하는 모든 과세 가능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21일 이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공급일로 본다.
- 등록 소매업체는 세금계산서 대신 고객에게 간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고

객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소매업체는 공급상품에 대해 그러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영세율 또는 면세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등록 소매업체가 상품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즉, 표준세율 상품과 면세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표준세율 공급품에 부과되는 GST가 표시되어야 하며 면세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상품 및 면세품에 대해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 매입세액

- 등록 소매업체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이 6%의 GST를 포함하여 106.00 RM이라 가정할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6링깃을 매입세액이라 한다.
- 취득에서 비롯된 매입세액 환급 청구를 위해, 등록 소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취득물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등록 소매업체는 상품을 수령하였거나 지불을 이미 한 경우라 할지라도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록 소매업체가 간편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는 경우, 각각의 간편 세금계산서에 대해 최대 30.00 RM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청구가 가능하다.
- 등록 소매업체는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GST 03)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모두를 기록하여야 한다.
- 매입세액 청구 시, 등록인은 지불한 매입세액을 부과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의 합이 매입세액의 합보다 큰 경우 정부에 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입세액의 합이 매출세액의 합보다 큰 경우에는 정부에서 등록 소매업체에 그 차액을 환급한다.
-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거나 공급한 상품을 반품한 경우, 등록 소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공급업체에 차변표 또는 신용전표를 요청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대한 자신의 GST 환급(GST 03) 양식에 필요한 조정을 가해야 한다.

□ 표준과세 대상 품목의 단계별 GST 계산 및 예시



- 각 단계별 6% 표준과세 적용 후 환급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원리
- GST 계산 예시

Level of supply	Sales price (including GST at 6%)	Payment to Government
Raw material supplier	Sales price = RM50.00 GST = RM3.00 Total sales price = RM53.00	GST collection = RM3.00 Less: GST paid = RM0.00 GST payable = RM3.00
Manufacturer	Sales price = RM100.00 GST = RM6.00 Total sales price = RM106.00	GST collection = RM6.00 Less: GST paid = RM3.00 GST payable = RM3.00
Wholesaler	Sales price = RM125.00 GST = RM7.50 Total sales price = RM132.50	GST collection = RM7.50 Less: GST paid = RM6.00 GST payable = RM1.50
Retailer	Sales price = RM156.00 GST = RM9.36 Total sales price = RM165.36	GST collection = RM9.36 Less: GST paid = RM7.50 GST payable = RM1.86

- 원재료 공급자 : 50링깃 제품 53링깃(GST 6%포함)에 판매하여 3링깃 매출세액 발생

* 3링깃(매출세액) 세금 납부

- 제조사 : 완제품을 판매가 100링깃에 GST 6% 적용 후 106링깃에 판매
 * 3링깃 세금 납부 = [6링깃(매출세액) - 3링깃(매입세액)]
- 도매업자 :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마진 추가하여 125링깃에 GST 6% 적용 후 132.5링깃에 판매
 * 1.5링깃 세금 납부 = [7.5링깃(매출세액) - 6링깃(매입세액)]
- 소매업자 :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마진 추가하여 156링깃에 GST 6% 적용 후 165.36링깃에 판매
 * 1.86링깃 세금 납부 = [9.36링깃(매출세액) - 7.5링깃(매입세액)]
- 최종적으로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 165.36링깃 중 9.36링깃은 모두 소비자가 지불 하였으며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GST는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음
 <출처 : 말레이시아 세관 상품서비스세(GST) 공식 홈페이지>

Ⅰ 영세율 적용품목(식품) Ⅰ

No	품 목(식품만 발체)
1	소, 돼지, 양, 염소 등을 포함한 축산물
2	가축의 부산물 등을 포함한 신선 및 냉동 고기
3	살아있는 가금류와 오리
4	가금류와 오리의 부산물 및 신선/냉동 고기
5	닭과 오리의 알(신선 또는 소금에 절인 것)
6	활어, 신선, 냉장, 냉동 등 모든 종류의 생선(장식용 제외)
7	갑각류(게, 새우), 연체동물(굴, 홍합, 오징어, 달팽이), 해삼, 해파리 등의 수산생물
8	멸치를 포함한 말리고, 소금에 절인 생선(훈제 생선 제외)
9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콩류, 아스파라거스, 버섯, 호박, 감자 등의 야채
10	현지 생산 또는 수입산 신선 과일
11	타마린드, 건조 고추,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생강 등의 허브 또는 향신료
12	코코넛(같은 것 포함)
13	찹쌀, 현미 등을 포함한 벼와 쌀
14	밀가루, 향유가루, 쌀가루, 사교야자가루
15	렌즈 콩
16	캐스터 설탕, 일반 및 미세 포함 설탕 과립
17	소금
18	팜, 코코넛, 땅콩 식용유
19	새우소스, 생선소스, 새우페이스트
20	커피, 차, 코코아 가루
21	쌀 버미첼리, 쌀 국수, 노란색 국수, 평면 쌀 국수
22	화이트/통밀 빵
23	아기 분유(0~36개월)

출처 : P.U. (A) 272 Goods and Services Tax (Zero-Rated Supply) Order 2014

* 영세율 적용 서비스 및 면세 품목/서비스는 식품과 관련 없어 제외, 아래의 사이트 참조
 - <http://gstmalaysiainfo.com/gst-list-zero-rated-exempted-relief/#Exempt-Goods>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필리핀

제1장 식품법

제2장 수입규제

제3장 원산지 표시

제4장 가공식품 안전관리

제5장 식품 라벨링

제1장 식품법

□ 식품법

- 필리핀의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두 기관은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국(BFAD, Bureau of Food and Drugs)과 농무부의 농수산물 기준국(BAFPS, Bureau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 Standards)이다. 식품의약 및 화장품 법(The 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 따라 식품의약국은 가공식품의 안전에 책임이 있고 농수산업 현대화법(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Modernization Act)에 따라 농수산물 기준국은 청과를 비롯한 일차 농수산물 업무를 담당한다.

□ 식품의약 및 화장품 법

- 1963년, 대중이 소비하는 식품, 약품 및 화장품의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필리핀 공화국법 3720호(RA 3720), 즉 식품의약 및 화장품 법이 제정되었다. 식품법에 따라 식품의약청(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FDA)이 보건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이후 행정명령 175호(EO 175)에 의해 식품의약청이 식품의약국으로 개명되었다.
- 식품의약국의 주요 기능은 가공식품 및 의약품, 진단시약, 의료장비, 화장품, 가정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안전, 효능, 위생, 품질을 보장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식품의약국은 가공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통제를 관장하는데,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크게 우려 되는 문제는 식품의 부정 불량 및 라벨링 오류이다. 또한 합법적인 통관항에서 수입 식품을 감독할 책임도 있다.

□ 농수산물 현대화법

- 농무부 산하 농수산업 기준국은 공화국법 8435호, 즉 농수산업 현대화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되었다. 농수산업 기준국의 주요 임무는 농수산물 처리 및 보존, 포장, 라벨링, 수입, 수출, 유통, 일차 농수산물 광고에 대한 기준 제정 및 집행이다. 또한 식품안전, 무역기준 및 직업규약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필리핀의 기준 및 관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관행에 맞추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 농수산업 기준국은 국제식품규격을 위한 국가 문의처(National Enquiry Point for Codex Alimentarius) 및 기타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제 기관으로서 활동한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동태를 모니터하고 정보를 전파할 책임도 있다.

□ 규제기관

- 필리핀에는 다양한 규제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기관은 식육검사, 바이오 안전성 등과 같은 특정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수입 농식품의 안전을 감시하는 주요 규제기관에는 축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수산업 및 해양자원국(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BFAR), 작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등이 있다. 이 모든 기관은 농무부의 관할 하에 있다.
- 공화국법 3639호(RA 3639)에 의해 축산업국이 세워졌으며 축산업국은 가축 및 가금류, 육가공품, 유제품, 동물 사료,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라벨링, 광고, 유통, 판매에 관한 품질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필리핀 국내 가축 및 육류의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축산 전염병을 예방, 통제, 억제, 퇴치할 책임도 있다.
- 대통령령 7호(PD 7)에 의해 국가 식육검사 위원회(National Meat Inspection Commission)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통해 수입된 가축, 육류, 육가공품의 생산 이후 유통흐름을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도살장 및 육류 거래업체의 운영을 감독하고 육류거래와 관련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 식육검사위원회의 육류 수입/수출 서비스(Meat Import/Export Services)는 수입 및 수출되는 육류와 육가공품이 용인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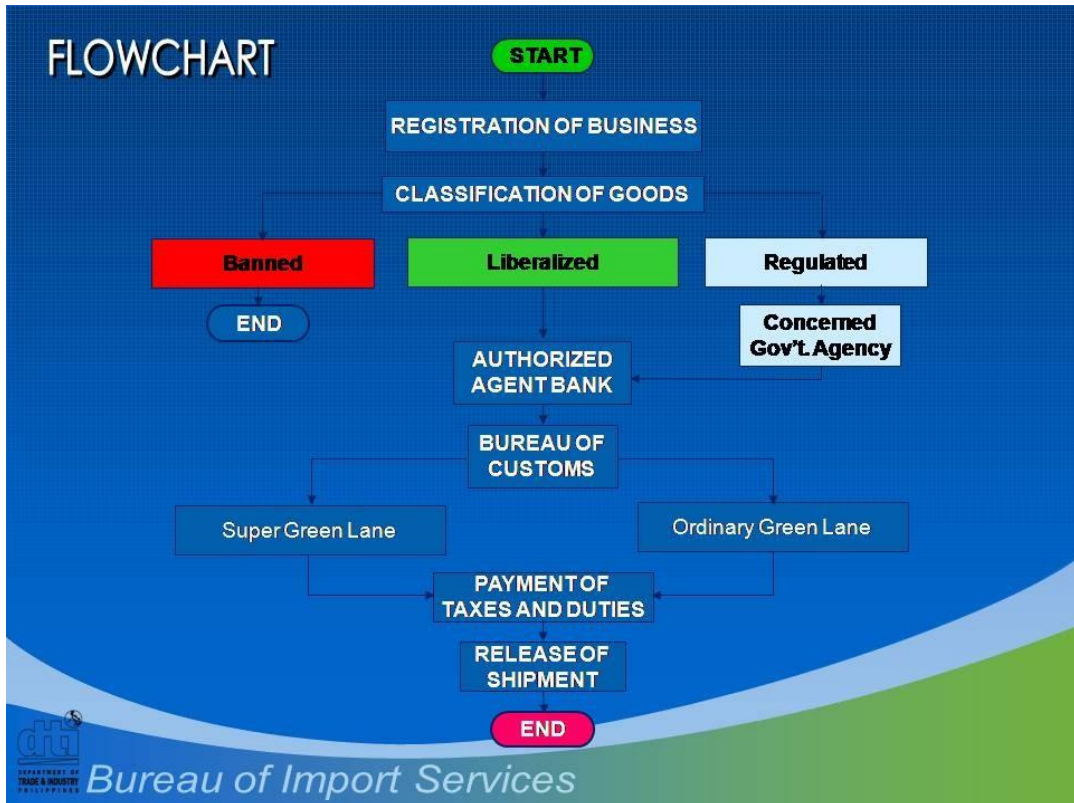
- 2004년 6월, 공화국법 9296호(RA 9296), 즉, 국립 식육검사규정(National Meat Inspection Code)가 법제화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행 규칙 및 규제(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가 2005년 10월에 마련되었다. 국립 식육검사 규정의 일부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인계하는 이 법은 필리핀의 식육검사법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필리핀 육가공업이 세계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식육검사규정은 국립식육검사 서비스(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NMIS)로 공식 개명되었다.
- 축산업국은 가축과 육류 수입 둘 다에 관할권이 있고, 국립식육검사서비스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생육 및 냉장, 냉동육 및 가공육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공화국법, 대통령령, 행정명령 등의 여러 단계의 법률을 거쳐 설립된 작물산업국의 일차 기능은 연구 및 개발, 작물 생산 및 보호, 효율적인 기술 개발 및 전파 촉진이다.
- 대통령령 1433호(PD 1433)인 작물검역법(Plant Quarantine Law)에 의해 농무부는 작물 산업국을 통해 과일과 채소같이 수입되거나 수출 가능한 작물상품에 대해 검사, 인증, 처리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또한 대통령령 1433호는 작물, 작물 가공 상품 및 규제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작물 산업국이 국내로의 외국 해충 반입을 예방하고, 기존의 해충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며 식물위생조치를 집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대통령령 704호(PD 704)에 의해 수산업 및 해양자원국은 생선 및 기타 수산물을 통제할 행정책임을 가진다. 수산업 및 해양자원국의 수확 후 관리 기술부(Fisheries Post Harvest Technology Division, FPHTD)는 제품통관 인증(예를 들어 수입허가) 및 생선 및 수산물의 수입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발행한다.



제2장 수입규제

□ 수입규제

- 수입된 모든 식품 및 농산품은 필리핀의 식품건강 및 식물 위생조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안녕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식품 및 농산품은 필리핀에 반입될 수 없다.
- 필리핀으로 반입되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및 농산품은 이들이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고 의도된 소비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재 국가적인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식품 규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미국식 약칭이나 다른 국가의 규제기관의 규제내용과 비슷하게 마련되어 있다.
- 수입 농산물 및 식품에 적용되는 보건 및 식물검역 관련 규제 및 절차와 크게 비슷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도 적용된다. 필리핀 수입법에 따라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필리핀 보건 및 식물검역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수입업자의 책임이다. 집행기관은 상품 및 관련 수출입 서류를 조사하여 규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이 필리핀으로 반입되어도 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 상품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상품은 반출전에 처리되기를 요구 받거나 통관이 거부되고 폐기처리 혹은 필리핀 국외로 재반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필리핀으로 운송되기 전에 규정 준수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식품 등록을 위한 요구사항들이다.

〈항목 1〉

- ①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작성한 등록 신청서
- ② 타이핑되고 공증받은 이행각서 (Accomplished Affidavit of Undertaking)
- ③ 상품 분류에 따라 작성된 상품목록 3부

- ④ 수입 식품의 공급자/공급원명이 적힌 유효한 사업허가증(식품 의약국 발행)
- ⑤ 판매 영수증 사본
- ⑥ 각 상품별 판매 상태의 상품 샘플 및 식품규격 라벨링 규제와 식품 의약국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라벨 사본
- ⑦ 상품 샘플 대신 각 상품의 컬러사진 제출 가능
- ⑧ 수입업자명과 주소가 라벨에 없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있어야 함
- ⑨ 상품당 등록비용 200 페소

〈항목 Ⅱ〉

- ①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작성한 등록 신청서
- ② 수입/유통업자의 유효한 사업허가증(식품 의약국 발행)
- ③ 상품 정보
- ④ 원료 목록(함량이 큰 순서대로), 첨가량이 제한된 첨가물의 경우 첨가량이 표기되어야 함
- ⑤ 최종상품에 대한 설명 (생리화학적 및 미생물적 설명)
- ⑥ 실험 분석을 위한 판매 상태의 상품 샘플
- ⑦ 상품에 사용되는 개별 라벨 및 라벨링 소재
- ⑧ 추정되는 유통기한 및 유통기한을 정하는데 사용된 계수 및 방식

제1절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 필리핀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명국이며 쌀을 제외한 식품 수입에 대한 양적제한을 폐지했다.
- 옥수수, 가금육, 돼지고기, 설탕, 커피 등과 같은 일부 민감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율 할당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 수입량(Minimum Access Volumes, MAV)이 정해져 있다.
- 필리핀은 2002년 쌀 시장을 개방하며 민간부분, 특히 무역업자의 쌀 수입을 허용했다. 이전에는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만이 쌀을 수입할 수 있었다. 농민들은 쌀을 수입 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울 수도 없긴 하지만, 국립식품청은 작년, 농민도 쌀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입주체를 확대하였다. 민간부분 쌀 수입업자는 관세율 할당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이들의 수입 허가증은 국립식품청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국립식품청의 쌀 수입은 주로 국내 쌀 재고량을 완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관세로 수입된다. 필리핀은 쌀에 대한 자국의 양적 제한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WTO 국가들과의 협상을 마쳤다.
- 수입 허가증의 기능을 하는 검역서는 청과 및 야채, 그리고 육류 및 육가공품의 수입 이전에 요구된다.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품이나 냉동 돼지고기, 냉동 가금류, 신선/냉장 감자, 커피콩, 옥수수, 커피추출물 등과 같이 쿼터 내 관세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제외한 식품의 수입에는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 수입 육류, 생선 및 농산품은 항상 등록된 수입업자가 상품 수취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상품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

□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

- 2005년 9월, 농무부는 행정명령 39호(2000)를 수정하는 행정명령 26호(AO26), 즉 “육류 및 육가공품의 수입에 대한 수정된 규칙 및 규제, 기준(Revised Rules, Regulations and Standards Governing the Importation of Meat and Meat Products into the Philippines)”을 마련했다. 행정명령 26호는 농무부가 인증하는 수입업자가 육류 및 육가공품을 수입하기 전에 동물 검역서(Veterinary Quarantine Clearance, VQC)를 취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 검역서는 발행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원산지국가에서 육류 및 육가공품이 운송되어야 하고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동물 검역서는 양도 될 수 없고 검역서를 발행 받은 수탁인 만이 사용할 수 있다. 선적 일회, 혹은 선하증권 한 부당 동물 검역서가 필요하다는 규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현재 필리핀에서는 상품이 다른 국가로 운송된다는 내용의 라벨이 붙어있는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수입되는 인도 식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리핀은 종이 포장상자가 필리핀 수출용으로 이용됨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시는 가리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3절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 2004년 1월, 필리핀 농무부는 30월령이하의 소를 도축한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만이 필리핀에 수입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소를 도축하여 뼈를 발라내고 각종 분비선을 제거한 근육살 일 것, 그리고 중추신경계 조직이나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한 고기일 것 등이 있다. 또한 도축일이나 가공일자가 포장용기 라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살아있는 동물 수입에 대한 규제

□ 살아있는 동물 수입에 대한 규제

- 살아있는 동물 수입 조건은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필리핀 수입 보건 규약(Philippine Import Health Protocol for Live Cattle)에 명시되어 있다. 육류 및 육가공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업자들은 가축이 운송되기 전에 축산업국으로부터 동물검역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규약의 구체적인 수입 규정 및 조건은 동식물 검역소 수의국(APHIS Veterinary Services)이 제공하고 있다.
- 농무부는 희석되지 않는 불순물이 중량의 0.15%이하를 차지하는 무단백질 수지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소를 원료로 한 콜라겐 케이싱의 경우, 축산업국은 해당 상품이 소의 머리가 아닌 부분의 가죽이나 피부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제5절 생선 및 해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 생선 및 해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 1999년, 농무부는 어업 규정(Fisheries Code)으로 알려진 1998년에 제정된 공화국법8550호(RA 8550)에 대한 시행규칙 및 규제를 완성하였다. 규제의 내용은 어업 행정명령 195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행정 명령은 수입업자가 검역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신선한 생선, 냉장 생선, 냉동 생선 및 수산품의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고려하여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수입될 수 있다. 통조림 제조 및 가공 목적으로 수입되고 기관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신선/냉장/냉동 생선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모든 수입품은 공화국 법 8550호 67조의 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점(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유통 및 추가 가공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생선 및 수산가공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규제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국제보건증명서(International Health Certificate)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 증서는 필리핀에 운송 완료되는 즉시 제반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제보건증명서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어야 한다.
 - 생선 및 수산품은 냉동되기 전의 상태가 크기 별로 등급이 나누어진 신선한 품질의 상품이어야 한다.
 - 수산품은 가공 공장 및 냉동 선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가공되어야 한다.
 - 냉동 수산품은 운송 중 영하 18°C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 생선 및 수산품은 기생충 검사를 위해 육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생충에 오염된 생선은 배치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보건증명서는 다음의 실험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이 결과는 아래와 같은 지표생물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총 생균수 10/g
- 대장균 10~100/g
- 살모넬라균 25g 샘플에서 미검출
- 시겔라균 미검출
- 비브리오 대장균 미검출

수산품은 유탄액 및 기름, 연료, 기타 위험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포장되어야 한다. 다음의 내용이 포장 및 제반 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 생략 없이 표시된 원산지국가
- 생선 및 수산품 품종의 무게 및 내용물
- 공급자 주소
- 수산업 및 해양자원국의 검사 인증 도장. 추가 가공을 목적으로 대용량으로 수입된 냉동 수산품은 상기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제6절 청과물 수입에 대한 규제

□ 청과물 수입에 대한 규제

- 청과물의 수입을 제한하라는 필리핀 농민의 압력과 과일 및 야채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무부는 수입허가 신청절차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3년 3월, 정관 18호(MO 18)를 통해 작물산업국은 모든 수입청과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이러한 추가 확인 및 증명 절차 시행으로 인해 해당 상품의 수입이 종종 지연되기도 한다.
 - 작물산업국은 청과의 수입을 규제한다. 모든 청과는 작물산업국의 식물위생 통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인증은 수입허가증으로 간주된다. 이 허가증은 필리핀 수입업자가 운송을 한 번 할 때 마다 적용된다. 청과는 출발지 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PC)와 함께 수송 되어야 한다. 육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수출되기 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선적일은 수입허가를 득한 날짜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 2006년 1월, 동식물 검역소 마닐라 지부는 미국산 채소 중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상추, 당근, 양배추, 샐러리와 관련한 해충 목록을 제출했는데 이는 작물 산업국의 요청에 따라 해충 위험 분석을 하기 위함이었다. 작물산업국과 동식물 검역소는 해당 야채의 수입 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협의 중이다. 작물 산업국에 따르면 해충 위험 분석 완료 목표일은 2007년 1월이다. 그 동안에 작물 산업국은 해당 채소가 고급 시장(예를 들어 호텔 및 식당, 슈퍼마켓)에 판매될 목적으로 수입된다면 이를 허가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작물 산업국이 수입 허가증을 계속해서 처리, 발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필리핀 수입업자들은 허가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을 주장해오고 있다.
- 1995년, 작물 산업국은 식물보건규제를 마련했는데, 필요 시 목표하는 해충을 통제하기 위해서 냉장처리를 한 경우, 사과, 포도, 오렌지, 감자, 양파, 마늘의 수입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절 애완동물 사료 수입에 대한 규제

□ 애완동물 사료 수입에 대한 규제

- 애완동물 사료의 수입에 대한 요구사항은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에 대한 사항과 비슷하다. 축산업국은 가공된 개 및 고양이 사료의 외국 제조업자 및 필리핀 수입업자가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승인을 신청하고 축산업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애완동물 사료는 관련 규제기관의 검역인증서와 함께 반입되어야 한다. 육가공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운송되기 전에 축산업국의 동물사료부(Animal Feeds Division)가 발행한 수의검역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8절 유전자 조작 식품

□ 유전자 조작 식품

- 현대 바이오기술이 사용된 작물 및 작물상품의 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칙 및 규제(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Importation and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Plants and Plant Products Derived from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AO 8)가 2003년 제정되어 당해 1월에 발효되었다. AO 8에 따라 모든 유전자 조작 품종(규제상품)은 필리핀에 반입되기 전, 식품 및 사료, 환경 안전을 위한 필리핀 과학자로 구성된 독립된 패널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 국가에 상관없이 허가 받지 않은 품종을 포함한 상품이나 식품은 필리핀 반입이 금지된다.

제9절 식품 영양소 강화에 관한 법률

□ 식품 영양소 강화에 관한 법률

- 2000년에 마련된 필리핀 식품 강화법(Philippine Food Fortification Law, RA 8976)은 2005년 11월 7일에 발효되었다. 쌀, 설탕, 밀가루, 소금, 요리용 기름 등을 포함한 모든 주요식품은 법에 따라 강화처리를 해야 한다.
- 필리핀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미량 영양소로 비타민 A, 철분, 요오드를 꼽았다. 식품 및 농업 회사는 RA 8976의 의무에 따라 상품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법은 위험 집단, 특히 6세 이하 아동 및 가임기 여성 집단에 비타민 A와 철분을 일일 섭취 허용량의 50퍼센트 이상 제공하려고 목표하고 있다.
- 이 법은 모든 제조업자, 생산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소매업자, 주요식품 재포장업자, 식당 및 식품 서비스 업자에게 적용된다. 식품 의약국으로 대변되는 보건부와 국립영양 자문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모니터 할 책임이 있다. 식품 의약국은 식품 강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강화절차가 보건국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강화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백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나 승인 및 허가증의 취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10절 저작권 및 상표에 관한 법률

□ 저작권 및 상표에 관한 법률

- 저작권 및 상표에 대한 규제는 필리핀 지적 재산 규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공화국법 8293호)에 포함되어 있다. 통상산업부 하의 필리핀 지적 재산 사무소는 이 규제를 집행하고 지적 재산권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상표

- 부도덕적이고, 기만적이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상표의 경우 등록될 수 없다. 필리핀의 깃발, 문장, 휘장이거나 정치적인 상징인 경우, 살아있는 특정 인물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인을 나타내는 이름, 초상화,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필리핀에 등록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등록 상표와 동일한 경우, 대중을 호도하는 경우,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표시인 경우, 기술적인 요소로 반드시 필요한 형태인 경우, 주어진 양식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색깔만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가 등록될 수 없으며 공공 질서와 공중도덕에 반하는 모든 상표도 등록 불가능하다.
- 자연인 혹은 법인이 상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은 신청서에 서명하는 신청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모든 신청자가 신청인으로 명기되어야 하지만 이들 중 누구라도 다른 신청자를 대표하여 서명할 수 있다.
- 등록인증서는 10년간 유효하며, 이는 상표국(Bureau of Trademarks)으로부터 통지 없이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인이 상표의 실제 사용과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표의 주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상표 미사용 진술서를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표 등록은 만료 후 10년간 갱신될 수 있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갱신횟수는 무제한이다.
- 상표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필리핀어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등록 신청,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신청인이 필리핀 국민 혹은 거주인 인지 여부, 법인 신청인인 경우 법인 조직에 관련된 법률, 중개인 혹은 대리인 임명 내용, 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재출된 신청서보다 현 신청서가 우선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규정된 양식의 상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저작권

- 저작권은 책, 시, 연극, 단편집, 신문 및 신문기사, 잡지 및 잡지기사, 만화책, 음악 작곡(가사 및 음악), 녹음물, 안무, 판토마임, 영화, 영사 슬라이드,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진, 물감으로 그린 그림, 색칠하지 않은 그림, 프린트물, 지도, 건축설계, 축소 모형, 조각 작품, 공예품, 보석 디자인, 직물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의 대해 등록이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 이후 50년간 유효하다. 이는 대가를 받고 창작된 작품이나 기업이 창작한 작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된다.

□ 식품 수입 단계

<1단계>

승인되거나 혹은 등록된 개인 및 기업만이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관련 필리핀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에서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육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 축산업국의 승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청과 및 야채의 경우 작물산업국으로부터 승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2단계>

식품 혹은 농산물이 필리핀에 반입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관련 규제기관이 허용한 국가만이 식품 및 농산물을 필리핀에 수출 할 수 있다.

<3단계>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해외의 육류 거래업체(예를 들어 도살장/도축장)로부터만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이들 업체는 농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4단계〉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운송되기 전에 수입될 상품에 대한 수입 허가증을 관련 규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축산업국으로부터 동물검역증서(VQC)를, 작물산업국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수입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매년 갱신 가능한 등록인증서(Certification of Registration)는 최초 수입 이전에 식품 의약국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5단계〉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 및 식품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 혹은 보건 검역증을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검역증은 해당 상품의 물리적 검사 및 통관항의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관검사 시 수입허가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3장 원산지 표시

1. 원산지 표시

□ 일반규칙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외국 원산지인 모든 물품(혹은 물품의 용기)는 다음처럼 표시되어야 한다.
 - 필리핀 국가 공용 언어로 표시
 - 물품(혹은 물품의 용기)의 특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표시
 - 필리핀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의 원산지국가를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예외

- 표시가 불가능 한 경우
- 필리핀으로 운송되기 전에 부상을 입지 않고는 표시가 불가능 한 경우
- 수입이 제한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필리핀으로 운송되기 전에 표시 가능한 경우
- 물품의 용기를 만듦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는 경우
- 물품이 가공되지 않은 물질인 경우
- 수입업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며 수입 당시의 형태나 그 다른 어떠한 형태로도 판매되지 않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감출 목적으로, 또는 본법률 상 원산지를 지우거나, 제거하거나, 영구히 감출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의 고객에 의해 처리되기 위해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경우

-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물품의 특성 및 수입 정황을 보아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있는 경우
- 필리핀으로 수입되기 20년 이상 전에 생산된 물품
- 경제적으로 지불 불가능한 액수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물품 수입 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 원산지 미표시가 수입업자, 생산자, 판매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거나 그러한 물품이 본 법률을 위반하기 위해 운송된 것이 아닌 경우

□ 용기 표시

- 물품의 직접용기나 용기는
 - 필리핀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명을 알릴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이는 필리핀 국가 공용어로 표시 되어야 한다.

□ 표시 의무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러한 물품이 해당 도착지에서 최후 청산되기 이전에 세관의 감독하에 제거되거나 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표시 증가세 5%가 부과된다.

□ 원산지 표시까지 물품 인도 지연

- 필리핀 관세법 303조 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물품 혹은 해당 물품의 용기에 원산지가 표시되고
- 원산지 표시세가 지불될 것으로 추정되기 전까지는 물품이 인도되지 않는다.

□ 원산지 미표시 혹은 표시 거부

-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고지가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해당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해당 물품의 처분은 수입물품의 포기와 관련된 규정(필리핀 관세법 제 1801~1803조)을 따른다.

제4장 가공식품 안전관리

□ 위생 안전 제조 관행 (우량 제조기준, GMP)

- GMP는 허용 가능한 품질의 물품 생산에 적합한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 및 절차, 방법을 다루고 있다. GMP 규정 및 GMP 규정의 위생 요구사항은 식품의 위생적인 제조와 관계되는 조건이다.
- GMP는 가공 식품을 제조하는 업자에게 사업허가증을 발행하기 전에 식품 의약국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충족 조건이다. 식품 가공업자는 행정명령 208호, 즉 현재의 우량 제조기준(GMP) 및 자신의 표준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건물 및 대지
 - 설비 및 기타 시설
 - 위생 시설 및 관리
 - 위생 관리 작업
 - 과정 및 관리
 - 관리 인력
- 현재 특히 중소기업의 공장을 비롯하여 GMP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가공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GMP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자본, 업체 내 지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술 지원, 경영진과 직원의 위생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점(HACCP)

- HACCP는 식품사업 운영 및 통제수단의 정의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에 기초한 식품안전 통제시스템이다. 모든 식품 사업분야에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HACCP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 HACCP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식품 생산과정에서 식품안전 보장에 필수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HACCP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관리 방식이 선제적이라는 점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HACCP는 최종 상품을 테스트 하는 방식에 기대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시험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 필리핀의 일부 식품가공기업은 원료 및 제조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HACCP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공동관리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 JMC) 회원인 식품의약국의 검사활동을 살펴보면 수산가공품 분야에서 HACCP가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HACCP 준수가 의무적인 분야인 수산가공품 수출업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HACCP 적용 수준이 더욱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간 규모 공장에서 더욱 적용될 필요가 있다. 중간규모 공장은 HACCP에 대한 지식이 없고 업체의 준수 의지와 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HACCP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다. 소규모 공장의 경우, HACCP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 직원이 없기 때문에 HACCP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산가공품 수출업체,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광범위하게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생선 및 수산가공품 수출업자는 미국 연방규정 제 21조 123항에 따라 생선 및 수산가공품 생산과정에 HACCP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식품의약국, 수산업 및 해양자원국, 식품개발센터(Food Development Center)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는 수산품업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게끔 하기 위해 HACCP의 자발적 승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세 정부기관은 해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공동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공장 승인을 위한 검사 및 의사결정 절차를 통일했다. 사용되는 공장검사 체크목록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과 해당 업체가 제출한 HACCP 계획의 8가지 부문을 다룬다.

□ 안전 및 품질기준

- 식품 가공업체 역시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채택했다. 식품의약국은 가공식품 일부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식품 가공업체들은 국제식품규격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이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에 참여하면서, 필리핀은 자국의 상품 기준을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에 대한 협정(SPS협정)이 국제식품규격을 식품 안전기준을 위한 국제적인 참고자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 식품 라벨링

제1절 식품 라벨링

다음의 정보가 수입된 식품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식품명
- 첨가물, 향신료, 방부제를 비롯한 식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함량이 큰 순서대로)
- 내용량 및 고품형량
- 수입상품의 원산지국 및 필리핀 수입업자/유통업자명과 주소를 포함한 제조자/포장업체 및 유통업체의 명칭 및 주소
- 로트번호

□ 영양 및 건강 정보와 광고

- 특정한 식이요법을 위해 마케팅 되는 식품(예를 들어 당뇨병자 식품)의 라벨은 식품 의약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식품의 비타민 및 무기질, 기타 식이특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수한 사용 측면에서 해당 상품의 고유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식품 의약국은 식품 광고에 대한 일반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식품 의약국은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는 식품광고의 영양 및 의약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모니터할 책임이 있다. 식품 의약국은 모든 제조업체, 유통업체 혹은 광고업체에 부정확하거나 소비자를 호도하는 영양 및 의약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광고업체가 거짓정보 사용을 중단하라는 식품 의약국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법과 규제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 수입 식품

- 식품 의약국은 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라벨 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입식품 및 음료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라벨의 내용은 국제 식품규격과 식품 의약국의 요건상 허용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세히 검토된다. 이러한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정보는 식품의약국이 필리핀으로 수입되기 위한 외국 상품, 특히 항목 II에 속하는 건강보조제, 유아식품 및 특수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등의 상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평가 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진위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붙은 상품은 필리핀 반입이 금지 될 수 있다.
- 현재 필리핀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유기농 상품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의약품은 반드시 상품의 속명으로 라벨링 되어야 한다. 상품의 속명은 브랜드명 상단에 더 큰 글씨로 명시되어야 하며 배경과 대조적 색깔의 테두리 속에 표시되어야 한다. 모든 상품은 영어나 필리핀어로 라벨링 되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브랜드, 상표 혹은 상호
 - 물리적 혹은 화학적 구성 (적용 가능한 경우)
 - 미터로 표시된 길이
 - 내용량 및 순중량
 - 제조국가
 - 제조업체 혹은 재포장 업체명과 주소
- 상기 규정의 어느 부분이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적절한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품에는 5% 표시관세가 부과된다.

제2절 포장 및 용기에 대한 규제

□ 포장 및 용기에 대한 규제

- 우수 제조관행과 식품의 포장재질 적합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제식품규격은 필리핀 식품의약품국의 주요 참고 가이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포장식품의 경우 국제 식품규격을 준수하면 거의 항상 필리핀의 규제를 준수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상품이 소매상점에 판매되기 전에 해당 포장식품을 식품의약품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

□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

- 식품 첨가물은 필리핀 식품법과 식품 의약품국이 만든 규제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 식품 의약품국은 식품 첨가물을 “가공 식품의 구성요소가 되는 모든 물질 혹은 가공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준비, 포장, 처리, 운송, 보관 과정에서 사용되어 직, 간접적으로 해당 식품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은 식품 첨가물에 포함된다.

제4절 살충제 및 기타 오염 물질

□ 살충제 및 기타 오염 물질

- 1977년 대통령령 1144호(PD 1144)에 의해 비료 및 살충제국(The Fertilizer and Pesticide Authority, FPA)이 설립되었다. 비료 및 살충제국은 등록과 관련한 국가기관으로 임명 되었고 살충제 유통업자 및 중개인에게 허가증을 부여하고 수

입 인증서를 발행한다. 상품이 오용되거나 상품 취급인이 규제를 위반할만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록은 중단되거나 취소 될 수 있다. 살충제 취급인과 의농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인증 또한 비료 및 살충제국의 주요 업무이다. 새로운 독성 살충제를 등록하기 위해서 위험편익분석도 실시해야 한다.

- 비료 및 살충제국은 등록과 관련한 지정 규제기관이고 작물산업부는 필리핀 국내 및 전세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물에 남아있는 살충제 잔여량을 모니터링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비료 및 살충제국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농작물 및 부산물의 화학물질 잔여량을 모니터링하는 일도 수행한다.
- 그리고 작물 생산업국은 살충제 사용관행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살충제 사용 관행을 결정하고 평가한다.

□ 항산화제

- 산화작용에 의한 품질 저하, 산패, 변색을 지연시킴으로써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섭취 제한량/최고 섭취량은 다음과 같다.

- 아스코르브산	GMP
-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GMP
- 부틸 히드록시아니솔	0.02%
- *부틸 히드록시아니솔	0.02%*
- 아스코르브산 칼슘	GMP
- 디라우릴치오디프로피오네이트	0.02%*
- 에리소르빈산	GMP
- 에톡시퀸	칠리 파우더 및 파프리카의 변색 방지를 위해 100ppm 허용
- 레시틴	GMP
- 갈산프로필	0.02%
- *아스코르브산나트륨	GMP
- 에리소르빈산 나트륨	GMP
- 염화 제1주석	통조림 캔으로 계산하여 11~20 ppm*

- 티오디프로피온산	0.02%*
- 삼차뷰틸하이드로퀴논(TBHQ)	0.02%
- *알파 토코페롤	GMP
- 토코페롤 (혼합 농축물)	GMP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아랍에미리트

제1장 개괄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관세제도

제5장 라벨링제도

제6장 통관문제사례

제7장 수출현안



제1장 개괄

1. 국가 개괄

국명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위치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 접경	
수도	아부다비(Abu Dhabi)	
시차	GMT + 4	
민족	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면적	83,600 km ² (한반도의 약 1/3)	
인구	985만 명(2016년 IMF 추정)	
환율	1 달러 = 3.67 디르함(고정)	
기후	고온 다습(5~10월 35~45도, 11월~4월 15~35도)	
언어	공용어(아랍어), 상용어(영어)	
에미리트		<p>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푸자이라(Fujairah), 아즈만(Ajman), 움알콰인(Umm Al Quwain),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p> <p>자료: EmiratesFirst.net</p>
건국일	1971년 12월 2일 영국보호령에서 독립	
정부형태	7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방대통령제	

대통령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하얀(Khalifa Bin Zayed Al-Nahyan)
GDP	3,994억 달러(IMF)
1인당 GDP	42,943 달러(외국인 포함)(IMF)
교역규모	6,103억 달러(EIU)
- 수출	3,706억 달러(원유, 가스, 알루미늄)
- 수입	2,397억 달러(기계, 전자, 자동차)
원유매장량	978억 배럴(세계 7위, 5.8% 점유)
가스매장량	6.1조m ³ (세계 7위, 3.3% 점유)

출처 : 주UAE 대한민국 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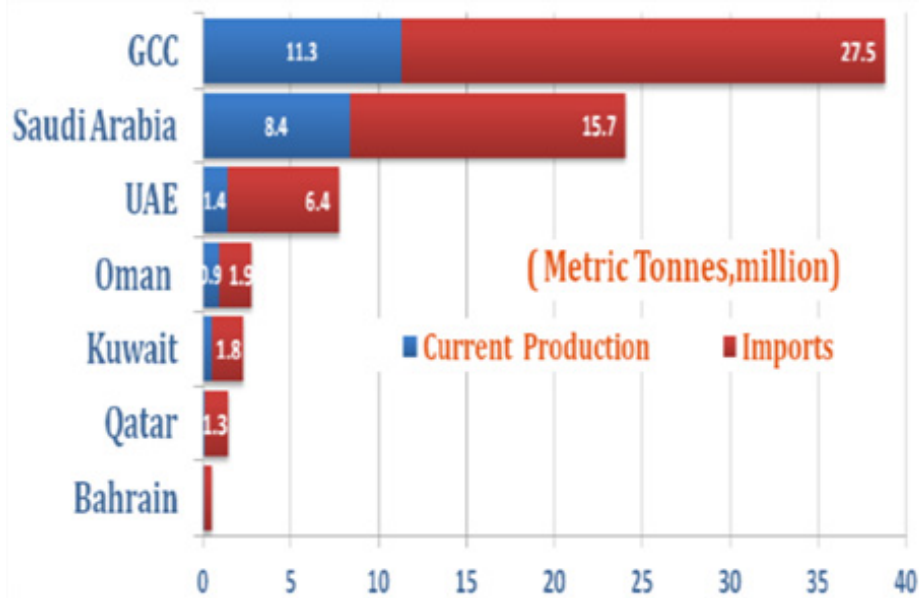
2. 식품시장 개괄

□ GCC 2대 식품시장, UAE

- UAE는 GCC* 6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식품 시장을 형성
 - 비교적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유입인구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내수가 증가하는 추세
 - 아울러 인근 GCC 및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재수출 활발해지면서 식품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 될 전망

GCC 국가별 식품 생산과 수입량

(단위: 백만 TONNE)



주 : 청색 그래프는 국가내 생산, 적색 그래프는 수입량을 의미
 자료 : 두바이상공회의소 2015년 1월 발표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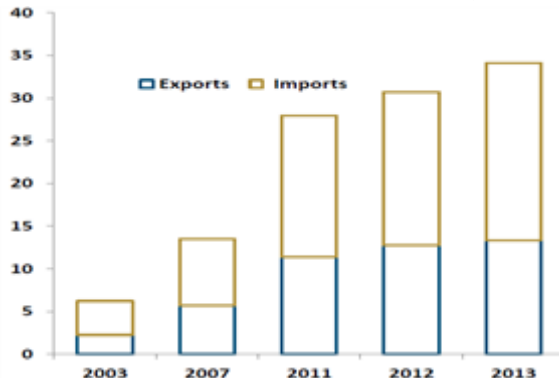
- UAE는 1981년 설립된 걸프 연안의 6개 국가(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협력체인 GCC의 회원국임.
- GCC는 가입국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결속, 역내 관세 철폐 및 여행제한의 해제 등을 통해 역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내 식품 수요

- 척박한 기후로 UAE 식품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2013년 UAE 식&음료 교역규모는 341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두바이를 통한 교역은 UAE 전체의 60%에 달함.

연도별 UAE 식&음료 교역현황

(단위: 십억 USD)



주 : 청색은 수출, 황색은 수입을 의미
 자료 : 두바이상공회의소

- UAE의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인도, 미국, 브라질, 호주 등이며 우리나라는 10대 수입국에 포함되지 않음.

■ 2013년 UAE 주요 식&음료 수입대상국과 그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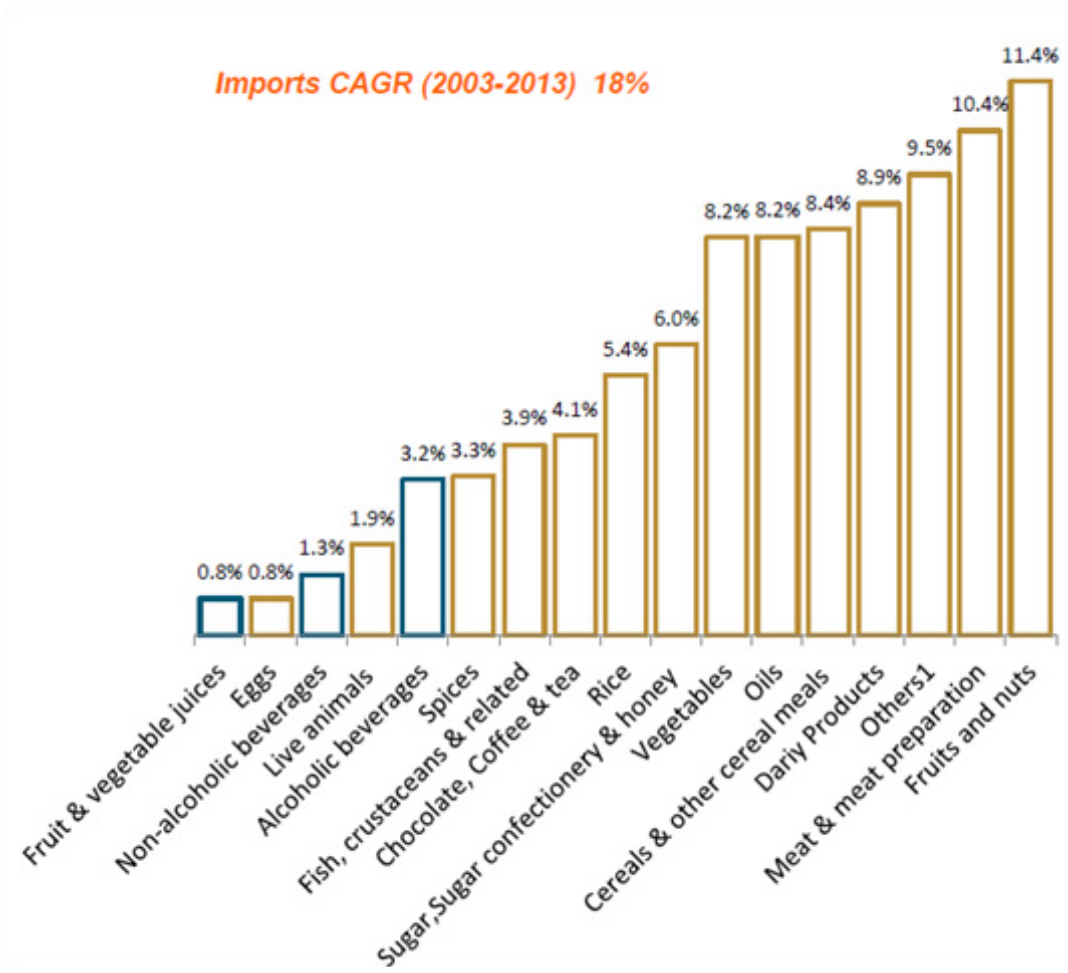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D, %)

순위	국가	수입액	수입 비중
	전체	20,691	-
1	인도	2,233	11
2	미국	1,950	9
3	브라질	1,860	9
4	호주	1,131	5
5	사우디아라비아	903	4
6	네덜란드	787	4
7	오만	780	4
8	중국	724	3
9	캐나다	697	3
10	베트남	657	3

출처 : 두바이 상공회의소

- UAE로 수입된 식&음료의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과일과 견과류가 전체의 11.4%로 가장 높으며 육류및육가공품이 10.4%로 그 뒤를 따름.
- 이어 유제품, 쌀, 채소, 곡류, 설탕, 과자, 초콜릿, 커피, 차, 생선 등이 주요 품목으로 나타남.

2011~2013년 UAE 주요 수입 식&음료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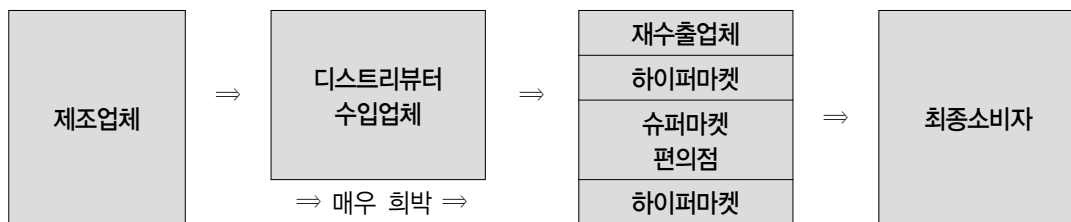


출처 : 두바이상공회의소

□ UAE 식품 수입 및 유통구조

- 디스트리뷰터 혹은 수입업체를 통한 유통
 - 디스트리뷰터는 내수시장뿐 아니라 재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기존에 보유한 유통망을 활용,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재수출업자 등에게 제품을 공급함.
 - 시장진출 초기나 소규모 수출 시 별도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별도비용 발생이 많지 않은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유통방법이 선호됨.
 - 유력 디스트리뷰터가 기 구축한 유통망은 식&음료브랜드의 현지진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형 유통업체의 직접 거래를 통한 유통
 -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주로 구매부서가 디스트리뷰터 혹은 수입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 대형 유통업체는 보관, 재고 등의 문제로 동 거래방법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들이 하이퍼마켓 부속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수입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현지 식품 수입 및 유통구조 안내 ■



출처 : 자체제작

□ 주요 유통채널 별 특징

- 하이퍼마켓
 - 하이퍼마켓은 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 및 도심지역의 주요 쇼핑몰 등에 입점하여

가장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

- 하이퍼마켓 시장은 크게 Carrefour등의 외국 프랜차이즈와 Lulu Hypermarket 과 같은 현지 프랜차이즈 그리고 Union Co-operative Society와 같은 정부 설립의 협동조합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두바이 Carrefour



출처 : Mall of the Emirates

○ 슈퍼마켓

- 두바이, 아부다비를 제외한 중소도시, 두바이 아부다비의 경우는 구역마다 중소형 슈퍼마켓이 입점, 인근지역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슈퍼마켓은 크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Express형태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혹은 편의점,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상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재래시장

- 유통산업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Fish Market, Vegetable Market등 아직까지 UAE에 존재하나 소매고객 방문빈도는 낮은 편

두바이 채소시장(Vegetable Market)



출처 : Emirates 24/7

Ⅰ UAE 주요 유통업체 현황 Ⅰ

브랜드 (회사명)	웹페이지
Carrefour (Carrefour SA)	www.carrefouruae.com
Lulu Hypermarket (Emke Group)	www.luluhypermarket.com/AE/all
Union Co-operative Society (Consumer Co-operative Union)	http://ucs.ae/home.aspx
ADCOOP (Consumer Co-operative Union)	www.abudhabicoop.com/english
Choithram (T Choithram & Sons)	www.choithrams.com/en
Emirates Cooperative Society (Consumer Co-operative Union)	www.emiratescoop.ae
Spinneys (Spinneys Group Ltd)	www.spinneys-dubai.com
Zoom (Emirates National Oil Co.)	www.mirakgroup.com/retail-operations/enoc-zoom-market.aspx
Geant (Casino Guichard-Perrachon SA)	www.geant-uae.com

제2장 통관제도

1. 식품통관관련 주요 규제기관 및 관련규정

□ 연방정부 차원

- UAE 연방정부 차원의 식품관련 주요 규제기관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부와 표준측량청이 있음.
- 이들 기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 감독하는 기관이며 식품수입이나 통관과 관련된 실질적인 규제 제정과 운영은 에미리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방정부차원 식품관련 주요 기관 ■

기관명	기관 소개
기후변화와 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을 중대 과제로 생각하는 UAE 정책과 맞물려 2006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로 개설된 기후변화와 환경부는 증대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함. - 2016년 현재 기후변화, 수자원, 환경을 아우르는 관련 정책과 규제의 제정 및 운영, 감독 기관으로 할랄 도축장과 할랄인증서 발급기관 인정 등의 역할을 담당
표준측량청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산업표준화기구로 설립, UAE 단일 규격기준을 제정, 강제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운영을 통해 자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생수, 할랄식품 등 식품관련 연방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운영함.

출처 : 각 기관 웹페이지

□ 에미리트 차원

- 에미리트 정부가 역내 관할권을 행사하는 UAE의 국가 특성 상 수입식품 허가 및 통관절차 또한 에미리트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리
 - 에미리트 별 별도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인구구성이 높고 물류시설이 구축된 수도인 아부다비와 최대 경제도시인 두바이를 중심으로 식품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기타 에미리트에서는 미미한 식품 수입규모,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 UAE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미리트 별로 정해진 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UAE 정부는 연방법 제정을 통해 에미리트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식품 위생관리를 일원화하여 연방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음.
 - 이에 아부다비나 두바이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미리트 규제 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고 통관, 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함.

Ⅰ UAE 에미리트 별 식품위생 관리기관 Ⅰ

에미리트 명	기관명
아부다비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두바이	Dubai Municipality (Food Control Dep.)
샤르자	Sharjah Municipality (Dep. of Public Health)
아즈만	Ajman Municipality (Public Health & Environment Dep.)
움알콰인	N/A
라스알카이마	RAK Municipality (Health Dep., Dep. of Food Control)
푸자이라	N/A

2. 아부다비

□ 규제기관 및 관련규정

- 아부다비 정부는 2005년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ADFCA)를 설립하고 2008년 식품법(Food Law)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차원의 규제를 보완하는 수입식품의 통제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정립함.
- 아울러 식품수입의 요건을 안내하고 사용자편의와 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식품 수입자 가이드(Food Importers Guide)를 발행,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식품의 분류 및 통관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음.

▮ ADFCA 안내 ▮

 <p>جهاز أبوظبي للرقابة الغذائية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p>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역할	아부다비 에미리트 수입식품 관리 외
	주소	79th St, Prestiege Tower16, Next Capital Mall, Mohamed Bin - Abu Dhabi
	이메일	inquiries@adfca.ae
	연락처	+971-800-555(UAE 내)
	웹페이지	www.adfca.ae/english/Pages/default.aspx

출처 : ADFCA

□ 아부다비 수입식품 통관절차

1) 위험도에 기반한 수입 식품관리 체계

- 아부다비 정부는 수입식품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식품의 위생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함.

Ⅰ 위험도별 식품 분류 Ⅰ

카테고리명	식품명
고위험군 (High risk food products)	육류, 닭고기및수산물, 우유, 요거트및치즈, 아이스크림, 달걀및버터, 냉동패스트리및베이커리, 영유아용식품, 특수식, 견과나 견과로 만든 플레이크, 코코넛, 깨, 타히니및땅콩버터, 자른 포장채소, 증류한 저산성식품 Meat, Chicken and Seafood, Milk, Yogurt and Cheeses, Icecream, Eggs and butter, Frozen pastries and Bakery products containing milk & eggs, Baby & Infant foods,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Flaked and dried Nuts, Coconut, Sesame, Tahineh and peanut butter, Pre-cut packaged Raw vegetables, Retorted low acid foods
중위험군 (Medium risk food products)	생수, 탄산음료, 주스및농축액, 신선또는포장과일, 냉동야채및과일, 코코아및초콜릿, 비스킷및사탕, 향신료및건조소프, 이스트및박테리아배양물, 커피크림, 휘핑크림, 잼및젤리, 쌀, 밀가루, 전분, 시리얼, 산성식품 Bottled water, Carbonated beverages, Juices & its concentrates, Fresh & packaged fruits, Frozen vegetables & Fruits, Cocoa and Chocolates, Biscuits and sugar candies, Spices and dried soups, Yeast and Bacterial cultures, Coffee whiteners, Whips and creams, jams and jellies, rice, Flour and starch, Chips and breakfast cereals, Acidic foods
저위험군 (Low risk food products)	커피및차, 설탕, 시럽및꿀, 탄산음료농축액, 식품첨가물및향료추출물, 오일, 지방, 마가린, 견과일및포장야채, 곡물및콩, 파스타, 스파게티및쿠스쿠스, 말린허브, 소금및식초, 알코올음료 Coffee and tea, sugar, syrups and honey, carbonated beverages concentrates, food Additives and flavor extracts, oils, fats, margarine, dried fruits and packaged vegetables, grains and beans, pasta, spaghetti and couscous, dried herbs, salt and vinegar, alcoholic drinks and distilled liquors

출처 : Food Importers Guide

- 아울러 통관 시 위생검사의 난이도를 녹색, 황색, 적색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카테고리 에 따라 위생검사 절차를 상이하게 적용

Ⅰ 난이도 분류별 위생검사 절차 Ⅰ

카테고리명	해당 위생검사 절차
녹색절차(Green Channel)	위생서류 검토(Health Document)
황색절차(Yellow Channel)	위생서류 검토 및 화물 검사
적색절차(Red Channel)	위생서류 검토 및 화물 검사 샘플 채취 및 실험실 분석

출처 : Food Importers Guide

Ⅱ 위험도 수화물의 위생검사 빈도 Ⅱ

○ 식품의 위험도에 따른 수입화물의 위생검사 빈도는 하기와 같음.

	적색절차	황색절차	녹색절차
고위험군	80-100%	0-10%	0-10%
중위험군	15-25%	15-25%	50-70%
저위험군	5-10%	0-5%	85-90%

자료 : Food Importers Guide

2) 식품수입을 위한 필요 서류 및 증명서

○ 아부다비 에미리트로의 식품수입을 위해서는 하기의 서류와 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함.

Ⅱ 필요서류 및 증명서 Ⅱ

연번	필요서류 영문 명	해석
1	Health Certificate	원산지국 관할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2	Temperature record	냉장 및 냉동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과정 중 온도기록
3	Halal slaughtering certificate	할랄인증서 : 육류나 육가공품의 경우
4	Packing list	패킹리스트 : 제품의 종류 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수량 기입 및 컨테이너 적재일자 표기
5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6	Importing Permission or commercial license	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자의 상업면허
7	Bill of Entry or Delivery Order or Bill of Lading	세관신고서 또는 선하증권
8	-	기타 추가적으로 식품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서류와 증명서
9	-	라벨에 영양이나 건강 관련표기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자료 : Food Importers Guide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양식 예시

Health Certificate Template		شهادة الصحة	
Consignor (Exporters) Name Address		Certificate Reference No. Place of Issue Date of Issue	
Consignee (Importers) Name Address		Competent/Issuing Authority Name Address	
Producer (Manufacture Est.) Name Address		Country of origin Country of destination	
Border of Entry/Country of Destination		Packing (No. of packages) Name Address	
Means of transport/Consignee By Air By Sea By Road Other		Vehicle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Identification of the Food products			
Name & Description of Food HS Code Species (in case of meat, honey, etc.) Brand Name Production Date Expiry Date No. packages Batch No. Total weight	Arabic Name Arabic HS Code Arabic Species Arabic Brand Name Arabic Production Date Arabic Expiry Date Arabic No. packages Arabic Batch No. Arabic Total weight		
Health Attestation TO BE FILLED WITH THE PERTINENT ATTESTATIONS			
Responsible body for signature Name Position Signature		Arabic Name Arabic Position Arabic Signature	

출처 : Food Importers Guide

3) 위생검사(Health Clearance) 절차

- 수입자 혹은 통관대리인은 자동통관정보시스템(Automated Customs Information System, DHABI)를 이용 HS코드에 따라 식품수입에 필수 구비서류와 상세정보를 제출
- 세관원은 제출된 정보와 관련서류 검증 후 위생검사 절차 개시
- 수입자 혹은 통관대리인은 위생증명서와 수입식품 관련서류를 ADFCA 검역원에 제출
- 검역원은 수입식품의 위험도를 근거로 분류, 적색, 황색, 혹은 녹색절차에 따라 하기의 지정된 절차를 진행함.

Ⅱ 위험도에 따른 위생검사 절차 Ⅱ

구분	상세 절차
녹색절차	화물이 서류 검사 합격시 최종 위생검사 절차로 넘어감.
황색절차	서류 검사와 더불어 지정된 검시센터에서의 화물 검사과정을 진행, 합격 시 최종 위생검사 절차로 넘어감.
적색절차	서류 검사와 화물 검사에 이어 샘플 채취를 통한 실험실 검사를 진행, 합격 시 최종 위생검사 절차로 넘어감.

출처 : Food Importers Guide

4) 식품 운송 및 온도관리

- 식품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운송 중의 보관과 관리 요건을 하기와 같이 규정
 - 식품 운송과정에 있어 오염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아울러 운송차량 내부는 쉽게 청소가 가능한 방수 재질로 지속적인 냉장이 가능해야 함.
 - 식품은 비식품제품과 분리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비포장(Bulk food) 식품의 경우 식품 운송 전용차량을 이용해야함.
 - 식품은 카테고리 별로 하기의 온도를 유지해야함 ; 냉장식품: 5℃ 미만, 냉동식품 - 18℃이하, 기타식품(비냉장, 냉동) : 건강이나 제품 변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온도
 - 식품 운송차량은 보관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모니터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아울러 주행기록은 1년간 보관되어야 함.
 - 냉동식품 운송차량은 용도에 적합하고 냉동식품 보관 적정온도에 맞게 운영 되어야 함.
 - 식품 운송용 차량의 온도기록장치는 수출국가 국경에서 화물이 떠나는 날부터 수입 시험 순간까지 계속 가동되어야 함.

5) 샘플검사

- 식품 검사는 하기와 같이 운영됨.
 - 적색 절차로 분류되는 식품의 샘플은 식품의 안전보장을 위한 검시과정으로 국경에서 채취되며 샘플은 전체 수입량의 대표로 간주됨.

- 식품의 수량에 관계없이 같은 조건 내에 생산된 단일 품목에 대해 채취
- 채취하는 샘플의 양은 ADFCA의 샘플사이즈계획(Sample size plans)에 의거, 반복분석이 가능한 크기여야 함.
- 채취된 샘플은 지정된 운송수단을 이용, ADFCA로 이관된 후 검사
- 아울러 식품사업 운영자, 수입자는 재시험을 요청할 권리를 가짐.

식품 샘플검사 예시



자료 : Food Importers Guide

6) 라벨링

- 기본적으로 UAE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라벨링규정*이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V. 라벨링제도 챕터 참고

- ① 상품명 : 상품명은 식품의 본질을 잘 드러내야 하며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해를 유도해서는 안됨.
- ② 식품 원료 : 첨가물을 포함하는 원재료의 함량에 따라 모든 원재료를 내림차순으로 기입, 과민증을 유발하는 경우 반드시 기입
- ③ 영양정보 : 해당제품이 특별식으로 제공될 경우 표기
- ④ 순 중량 : 유동식은 부피, 고형식은 무게, 반고형 혹은 점성식은 무게 또는 부피로 표기

- ⑤ 제조업체 혹은 디스트리뷰터,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명기
- ⑥ 원산지
- ⑦ 제품번호(Lot)
- ⑧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보관법 및 사용법
- ⑨ 방사선 조사(Irradiated) 여부
- ⑩ 해당식품 관련 추가정보가 기입가능하나 쉽게 지워져선 안됨.

7) 식품 유통기한

- 식품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 유통기한은 GSO의 150/2007과 그 맥락을 같이함.
- 주요 식품군에 대한 유통기한은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Ⅰ 주요 식품 유통기한 Ⅰ

제품 군	유통 기한
이산화탄소 환경에서 포장된 냉장육	도축일로부터 90일
가금육	도축일로부터 7일
소고기, 버팔로, 낙타고기	도축일로부터 21일
양과 염소고기	도축일로부터 14일
진공포장육	도축일로부터 10주
저온살균 크림	21일
유아용 멸균 액상우유	9개월
물기를 뺀 유아용식품	12개월

자료 : Food Importers Guide

8) 규제 미준수시 조치 사항

- 아부다비 정부는 아부다비 국경 통제를 통해 수입식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준수 시 인센티브나 미준수시 패널티는 하기와 같음.
- (인센티브)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같은 식품 종류로 분류되거나 같은 제조업체로 부터 반입된 5개 컨테이너가 서류 검사와 화물 검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샘플채취 및 실험실 검사는 하나의 컨테이너만

을 대상으로 함.

- (패널티) 반입하려는 식품컨테이너가 위생검사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조치가 철회됨.
- (수입 금지품목*) UAE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위생검사 절차 없이 국경에서 수출국으로 반송됨.

* 반입금지품목: IV. 관세제도-수입 금지품목 참고

- (화물의 역류) 아부다비로의 첫 수입, 관련 규정의 미 준수, 다른 국가나 관련 국제 기관으로부터 반입금지 조치, 패키리스트 미 구비, 실험실 분석결과와 지연 등의 경우 화물이 역류 될 수 있음.

9) 수입식품 화물의 역류

- (화물의 역류, 압수 혹은 보증금) 식품라벨의 정보 부정확, 비상업 목적 개인용도의 수입,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누락 혹은 자격미달, 위생증명서 원본 누락 시 화물 역류, 압수 혹은 보증금 납부가 요청될 수 있음.
- (추가증명서 요청) 화물이 식품 수입규정에 위배될 경우 관할당국은 화물을 역류, 수입자에게 안전성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추가 조치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와 재정적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함.

3. 두바이

규제기관 및 관련규정

- 두바이 정부를 뜻하는 Dubai Municipality(DM)은 Food Code(식품법)를 통해 해당 에미리트 내 식품산업 전반을 규제
- DM 산하의 Food Control Department가 수입식품과 재수출을 감독, Import & Re-export Requirements for Foodstuff(식품수입 및 재수출 요건)는 두바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경제활동으로 여겨지는 식품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DM은 동 규정을 통해 수입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상품교역 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수입을 장려하고자 함.

Food Control Department 안내

 <p>DUBAI MUNICIPALITY</p>	Food Control Department	
	역할	두바이 에미리트 수입식품 관리 외
	주소	Building 20, Baniyas Road, Al Rigga area, Deira, Dubai, U.A.E.(본사기준)
	이메일	info@dm.gov.ae
	연락처	+971 4 2215555
	웹페이지	www.dm.gov.ae

자료 : DM

- DM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인 FIRS(Food Import Re-Export System)를 통해 식품교역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FIRS는 식품수입, 수입식품의 재수출, 라벨링 승인, 각종 위생증명서, 폐기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
 - 아울러 식품샘플링시스템을 포함, 각 식품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실험실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두바이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세계 어디서든 신청서를 접수, 첨부파일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식품정보는 바코드와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음.
- 두바이로의 식품 수출은 식품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UAE 사업자와의 계약 → DM의 E-government에 회사정보 입력 → FIRS활성화 → 식품라벨승인 → FIRS상에 식품정보와 바코드 등록 → 수입통관 → 화물인도의 기본 절차를 따르고 있음.
 - DM의 Import & Re-export Requirements for Food Stuff 식품수입 및 재수출 요건은 두바이 역내 모든 항구, 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유입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크게 화물도착전과 도착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두바이 수입식품 통관절차(화물 도착전)

○ 두바이 역내에 화물이 도착하기 이전, 수입업자는 하기의 절차를 선행해야 함.

1) 회사등록

○ DM 웹사이트(www.dm.gov.ae)의 전자 신청서를 통해 회사등록

DM 회사등록 화면 예시



자료 : DM

○ 두바이 내 카라마(Karama)지역에 위치한 DM 고객센터를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Trade License Copy), ID와 비밀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과 함께 제출하면 회사등록 완료

2) FIRS활성화

- 온라인을 통해 FIRS를 활성화해야 하며 FIRS를 등록을 위해서는 하기 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 회사등록, 사업자등록증 제출 완료
 - 회사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P.O. Box번호
 - 회사 대표자의 성명과 휴대폰번호
 - 회사가 운영하는 식품창고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FIRS 활성화 화면 예시



자료 : DM

3) 식품라벨승인

- 모든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라벨은 FIRS를 통해 전자신청서를 제출, 통관 전에 승인을 취득해야 함.
 - 식품의 라벨*에는 필수적으로 하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단, 과일, 야채 등 일부 면제품목 존재

* 모든 라벨은 아랍어 표기를 해야 함. 스티커의 형태의 아랍어 라벨도 가능함.

- ① 브랜드명
- ② 상품명(간단한 상품 묘사)
- ③ 식품 원료(함량에 따른 내림차순)
- ④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⑤ 제조사명, 포장회사, 수입자 혹은 디스트리뷰터 명
- ⑥ 순 중량
- ⑦ 원산지
- ⑧ 상품 바코드
- ⑨ 제품번호(Lot)
- ⑩ 저장방법의 특이사항
- ⑪ 과민성 질환 유발 가능한 원재료명(함유 시)

○ 카라마의 Food Studies & Planning Section에 샘플 제출

4) FIRS상에 식품정보와 바코드 등록

- 새로운 식품을 수입할 경우 FIRS 상에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작성과 제출 통한 식품 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명료하고 완성된 식품 라벨(Label) 이미지를 첨부
 - 만일 식품 라벨이 없을 경우 식품의 샘플을 직접 제출해야 함.

FIRS를 통한 식품정보 등록예시

Enter Food Items Details	
Fields marked with (*) are mandatory.	
*Bar Code	9555538105730
*Country Of Origin	Malaysia
*Packaging Type	Plastic Bottle
* Weight	1
* Unit	liter
* Brand	Sol Fresh
New Brand Description	
Food Manufacturer	7Chef
* Item Trade Name	vegetable cooking oil
Additives	E153(Carbon black, Vegetable carbon [Colouring] [likely to be GM] [possibly of E154(Brown FK, Kipper Brown [Colouring] [possible allergic reaction]) E155(Brown HT, Chocolate brown HT [Colouring] [possible allergic reaction]) E160a(Alpha-carotene, Beta-carotene, Gamma-carotene [Colouring]) E160b(Annatto, bixin, norbixin [Colouring] [possible allergic reaction]) E160c(Capsanthin, capsorubin, Paprika extract [Colouring]) E160d(Lycopene [Colouring] [possibly GM]) E160e(Beta-apo-8-carotenal (C 30) [Colouring]) E160f(Ethyl ester of beta-apo-8-carotenic acid (C 30) [Colouring]) E161a(Flavoxanthin [Colouring])
*Storage Condition	Chilled 11 -15 c
* Ingredients	palm olein, anti oxidant (bha+bht)
Remarks	

자료 : DM

5)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

-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기한은 식품의 포장이나 라벨의 형태로 명료하게 표기되어야 함.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일-월-년의 형식으로, 그 이상일 경우 월-년의 형식으로 표기



제3장 검역제도

1. 개괄

- UAE 식품검역은 통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에미리트 차원에서 관할
 - 에미리트별 규제기관은 해당 에미리트의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식품의 분류, 서류 및 화물검사, 샘플채취와 실험실 검사 등을 진행함.
 - 역내로 반입되는 화물의 검사 방법 규정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안전한 보호에 주요 목적이 있음.
- UAE 연방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발행한 수출입절차(UAE Imports & Exports Guide)와 GCC 통관절차 안내(Unified Guide for Customs Procedures)가 적용됨.
 - 아부다비의 경우 검역절차를 별도로 분류, 상세 안내하지 않으나 II. 통관제도, 나. 아부다비 위생검사(Health Clearance) 절차로 같음할 수 있음.

2. 두바이 검역절차 안내

검역소

- 항공, 해상, 육상운송을 통해 두바이로 반입되는 화물은 하기의 검역소를 통해 검역 절차를 완료해야만 화주에게 인도가 가능함.

▣ 두바이 검역소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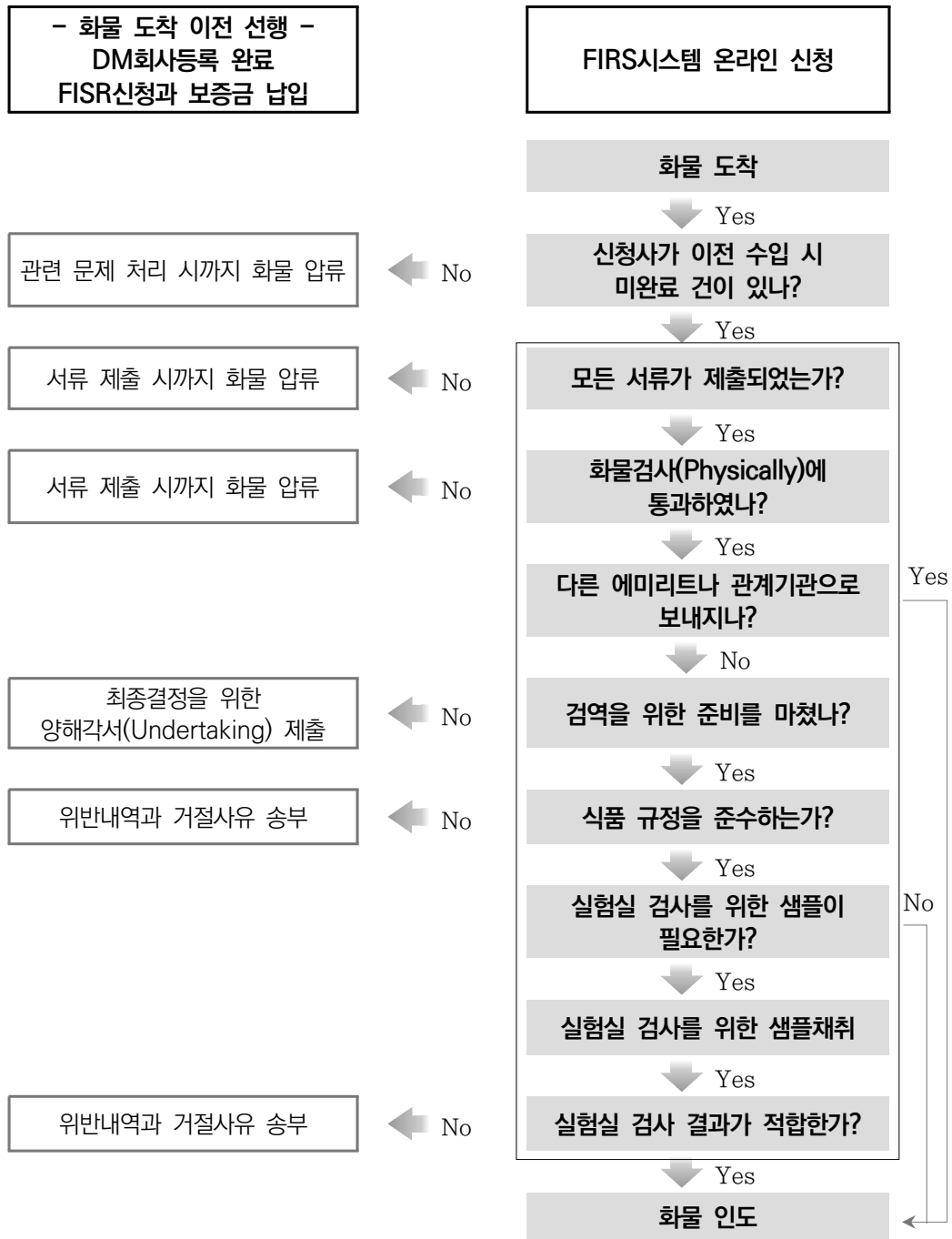
해 상			
검역소 명	전화번호(UAE 내)	팩스번호(UAE 내)	운영 시간
Jebel Ali Gate 3	04-8818675 Ext. 220, 221	04-7033095	항시 운영
Jebel Ali Gate 2	04-8871797	04-7033095	항시 운영
Al Hamriya Port	04-2661844	04-2624283	토요일~목요일 (7:30-14:30)
Wharfage	04-2279990	04-2276574	토요일~목요일 (7:30-14:30)
항 공			
검역소 명	전화번호(UAE 내)	팩스번호(UAE 내)	운영 시간
Dubai Flower Center	04-2200481 04-2163449	04-2200484	항시 운영
Cargo Village EK	04-2834179 04-2163370	04-2827216	항시 운영
Al Maktoum Air Port	04-8774381	-	항시 운영
육 상			
Hatta Port	04-8528124	04-7033683	항시 운영
Alaa Alddin Yard for containers	04-3333598	04-3333588	토요일~목요일 (7:30-14:30)

자료 : DM

검역 절차 및 단계별 주요 특징

- Dubai Municipality(DM)이 규정하는 검역절차는 하기표와 같음.

두바이 식품 수입 과정



주 : 적색 표기부분이 검역 단계
 자료 : DM

- (화물도착 이전) DM회사등록과 FIRS신청 완료 및 15,000디르함의 보증금이 납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 거래가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됨.
- (기존 수입화물 처리 완료) 신규 화물의 인수를 위해서는 이전 수입 화물에 대한 보류나 위반사항 처리를 완료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 화물이 억류될 수 있음.
- (검역 절차) 화물이 두바이 검역소에 도착한 이후 검역은 하기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절차는 중단, 화주는 이를 정정할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시정조치해야 함.
 - 서류검사*
 - 화물검사(Physical Inspection)
 - 라벨검사
 - FIRS상의 위험도 분류에 따른 무작위 샘플채취 및 실험실 검사
- (필수 구비서류)*
 - ① Bill of Entry 혹은 Airway Bill(세관신고서 혹은 선하증권)
 - ② Delivery Order(화물 인도 지시서)
 - ③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원본, 원산지국 발행)
 - ④ Packing List(패킹리스트)
 - ⑤ Halal Certification(육류, 육가공품의 경우 할랄증명서* 원본)
 - * 단 UAE 정부 승인기관으로부터 발행 되어야 함.
 - ⑥ 라벨에 추가표기*를 할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 GMO-Free, Avian Flu-free외
- (유의사항) 검역과정에서 어떠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DM은 화물을 억류하거나 관계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음.
- (화물의 억류) 위생증명서, 할랄증명서 제출의 실패, 화물검사 상태 불량, (Physically unsatisfactory), 병·해충의 의한 훼손, 신청회사가 과거 위반사례가 있거나 유효한 식품수입 자격이 없을 경우
- (화물 인도) 화물의 인도 후 화주는 FIR상의 지원서와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

▣ 두바이 식품 수입검역 시 필수 구비서류 예시 ▣

NO.	QTY	UNIT	NET WT.	GROSS WT.	NO. OF PKGS.	DESCRIPTION OF GOODS
01	4	PKG	361.46	361.46	4	COFFEE

① Bill of Entry

AWB NO.	CC / PF	SCC	HANDLING CODE
01	01	01	01

② Delivery Order

No. of Packages	No. of Units	Description of Goods	Total net weight (kg)
04	4	COFFEE	361.46

③ Health Certificate

NO. OF PACKAGES	NO. OF UNITS	WEIGHT	HEIGHT	WIDTH	LENGTH	QUANTITY
04	4	361.46				4

④ Packing List



شهادة بالذبح على الطريقة الإسلامية
(Certificate of Slaughter in accordance with Islamic Rit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1. Production Number: **6409249**

2. Slaughter Date: **2012/11/12**

Mark	No. and kind of	Description of mark	Lot No. Date	Quantity
001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2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3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4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5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6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7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8	1.0	CHICKEN	2012/11/12	276,000
009	1.0	CHICKEN	2012/11/12	276,000
010	1.0	CHICKEN	2012/11/12	276,000

Halal Certification
AUSTRALIAN HALAL FOOD SERVICES

⑤ Halal Certification

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TAIWAN, REPUBLIC OF CHINA
動物輸出及檢驗證明書
VETERINARY CERTIFICATE
for EXPORT OF ANIMAL PRODUCTS

ORIGINAL

1. 申請人 Applicant: 2. 輸出(供)品 Consignee

3. 輸出國 Exporting Country: 4. 目的地國家(Country of Delivery Destination)

5. 檢驗日期 Date of Inspection: 6. 輸出人 Exporter

7. 貨物來源 Origin of the Products

8. 貨物描述 Description of Consignment
品名 Name: 數量 Quantity: 淨重 Net Weight:

總淨重量 Total Quantity

9. 檢驗員 Inspection Officer: 10. 檢驗日期 Date Inspected: 11. 檢驗地點 Place Inspected: 12. 檢驗員簽名 Inspector Signature

1000000153

⑥ 기타 증명서

자료 : DM



제4장 관세제도

1. 관세제도

□ 개요

- GCC(걸프협력회의)*회원국인 UAE는 2003년 발효된 GCC 관세 협정에 따라 GCC 역외에서 수입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5% 관세율을 적용
 - *주 : 걸프 연안의6개 국가(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연합
 - 아울러 UAE 혹은 기타 GCC 국가로 수입될 때 첫 도착기항에서만 세금을 부과, 역내 이동 시 이중 과세하지 않음.
 - 반면 동물, 신선과일 및 야채, 일부 해산물, 곡물, 설탕, 향신료 등 품목별로 관세가 면제(0%)되거나 특별상품으로 분류, 50%(주류) 혹은 100%(담배)부과 되는 경우가 있음.
 - 부가가치세(VAT)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2018년 시행이 유력시 됨.

□ 관세율

- UAE 연방세관(Federal Custom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HS 코드별 관세율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하기 링크를 통해 접속가능
 - 수입 품목 HS 코드별 관세율이 다르므로 필히 연방세관을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음.

UAE 연방세관 관세율 조회 예시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ederal Customs Authority. The header includes the authority's name and logo. A navigation bar contains links for Home, FCA, UAE Customs, Services, e-Participation, Open Data, Careers, Archive, and Contact Us.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Latest News' section with a link to 'UAE Non-Oil foreign direct'.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nner image of officials in traditional attire. Below the banner, the page is titled 'Unified Customs Tariffe' with a 'Download' button. The main heading is 'The Unified Customs Tariffe for GCC States 2012'. A table of contents lists various sections: Introduction, Section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Section II: VEGETABLE PRODUCTS, Section III: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Section IV: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Section V: MINERAL PRODUCTS, Section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Section VII: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 Section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and Section IX: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CORK AND ARTICLES OF. On the left side, there is a sidebar menu with categories like Customs affairs, International relations, Legal affairs, Statistical Bulletins, and Media and Society. At the bottom of the sidebar, there are logos for the UAE Government, GCC, and UNIQS.

자료 : UAE 연방세관

출처 : [www.customs.ae/en/HomeRightMenu/Pages/hscodedefinition.aspx?SelectedTab=Unified Customs Tariff](http://www.customs.ae/en/HomeRightMenu/Pages/hscodedefinition.aspx?SelectedTab=Unified%20Customs%20Tariff)

■ UAE 수입 식품 품목별 관세율 예시 ■

HS Code	품목 해석	관세율
0701	냉동 혹은 신선 감자	면세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5%
0712	건조한채소	5%
0714	매니옥·취뿌리·샬렘·국아·고구마기타이와유사한전분또는이눌린을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5%
0801	코코넛·브라질넛및캐슈넛	5%
0802	기타의 견과류	5%
0803	신선 혹은 냉동 바나나	면세
0811	냉동과실과냉동견과류	5%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5%
0813	건조한과실	5%
0814	감귤류 껍질, 멜론(신선, 냉동, 건조, 저장처리한 것)	5%
0901	커피·커피의 각과피및커피를함유한커피대용물	면세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면세
1001	밀과 메슬린	면세
1002	호밀	5%
1007	수수	5%
1101	밀가루, 메슬린가루	면세
1102	곡분	면세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면세
1201	대두	면세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면세
1213	곡물의 쟈과 껍질	면세

자료 : UAE 연방세관

2. 수입규제제도

수입금지 품목

- 하기 품목은 UAE내 수입이 금지됨.

연번	품목
1	모든 종류의 마약
2	이스라엘 보이콧 관련 이스라엘 산 품목
3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출판물, 사진, 잡지, 조각상
4	코끼리 상아, 코뿔소 뿔
5	3겹의 나일론 소재 어망
6	도박 도구, 기기
7	팔콘(9월에서3월 사이)
8	능에
9	위험한 물질
10	전자 담배
11	재생 타이어
12	위폐

자료 : Dubai Customs

수입규제 품목

- 하기 품목은 수입을 위해서 관할기관으로 부터의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입규제 품목임.

연번	품목	관할기관
1	살아있는 동물 및 새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2	모든 종류의 무기, 탄약	Ministry of Interior
3	주류	Ministry of Interior
4	의약품, 의료기기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연번	품목	관할기관
5	유기농, 화학 비료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6	살균제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7	원자력 관련제품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8	씨앗, 묘목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9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10	살아있는 말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11	화학물질, 핵 물질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12	살아 있는 물고기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13	진주, 다이아몬드	DMCC
14	동물관련 부속품(가죽 외)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15	타이어, 생수	ESMA

자료 : Dubai Customs

3. 관세 환급제도

- 전시회 개최가 빈번하고 재수출 비중이 높은 UAE의 특성상 다양한 관세 환급제도가 존재함.
- (전시품 관세면제제도) 전시회나 시연을 위한 일시 수입의 경우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키징리스트, 전시회 참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입국 시 세관 신고, 5% 세금을 보증금 형태로 납부한 후 출국 시 환급 받는 방법이 있음.
 - 본국으로의 반송비용 및 파손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지에서 만난 바이어에게 물품의 판매가 가능함. 단 현지 판매 시 세금 환급이 불가
- (재수출품 관세 환급제도) UAE 내 수입 물품이 6개월 내에 재수출 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관세 환급제도가 존재
 - B.E.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 산정된 관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납부하거나 은행 보증서를 제출하면 재수출 시 환급 됨.
 -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B.E.상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수출하고 재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함.

- (ATA Carnet) ATA Carnet 제도를 통하면 최장 1년 동안 해당 물품의 일시 수출입 시 통관서류 작성하거나 보증금, 관세납부 없이 통관절차 진행 가능
 -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 보증제도를 통해 협약국 간의 일시 수출입 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
 - 상공회의소를 통해 증서를 획득한 출장자의 경우 유효기간 내 복수 국가를 방문 후 본국으로의 재반입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음.

4. 한-UAE간 이중과세방지협약

- 한-UAE 정부는 2003년 9월,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
 - 양국 간의 과세권 배분과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경제 교류를 촉진하려는 목적
- 기업 활동 소득에 대해서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천지 국가에서만 과세
 -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산업적 장비 등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과세
 - UAE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제5장 라벨링제도

1. UAE 식품 라벨링 관련 규제

- UAE 식품 라벨링 규제는 연방차원의 규정인 UAE.S. GSO 9: 2013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포장식품 라벨링 규정)를 근간으로 함.
- 아부다비와 두바이 정부는 에미레이트 차원의 식품 수입 규정인 Food Importers Guide와 Import & Re-export Requirements for Foodstuffs를 통해 연방규정을 구체화 하고 있음*.
 - * 아부다비와 두바이 에미리트의 규정의 경우 II. 통관제도 참고
- 할랄식품 라벨링의 경우 UAE.S. GSO 2055-1를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함.

2. UAE.S. GSO 9: 2013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

- UAE 라벨링규제의 준거표준인 UAE.S. GSO 9: 2013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포장식품 라벨링 규정)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UAE로 수입되는 식품들은 동 규정이 요구하는 일반요건, 필수기재정보, 필수 기재정보의 표기방법을 따라야 함.

일반 요건

-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다른 식품 혹은 제품과 혼동을 유발하거나 혼동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단어나 표현을 적을 수 없음.
-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제품의 특징에 대한 어떤 거짓이나 꾸밈을 기입할 수 없음.
- 라벨에 표기하는 로고(예: 할랄)의 사용을 위해서는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QMS)에 대해 명기해서는 안됨.

□ 필수 기재 정보

- ① 제품 및 브랜드명(The Name of the Food)
- ② 전 성분 (List of Ingredients)
 -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중량, 비율 순으로 기재
 - 과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나 재료포함 표기
- ③ 영양성분 정보(Nutritional Information)
- ④ 순 중량(Net contents)
 - 유동식품은 부피, 고형식품은 무게, 반고형 혹은 점성식품은 무게 또는 부피로 표시
- ⑤ 제조자/수출자명과 주소 (Name of Address)
- ⑥ 원산지(Country of Origin)
- ⑦ 유통기한, 보관법 및 사용법
 - 3개월 미만의 유통기한은 일-월-년 순서로 표기
 - 3개월을 초과하는 식품의 경우 월-년의 순서로 표기
- ⑧ 방사선 조사(Irradiated) 여부

□ 필수 기재 정보의 표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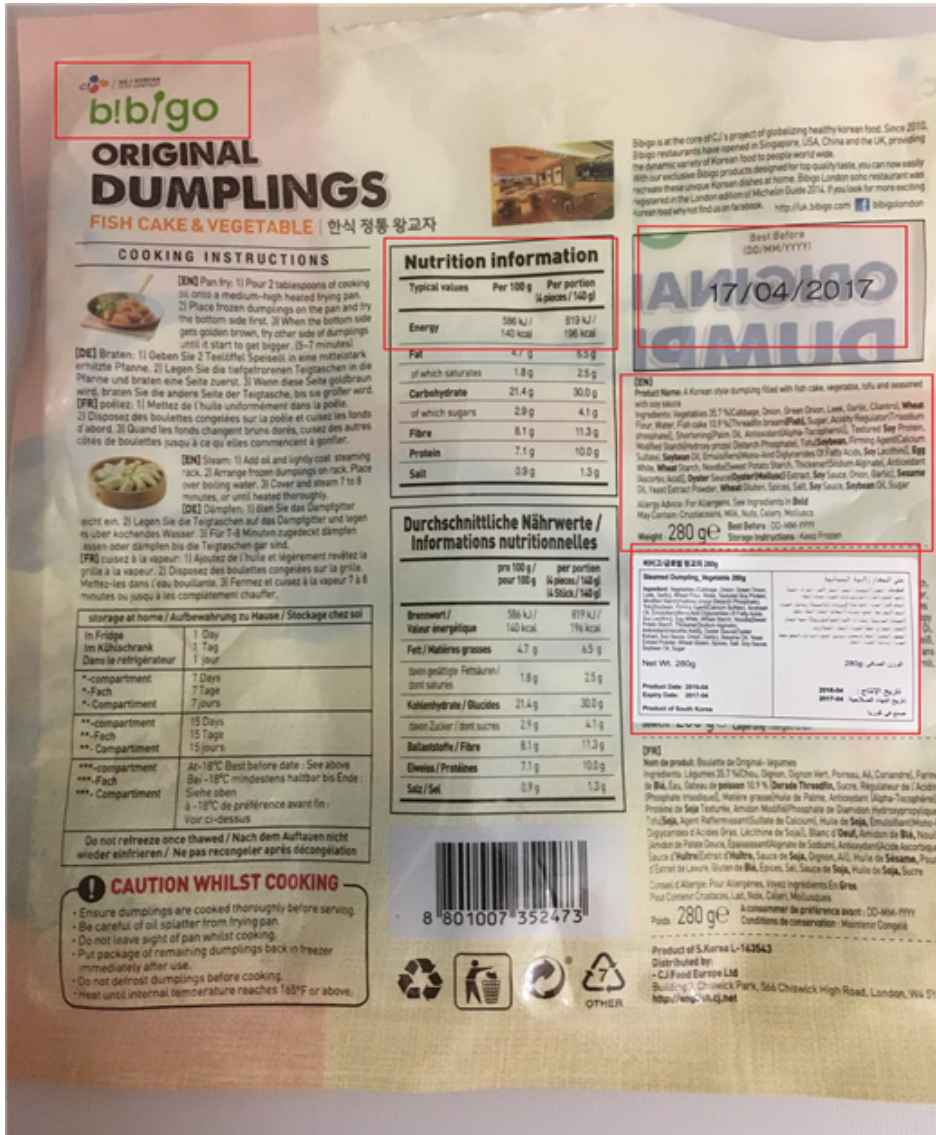
- 포장식품의 라벨은 용기로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어서는 안 됨.
- 라벨에 기입된 내용은 보기 쉽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식품명과 순 중량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위치해야 함.
- 어떠한 허가받지 않은 제품분류나 전문용어, 부호, 사진 등이 삽입되어서는 안 됨.
- 표시언어는 아랍어가 기본이며 영어로 병기, 아랍어 라벨을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할 경우 최초의 라벨 근처에 부착해야하며 아랍어 라벨은 모든 정보를 포함, 제조업체가 만든 단수의 스티커만 부착 가능함.
- 제조 및 유통기한을 스티커의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 포장 위에 직접 도장을 찍거나 엠보싱 인쇄를 하여 제조업체(공장)와 제품번호(Lot) 번호를 나타내야 함.

UAE에서 판매중인 외국 포장식품 라벨링 예시



자료 : 직접 촬영

UAE에서 판매중인 한국 포장식품 라벨링 예시



자료 : 직접 촬영

3. 할랄식품 라벨링 규정

- 할랄식품의 요건을 근거하는 UAE.S/GSO2055-1:2015는 할랄식품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일반적 요건, 포장, 판매·유통, 보관·운송, 라벨링을 규정함.
- UAE 포장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UAE.S. GSO9: 2013)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하기의 내용을 따라야 함.
 - ① 제품의 종류와 이름
 - ② 성분표 :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금지품목을 포함 금지
 - ③ 라틴, 레닛 등 지방, 유지, 육류부산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경우 출처를 명기
 - ④ GMO 포함 여부
 - ⑤ 할랄식품임을 주장하는 표식을 부착할 경우 GSO2055-2 준수
 - ⑥ 도축한 가축과 육류의 경우 GSO993 준수
 - ⑦ 식품첨가물의 경우 GSO9 준수
 - ⑧ 비늘이 있는 수산물, 새우 및 그 알과 부산물은 비늘이 있는 수산물, 아닐 경우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별도 표기

제6장 통관문제사례

□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두바이 식품통관

- 현지 식품수입 업체들에 따르면 UAE의 경우 통관업무가 전산화 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두바이의 경우 많은 물동량으로 인해 식품 검역 및 샘플검사 등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는 한 통관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현지 비즈니스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식품 신선도와 관련된 분쟁사례

- 신선식품 수출업체 A 사는 현지 바이어로부터 수만 달러 상당의 신선식품을 주문받고 납기일에 맞춰 수출 절차를 개시하였다. 현지 바이어는 선적 전에 업체를 실사하고, 제품의 신선도를 확인하였으나 처녀 수출이었던 제품의 특성 상 현지 통관 및 검역과정에서 화물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UAE의 경우 50도를 넘나드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신선식품의 경우 제품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들은 이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거나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신선식품이 항구에 머물러 있거나 통관과정에서 바이어와의 사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조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아울러 고온다습의 기후에 적합한 포장방법을 개발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회사이름을 바꾸며 사기행각

- 두바이에서 활동하는 수입상은 복수의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출환어음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으로 수만 달러 상당의 가공식품을 수입하였다. 물건을 인수한 업체는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회사를 폐쇄했다.
-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들여온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 UAE에서는 회사설립과 폐쇄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사업자등록(Trade License), 은행거래내역, 이전 수입거래 내역 입수 등을 통해 믿을만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돼지고기 성분 포함 시 함유 불가

- 이슬람 국가인 UAE 특성상 할랄인증이 없는 육류는 수입이 불가하다. 국내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UAE 제품 수출을 타진, 특제소스로 조미한 가금육 가공품 수입바이어를 물색했다. 새로운 가공법에 흥미를 느낀 현지바이어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 해당 업체는 UAE 수출에 필수적인 할랄 인증서 발급과정에서 소스에 미량의 돼지고기 성분이 함유, UAE 수출이 불가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돼지고기 성분을 대체하는 소스를 이용하여 수출을 성공시키려 했지만 바이어의 변심으로 UAE진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이처럼 UAE로 육류 및 그 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할랄 인증서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UAE 소비자의 경우 비이슬람 국가로부터 수입된 식품이 비할랄일수 있다는 막연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랄 인증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 유도가 중요한 마케팅 방법임을 조언한 바 있다.

제7장 수출현안

1. 할랄인증서 취득의 어려움

- UAE로 육류, 가공육 및 육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에미리트 별 식품 수입 승인 획득을 위해 할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두바이의 경우, DM은 육가공 식품에 대한 인증서의 제출유무만을 확인, 해당 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음.

UAE 정부 인정 할랄인증서 발급기관 리스트 예시



قائمة محدثة بأسماء جهات اصدار شهادات الحلال والمسالخ المعتمدة في الدول المصدرة للحوم الحمراء ولحوم الدواجن ل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Updated List of Approved halal certifiers and slaughterhouses in the Countries

Exporting red Meats & Poultry meats to the U.A.E

تحديث بتاريخ 6/10/2016

نوع اللحوم المسموحة / ملاحظات Type of permitted meats / comments	المسالخ المعتمدة التي تشرف عليها جهات اصدار شهادات الحلال Approved slaughterhouses that are supervised by the halal certifiers	جهات اصدار شهادات الحلال Approved halal certifiers	الدولة Country
يسمح باستيراد اللحوم الحمراء ولحوم الدواجن		مسجد بيرث غرب استراليا - بيرث The Perth Mosque of Western Australia	1. استراليا Australia

자료 :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

- 할랄인증서 발급기관은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가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한국 내 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내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동 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심사관을 초청, 실사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함.

- 복수의 한국기업이 그룹으로 인근 기관을 초청하여 인증심사를 받음으로써 경비를 절약하고 있는 현실이며 국내기관 발급 할랄인증서의 UAE 인정이 시급한 현안임을 토로함.

Ⅱ UAE 인정 할랄인증서 발급기관 Ⅱ

연번	소재국가	기관명
1	중국	China Islamic Association Shandong Islamic association china
2	태국	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
3	싱가포르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 Islamic Religious Council of Singapore
4	일본	Islamic Centre of Japan Japan Islamic Trust
5	말레이시아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
6	인도네시아	Majelis Ulama Indonesia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
7	필리핀	Islamic Da`wah Council of the Philippines(IDCP)
8	대만	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주 : 우리나라 주변국 기준이며 전체리스트는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 :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

2. UAE 표준측량청과 할랄인증제도

- 조사 전문기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따르면 2014년 1조 1,280억 달러 규모의 세계 할랄식품 소비량은 2020년 1조 5,8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규모 확대에도 시장에는 100여개의 할랄마크가 유통, 통일된 국제표준이나 공통 할랄마크의 사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UAE 표준측량청, 독자적 할랄규제 제정

- 표준측량청(ESMA)은 2014년 1월 UAE 할랄제품에 대한 규제(UAE Scheme for Halal Products)를 제정, 할랄의 요건과 적합성 평가방법을 규정

- 고유의 할랄인증 제도인 UAE 할랄마크제도(Halal National Mark)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할랄 준수여부 감독을 목표로 함.
- 첫 단계로 UAE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UAE 할랄인증 취득절차

- UAE 독자 할랄인증인 할랄마크(Halal National Mark) 취득이 현 단계 에서 의무는 아님.
- 반면 할랄마크 취득 업체들은 할랄마크 취득과 부차이 UAE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2014년 10월 샤르자 Global Food Industries, 아부다비 Aghthia를 비롯, 2016년 10월 기준 60여개사 제품(식품이외 제품군 포함) 할랄마크(Halal National Mark)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짐.

▮ 할랄마크 및 인증서 예시 ▮



자료 : ESMA

- 수입식품의 UAE 할랄인증 획득절차는 크게 수입업자의 ESMA 웹페이지 접수→ ESMA의 서류심사 및 제조업체 실사→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수여로 구분되며 소요기간은 3개월임.
- 할랄 인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음.
 - 온라인 지원서
 -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 자기증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 원재료 성분목록 및 원재료 할랄증명서
 - 제조공정 설명서, 라벨디자인
 - FSMS, GMP, GHP or QMS증명서
 - 수수료

□ UAE 할랄마크제도, 범세계적 기준되나

- 걸프지역 표준화기구인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GCC 차원의 할랄마크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
 - UAE 할랄마크제도의 GCC차원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한편 UAE 주도로 결성, 국제할랄인증포럼(International Halal Accreditation Forum) 출범 준비가 마무리 단계
 - 2016년 11월 총회에서 관련규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UAE 독자 할랄인증 제도인 할랄마크제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으로 우리기업의 대비가 필요함.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미얀마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관세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수출 프로세스 전반

- 미얀마의 농식품 수출은 주로 현지 수입업자와의 수출입 계약으로 시작됨. 미얀마의 경우, 수입업체가 통관 및 관세 프로세스를 주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미얀마는 수출입 시 매 건별 수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수출입업자 등록이 첫 번째 단계임.
 - 수출입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상무부 산하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에서 수출입업자 등록 증명서를 교부함.
 - 수출입업자는 한 번의 등록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수출, 수입 모두 수행 가능함. 수출품,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 할당량이나 한도는 없음.
 - 수출입업자 등록은 5년간 유효하고 수수료는 20만차트(Kyat)임. 이후 5년간씩 연장 가능함.

2. 수입·수출 허가 획득

- 출항·입항 전에는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정상적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관련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함
- 수출입 화물에 대해 매 진행 건마다 정부기관(상무부/무역국)에 직접 가서 수입, 수출 각각의 허가를 신청함.
 -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양곤 기준 차량 편도 4시간 거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 하던 것이 2011년 10월부터 양곤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게 됨.
 -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무부 산하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이 규정한

양식을 사용한 신청서에 600차트(Kyat)의 수입인지를 붙여 수입업자의 등록번호, 등록날짜, 법인 등록 번호, 신청인 이름, 신청일자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함. 견적 송장, 상세수입방법, 상품의 사용, 포장 및 운송 방법 등이 명시된 수입계약 등과 같은 문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한 번에 3개월 연장 가능함.
- 수출 라이선스는 수출 무역 대금이 수출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상태여야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 입금 시 일종의 상업세(Commercial Tax)로 10% 자동 공제됨.
 - 미얀마는 수입 실적이 있어야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임.
 - 수입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수입 실적이 많은 업체로부터 약 1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할당 구매를 함.
- 수입 라이선스는 사전에 수입화물에 대한 지급대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은행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수입 허가 발급 가능함.

3. 통관 절차 물류 전반

- 미얀마의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프로세스를 거칠수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나 운송/통관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얀마의 수입 통관은 Yangon 항구(MIP 포트, 아시아월드 포트, 띠루와 포트, 보아웅찌 포트)에서 이루어짐.
- 미얀마의 열악한 유통 인프라 환경으로 물류의 기본이 되는 도로와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양곤을 중심으로 물류가 이루어짐
- 기존 미얀마의 유통시장은 중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한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경무역으로 수입된 제품은 양곤 및 만달레이로 1차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 미얀마의 운송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제품들이 대부분 양곤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속버스를 통해 운송됨. 양곤에서 바간, 만달레이, 네피도 등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유통되고 있음.

- 한국 제품의 경우 물류비용이 비싸 베트남 공장을 통해 한국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음.
- 미얀마에는 3개의 주 물류 채널이 있는데, 양곤항을 통한 해상무역, 양곤 국제공항을 통한 항공무역, 중국과 태국을 통한 국경무역임.
- 양곤항은 미얀마 수출입화물의 90%를 차지하는 제1의 무역항이지만 River항이기 때문에 수심이 낮아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해 수출품을 싱가포르 등에 환적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이에 정부는 2015년까지 미얀마 남동부 다웨이(Dawei)지역을 운송·물류·생산 기지로 개발 계획에 있으며, 중국과 인도양을 잇는 도로와 항만의 개설 예정임
- 항공무역은 양곤 국제공항(Yangon International Airport)으로부터 시작되며,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로 직항이 운행되고 있음.
- 국경무역은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4개국 16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4. 통관 프로세스

- 미얀마 통관사는 정식 통관 서비스 라이선스를 가지고 운영함. (매년 갱신)
- 봉제용 원부자재의 수입시 통관은 CMP이기 때문에 Working Day로 3일 정도 소요되고 다른 일반 수입화물은 대략 7-10 정도 소요됨. 비용은 수입시 약 360불/20피트, 수출시에는 약 250불이며 흘랑따야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운송비는 120불 정도임

(1) 서류 준비 및 제출

- 세관 신고 서류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세관 신고 서류 : Customs Declaration Form 1 : CUSDEC-1
 - 관련 제출 서류 : Original Seller's Invoice, B/L, Import License, Packing List, Sale Contract

Ⅰ 미얀마 세관 Contact 정보 Ⅰ

담당자	직통 번호
Duty officer	(951) 391442
Director (Import/Export)	(951) 380725
Deputy Director (Export/Import)	(951) 387151
International Section, Admin Division	(951) 387161

(2) 서류 심사 I

- 중앙등록사무소(Central Registry)에서 서류기재 데이터 정확성 여부 검토
 - 서류가 다 구비 되었고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련번호, 날짜, 시간 등을 기재한 영수증(Acknowledgement Receipt) 발급

(3) 서류 심사 II

- 수입과(Import Section) 서류 검토
 - 세관 신고 서류와 송장 등 관련 서류 비교 검토

(4) 감정평가와 검토

- 수입품목이 수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게 수입되었는지 검토
 - 품목명세, HS코드, 관세율, 수량, 크기 등 세부항목 검토 후 가치산정과(Valuation Unit)으로 서류 전달. (올바른 품목 분류 및 정확한 관세 납부액 산정 목적)

(5) 가치산정과

- 가치산정과(Valuation Unit)에서 수입 신고 가격과 기존 수입 가격 비교
 - 과거 동종품목의 수입가, 카탈로그, 필요시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상품가치를 산정
 - 수입 기록이 없는 경우, 수입업자와 협상 및 인터넷 가격을 참고하여 산정
 - 가치 산정 후, Appraisal Group(심사)으로 세관 신고 서류 전달

(6) 현금수납과

- 현금수납과(Cash Section)에서 관세 및 세금 결정액 부과
 - 가치산정과(Valuation Unit)에서 산정한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세금결정액 부과

(7) 현장 감정(평가)과

- 현장 감정(평가)과 (Wharf / Warehouse / Container Terminal / Airport Appraising Group)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 비교 검사
 - 세관신고서류(CUSDEC-1) 및 관련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품목 비교검사
 - 검사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수입 품목이 다를 경우, 압류, 관세 재계산, 환불, 추가징수 등의 조치 시행

■ 미얀마 수입 통관 절차 프로세스 요약 ■

단계	부서	절차	내용
1	-	서류준비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신고서류 (Customs Declaration Form 1: CUSDEC-1)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Original Seller's Invoice, B/L, Import License, Packing List, Sale Contract 등
2	중앙등록사무소	서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서류 구비여부 및 CUSDEC-1 세관 신고 서류 기재 데이터 정확성 여부 검토 •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일련번호, 날짜, 시간 등을 기재한 후, 영수증 (Acknowledgement Receipt) 발급
3	수입과	서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신고 서류와 송장 등 관련 서류 비교 검토
4	감정(평가)과	수입품목의 수입규정 위반여부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품목이 수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게 수입 되었는지 검토 • 품목명세, HS코드, 관세율, 수량, 크기 등 세부 항목 검토 후, Valuation Unit으로 서류 전달 (올바른 품목 분류 및 정확한 관세 납부 금액 산정목적)
5	가치산정과	수입신고 가격과 기존수입 가격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동종 품목의 수입 가격, 카탈로그, 필요시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상품 가치 산정 • 수입 기록 없는 신 품목의 경우, 가치산정에 애로, 경우에 따라 수입업자와 협상 가능 • 가치 산정후, Appraisal Group(심사)으로 세관 신고 서류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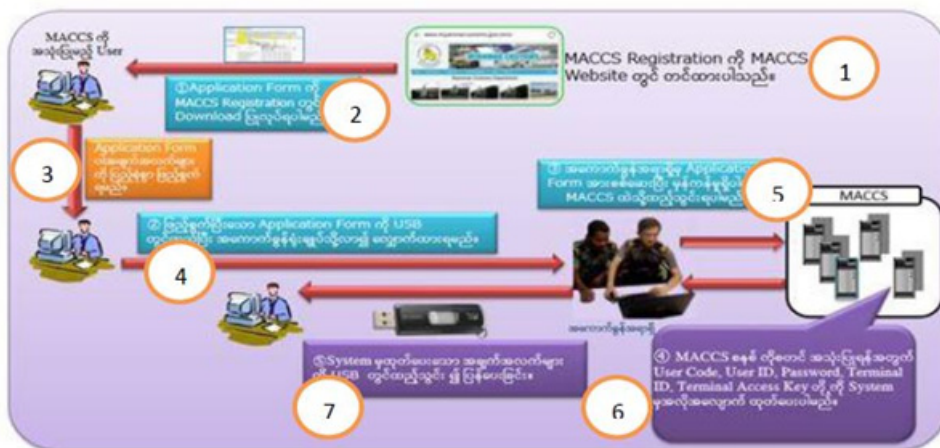
단계	부서	절차	내용
6	현금수납과	관세및세금 결정액부과	• Valuation Unit에서 산정한 상품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및 세금결정액 부과 및 징수
7	현장감정 (평가)과	서류기재 내용과실제 수입품목 비교검사	• 세관신고서류(CUSDEC-1) 및 관련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수입품목 비교 검사 • 검사과정에서 서류 기재내용과 수입품목이 다를 경우, 압류, 관세 재계산, 환불, 추가징수 등의 조치 시행

출처: 미얀마 관세청

5. 미얀마 전자통관 시스템(MACCS)

- 2016년 11월부터 각 국가와의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량을 더욱 증가시킬 목적으로 전자자동 통관시스템을 정식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전자 통관시스템은 양곤 항구와 공항에 가장 먼저 실행될 예정이며, 태국, 미얀마 국경에 있는 미아와디(Myawady), 타킬렉(Tachileik), 중국-미얀마 국경에 있는 무세(Muse)과 같이 규모가 큰 국경무역센터로 확장 예정
- 일본 국제협력기관(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사업 자금 조달을 통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미얀마의 관세 행정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짐

미얀마 전자통관 시스템등록 절차



※ 미얀마 관세청 <http://www.myanmarcustoms.gov.mm/maccs/Registration.aspx> 참고

- ① MACCS 웹사이트에서 MACCS 회원 등록
 - ② 신청서를 MACC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③ 신청서를 작성
 - ④ 작성한 신청서를 USB에 저장 후 미얀마 통관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
 - ⑤ 미얀마 통관담당자와 신청서의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MACCS에 업로드
 - ⑥ MACCS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User Code, User ID, 비밀번호, Terminal ID, Access Key 등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발급됨
 - ⑦ 시스템에서 발급된 사용권한을 USB에 저장 후 실행
- 미얀마 통관시스템 신청서 및 절차들을 미리 숙지하여 한국 식품업체들이 온라인 시스템으로의 전환 후에도 수출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제2절 운송

1. 무역항

- 미얀마의 해상 무역은 양곤에서만 이루어짐. 양곤에는 MIP(Myanmar Industrial Port, 필라와, 아시아월드, 보아웅찌 등 4곳의 포트가 있으며 MIP(Myanmar Industrial Port, 필라와, 아시아월드는 민간이, 보아웅찌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1996년 11월 오픈한 필라와 포트의 정식 명칭은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Thilawa로 줄여서 MITT라고 부름. 양곤 다운타운에서 25Km 떨어져 있으며, 차로 40분 정도 소요됨. 필라와 포트는 미얀마 수출입 물동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양곤 강에 위치한 아시아월드포트(Asia World Port Terminal: AWPT)는 양곤 다운타운에서 차로 15분, 양곤 공항에서 40분 소요됨. 미얀마 업체 Asia World 자회사인 Asia World Port Management가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5월에 오픈함. 다운타운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필라와 포트와 비교시 규모가 작으나, 최근에 오픈하였고, 민간이 운영하여 항만 처리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보아웅쩌 포트의 풀네임은 Botahtaung Street Wharf(Myanmar Port Authority)로써 미얀마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1987년 오픈함. 양곤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미얀마 항만청(Myanmar Port Authority)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음.
- 미얀마의 낙후된 물류분야를 향상을 위해 400만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MIP (Myanmar Industrial Port)에 제공한다고 밝혔음. 2013년 4월 22일에 열린 MIP는 미얀마 컨테이너 수송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컨테이너항이며, 미얀마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으로 MIP의 터미널 처리능력이 기존 300,000TEUs에서 500,000 TEUs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미얀마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정부의 정책 및 경제개혁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약 90%의 증가율을 보임.
-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Thilawa (MITT)
 - 주소: Berth 5-9 Thilawa, Kyauktan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 (95-56) 25245~52
 - 팩스: (95-1) 244446
 - 이메일: mitt@mptmail.net.mm
- Asia World Port Terminal (AWPT)
 - 주소: Strand Road, Ahlone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 (95-1) 210601, 210747, 211561
 - 팩스: (95-1) 210598
 - 이메일: awpm@mptmail.net.mm
- Botahtaung Street Wharf (Myanmar Port Authority)
 - 주소: Myanmar Port Authority, Shipping Agency Department, 83-91, Bo Aung Kyaw St, Yangon, Myanmar
 - 전화: (95-1) 375443
 - 팩스: (95-1) 256912
 - 이메일: mpa-sad@mptmail.net.mm

2. 공항

- 미얀마의 관문은 양곤 국제공항(Yagon International Airport)임. 양곤 시내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음. 2007년 5월, 시간당 1,800명, 연간 270만 명의 승객 처리 능력을 갖춘 신공항 청사로 개장되었으며 구 공항 청사는 국내선 청사로 이용되고 있음.
- 태국(방콕, 치앙마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중국(광저우, 쿤밍), 대만(타이페이), 인도(콜카타, 가야), 베트남(하노이, 호찌민), 캄보디아(프놈펜)로 직항이 운항되고 있음. 항공 스케줄은 대한항공이 한국-미얀마 직항을 2012년 9.13일부터 일주일에 7번(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운행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3월 1일부터 운행 중단했음.

┃ 취항 항공사 리스트 ┃

항공사	주소	전화/팩스	목적지
Bangkok Airways(PG)	#0305, 3rd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 255122, 255265 Fax: 255119	Bangkok
Malaysia Airlines (MH)	335/357, Bo Gyoke Aung San Road, Pabedan Township, Yangon	Tel: 387648 Fax: 241007	Kuala Lumpur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8M)	#0802, 8th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 255440, 255180/1 Fax: 255035	Kuala Lumpur, Singapore, Bangkok
Silk Air (MI)	#0202, 2nd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 255287~9 Fax: 255290	Singapore
Thai Airways International (TG)	#1101,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 255499 Fax: 255490	Bangkok
Air Bagan (W9)	#56, Shwe Taung Kyar St., Bahan T/S, Yangon.	Tel: 514861, 504888 Fax: 538283	Chiang Mai

항공사	주소	전화/팩스	목적지
Indian Airlines Limited (IC)	#75, Shwe Bon Thar Street (lowest Block), Pabaedan Township, Yangon	Tel: 253598 Fax: 248175	Kolkata
Air China(CA)	Ground floor, The Grand Mee Ya Hta Residences	Tel: 250016, 256355/6 Fax: 250016	Kunming
China Airlines(CI)	#519 AB, Theinphyu Street, Mingalar Taung Nyunt Township	Tel: 380688 Fax: 394935	Taipei
Thai Air Asia(FD)	#33, G-Floor, Park Royal Hotel, Alan Pya Phaya Pagoda Road, Dagon Town ship, Yangon.	Tel: 251885~6 Fax: 251882	Bangkok
Vietnam Airline(VN)	#1702, 17th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 255068, 255066, 255088 Fax: 255086	Hanoi
China Southern Airline(CZ)	372(Rm 2), Bogyoke Aung San Rd., The grand Mee Ya Htar Executive Residence, Pabedan Township, Yangon	Tel: 256355 Ext: 3555 Fax: 250016	Guangzhou
Korean Airline (KE)	Operation – Room #1, Kevel-1, Guard of Honor BLDG Yangon International Airport, Mingladon Township, Yangon Office – 2th floor, Office Tower, Near Hantharwaddy, Pyay Garden	Tel: 533-264 Fax: 533-265 Tel : 505 958	Incheon
Asiana Airlines(OZ)	N0.441, Room 1(A)-Upper Floor, New University Avenue Road, (Kanbawza bank building), Bahan Township, Yangon, Union of Myanmar.	Tel: 01-544 980, 01-544 981, 01-860 5337	Incheon

3. 운송 및 통관 서비스 회사

○ New Golden Lion Enterprise

- 주소: No. 563, Room 23, 2nd Floor, MAC Tower, Kyauktada Township, Yangon
- 전화: (95-1) 253589
- 팩스: (95-1) 253589

- 휴대폰: (95-9) 501 2625, 5166113
- 이메일: newgoldenlionenterprise@gmail.com
- N.M.T
 - 주소: No 477, 1st Fl, Merchant St, Botahtaung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 (95-1) 245854, 392424
 - 팩스: (95-1) 256866
 - 담당자: Myo Thant / Managing Director
 - 휴대폰: 09-500-7693
 - 이메일: nmt@mptmail.net.mm
- Myanmar Express International
 - 주소: No.21, 54 st, Pazundaung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 (95-1) 299463, 291378, 204033
 - 팩스: (95-1) 291804
 - 이메일: meims@mptmail.net.mm / maims@cybertech.net.mm
- Myanmar Custom Clearing Agents Association / Myanmar Custom Brokers Association
 - 주소: 4th Floor, No.27, Min Ye Kyaw Swar Street, Lanmadaw Township, Yangon
 - 전화: (95-1) 214 845
 - 팩스: (95-1) 214 845
 - 담당자: Mr. Nyi Nyi Aung
 - 휴대폰: Hp: 95-9-500 6408
 - 웹사이트 : <http://www.myanmarcba.org/>
 - 이메일: unyinyiaung@gmail.com, mcba.office@gmail.com

4. 운송비용

-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MIP, 필라와, 아시아월드, 보아웅쩌 등 4곳의 포트에서 양곤 주요 지역까지의 운송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MMK)

Sr.No	Destination	BSW	AWP-MIP	TLW
1	Hlaing Tharyar	83,000	83,000	155,500
2	Bayint Naung	68,000	68,000	111,500
3	Shwe Pyi Thar	81,500	81,500	154,500
4	Ahlon	49,500	49,500	103,000
5	Kamayut	68,000	68,000	111,500
6	Insein	75,000	75,000	137,000
7	Paohkan	80,500	80,500	152,500
8	Wartan	43,500	54,500	87,500
9	Bothtaung	43,500	54,500	86,000
10	Satsan	52,500	57,500	86,000
11	Tamway	68,000	72,500	87,000
12	Thuwunna	68,000	72,500	87,000
13	Thakayta	67,500	72,500	86,000
14	Bahan	68,000	72,500	87,000
15	Thamine	68,000	68,000	111,500
16	Kyaikwine	68,000	68,000	112,000
17	Sawbwaryigone	77,000	77,000	139,500
18	Pale	98,500	98,500	153,500
19	Mingalardon	98,500	98,500	153,500
20	Pyinmabin	98,500	98,500	153,500
21	S/Okkalapa	68,000	72,500	109,500
22	Thingangyun	68,000	72,500	109,500
23	N/Okkalapa	76,500	81,500	120,000
24	S/Dagon	71,000	76,000	85,500
25	N/Dagon	83,500	88,500	120,500
26	Shwepaukkan	81,000	85,500	152,500
27	Nwekway/Htaukkyant	127,500	127,500	138,000
28	Hmawbi	154,000	154,000	223,000

주 1: BSW는 BoangKyaw Street Warf, AWP-MIP은 Asia World Port/Myanmar Industrial Port, TLW은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Thilawa (MITT)를 뜻함.

주 2: MMK(짜트)는 미얀마 현지화이며, USD1 = MMK 1,305(2016년 11월 25일 기준) 수준임.

5. 미얀마 Port 현 상황

- 금년(2016년) 4~5월 미얀마 포트에 통관 기간이 길어진 문제가 발생하였음.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첫째 예년의 경우 떠난 기간에 대개 1~2척의 배가 입항해서 양하를 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떠난 기간에 MIP에만 15척의 FEEDER선이 들어와서 양하를 하였고 AWP(Asia World Port)에도 8척의 FEEDER선이 양하를 하였음. 떠난기간 동안 세관에서 3번의 OVER TIME을 해서 업무를 봤으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수입화물의 대규모 반입으로 인하여 이번 Port 혼잡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파악됨. 여기에 Auction container 의 장기간 적치문제와 건기로 인한 강 수위저하에 따른 선적량 감소도 이유로 작용하였음.
- 과거에는 양곤에서 나가고 양곤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적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환적을 했는데 최근 중국 상하이와 닝보 호치민에서 양곤으로의 직항이 생겼으나 한국이나 일본에는 아직 직항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환적을 하게 됨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환적을 하기 때문에 환적지에서의 신속한 환적이 중요함.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FEEDER VESSE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국의 춘절과 미얀마의 떠난 시의 운송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미리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미얀마의 떠난 기간에는 세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떠난 전에 통관이 안 되면 떠난 이후에 도착을 시켜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 최근 양곤에 차량이 급증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수출시 예정보다 몇 시간 먼저 공장에서 출발시키는 것도 중요함

6. 육상운송

- 미얀마의 철도, 도로 등 육상 운송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편임. 광대한 국토면적에 비해 고속도로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철도 또한 대부분 영국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되어 시속 40km 이상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임. 따라서 물류의 육상 이동이 매우 곤란하며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인 티크 목재의 경우 내륙에서 벌채되어 강을 이용, 양곤 항으로 운송하고 있는 실정임. 도로의 노면 또한

매우 열악함. 양곤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나 지방도로의 경우 중앙선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스팔트 등 기초 도로자재의 부족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해 정상속도를 낼 수 없는 실정임. 지방도로는 비포장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승용차로 여행하기 어려우며, 지프형 Four wheel drive를 주로 이용함.

- 미얀마에서 6~10월은 우기로 비가 많이 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특히 산간오지를 여행하기는 매우 어려움. 지하자원이 주로 매장되어 있는 곳의 접근이 이 시즌에는 어렵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나 현장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지난 2006년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수도인 네피도,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를 잇는 352마일 길이의 고속도로망의 건설되어 미얀마 3대 도시 간 육상 운송이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자금부족으로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 노면만 있는 관계로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굴곡이 심해 고속주행이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음.
- 아울러 노후화된 철도망을 보수하고 중국으로부터 기관차를 수입하는 등 철도망 개선과 노후화된 교량의 교체 및 신교량 건설 등 철도 운송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 철도망은 '양곤-만달레이' 구간이나, 이 구간의 경우에도 단선철도로 운영되어 물동량 수송의 한계는 물론,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양곤-네피도-만달레이' 구간을 복선화함. '양곤-네피도' 구간은 약 360km, '네피도-만달레이'는 260km로 '양곤-네피도-만달레이' 총구간은 약 620km로 총 490개의 교량이 신설됨. 동 구간의 복선화를 통해 북부의 풍부한 광물자원, 남부의 농산물의 이동은 물론, 내륙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얀마 국내 물류 외에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 등 국가 간 국경무역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와 해양,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7. 소포 및 특사배달

- 미얀마의 우체국 시스템은 매우 열악해서 물건을 찾거나 보낼 때는 직접 우체국까지 가야함. 한국에서 미얀마로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 EMS서비스 또는 DHL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EMS서비스가 무난함.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도 역시 EMS 또는 DHL을 이용할 수 있음. 국내소포의 경우 미얀마 우체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버스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양곤 시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 한국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의 샘플 수령 시 대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샘플로 보기에는 과도한 수량일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한국으로 보통우편물 발송시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며 한국에서 미얀마로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보다 DHL이나 EMS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EMS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에서 통관 및 검사를 위해 개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실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중요한 물품의 경우 DHL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제3절

원산지 규정

1. 한·ASEAN FTA 내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은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서 기술되어 있음.
 - 부속서 3에 따르면 상품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부속서 3, 제3조).
 -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상품
 -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행된 수렵, 뿔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

득된 상품

- 당사국 영역내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함.
 -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
 -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함.
 -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함.
 -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생산에 2국 이상이 관여한 경우이에는 부속서 2의 부록2에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하거나 부록 2에서 규정되고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이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 한·ASEAN FTA에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문제는 협상에 있어 매우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이슈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 초기에 한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경계심을 보임. 부속서 3의 제6항 '특정품목의 취급'에서 실질적으로 역외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을 허용하였고 이 조항에 적용되는 특정품목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ASEAN의 특혜관세혜택을 이끌어냄.

- 이러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양측 경제장관들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 역외 (개성) 투입 (재료비 외에 운송비 등 제반 비용 포함)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가격의 40% 이하이고 일방 당사국(한국)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총재료 가치의 60% 이상인 경우(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데 합의함.
- 교환 각서에서 각 ASEAN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함. ASEAN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되었고 의류(24.8%), 시계(17.9%)의 순으로 허용한 품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의 ASEAN 수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ASEAN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개성공단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자국의 국내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ASEAN 각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까지 한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양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성공단의 실시 및 시행과 관련한 부속서 3의 제6조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협정이 발효하고 5년이 지난 후에(anytime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SEAN 회원국 각국이 개성공단을 다루는 제6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본 양해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ASEAN측에 안전장치를 제공함.
- ‘특별 긴급수입제한’이나 ‘5년 후 철회 조항’과 같은 ASEAN의 의견이 반영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과 한국의 진출 업체의

주력 수출시장이 미주·구주 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5년 후에 개성공단 제품이 ASEAN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또한 한·ASEAN 정치·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ASEAN 회원국들이 이러한 안전장치를 발동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국가 공인 인증제도

- 미얀마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식품 품질 안전 표준 체계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UL, CE마크와 같은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미얀마에는 식품산업에 대한 품질과 검역이 강화돼 미얀마 FDA는 국제식품 기준인 FSMS, HACCP, GMP의 인증을 통과해야 식품 판매를 승인해주는 등 식품 품질 안전 표준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미얀마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경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주로 중국과 태국산)에 대한 검역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임.

Ⅰ 주요 인증기관 정보 Ⅰ

기관	주소/E-mail/웹사이트
미얀마 농축수산부 (Myanmar Agriculture)	주소: Kaba Aye Pagoda Rd, Thiri Mingalar lane, Tankin P.O., Yangon, Myanmar
	E-mail: dap.moai@mpmail.net.mm
	웹사이트: http://myanmargeneva.org
미얀마 식약청 (Ministry of Health in Myanmar)	웹사이트: http://www.moh.gov.mm
미얀마 농업 서비스 (Myanmar Agricultural Service)	웹사이트: http://www.myanmargeneva.org

제2장 관세제도

제1절 관세 및 부가가치세

- 미얀마의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세와 상업세로 나뉘며, 국가별로 관세율이 나누어지지 않는음. 미얀마 수출 전 미얀마 관세청 등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미얀마는 NTR, GSP(HS Code 방식) 등의 관세율은 없었으나, 최근 세법을 개정하여 각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므로, 사전에 미얀마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함.
 - 미얀마 관세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yanmarcustoms.gov.mm>
- 수입관세는 보석류, 귀금속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상업세는 10~30%로 수입 관세보다 비중이 높은 편임. 상업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 수입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미얀마 정부는 1990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의 원활한 수입과 무역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상업세를 기존 세율의 1/10 수준으로 줄였으나, 2004년 6월 15일부로 의약품, 컴퓨터, 비료, 살충제, 석유제품 등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10배 인상하여 원상 복구된 바 있음.
- 2014년 3월 28일에 수정된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연도가 바뀌는 2014년 4월 1일부터 소득세, 상업세, 인지세 등 총 19개 세금의 세율이 개정되었음. 개편의 기본적인 구도는 기업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율적용 기준도 단순화하는 한편 소득이 적은 개인 및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음.
- 그 외에 상업세는 그간 일부 업종 외에 과세가 면제됐던 서비스에 대한 세금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상업세 부과를 면제하는데 중점을 둬.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법인세는 변경 없이 25%를 유지하나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립 후 3년 동안 (단,매출액이 500만 차트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 부여

2) 상업세 부과 대상의 변경

- 개정 전에는 명시된 서비스 분야만 상업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명시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에 대해 상업세를 부과하게 되었음. 상업세 면세 서비스 업종은 아래와 같음.

■ 상업세 면세 서비스 업종 ■

순번	내역	순번	내역
1	주택 임대	14	장례업
2	주자장	15	컨테이너 운송업
3	생명보험	16	아동보육
4	소액대출	17	미얀마 전통 마사지(일반/장인)
5	헬스케어	18	이사업
6	교육	19	톨게이트
7	운송업	20	동물 병원
8	직업 소개소	21	유료 공용 화장실
9	은행	22	외국 항공 운송기업
10	통관업	23	예술 서비스 기업
11	임대업(책상,의자,식기 등)	24	정보기술 분야 기업
12	도축업	25	기술 컨설팅 기업
13	위탁제조	26	대중교통 서비스 기업

3) 품목별 상업세율의 변경

- 일부 상품의 수입 및 판매 시에만 적용됐던 상업세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 예를 들면 티크 목재, 견목재(Hardwood) 및 1차 가공 원목은 당초 50%에서 25%로 변경되었고, 보석 완제품은 30%에서 15%로 변경되었음

Ⅰ 상업세율 Ⅰ

순번	품목명	세율
1	Cigarette	100
2	Tobacco Leaf	50
3	Virginia Tobacco , Cured	50
4	Cheroot	50
5	Cigars, Pipes, All Sorts	50
6	Pipe Tobaccos	50
7	Betel Chewing Preparations	50
8	Liquors	50
9	Beers	50
10	Wines	50
11	Teaks & Teak conversions, Hardwood & Hardwood Conversions	25
12	Jade and other Precious stone(raw)	30
13	Jade,Ruby,Sapphire,emerald green,Diamond and Jewellery	15
14	1800 cc Van Cars , Saloon,Sedan and Estate Wagon,coupe	25
15	Petrol,Diesel Oil,Jet Fuel	10
16	Natural Gas	8

4) 상업세 면제 품목

- 미얀마 내국 상품 생산 촉진을 위해 73개의 상품(주로 농산품 및 필수품)의 경우 미얀마 생산 시 상업세가 면제되나, 해외에서 수입할때는 7%가 부과되며 17개 품목의 경우는 물품세가 5%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에 관계없이 상업세가 면제되는 물품 17개(비료, 살충제, 의약 장비, 책, 군사용품 등)가 지정되었음

5) 국내 상산품에 대한 상업세 감면

- 미얀마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얀마 내에서 국영 또는 개인기업(내국인)이 수입대신에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시 내국인에게 판매 또는 유통할 경우 평균 5%가 부과되는 상업세율을 2%로 경감시켰음

6) 일정규모 이하의 상품 및 서비스 매출의 경우 상업세 면제

- 개인 또는 합작 법인이 1년 매출액이 1,500만 차트 미만일 경우 미얀마에서 제조

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에 상업세가 면제됨.

7) 인지세 (Stamp Duty)

- 인지세의 개정은 세법 20조에서 외화 통용 시 통용된 통화에 대한 인지세는 통용을 원하는 화폐로 납부한다는 것을 현지화인 차트로 당시 시세에 맞게 변화해서 지불해야 함으로 변경함

제2절 비관세장벽

- NTM Database를 통해 파악된 미얀마의 비관세장벽은 수입면허와 쿼터등(수입제한조치)이었으며 비관세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품목군(HS 2단위)은 수입면허의 경우 전자(85), 쿼터의 경우 종이(48) 및 철강 (73)으로 파악됨.
- 관세라인의 수는 각각 수입면허에서 1개, 쿼터에서 6개로 나타남. 품목별로는 85류(전자), 48류(종이와 펄프), 73류(철강제품) 등 3개 품목군(HS 2단위)에서 비관세장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미얀마 수출상위 5대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음.

출처: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Institute for East Asia Peace Studies)



제3장 검역제도

제1절 식물검역 규정

1. 미얀마에 한국의 식물검역기술 전수

- 미얀마 식물검역관 초청 연수사업 실시(14년 10월 21일~11월 1일)
- 미얀마 검역관 초청 연수는 우리나라의 선진 식물검역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연수를 통해 미얀마의 식물검역 능력함양과 미얀마와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에 걸쳐 미얀마 식물검역관 6명을 초청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연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 미얀마 내 식물검역 법

- 미얀마의 1993년도 개정된 식물검역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1장] 제목 및 정의

1. 본 법은 식물 해충 검역법이라고 칭함.
2. 본 법에 포함된 다음의 표현들은 아래의 의미를 갖는다.
 - 식물(Plant)이란 경작이 가능한 식물과 번식이 가능한 식물의 부위를 의미하므로 이는 씨앗, 덩이줄기, 괴경, 곡식, 구근, 식물의 뿌리 등을 포함함.
 - 식물제품(Plant Product)이란 식물의 소원재료 또는 자연적으로 가공되어 해충 확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의미함. 이는 괴경, 곡식, 구근, 곡물, 과일,

- 채소 등 소비제품을 포함함.
- 비식물성제품(Non-Plant Product)이란 식물로부터 얻어지거나 해충확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모든 제품을 의미함. 이에 해당하는 수입제품들은 미얀마 사찰부서에 의해 본 법을 목적으로 규정됨.
 - 해충(Pest)이란 곤충, 거미, 쥐, 두더지, 달팽이, 잡초, 또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품 또는 상품들을 포함함. 이는 또한 미얀마 농업부에서 규정한 생물과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해충을 포함함.
 - 검역해충(Quarantine Pest)이란 미얀마 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해충, 존재하는 해충, 혹은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은 통제가 필요한 해충 등을 의미함.
 - 유익생물(Beneficial Organism)이란 해충의 포식자이거나, 해충의 기생충이거나, 해충에 질병을 일으켜 농업에 이득을 주는 모든 생물을 의미함. 이는 곤충, 거미, 균류, 박테리아, 바이러스, 선충, 식용 버섯 등이 있으며, 이외의 생물들은 미얀마 농업부에 의해 규정됨.
 - 임시수용소(Transit Camp)란 식물, 식물제품, 해충, 유익생물 혹은 미얀마 내 도착 당시 함께 담겨진 토양 등을 해외나 다른 목적지로 이송하기 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수용소를 의미함.
 -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란 식물, 식물제품, 해충, 유익생물, 토양을 미얀마 외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미얀마 농무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의미함.
 - 식물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란 1951년에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규정한 형식에 따른 식물위생검사 후 미얀마 농무부에 의해 발행된 국제 인증서를 의미함.
 - 부서라 함은 농업식품부를 의미함.
 - 장관이라 함은 농업 식품부 장관을 의미함.
 - 상무이사라 함은 미얀마 농무부 상무이사를 의미함.

[제2장] 목적

3. 본 법은 아래의 목적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어떤 의미에서든, 미얀마 내로 들어오는 검역해충들을 예방함.
 - 검역해충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함.
 - 필요한 경우, 수출용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소독처리 혹은 식물증명서 발급을 수

행함.

[제3장] 수입과 수출

4. 식물, 식물제품, 해충, 유익생물 혹은 토양:-
 -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허가증 혹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미얀마 농무부로부터 수입증명서를 소유한 자에 한해서 수입되어야 함.
 - 수입되거나 개인적으로 이송될 경우 미얀마 농무부에 의해 검역을 받아야 됨.
 - 수입자 혹은 개인 이송자는 수입증명서 혹은 검역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5. 만약 식물, 식물제품 수출업자가 식물증명서 혹은 살충 및 소독처리를 원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 후 미얀마 농무부에 신청할 수 있음.
6. 식물, 식물제품, 해충, 유익생물 혹은 토양을 해외로 재수출 할 경우:-
 - 물품검역에 대한 권한은 미얀마 농무부에게 있음.
 - 만약 재수출과정에서 사찰도중 검역해충이 발견될 경우 살충 또는 소독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미얀마 농무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자에게 비용을 부과함.
 - 식물증명서 취득을 원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 후 미얀마 농무부에 신청할 수 있음.

[제4장] 검역 수용소

7. 본 법에 따라 적용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미얀마 농무부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검역 수용소를 설립해야 함.
 - Yangon International Airport
 - Yangon Port;
 - Myanmar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Foreign Mail Service;
 - Transit Camp
8. 농업식품부는 해충검역수용소를 확대 할 수 있음.

[제5장] 농무부 상무이사의 의무와 권한

9. 미얀마 농무부 상무이사의 의무와 권한은 아래와 같음.
 - 식물, 식물제품, 해충, 토양 등의 대한 검역 방법을 규정함.
 - 임시수용소의 수입품 임시보관 조건 및 재수출 운송 시 조건을 규정함.

-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요청에 따른 검역기준을 규정함.
 - 미얀마 내 해충확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억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수입증명서를 위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후 이를 허가하거나 거절함.
 - 해충 구제 및 소독처리를 실행함
 - 식물증명서를 위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후 이를 허가하거나 거절함.
 - 검역해충에 의해 감염된 제품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명령을 내림.
 - 관리상 벌금을 부과함.
 - 농업식품부에 의해 배정된 의무를 수행함.
10. 미얀마 농무부 상무이사:-
- 농업식품부로부터 알맞은 인재를 감찰관 혹은 검역관으로 임명함.
 - 감찰관과 검역관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함.
 - 농업식품부의 직원 혹은 감찰관, 검역관에게 자신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농업식품부의 직원에게 관리상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제6장] 규정 및 벌금

11. 수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수입을 할 수 없음.
12. 수입증명서를 소지하고 수입을 하는 자는 검역절차와 미얀마 농무부 통제에 따라야 함.
13. 비식물성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미얀마 농무부에 따라 검역절차를 이행해야 함.
14. 미얀마 농무부에 의해 감염된 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그 누구도 운송하지 못함.
15. 본 법에 대한 규정은 그 누구도 위반하지 아니함.
16. 11, 12 조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벌금을 부과함.
 - 초범일 경우 1,000~5,000짜트 벌금
 - 상습범일 경우 5,000~10,000짜트 벌금
17. 13, 14 조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벌금을 부과함.
 - 초범일 경우 500~3,000짜트 벌금
 - 상습범일 경우 3,000~5,000짜트 벌금
18. 16,17 조항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 받은 후 해당 건에 관련된 물품들을 폐기처리 요청 가능하며, 벌금을 지불 후에는 해당 건에 관련된 물품들을 살충 및 소독

처리 요청 가능함.

[제7장] 항소

19. 미얀마 농무부 상무이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만스러운 자는 60일 내에 미얀마 농업식품부에 항소를 할 수 있음.
20. 미얀마 농업식품부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여김.

[제8장] 기타 여러 사항들

21. 각 정부부처 또는 정부기관들은 식물, 식물제품, 해충, 유익생물, 토양, 비식물성 제품들이 해외로부터 도착할 경우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함.
 - 해당 물품들에 검역을 위해 미얀마 농무부에 즉시 보고함.
 - 미얀마 농무부의 해충 및 감염여부 검역을 통과하여야만 수입업자에게 운송에 대한 허락을 내림.
22. 본 법에 따른 검역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어야 함.
 - 무역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 검역진행은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함.
23. 농약 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에서 승인한 모든 기관들은 농약 법에 따라 살충 및 소독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
24. 정부부처 혹은 정부기관은 식물, 식물제품, 해충, 토양 등의 물품에 대해 검역의무를 농업식품부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음.
25.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물, 식물제품, 해충, 유익생물, 토양 등의 대한 수입라이센스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정부부처 혹은 정부기관은 미얀마 농무부로부터 승인된 수입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라이선스 혹은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
26. 미얀마 농무부는 지불해야 하는 벌금이 토지수익에 대한 체납금일 경우 이를 복구시킬 수 있음.
27. 본 법의 규정을 행하는 목적으로:-
 - 농업식품부는 필요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이나 절차를 발행할 수 있음.
 - 농업식품부와 미얀마 농무부는 필요에 따라 명령 또는 지시를 내릴 수 있음.
28. 이로써 1914년도 곤충과 해충 법은 폐지함.

출처: 미얀마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http://www.burmalibrary.org/docs15/1993-SLORC_Law1993-08-Plant_Pest_Quarantine_Law-en.pdf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표시 의무 강화

- 2014년 3월에 제정된 미얀마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사업자의 상품 표시 의무를 부과함.
- 미얀마 소비자연합회, 상무부와 협력을 통해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해 미얀마로 된 상품 라벨을 게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 미얀마 소비자연합회는 현재 미얀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생산지역,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식품(가공품)은 대부분 영문으로 게재돼 있어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
 - 2014년 3월 14일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에서는 사업자의 라벨링 의무를 명시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일시정지 또는 영구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2절 소비자 보호법 라벨표시 관련 규정

- 제8조 사업자는 아래 상품에 관해 생산 및 무역을 할 수 없음.
 - 관련 상품 정보 또는 상표 등에 표시된 상태, 보험, 특이 사항, 효과, 무게, 부피, 용량, 품질 등이 부합하지 않는 상품.
 - 상품 정보 또는 광고 및 판매 촉진 등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
 - 상품명, 크기, 무게, 규모, 구성 형태, 사용법, 생산 날짜 및 생산표기, 유통기간, 부작용, 생산업체명 및 주소, 유통자 성명, 상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이 없는 상품.

- 사용법과 관련된 정보, 내용 또는 안내문 등을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 및 다른 국가 언어로 표시하지 않은 상품.
- 제19조 소비자불만해결위원회는 사업자가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음.
 - 경고
 - 강력한 경고
 - 보상
 - 일정기간 불만족 상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 불만족상품의 시장에서의 철수
 - 소비자 유해 상품의 제거
 -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운영허가증의 일시 또는 영구적 회수

제3절

소비자 보호법 라벨표시 사항 정리

- 미얀마 소비자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품을 생산 또는 무역(유통)하는 경우 상품명, 크기, 무게, 규모, 구성 형태, 사용법, 생산 날짜 및 생산표기, 유통기간, 부작용, 생산업체명 및 주소, 유통자 성명, 상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제4항은 제품 매뉴얼(사용법)의 경우 반드시 미얀마어로 표시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 아울러 제19조는 제8조를 위반했을 경우 1,2차 경고, 보상, 일정기간의 판매 및 유통 금지, 상품시장 철수, 소비자 유해제품의 폐기 조치, 사업라이선스 심사 또는 영구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함.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아르헨티나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수출현안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수입통관 절차

- 아르헨티나의 수입통관은 ① 수입업자 등록 → ② 사전수입신고 → ③ 서류 및 물품 심사 → ④ 관세 등 관련세금 납부 → ⑤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해상화물의 통관은 통상적으로 15일 정도 소요된다.

제2절 수입업자 등록

- 관세총국(DGA)에 수입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수입업체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 제출
 - 아르헨티나 상업 공공등기소(PRC)에 무역업자 또는 무역회사로 등록
 - 연방 조세청(AFIP)에 무역업자 또는 무역회사 등록 후 세금납세자 등록번호(스페인어 약자 CUIT) 제출
 - 지불능력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수입 의무 성실히 이행 보장 서류 제출
-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통해 수입허가신청(사전수입신고)을 하려면 수입업자 등록증명과 납세자 등록번호 필요

제3절 사전수입신고

□ 아르헨티나 수입통관 시스템은 2015년 12월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수입신고제도는 수입업자가 사전수입신고서와 제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연방조세청과 산업부 산하 교역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 제출정보는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CUIT), 상호, 관세사의 사업자등록, 외국환, 제품사양서, 단가, FOB 총액, HS 코드번호, 거래단위, 부피, 원산지, 경유지, 제품 상태, Incoterms, 선적 및 도착 예정일 등이다.

□ 수입 허가를 받으면, 화물 관련 자료를 수입 통합 온라인 관세 시스템인 마리아 관세 시스템에(Sistema Informatico de Maria) 모두 입력해야 한다. 이 단계는 면허가 있는 관세 브로커가 진행하게 된다. 수화물은 입력일로부터 최대한 180일 내에 도착해야 한다.

※ 수입 허가가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는 10일 안에 통지를 받게 되나,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업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음.

□ 수입허가제

수입 라이선스에는 자동과 비자동의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자동 라이선스(자동허가, Licencia Automatica)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상품에 따라서 비자동 라이선스(수입 비자동 허가, Licencia No Automatica)를 받게 된다.

○ 자동 수입 라이선스는 요청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할 때 SIMI를 통해 허가되는 것들이다. 비자동 수입 라이선스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 수입업자는 SIMI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일 내에 통지를 받는다.

○ 비자동 수입 라이선스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자동차 부품, 자전거 바퀴와 튜브, 화학물질, 플라스틱, 종이와 인쇄자료, 가전제품,

노트북컴퓨터, 럭셔리 자동차, 기타 기계류, 기계적 장비와 부품, 기타 제조된 제품, 오토바이, 체육 제품, 선택적 기계 및 도구, 특정 종이 품목들.

※ 자동 라이선스는 90일간 유효하며, 비자동 라이선스는 180일간 유효.

제4절 서류 및 물품 심사

□ 통관 필요서류

모든 수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관세 신고서 양식 (Customs Declaration Form - OM 1993A)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보험증명서, 수출업자가 보험을 부보한 경우에 제출
- 원산지증명서(C/O)
- 다양한 식품 허가서 (식품 종류에 따라 다름)

□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은 “원본 송장”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인어 작성본을(원본 1부, 사본 3부) 제출해야 한다. 원본 대신 카본 카피, 인쇄 사본, 사진 사본 송장은 받지 않는다. 제시된 송장의 각 사본에 회사에서 위임 받은 사람이 서명한 원본이 있어야 한다. 송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송장 번호
- 집행(서명) 장소 및 일자
-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화물 인수자의 이름과 주소 및 대리인(운송 주선인)의 이름과 주소
- 측정단위를 포함하여 대금이 청구된 양
- 상품의 이름과 설명(스페인어)

- 단가 및 총계
- 거래에 사용된 화폐
- 인코텀즈를 사용한 지불 및 입고 조건
- 상품의 원산지 및 수출 장소/항구
- 운송수단 (해상, 항공 또는 소포 명시)
- 무역업자 또는 회사 아르헨티나 입국 항구 또는 장소

※ 송장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 영어 바로 밑에 스페인어 번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송장에는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 설명이 있어야 한다.

“DECLARO BAJO JURAMENTO QUE LOS PRECIOS CONSIGNADOS EN ESTA FACTURA COMERCIAL SON LOS REALMENTE PAGADOS O A PAGARSE, Y QUE NO EXISTE CONVENIO ALGUNO QUE approval A SU ALTERACION, Y QUE TODOS LOS DATOS REFERENTES A LA CALIDAD, CANTIDAD, VALOR, PRECIOS, ETC., Y DESCRIPCION DE LA MERCADERIA CONCUERDAN EN TODAS SUS PARTES CON LO DECLARADO EN LA CORRESPONDIENTE SHIPPER’S EXPORT DECLARATION.”

(비공식적 번역: “본인은 본 상업 송장의 가격이 실제로 지불하거나 할 가격이며 그 변경을 허용하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의 질, 량, 가치, 가격 등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해당 탁송자의 수출 신고서에 공술된 것과 모든 부분에 있어 동일하다는 것을 선서하고 맹세합니다.”)

관세용 사본으로 상업 송장 팩스사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입을 완료하려면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2013년 11월 1일자로 다음 요건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 상업 송장은 지불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상업 송장의 날짜는 선하증권 일자 전이어야 한다.
- 인증하는 회사가 라이선싱 절차를 완료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자로 서명한 전자 문서를 수락한다.

- 영사관의 인증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건에 관해서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최소한) 하나의 유통 사본과 함께 발행되어야 하며, 수입업자, 은행, 선박 회사, 또는 기타 관련자가 추가적인 유통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안내나 신용장 또는 기타 계약서 조건에 따름)
- 선하증권은 각 패키지의 증량과 부피, 탁송화물의 총 증량과 부피를 나타내야 한다. 모든 선하증권은 “운송비 완납” 또는 “목적지에서 운송비 납입” 등 운송비 지불 조건을 비롯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선박 이름
 - 선장 이름
 - 등록 항구 및 등록 증량 톤 (증량 및 부피)
 - 용선 또는 화주의 이름
 - 화물인수자의 이름 (“소지자” 또는 “주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패키지 번호, 내용물의 상세한 설명, 상품의 물량, 품질 및 표
 - 선적항 및 양륙항, 기항지
 - 화물 금액
 - 지불 장소, 방법 및 일자
 - 문서 작성일, 선장과 탁송인 및 화주의 서명 (운송회사와 탁송인의 서명은 수기로 해야 하며 팩스 서명은 안 된다)
 - 컨테이너 및 실 번호, 탁송 조건
 - 송장 번호

□ 포장목록(Packing List)

- 아르헨티나에서 세관을 통과하려면 포장목록이 필요하며 각 패키지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 패키지의 내용물이 같은 룯의 다른 패키지와 동일한 경우, 그 룯에 대한 포장목록에 한 번 나타내면 된다. 포장목록은 스페인어로 해야 한다. 석탄, 석유, 모래 등 다량 수입된 상품이나 종류, 성격, 구성, 중량 등이 동일한 품목은 포장 목록이 필요하지 않다. 항공택송 시 매번 포장 목록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하물인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보낸 선적문서 중에 포장목록은 최소한 3부가 있어야 하며 각 패키지의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것은 각 항목의 총 중량, 순 중량 및 각 패키지의 표와 번호를 포함한다. 요구되는 내용은 상업 송장에 나타난 모든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는 소비자 상품, 식물, 신발, 의류, 인쇄기계 및 기계공구, 유기농 화학물질, 바퀴, 자전거 부품, 납연 철 및 철강, 특정 철 및 철강 튜브, 에어컨디션 장비, 목질, 섬유판, 원단, 장난감, 게임, 빗자루, 브러시 등에 대해 아르헨티나 관세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이다.

- 원산지증서는 그 국가들의 관련 상공회의소의 서명을 요하며 아르헨티나 영사관이 그 문서를 공증해야 한다.

□ 물품심사

일단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 세 가지 기준의 심사를 거친다.

- 그린 채널 : 서류나 실제 상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오렌지 채널 : 세관이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레드 채널 : 수출 서류와 상품 모두 세관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아르헨티나 식품 품질법(CAA)은 1969년 제정되었으며, 국내 생산 및 수입 식품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CAA의 주목적은 공공보건과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성실한 식품 상업거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동의한 기준을 포함하며, 1) 유럽연합(EU),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3) 미국 식품의약청(FDA)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 CAA는 보건부와 농림부의 공동 결의안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식품 품질 기준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세 곳의 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농림부 내 >

- **SENASA**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법령 #815의 부록 I, II 하의 신선, 냉각, 냉동, 열처리 제품 및 동물, 식물, 해산물 유래의 부산물. 동물성분을 60% 이상 함유하는 혼합 (동물 및/또는 채소-유래 내용물) 통조림 제품과 동물 유래 성분을 80% 이상 함유하는 식품 준비물 등 식품을 다루는 농산 식품 안전 품질 국가기관
- **INV** (Instituto Nacional de Vitivinicultura)
생산, 제조, 시판 단계에서 포도주와 포도주 제품을 통제하는 국가 포도주 관리기관

< 보건부 내 >

- **INAL** (Instituto Nacional de Alimentos)
식품의약청 (ANMAT - Administracio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ia Médica) 산하의 소비용 식제품, 건강보조제, 포도주를 제외한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를 규제하는 국가 식품 기관. 간혹, SENASA와 INAL와 관리범위가 중복된다.

제2절 일반 검역 검사법

법령 #1812/1992 는 법령 #2092/1991을 보충한다. 이는 포도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식품과 음료수 제품을 규제한다. (국내제조 및 수입)

이 법령의 주 조항은 일반 식품 검역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일단 수입업자가 제품등록 당시, 제품이 아르헨티나 위생 규정에 따라 제조, 포장, 운송되었음을 INAL에 증명하고 나면, INAL는 추가 검사없이 세관에서 선적물 출고를 허가하는 안정증서를 발부한다.
- 소비용 제품의 수입업자가 안정증서를 보일 수 없을 때나 식품에 확연한 손상이 있을 때, INAL은 선적물이 세관에서 출고되기 전 검사하고 실험할 권리가 있다.
- 그 식품이 국가에 들어오면 인간, 동물 또는 식물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가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기 세 기관 중 어느 기관이나 (SENASA, INAL, INV) 수입업자에게 이 절차에 대해 알리고 그 제품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오기 전 선적물의 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 사전검사를 요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권한 있는 위생 당국(SENASA, INAL, 및/또는 INV)이 30일 이내에 판매허가 서류를 발부 한다.
- 관세 안정 증서가 있는 소비용 식품을 출고한다. 사전검사를 요하는 제품의 경우, 그 선적물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CS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CSA가 화물 출고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수입업자가 그 화물을 보세창고로 운송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 경우, 제품은 적절한 서류가 세관에 제출될 때까지 판매 될 수 없다.

- 세관에서 화물을 출고하기 전 세관원이 모든 선적물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한다.
- 수입업자가 본 법령 제 10조에 따라 설정된 조건으로 30일 안에 CSA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과 CSA가 선적물을 파쇄하거나 재수출하고 수입업자는 이 과정의 결과로서 벌금, 경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 수입 소비용 식품인 경우, 제품이 다음 국가의 것일 때 CAA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EU, 스웨덴 등 아르헨티나와 특정 식품 안전협약을 맺은 국가.

제3절 식물위생 검사

- 아르헨티나에 들어오려면, 모든 식물과 식물의 일부는 SENASA의 식물위생분과 항구 식물검사 서비스를 통해 농림부의 식물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물, 뿌리줄기, 봉오리, 덩이뿌리, 뿌리, 줄기, 잎, 꽃, 과일, 신선한 과일, 건조 탈수 과일, 곡식, 씨, 및 일반적으로 농업 병균을 보균할 수 있는 식물 제품 또는 그의 제품들.
 - 농업 병균 보균이 의심되는 용기, 포장 재료, 유기질 비료, 흙, 기구 등.
 - 적절한 매체(시럽, 소금물, 피클)에 보관한 또는 비등점을 넘겨 밀폐 용기에 포장한 완두,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 식물 제품은 식물위생 검사가 면제된다.
- ※ 다음을 수입할 때 식물위생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산업용 전용 증서”로 뒷받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식을 위한 식물, 껌꽃이 순, 뿌리줄기, 덩이뿌리, 봉오리, 뿌리 등. 제품, 곡물, 씨; 일반적인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제4절 Healthy Origin 증명서

- Certificate of Healthy Origin 는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제품이 재배되고 수확된 양식장이나 밭의 양호한 위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관련 농산물의 개화 및 수확 당시 검사에서 주요한 농업 병균이 관찰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서류는 또한 제품 이름, 번호, 중량과 포장의 표시, 재배자와 하물인수자의 이름을 적고, 아르헨티나 영사가 공증해야 한다.

제5절 식품 첨가제법

- 사용한 모든 첨가제는 식품 첨가제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Positive List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의 첨가제가 그 목록에 없는 경우, CONAL(국가식품위원회)에 사용등록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목록은 제품 별로 다르며 ANMAT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 http://www.anmat.gov.ar/alimentos/codigoa/capitulo_xviii.pdf

□ 제초제 및 기타 오염물질

SENASA 결의안 #256/2003은 국가 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MRLs)을 설정한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14지역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제시한 일일 섭취허용치를 참조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초제 잔류농약 성분이 발견되면 안 되는 수입 농산물 목록이 있다. 이들 품목 중에는 옥수수, 양상추, 초류와 콩이 있다. 추가적으로, 금지된 첨가제의 전체 목록이 SENASA 결의안에 나와 있다:

▶ http://www.legisalud.gov.ar/pdf/senasares256_2003.pdf

▶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다음을 참조 <http://www.fao.org/3/a-i1400e.pdf>

〈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노출 위험 〉

- BSE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없이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 BSE 식품안전 위험성이 있다.
-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아르헨티나는 15,711 톤의 신선한 소고기와 214 톤의 소고기 부산물을 우루과이와 브라질에서 수입하였고 964 톤의 가공 소고기를 우루과이에서 수입하였다.
- 2003년 FSANZ(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는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A등급” BSE 지위 국가로 분류하였다. 최근에 브라질은 FSANZ로부터 “1등급” BSE 지위를 받았다.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모두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인정하는 “미미한” BSE 발생가능 국가들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한다고 BSE가 아르헨티나에 들어 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 SENASA 결의안 117/2002 와 799/2010 는 ‘미결정’ BSE 위험 지위 국가로부터의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규제된’ BSE 위험 지위 국가로부터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수입위험을 평가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제공한 정보를 검증한 후 SENASA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수입 규제 〉

식용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은 수출국의 위험정도에 따라 BSE위험 정도가 결정된다. 신선하거나 가공된 소고기는 SENASA 결의안 799/2010이 설명한 위험 평가방법에 따른 제품 위험 하에서 위험 II로 간주된다. 수입 결정 매트릭스에 입각하여, ‘미결정’ BSE 위험 지위 국가로부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낮은 BSE 위험 지위 국가의 제품은 허용한다; ‘규제된’ BSE 위험 지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SENASA가 실시한 이전의 수입 위험평가를 받는다.

제6절 식품수입 허가

-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식품 관제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판전 허가제). 제조업자는 제조 과정, 제품의 성분 비율, 유효기간과 그 결정방식, 상품 라벨안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서류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판매명을 제안하지만, 궁극적으로 식품 분류 또는 성분에 따라 식품 안전 당국이 결정한다. 일례로, 아침 시리얼은 일반 제품일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첨가되면, 그 제품은 “강화” 제품이 되고 “식이식품”으로 분류되며 - 따라서 제품명은 “아침 강화 시리얼”이 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공 공장에 기술소장이 있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에 작동 중인 FCM의 시판전 허가제에 의하면, 식제품을 승인할 때 국가 식품 등록 (RNPA) 번호라는, 각 시설에 8자리 숫자로 된 국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나라 안의 각 회사의 각 시설에 RNE 번호가 하나뿐이지만, 각 공장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이므로 RNPA 번호는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그 나라에서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RNPA 번호가 주어져야 한다. 일단 주어지면, 어떤 관할권에서는 5년마다 갱신을 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만료시한은 없다. 식이 보조식품과 같은 특정 제품의 경우 RNPA 번호는 항상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일단 제조업자가 RNPA 번호를 받기 위해 정보를 제출하면, 식품 안전 당국은 30일 이내 부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식품 안전 당국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최종 공식 결정이 있기까지 제출 번호를 사용하여 제품 시판을 시작할 수 있다.
- RNE 와 RNPA 번호는 모든 제품의 포장 라벨에 인쇄되어야 한다. 라벨에 이 정보가 있으면, 허가 받은 회사가 그 제품을 합법적으로 시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ENASA가 승인한 제품의 경우(예. 낙농제품, 80% 이상 육류 제품 (햄버거, 가공 육류 유래물)), 본 식품 안전 당국이 부여한 특정 번호를 포장 라벨에 인쇄해야 한다. 이들 번호의 포맷은 X/Y/Z로서, X 는 시설, Y는 제품, Z 는 유닛의 다른 중량 또는 숫자를 나타낸다(소시지, 햄버거 등).

□ 제품 유형에 따른 식품 허가 신청

- 가공식품, 포도주를 제외한 알코올 및 비 알코올 음료 (INAL이 집행):
아르헨티나에 제품을 수입하기 전 제품과 수입업자 등록을 요한다. INAL에서 이미 등록 과정을 마친 수입업자가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제품이 문제가 없으면, 30일 안에 등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수입 가공식품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수입업자는 국가 설립 등록 (RNE)에 단 한번 신청한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공공보건부 장관 앞으로 된 편지
 - 등록 양식
 - 관세 등록 양식

- 세무서(DGI) 등록 양식
 - 시 창고 허가증 (냉동제품용 저온실)
 - 회사 동업 허가
 - 수수료 납부증
2.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RNE와 함께 국가식품번호등록 (RNPA)를 신청해야 한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등록의도를 알리는 공공보건부 장관 앞으로 된 편지
 - 신청 양식
 - 제품의 제조 과정과 기술, 사용한 원자재, 포장 종류에 대한 흐름도 및 분석시험
 - 라벨 원본 및 세 개의 사본
 - “제 II부. 라벨 요건” 제하의 데이터와 함께 보조 라벨; 및
 - 원산지 국가의 위생당국이 발행한 판매 및 인간소비 적합증서
 - 수수료 지불
3. 일단 RNPA가 발부되고 제품이 항구에 있으면, 수입업자는 INAL에서 자유 유통 증서 (Certificado de Libre Circulación)를 받아야 한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품에 대한 자유유통증서 요청 편지
 - 선적 정보
 - 송장 사본
 - 선하증권
 - RNE 사본
 - RNPA 사본
 - 제조 일자 및 수명
 - 원산지 국가 (또는 주, 카운티)의 보건/농림 부서에서 발부한 자유판매 증서 / 인간소비용 적합증서 / 분석증서
 - 생산 연도 증서 (와인을 제외한 주류)
- ▶ 수입업자가 RNPA를 받으면,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각 선적에 대해 자유유통증서를 요청해야 한다.
- ▶ 건강보조제의 경우, 앞에 언급한 항목 (A), (B), (C)역시 약간 다르게 적용된다. 수

입하는 자는 RNE 대신에 INAL 로부터 국가 등록 건강보조제 번호 (RNESD)를 받아야 한다. 또한 RNPA 대신에, 국가등록 건강보조제 번호 (RNSD)가 필요하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INAL에 등록 허가를 요청한다.
2. 제품의 소유자, 지역 법률 변호인, 지역 업체의 기술소장이 각각의 제출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3.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 위생당국이 발부하고 아르헨티나 영사관이 스탬프를 찍은 원산지 국가의 자유판매 증서.
4. 제품이 CAA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분석서
5. 아르헨티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진짜 원산지, 문서의 적법성, 제품 수명, 선적 품질관리, 정확한 라벨 및 필요한 경우 각 패키지 및 홍보자료에 적절한 “경고” 문구를 총괄하는 기술소장이 있어야 한다.

○ 포도주(INV가 집행)

1. 수입업자는 INV에 등록했어야 한다.
2. INV (양식 1825-O. y M.)가 발부한 수입 허가
3. 수입허가 양식은 분석 명세를 나타내는 원산지 국가의 적절한 공식 당국이 발부한 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제품은 유사한 현지 제조 제품에 대해 INV가 요구하는 분석 구성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5. 수입업자는 국내소비용 수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양식 OM -1993 SIM)
6. 병마다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라벨 요건 참조).
 - ▶ 제품이 창고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INV의 분석과 탁송관제를 요청해야 한다. 분석이 정확하면, INV가 자유유통증서를 발부한다. 그 후 제품을 시판할 수 있다.

○ 신선, 냉각 또는 냉동제품 동물유래 부산물 및 해산물 (SENASA가 집행)

수입 제품과 동물유래 부산물을 아르헨티나에 수입하려면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는 SENASA에서 취득하며 SENASA에 이미 등록했고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려는 시설을 등록한 수입업자가 요청해야 한다. 허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

1. 제품 유형

2. 원산지 국가
3. 도축장 이름
4. 공식 도축장 번호
5. 도축장 주소
6. 제품 제조 과정 설명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 - 서명 및 인장)
7. 사용될 자재를 열거하는 포장 유형 목록. 추가로, 포장은 원산지 국가의 적정 정부 당국이 승인해야 한다. 증서는 포장이 식품에 접촉하도록 허가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통조림 제품에 해당)
8. 수입할 원래 제품 라벨 사본 2개
 - ▶ 이 허가증은 수입업자와 제품의 등록 번호를 포함한다. 허가를 받고 아르헨티나 입국 항구에 제품 도착 5일 전에 수입업자는 SENASA에게 화물의 도착을 알려야 한다. 이후 15일 동안, 수입을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입 금지 품목〉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 요인과 지식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의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중고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가장 많이 금지되는 수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관세제도

제1절 관세제도 일반

-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다음과 같다: 관세(Arancel), 통계세(Tasa de Estadística), 부가가치세(IVA), 추가 부가가치세(IVA Adicional),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 및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종량세와 증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 아르헨티나는 1995년 1월 1일부터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분류체제 (남미공동시장 Common Nomenclature, 이하 NCM)를 준용하고 있으며 총 8자리로 구성된다. 앞 6자리 숫자는 HS 코드 분류와 동일하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숫자는 남미공동시장 에서 사용하는 특정번호이다
-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1.8%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3.6%이다
 -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2.4%, 평균 실행관세율은 10.4%이며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1.7%, 평균 실행관세율은 14.1%이다
-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69%에 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수입되는 농산물의 5.9%는 면세, 6.5%는 0~5%, 56.5%는 5~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제2절 관세율

□ 관세율 조회처

수입품목별 관세율은 아르헨티나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 관세청(AFIP) 사이트 접속 → Aduana 클릭 → Arancelintergrado 클릭 → Consulta Arancel Integrado의 Seleccione Capitulo에서 수입하는 품목 선택 → 코드별 관세 조회 가능(30)

▶ <http://www.afip.gov.ar/aduana/sim/>

▮ 제품 유형별 평균 수입관세율 ▮

관세율	품목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12.5~2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20.5~35%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35%), TV(21%) 등

※ 자료: 연방조세청(AFIP)

□ 수입 관세 계산

▮ 아르헨티나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계산(예시) ▮

구분	산정 방식
관세	CIF가격*관세율
통계세	CIF가격*0.5%
부가가치세	(CIF+A)*21%(자본재의 경우 10.5%)
추가부가가치세	(CIF+A)*10%
소득세(영업세)	(CIF+A)*3%
특별소비세	시장가격*내국세율(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 해당)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식품 라벨링 규정

- 아르헨티나에서 식음료의 라벨링은 국가 식약 및 의료기기행정부(ANMAT) 내의 국가식품기관 (INAL)이 규제한다.
- 아르헨티나에서 CONAL은 영양 라벨링의 정보가 식품 화학 분석에 입각하거나 백분법 구성 표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포화 또는 트랜스 지방산등 어떤 성분에 대해서는, 실험실들이 분석능력을 업데이트했으며 구성표의 사용이 향상되고 있다.

SENASA가 수입한 제품

- ▶ 신선, 냉각, 냉동 및 열처리 제품과 동물, 식물, 해산물 유래 부산물)
- 라벨은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 제품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스페인어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수입업자의 이름과 공식 주소, 원산지 국가, 원산지 회사
 2. 성분 공술서
 3. 유지요건인 온도 범위
 4. 최소 내구성
 5. 영양 정보

INAL을 통해 수입한 제품

- ▶ 소비용 식품,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포도주 제외
- 미국에서 수입한 가공 식품은 원래 포장으로 올 수 있다. 라벨을 번역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특별 요건은 (크기/부피에 상관없이) 스페인어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라벨을 소매포장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제품의 이름 (INAL이 승인한)과 브랜드
 - 원산지 확인
 - 성분: 중량이 큰 순서부터 성분, 목록 밑에 첨가제
2. 순 중량 또는 측정치
3. 롯(lot) 번호
4. 유효기간
5.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
6.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7. 수입업자의 회사 번호 국가 등록 (RNE)
8. 식품 번호 국가 등록 (RNPA) (필수는 아니지만 시판 용으로 권장)
9. 필요한 경우 보관, 준비 및 사용 안내
10. 영양 정보

□ INV를 통해 수입한 제품

▶ 포도주

○ 각 수입 포도주병에 스페인어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스티커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 브랜드, 제품 (포도주)의 법적 식별, 알코올 등급
2. 순 내용물
3. 원산지 국가
4. 설탕 내용물 (리터당 설탕이 6 밀리그램 이상인 경우)
5.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및 INV 등록 번호
6. 포도주가 아닌 다른 성분
7. 경고문
 - “Beber con moderación”
 - “Prohibida su venta a menores de 18 años”
8. 두문자어 및 분석 번호 (일단 제품이 분석되고 자유판매가 허가되면 INV가 제공)

- ▶ 모든 필수 문구는 읽을 수 있는 크기로 명확한 색깔로 라벨에 인쇄해야 하고 그 대비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의 법적 식별, 알코올 등급, 순 내용물, 원산지 국가는 병을 돌리지 않으면 읽을 수 없을 때만 한 개의 라벨 보다 더 많이 인쇄해야 한다.

제2절 필수 영양 라벨 정보

- 아르헨티나 식품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포장 식품에 대해 2006년 8월 이후 적용된 새로운 필수 영양 식품 라벨링으로서, 구체적인 예외가 있다 (알코올음료, 미네랄워터, 양념, 식초, 인퓨전). 도입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종류의 식품에 대해 1회 제공 영양 정보는 이전에는 식이 식품에만 필수였고 모든 다른 종류의 식품에서는 자원적이었던 반면 강제요건이 되었고 100 g당 또는 100 ml당으로 표현해야 한다.
 - 에너지 수치 정보(EV) 와 특정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총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식이 섬유, 나트륨)는 현재 필수이다.
 - 식량농업기구 /세계 보건 기구 (FAO/WHO) 일일 섭취권장량 퍼센트(%DV) 도 표시해야 한다.
 - 트랜스 지방의 경우, 권장치는 없다.
 - 나트륨의 경우, 일일 권장량은 2400mg 이다.
 - 모든 영양성분 과 EV에 대한 함량의 허용오차는 $\pm 20\%$.
아르헨티나에서 CONAL은 영양 라벨링의 정보가 식품 화학 분석에 입각할 수 있고 백분율 구성표에서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정했다.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 같은 어떤 성분에 대해 실험실들은 분석능력을 업데이트했고 성분표를 사용하는 것이 향상되고 있다.

- 특정한 탄수화물(설탕, 다가 알코올, 전분) 과 기타 지방 성분 (콜레스테롤, 단일, 및 다중 비포화지방산)등과 같은 선택적 영양성분을 추가할 것을 고려중이다. 비타민과 광물질은 1회 제공량이 FAO/WHO가 정한 식이 참조섭취량(DRIs)의 5%보다 높을 때만 포함될 수 있다.
- ▶ 제공량은 g이나 ml 등 가정 측정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EV, 영양성분, %DV는 미리 정해진 순서로 제시해야 한다:

■ 1회 제공량 표시단위 ■

	1회 제공량	%DV
활동적 값 (Valor Energetico)	Kcal/kJ	
탄수화물 (Carbohidratos)	g	
단백질 (Proteinas)	g	
총 지방 (Grasas Totales)	g	
포화 지방 (Grasas Saturadas)	g	
트랜스 지방 (Grasas Trans)	g	(해당무)
식이 섬유 (Fibras)	g	
나트륨 (Sodio)	mg	

- ▶ 아르헨티나에서 특정 식품들은 영양 정보를 제공량 별로 구체화하지 않고 표시해야 한다(즉, 유아 식품, 식이 보충제, 의료 식품, 소금).

□ 일자 표시 정보

- 일자는 다음 중 양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 “val …” (스페인어 validez의 줄인 말)
 - “vto” (스페인어 vencimiento의 줄인 말)
 - “venc” (스페인어 vencimiento의 줄인 말)
 - “preferentemente antes de…” (스페인어로 이전 선호)
- 모든 제품에 일자를 사용해야 하며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 신선한 과일과 벗기거나 자르거나 가공하지 않은 감자 등 채소
 - 포도주, 리큐어, 스파클링 와인, 풍미 포도주, 과일주, 스파클링 과일주

- 1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음료
- 내용물의 특성으로 인해 보통 제조된 후 24시간 내에 소비되는 제과 및 반죽 제품
- 식초
- 고품질 설탕
- 사탕 등 풍미 또는 색깔 있는 설탕으로 된 과자제품
- 휴잉 검
- 식용 소금 (강화 소금 제외)
- 특정한 납미공동시장 기술 규정이 면제된 식품

제3절 기타 특정한 라벨 요건

유기농 제품

법령 #206/2001에 따르면, “유기농”이라는 라벨을 부착한 수입 제품은 그 나라의 유기농 기준이 유기농 생산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규정과 동등하다고 SENASA가 승인한 국가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전에 SENASA가 승인한 자국 인증 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GMO

아르헨티나에는 GMO의 라벨링 요건은 없다. 아르헨티나는 GMO에 대해 국가 규제 라벨링 시스템이 없고, 가까운 장래에 있을 가능성이 없다.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입법 인들은 필수 라벨링 입법이 국가이익을 도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Prebiotics 및 Probiotics (활생균) 라벨링

2011년에, CAA에 의해 프리바이오틱스 및 프로바이오틱스 라벨링의 평가가 공동 결의안 229/2011 과 731/2011 (SAGyP), 261/2011과 22/2011 (SAGyP)에 각각 포함되었다.

- ▶ http://www.anmat.gov.ar/alimentos/normativas_alimentos_caa.asp

□ 건강보조제

특정 성분을 함유하는 건강보조제는 경고표시가 있어야 하고 각 사례 별로 정하는 특정한 문구가 있어야 한다. INAL은 이 요건을 CAA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미국 바코드는 포장에 있어도 되고,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 강화 밀가루

아르헨티나 법 #25630 과 법령 #569/2003에 의하면, 모든 밀가루제품은 식이 제품, 수출 시장용 제품으로 제조한 밀가루, 수출용 밀가루, 및 유기농 밀가루 (법 #25127)를 제외하고는 강화 밀가루로 제조해야 한다. 요구되는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다:

Ⅰ 강화 밀가루 영양성분 Ⅰ

영양분	양 (mg/Kg)
Iron (철)	0.4
Acido Folico (엽산)	2.2
Vitamina B1	6.3
Vitamina B2	1.3
Niacina (니아신)	13.0

□ 소금

2013년 12월 6일, 아르헨티나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법률 No. 26.905, “나트륨 섭취 - 최대치”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쿨드 컷, 과자, 제과, 수프, 드레싱, 통조림 제품 제조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하여 식품 가공 회사들과 식품 수입업자들은 12개월 안에 공정에서 소금 사용을 줄여야 했다 (중소기업은 18 개월). 추가로, 이 법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건강 위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요하고 있다.

□ 알레르기원의 라벨링

공동 결의안 #57/2010 과 #548/2010 은 모든 알레르기성 물질과 기타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상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을 규제한다(아래 열거). 그 물질이나 그 부산물(미량)이 식품에 성분이나 성분의 일부로 존재하는 경우 라벨에 성분 목록 다음에

선언되어야 한다.

1. 글루텐 있는 시리얼
2. 갑각류 (새우, 게 등) 및 그 제품
3. 달걀 및 제품
4. 생선 및 제품
5. 땅콩 및 제품
6. 콩 및 제품
7. 우유 및 제품
8. 견과류
9.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10. 타트라진

- ▶ 이 정보가 대비되는 색으로 제시되어 잘 보여야 하며 상기 목록에 따라 다음 문구: “포함 ...” 뒤에 물질 명이나 “미량의...” 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에 가능한 알레르기 유발성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진술/경고/문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포장 및 용기 규정 〉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공적으로 특별한 포장이나 용기 크기 요건이나 선호품목은 없으나, 그 예외는 소금 같은 제품들이다. 어떤 종류의 포장/용기 크기를 선호하는가는 소비자가 결정할 마케팅 문제이다. 지난 2년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특히 수입 식품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 시 쓰레기처리법이나 제품 재활용 규정은 없다.

제5장 수출현안

□ 아르헨티나 수출 품목

아르헨티나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식품들은 주로 음료, 라면,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제품이다.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출증량은 감소하였지만 주요 품목인 음료, 주류, 과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대분류 아르헨티나 수출 통계

(단위 : kg, usd)

명칭	2014년		2015년		연간전년대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총 계	1,903,524.9	4,241,960	1,388,223.9	3,876,741	-27.1	-8.6
농산물	1,896,871.6	4,123,065.0	1,379,291.8	3,746,015.0	-27.3	-9.1
축산물	156.1	20,445.0	187.3	21,681.0	20.0	6.0
임산물	345.5	6,271.0	1,914.5	3,874.0	454.1	-38.2
수산물	6,151.7	92,179.0	6,830.3	105,171.0	11.0	14.1

출처: aT KATI 수출입통계시스템

□ 품목별 아르헨티나 수출 통계

(단위 : kg, usd)

명칭	2014년		2015년		연간전년대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혼합조제식품	1,321,814.4	1,823,761.0	784,539.2	1,399,228.0	-40.6	-23.3
라면	110,262.5	505,468.0	128,065.2	513,384.0	16.1	1.6
아이스크림	32,322.0	117,467.0	74,685.5	240,364.0	131.1	104.6
기타음료	28,369.8	43,751.0	55,623.6	141,795.0	96.1	224.1
단일과실조제품	50,051.4	56,920.0	54,080.6	64,396.0	8.1	13.1
기타베이커리제품	21,350.4	125,354.0	39,304.5	227,308.0	84.1	81.3
소주	44,493.6	65,486.0	37,224.0	57,788.0	-16.3	-11.8

명칭	2014년		2015년		연간전년대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보조사료	13,000.0	117,910.0	28,000.0	253,960.0	115.4	115.4
탁주	6,900.0	7,385.0	24,684.0	26,118.0	257.7	253.7
당면	19,365.0	44,743.0	23,400.0	51,888.0	20.8	16.0
효소	86,000.0	396,500.0	15,000.0	116,250.0	-82.6	-70.7
간장	16,363.4	27,451.0	14,904.8	30,181.0	-8.9	9.9
비스킷	8,331.3	64,166.0	13,542.5	109,812.0	62.5	71.1
커피조제품	2,730.0	3,596.0	8,952.6	46,929.0	227.9	1,205.0
혼합조미료	16,963.6	83,020.0	7,226.6	39,571.0	-57.4	-52.3
기타소오스제품	9,214.8	72,651.0	7,203.8	21,371.0	-21.8	-70.6
고추장	12,831.4	38,542.0	5,827.2	17,858.0	-54.6	-53.7
기타곡물발효주	1,638.0	1,810.0	3,511.5	5,062.0	114.4	179.7
김	1,488.4	51,591.0	3,333.2	83,244.0	123.9	61.4
식초	2,170.8	2,682.0	3,157.6	4,257.0	45.5	58.7
국수	780.0	1,852.0	3,154.0	7,817.0	304.4	322.1
베이커리반죽	14,259.0	29,539.0	3,151.2	4,092.0	-77.9	-86.1
카레	128.0	1,744.0	2,832.0	7,648.0	2,112.5	338.5

출처: aT KATI 수출입통계시스템

□ 한국과의 수출입 전망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유지로 인한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은 2015년까지 감소하였다. 2015년 말 들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마크리 정부가 들어섰고, 기존의 수출입에 적용됐던 엄격한 규제를 풀어, 앞으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교역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및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아르헨티나 식품의약 의료기술 국가행정 (ANMAT)
www.anmat.gov.ar
- 아르헨티나 농산물 및 식품 건강품질원 (SENASA)
www.senasa.gov.ar
- 국가농업기술원 (INTA)
www.inta.gob.ar
- 국가 포도주 연구원 (INV)
www.inv.gov.ar
- 아르헨티나 관세청 (AFIP)
www.afip.gov.ar
- 아르헨티나 세관 (DGA)
www.agn.gov.ar
- 국가 식품위원회 (CONAL)
www.conal.gob.ar
-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청 (Buenos Aires Ciudad)
www.buenosaires.gob.ar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캐나다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제도

제5장 통관문제사례

제6장 수출현안

부록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수입통관 절차

- 캐나다의 수입통관은 ① 수입 전 사업자번호 등록 → ② 사전보고 → ③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통관 → ④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면 증빙서류와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 ⑤ 물품 검사 → ⑥ 검역 결과 통보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2절 통관 절차별 세부 내역

① 수입 전 사업자번호 등록 및 HS 코드 결정

- 수입자(개인 또는 사업자 포함)는 캐나다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가 필요하다. 통관중개인(Licensed Customs Brokers)이 수입통관 절차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수입자는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며, 통관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써 주어야 한다.
-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하다.
<http://www.cra-arc.gc.ca/tx/bsnss/tpcs/bn-ne/bro-ide/menu-eng.html>
- HS 코드 결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BIS(Border Information Service)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에 서면으로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전 보고(선적 전 보고)

-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선적 전에 한국에서 캐나다 세관으로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를 전송한다. 미국 영토를 먼저 경유할 때에는 ACI와 더불어 미국 세관에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와 ISF(Importer Security Filing)를 전송한다.
- CB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송수단, 미국 경유 여부에 따라 보고 방법이 상이하다.
<http://www.cbsa-asfc.gc.ca/menu-eng.html>
- 보고 시기는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외국공항이나 항구에서 물품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데이터를 전자송부한다. 이동시간이 2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선박이 미국에서 출발한 시점에 전자 송부한다.
- 만약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이 처음으로 도착할 곳에 실제로 도착하기 4시간 전에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 선적 전 보고는 일반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더가 대행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ACI, AMS, ISF 등에 필요한 화물정보, 수출자, 수입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에 따른 비용은 수출업체 책임이므로, 수출업체는 캐나다 수입업체의 신분, 사업자번호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수입참조 자동화 시스템(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에서 각 품목의 수입가능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http://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
- 부과 세금으로는 물품용역소비세(GST), 물품세(Excise Tax), 소비세(Excise duty)가 있으며 물품용역소비세(GST)는 5%로 수입시 대부분의 상품에 부과된다. 단, 농산물 및 청과류 등은 면세 상품이며 수입 서류 작성 시 면세 코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통관

- 대부분의 화물은 도착한 곳의 CBSA 통관사무소에서 통관된다. 보세운송인을 사용하면 수입업자의 편의에 의해 내륙 사무소에서 통관이 가능하다

④ 화물신고(EID 또는 서면신고)

-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의 신고액수가 2,500 C\$ 이상일 경우
 - 운송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상품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 우편의 경우 CBSA가, 택배의 경우 택배업체가 수입업자에게 도착을 알린다.
- 화물의 신고액수가 2,500 C\$ 미만일 경우
 - 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E14 서류와 CBSA 우편 수입 서류(분류, 금액, 송장 정보에 따른 관세와 세금 등이 표시)를 수수료 부과 조건으로 처리하여 상품과 함께 배송한다.
 - 택배의 경우 택배업체가 수수료 부과를 조건으로 모든 세관 문서를 대신 처리하기도 한다.
 - 수입 신고는 EDI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④-1 EID(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을 통관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서 전자 자료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 EDI 신고는 특정 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 통관 기업 내 관세청과 연결된 S/W를 설치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④-2 서면신고

- 수입화물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한다.

○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증빙서

- Cargo Control Document 2부
- Invoice 2부
- Canada Customs Coding Form 2부
-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부
- Certificate of Origin 1부

※ Certificate of Origin은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라 철폐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별첨 양식에 수출업체가 서명하여 발급한다(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는 통관 후에도 5년간 증명 의무가 있음)

⑤ 물품검사

-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 물품을 검사(Inspection 또는 Exam)한다. 검사의 발생경비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부담이다.
- 검사 대상
 - 최초 수출되는 제품
 - 동식물, 사료, 동식물 가공품 및 관련 제품 등(CFIA 권한)
- 면제 대상
 -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자 등
- 검사방법
 - Vacis Exam(X-ray 검사)
 - Dock Side Exam(항구 도착 후 컨테이너를 열어보는 검사)
 - Wooden Package Exam(세관이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창고에서 풀고 확인)
 - Random Exam(임의 검사)
 - Impact Exam(세관에서 실시하는 세부 검사)

⑥ 검역 결과 통보

⑥-1 검역 통과시

- 상품 반출 허가 및 관세납부 고지서(K84) 발부 한다.

⑥-2 검역 부적합 판정의 경우

- 반송 혹은 폐기 처분한다. 수입자는 재검역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 식품 통관 규정 및 관련 기관

- 캐나다로 반입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Fish Inspection Act, Meat Inspection Act, Canada Agricultural Act 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수입 식품 관련 정부기관에는 CFIA(식품검사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BSA(국경서비스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환경부(Environment Canada), 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보건복지부(Health Canada), 주 정부(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 등이 있다.
 - 위 유관부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신 정보와 긴급 공지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유선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절 /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 방식

- 발급방식 및 발급주체 : 자율발급·수출자 또는 생산자

-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 서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 원산지 결정 기준

- 원산지 결정 기준 : 완전 생산 기준, 충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중간재 기준, 누적 기준, 최소 허용 기준, 대체 가능재료 및 상품, 간접 재료, 영업 원칙등의 적용은 한국-캐나다 FTA 협정문 3장 참조(fta.go.kr)

□ 원산지 검증 및 서류보관의무

-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조사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직접 검증 방식
- 30일 이내에 검증방문요청에 대한 서면 동의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제5절 수입 통제 품목

- 근거법 :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없으나, 수입통제리스트(Im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수입이 제한된다.

- 농산물 수입통제품목
 - 닭고기, 칠면조 고기
 - NAFTA 회원국외의 국가산 소고기 및 송아지 고기
 - 달걀 및 그 제품
 - 치즈, 버터, 마가린
 - 우유와 크림(액상/분말)
 - 버터우유(액상/분말)
 -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기타 낙농제품
 - 보리와 보리 제품
 - 밀과 밀 제품

제6절 관련 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웹사이트	제공정보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1341 Baseline Rd., Ottawa Ontario K1A 0C5	T: 613-773-1000 F: 613-773-1081 I: www.agr.gc.ca	식품 전반
Canadian Communication Group	45 Sacre-Coeur Boulevard Hull, Quebec K1A 0S9	T: 819-956-4800 F: 819-994-1498	각종 법규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1400 Merivale Rd Ottawa, Ontario K1A 0Y9	T: 613-773-2342 F: 800-465-7735 I: www.inspection.gc.ca	식품수입 및 검역
Canadian Society of Customs Brokers	Suite 320, 55 Murray Street, Ottawa, Ontario K1N 5M3	T: 613-562-3543 F: 613-562-3548 I: cscb.ca	공인통관사 조직
Environment & Climate Change Canada	7th Floor, Fontaine Building 200 Sacre-Coeur boulevard Gatineau, QC K1A 0H3	T: 819-938-3860 F: 819-953-6283 I: www.ec.gc.ca	CITES 품목 수출입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웹사이트	제공정보
Fisheries and Oceans Canada	520 Exmouth Street Sarnia, Ontario N7T 8B1	T: 519-383-1813 F: 519-484-5128 I: www.dfo-mpo.gc.ca	수산물 수입허가
Global Affairs Canada	125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A 0G2	T: 613-944-4000 F: 613-996-9709 I: www.international.gc.ca	수출입 허가 쿼터품목 활당량/ 수입허가
Government of Canada	Service Canada Ottawa(Ontario)K1A 0J9 CANADA	T: 800-622-6232 F: 613-941-1827 I: www.canada.gc.ca	캐나다정부 기본 웹사이트
Health Canada	Address Locator 0900C2 Ottawa, Ontario K1A 0K9	T: 613-957-2991 F: 613-941-5366 I: www.hc-sc.gc.ca	식품보건안전 정책
Industry Canada	Standards Building 151 Tunney's Pasture Driveway Ottawa, Ontario K1A 0C9	T: 613-952-0612 I: www.ic.gc.ca	순중량 조건
Innovation, Science & Economic development Canada	C.D. Howe Building 235 Queen Street Ottawa, Ontario K1A 0H	T: 613-954-5031 I: 343-291-1913 www.strategis.ic.gc.ca	비즈니스 정보
Canada Revenue Agency	333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tario K1A 0L9	T: 613-739-1147 F: 613-238-7125 I: www.ccra-adrc.gc.ca	관세
Statistics Canada	150 Tunney's Pasture Driveway, Ottawa, Ontario K1A 0T6	T: 514-283-8300 F: 514-283-9350 I: www.statcan.gc.ca	각종 통계
UPC Code Testing	160 McNabb Street Marham, Ontario L3R 4B8	T: 905-475-3344 F: 905-475-5711 I: www.acnielsen.ca	UPC Code 적합성 검사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개요

□ 관련 법률

- 식품 의약법
 - 캐나다로 수입되거나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로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과 사기 및 기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상표, 성분구성, 패키징, 처리, 가공, 판매 및 광고).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 캐나다로 수입되거나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선포장된 식품에 적용된다.
- Fish Inspection Act
 - 수입 및 수출, 다른 주로 판매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적용된다.
- Meat Inspection Act
 - 수입 및 수출, 다른 주로 판매되는 모든 육류 및 육류 가공품에 적용된다.
- Canada Agricultural Act
 - 수입 및 수출, 다른 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제품, 달걀, 과일, 채소, 꿀 제품에 적용된다.

□ 검역관련 정부기관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캐나다의 식물, 식품, 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며 식품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제공하던 검역 및 통관 절차를 통합하여 식물과 식물 생산품의 수입 검역을 관리한다.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 Agricultural Products subject to Import Controls(수입 통제를 받는 농산품) : 닭, 칠면조, 병아리, 달걀 및 달걀 제품, 치즈, 버터, 마가린, 아이스크림 및 요거트, 기타 유제품, 보리 및 보리 가공품, 밀 및 밀 가공품, NAFTA 이외 국가에서 수입된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
- 캐나다 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 캐나다 보건복지부 (Health Canada)
- 캐나다 도량형사무국 (Measurement Canada)
-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주 정부)

제2절 주요 품목 검역 조건

- 수입요구조건
 - 도착후 감사(audit)적 검역을 실시
 - 해충, 흙,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함
 - 선적서류에 원산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품종별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와 수입국 수입허가서 필요
- 배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수출단지 주변에 복숭아속(Prunus 속) 식물이 없어야 함)
 - 봉지 씌우기 재배
 - 재배지 검사(봉지 씌운 직후 및 수확 전 연 2회) 및 응애 예찰 조사(6월~수확 약 1주전까지 월 1회)
 - 수확 과실에 대한 한국 검역관의 선과장 과실 검사

- “캐나다 측 우려 병해충이 없음”이 부기된 한국의 식물검역증(PC) 첨부 필요
- 감귤
 - 병해충, 흙, 모래, 나뭇잎 및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함
 - 건조·가공 또는 냉동되었거나 캔에 든 것 : 아무런 제약조건 없음
- 신선채소
 - 식용감자(table potatoes) : 수입 금지
 - 신선 옥수수 : 11월 1일부터 3월 1일(겨울철)까지는 수입가능 식물위생증 첨부
 - 가공, 연마 또는 제조한 옥수수 : 수입가능(수입시 검사실시)
 - 토마토, 상추, 양배추 등의 기타 신선채로 : 수입가능(수입시 검사 실시)
- 밥
 - 수입 전에 캐나다 농무장관의 수입 허가 필요
 - 훈증이나 온탕처리하고 그 내용을 부기한 식물위생증 첨부
- 달걀 및 달걀 가공품
 - 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Egg Regulations and Processed Egg Regulations의 규정 준수
 - 검역 프로그램 및 등급표준이 캐나다와 동일한 국가산 제품만 수입 할 수 있으며 선적시 캐나다 표준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검역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닭외의 새 알 및 가공 오리알은 Egg Regulation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CITES)’하에 있는 조류 및 파충류의 알은 원산지국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provincial Trade Act’ 법에 의해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의 수입허가 필요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 통조림 가공 및 냉동 과일과 채소, 채소쥬스, 카놀라유, 머스타드 가공품, 토마토 소스 첨가 스파게티 등의 가공품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의 적용을 받음

- 품질, 포장표기, 포장(표준화된 크기 포함),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
- 선적시마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부를 구비해야 하며 수입허가는 필요치 않음
- 해당 제품이 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된 제품임을 증명하여야 함.

○ 수산물

- 수산물 검역은 식품안전, 위생, 라벨표기 등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제품의 캐나다내 반입 금지를 위하여 표본추출후 Canadian Food and Inspection Agency(CFIA)가 검역 실시
- Code Markings, 생선 선적용 포장상자 및 개별 포장에 생선이 포장된 시설부호, 포장 연월일, 원산지 표기 필요
- 포장은 사람이 소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깨끗하고 찌지 않는 용기에 포장해야 함
- 라벨링은 잘못 표기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현혹의 여지가 있게 표기하면 안되며, 순중량 또는 물을 뺀 중량(drained weight)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순중량은 포장상의 중량 표기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검사를 실시한다.
- 오염, 부패, 위생정도, 이물질 및 기생충 등 관련 표준과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감각적 검사와 물리적 검사 실시
- 수산물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 몰량, 생산업체명, 원산지, 창고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CFIA에 통보해야 함
- 캔제품은 가공공장 및 각 상품코드에 대한 용기번호를 나타내는 코드가 기재되어야 하며 밀폐용기의 저산성식품 규정을 적용받음 (농산물 섹션의 저산식품 규정에 맞춘 제품이어야 함.)
- 첨가물 및 성분 또한 “Marine & Fresh Water Animal Products” 법과 “Canadian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규정된 첨가물만 생선제품 제조시 사용 허가

제3장 관세제도

제1절 개요

-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버섯(8.5%), 파스타(6%), 라면(4~6%), 간장(9.5%), 비스킷(3%) 등은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된다.
-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과 10년 초과 장기 철폐가 전체 농산물(1,500개 품목) 중 18.8%(282개)로 한-미(12.3%)·한-EU(14.7%)에 비해 보수적인편이다.
- 캐나다 FTA 농산물 양허수준

양허단계	품목	비중	수입액(US\$)	비중
즉시철폐	686	50.1%	29,563	60.1%
3년	339	24.9%	12,814	26.1%
5년	157	11.8%	6,714	13.7%
(5년내)	1,182	86.7%	49,081	99.9%
양허제외	181	13.3%	44	0.1%
총합계	1,63	100%	49,125	100%

출처 : 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농림축산식품부)

제2절 관세 내용

-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 수입 업체들은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관세 철폐에 따라 관세율 지출 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한국산 농식품 대 캐나다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라면, 간장 등 686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 되었으며 사과, 담배, 곡물, 조제식품류 339개 품목 관세는 3년뒤에 철폐되며 아이스크림, 딸기 잼 등 157개 품목은 5년뒤 철폐될 예정이다.
- 즉시철폐 : 686품목
 - 말, 소, 돼지, 닭,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가지(에그플랜트), 올리브, 수박, 바닐라, 시금치, 파인애플, 천연꿀, 마태, 매니옥, 아보카도, 라면, 간장
- 3년 : 339품목
 - 국화, 카네이션, 대두유(조유), 인조꿀, 오이, 감자, 사과, 복숭아, 담배, 포도주, 기타발효주,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기타버섯
- 5년 : 157품목
 - 맥아엑스, 감자의 분·조분·분말,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딸기잼, 스위트콘, 아이스크림
- 양허제외 : 181품목
 - 치즈, 버터, 밀크와 크림,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알부민,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품목(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

제4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 관련 부서

□ 라벨링 관련 부서

-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규정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은 Health Canada(HC), Industry Canada(IC),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에 있음
- Health Canada
 - ‘Food and Drug Act’에 근거하여 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식품 라벨링 정책의 개발, 건강 및 안전 표준의 관리 책임
- Industry Canada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근거한 기본적 식품 라벨 정보, 순중량, 미터법화, 이중언어 표기 등의 관리 책임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식품 라벨링, 포장, 광고 및 등급, 품질, 성분 등에 관한 일반적 라벨링 규정 관련 위반 사항을 관리하며 관련법은 ‘Food and Drug Act’,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Meat Inspection Act’, ‘Fish Inspection Act’
 - 모든 유통단계에서 이상의 모든 규정의 집행을 책임

제2절 라벨링 기본 요건

□ 일반적 요건

- 식품 라벨에 기재된 정보는 진실, 정확해야 하며 성분 표시는 쉽고 간결하게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한 활자 높이가 최소한 소문자 'o'를 기준으로 1.6mm (1/16 인치) 이상
- 모든 식품은 패키징 주요 면에 필수 정보를 영어와 불어로 표시해야 한다.
- 상품의 순중량의 주요 단위는 그램법(l , ml , g , kg)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반드시 내용물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food allergen, 총 13종) : ① 아몬드 등 견과류, ② 땅콩, ③ 참깨, ④ 밀과 라이밀, ⑤ 달걀, ⑥ 우유, ⑦ 대두, ⑧ 갑각류, ⑨ 패류, ⑩ 어류, ⑪ 겨자씨, ⑫ 글루텐, ⑬ 아황산염

□ 이중 언어 표기

- 식품라벨의 모든 필수 정보는 불어와 영어의 2개 공용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예외가 적용
 - 생산업체 및 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는 불어와 영어중 1개로 표기 가능
- 모든 정보가 하나의 공용어로 표기 가능한 경우는
 - 선적용 컨테이너
 - 불어와 영어중 한가지를 모국어로 하는 주민 비율이 10% 이하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 시험판매용 제품 (Test Market Products)
 -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정의된 특수식품
- 퀘벡주는 관할구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어 사용관련 추가 요구사항 있음

□ 일반명 (Common Name)

- Food and Drug Regulation 및 기타 연방 규정에 명시된 식품명과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품명을 포장규정에 따라 기재
- 불어와 영어의 2개 국어 표기 및 소문자 'o'에 근거한 최소 1.6mm 이상의 문자크기 조건을 만족하고 주전시면에 표기

□ 순중량

- 주 전시면에 개수 및 미터법 도량형(무게: g, kg 부피: l, ml)으로 이중 언어 표기하고 소문자 'o'에 근거한 최소 1.6mm 이상의 문자 크기
- 숫자 표기는 볼드체로 기재하며, 전시면 크기에 따른 글자크기 기준

주 전시면적		최소 글자 크기	
평방 센티미터	평방 인치	밀리미터	인치
32 이하	5 이하	2	1/16
32보다 크고 258 이하	5보다 크고 40 이하	3	1/8
258보다 크고 645 이하	40보다 크고 100 이하	6	1/4
645보다 크고 2580 이하	100보다 크고 400 이하	10	3/8
2580보다 클 때	400보다 클 때	13	1/2

- 순중량은 반올림하여 3자리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100 이하일 경우 2자리 표기 - 453.59는 454로, 85.6은 86으로, 6.43은 6.4로

□ 회사명과 주소

- 제조업체나 생산업체 등의 회사명은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기재 가능하며, 불어 또는 영어로 소문자 'o' 기준 1.6mm 크기 이상 기재하고 주소는 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함
- 캐나다의 수입업체에서 외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입업체명과 주소를 'imported by(for)/importe par(pour)' 뒤에 기재하거나, 생산자와 수입업체를 모두 기재 가능

□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 이내인 상품은 “best-before” 날짜 기재하며 다음의 예외 적용
 - 포장된 신선 과일 및 채소
 - 식당, 비행기 등에서 제공되는 개인용 포장
 - 포장된 도넛
 - 자동판매기 판매제품 등
- 소매용 포장 제품중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제품은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또는 포장 날짜와 보관방법을 기재
- 소매용 외의 포장제품으로 90일 이하의 유통기한 제품은 “best before” / “meilleur avant” 날짜와 함께 일상온도 보관이 아닐 경우 보관 방법을 기재
- 유통기한 표기는 연, 월, 일의 순으로 하며 ‘월’ 표기의 이중 언어 심볼은 다음과 같음

- 1월: JA,	2월: FE,	3월: MR,	4월: AL
- 5월: MA,	6월: JN,	7월: JL,	8월: AU
- 9월: SE,	10월: OC,	11월: NO,	12월: DE

□ 표준 용기 크기

- 과일 및 야채 콩조림, 잼, 피클외 많은 종류의 식품이 표준 사이즈의 용기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다음의 법에 기준 설정
- Consumer Packages and Labelling Act, Section 2.11.1.
 - 해당되는 소매용 포장식품에 대한 용기 크기 표준화
-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및 Meat Inspection Act
 - 신선 및 가공 과일와 채소 일부, 낙농제품, 굴과 단풍나무 시럽, 일부 육류 및 가공육 제품에 대한 표준 용기 설정

□ 영양분석표

- 자발적 조항이나 부착시는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ing'과 'Food and Drug Regulation'에 규정된 내용과 맞게 작성되어야 함

□ 성분 정보

-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포장상품은 성분 정보를 기재해야 되며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 소매업체에서 벌크를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상품 (혼합넛트류 제외)
 - 식당이나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포장제품
 - 자동판매기용 포장제품
 - 소매업체에서 포장한 조리된 육류 및 가금육 제품
 - 표준화된 알콜 음료 및 식초
- 일반적으로 성분은 함유량이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의 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맨뒤에 기재할 수 있음
 - 향신료, 조미료, 허브류, 자연/인공 향미, 향미촉진제, 식품첨가물,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및 그 파생물 등
- 성분(ingredient) 및 그 구성요소(component: ingredient of ingredient)는 보통 일반명으로 기재
- 성분구성요소는 성분명 뒤 괄호안에 함유량의 순으로 기재하거나 성분표기 없이 기재 가능
-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식품이나 일부 조미료 등은 성분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향미 촉진제와 같이 최종 식품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기재

□ 선적용 컨테이너 라벨

-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선적용 컨테이너는 이중언어 표기를 할 필요가 없고, Weight and Measures Act하에 미터법 또는 캐나다 표기법으로 순증량을 표기할 수 있음

나, 기타 모든 라벨 정보를 기재

□ 기타 의무표기사항

- 기타 의무표기사항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예: 식초의 경우 아세트산 함유 비율) 마찬가지로 이중언어 표기되어야 함
- 라벨과 광고에 사용된 언어적 시각적 요소 및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과장되어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됨
- 식품별 라벨 요건

종 류	규 정	라벨요건
탄수화물 감소식품	탄수화물 칼로리가 총 칼로리의 25% 미만이고 탄수화물 함량이 일반식품의 50% 이하	○ 주전시면에 “carbohydrate-reduced”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무당 식품	탄수화물 함량이 0.25% 이하이고 100그램 또는 100밀리리터당 1칼로리 이하	○ 주전시면에 “sugar-free” 또는 “sugarless”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열량감소 식품	일반식품의 50% 이하의 칼로리	○ 주전시면에 “calorie-reduced”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저칼로리 식품	1인분당(serving)당 15칼로리 이하이고 1일 권장량당 30칼로리 이하	○ 주전시면에 “low calorie”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저염식품	나트륨 함량이 일반식품의 50% 이하이고 육류/생선류는 100g당 80mg 이하, 체다치즈는 100g당 50mg 이하, 기타식품은 100g당 50mg 이하	○ 주전시면에 “low-sodium”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나트륨/칼륨 함량(mg) 정보

제5장 통관문제사례

제1절 육류 및 육류 가공품

- 한국산 육류 및 육류 2% 이상 함유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육류 함유 제품의 편법 수입에 따른 적발 사례 증가 중
- 소고기 다시다, 액상 카레, 만두류 등이 대표적 품목으로 품명 표기시 'Instantant Soup Stock'이나 'Dumpling' 등으로 표기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육류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제품 선정 등 각종 편법 수입에 따른 통관 문제 사례 발생

제2절 신선농산물 사례

- 한국에서 벤쿠버 쪽으로 팡이버섯을 수출하였으나 CFIA(Licence exempt Declaration) 서류 미제출로 통관 지연
 -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식물검역증명서 및 CFIA(Licence exempt Declaration) 제출 필요
- 식물검역증명서
 - 선적전 14일 이내에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을 캐나다에 제출
 - 배의 경우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캐나다 수출을 인정받은 지정된 지역의 배만 캐나다 수출이 가능하며 해충의 발생 금지를 위하여 농약 사용, 모니터 프로그램 수행 및 수확직전까지 봉지재배
 - 수확후 규정의 조건대로 검역, 포장, 보관, 운송

제3절 수산물 사례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의무 엄격하게 적용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Food and Drugs Act(의료약품법)에 의거해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부 산하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이 조사·경고·리콜·조치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집행
 -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항원(알레르겐) 함유 여부에 대한 표기가 필수적인데, 주요 알레르겐으로 분류되는 성분은 계란, 우유, 겨자, 땅콩, 해산물, 깨, 콩, 황산염(Sulphite), 견과류, 곡류 등
- 2016년 4월 7일 식품검역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C사의 냉동 해물완자 제품의 라벨링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이 누락돼 리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됨.
- 2016년 4월 7일까지 리콜된 한국산 포장식품

리콜 발표	업체	제품	알레르겐
4월 7일	C사	해물완자(frozen seafood)	계란
3월 18일	A사	소시지(fish paste)	계란
3월 18일	S사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계란
2월 19일	W사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계란
2월 5일	S사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계란
1월 29일	S사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계란
1월 14일	C사	어묵(frozen fish cake)	계란
1월 14일	C사	어묵(frozen fish products)	계란
1월 4일	C사	어묵(frozen fish cake)	계란

자료원: KOTRA

- 알레르겐 ‘계란’ 및 계란 유사성분에 대한 세부규정
 - 계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됐을 경우 ‘알부민’ 함유, ‘콘알부민’ 함유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명 대신 반드시 ‘계란’으로 표기해야 함.
 - 특히 게맛살, 어묵 등 표면적으로 계란과 연관성이 낮은 식품일수록 더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알레르겐으로 잘 알려진 견과류 및 갑각류 해산물과는 달리 계란 알레르기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계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란 및 계란 유사성분을 섭취할 경우, 눈, 얼굴, 식도 등이 붓거나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직접적인 재료로 사용됐을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도 ‘may contain X’ 또는 ‘may contain traces of X’로 반드시 표기해야 함.

○ 계란으로 분류되거나 계란 및 계란 유사성분 포함 가능성이 높은 식품류

계란 기타 명칭	계란 함유 주요 식품	기타 계란 함유 식품
알부민(Albumin)	제과 및 믹스	에그노그(Eggnog)
콘알부민(Conalbumin)	튀김옷을 입힌 식품	위스키사워(Whiskey)
계란대용품(Egg Substitute)	크림이 들어간 디저트	어류혼합물(어묵)
글로불린(Globulin)	계란대용품 및 인조 지방	맥아주(Malt)
리베티(Livetin)	레시틴(Lecithin)	루트 비어(Root Beer)
리소자임(Lysozyme)	마요네즈	당의(Icing)
난백 알부민(Ovalbumin)	고기완자	햄버거용 패티(patties)
오보뮤우신(Ovomucin)	누가(Nougat)	수프
오보트란스페린(Ovotransferrin)	파스타면	프로포폴(Propofol)
실리콘알부민염(Silico-albuminate)	키시(Quiche)	헤어 케어 용품
비텔린(Vitellin)	소스류(베어네이즈, 네덜란드)	기타 의약품

자료원: KOTRA

- 수산물 통조림 통관 거부 사례
 - 캔 원형 손상 등 용기불량, 함량 미달
 - 저산성 식품 규정을 포함한 캔 코딩 미비
 - 부패, 불순물 발견 등 관능검사 불합격
- 냉동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
 - 관능검사 불합격, 함량 미달
 - E. Coli, Listeria 발견 등

- 반저장 수산물
 - 멸치 액젓은 관능검사, 순중량, 히스타민, 리스테리아 등 발생

제4절 기타 사례

- 원산지 증빙 미제출에 따른 추가 관세 지출 사례 다수 발생 중
 - 소스류의 경우 FTA 체결 전 4%이었던 관세가 한국산 원산지 증빙 제출을 못함에 따라 7%로 인상되어 통관되고 있음.
- 메주가루는 제품내 함유물질 중 알리지 유발가능 성분인 밀의 성분 표기를 하지 않아 통관 거부 사례 발생
- 아이스크림
 - 메로나 등 아이스바, 국수류, 부침가루 등의 제품은 TRQs의 적용을 받는 수입통제 품목으로 업체당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로 쿼타한도를 초과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사례 발생
- 가장 일반적인 적발은 라벨링 등으로 수출품 역류시 대부분 라벨 재 부착으로 통과되나 통관 시간 지연 및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의 경우 더 큰 손실이 따를 수 있음
- 단무지는 제품내 함유물질 중 민감한 반응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황산염의 성분표기를 하지 않아 통관 거부 사례 발생
- 가공식품
 - 땅콩, 참깨, 밀, 계란, 아황산염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된 성분의 표기 미비 는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리콜 사례 이외에도 통관시 또는 소매업체의 식품위생검사시 수산물을 포함한 각종 가공식품에서 다수 적발
 - 깨강정은 땅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경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서 제품 수거 사례 발생
 - 계란 과자는 성분에 계란의 표기가 'egg'로 되어 있었으나 흰자 또는 노른자만 들

- 어갔는지, 신선한 것인지 삶은 것인지 등 구체적 상황 요구
- 단무지에서 색소 사용할 때 캐나다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Yellow #4 사용으로 적발되어 폐기처분
- 우유함유제품은 수입시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작업 미비로 통관지연 또는 파기
- 캔 커피는 우유 함유로 통관 거절
- 건강식품
 - 레몬 쿠키, 비타민 C가 첨가된 제품 등의 포장에는 ‘비타민 C 첨가’ 라는 내용의 영문 표기가 되어 있으나 성분표시에는 빠져 있어 라벨링 부착후 통관
 -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첨가된 과자류 및 각종 기능성 식품의 수입 증가로 관련 라벨요건 및 식품별 특정 성분의 첨가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은행마죽의 경우 실제 은행과 마의 함량은 미미하나 성분의 그림을 과장하여 나타냄으로써 통관 지연 사례 발생

제5절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 조건

품 명	캐나다 수입허가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	비 고
배 (신고/황금배 등)	필요없음	필요함	도착후 검역
사 과	필요없음	필요없음	도착후 검역
감 껍	필요없음	필요없음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해야 함 도착후 검역
밤	필요함	필요함	도착후 검역
살구, 벵타린, 복숭아, 포도, 자두, 딸기 등	CFIA 산하 Plant Protection Division의 병해충 위험 평가 관련 사전승인(PRA) 받아야 함		
신선채소류	필요없음	필요없음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해야 함 도착후 검역

품 명	캐나다 수입허가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	비 고
근채류 (감자 제외, 버섯류, 신선 뿌리인삼 포함)	필요함	필요없음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하고 새 용 기에 포장
건조인삼	필요없음	필요없음	
옥수수 통째	금지	금지	해충위험 평가결과에 근거한 사전 승인 필요
옥수수 씨 (팝콘/가공/사료)	필요없음	필요없음	
절 화	필요없음	필요없음	해충 및 흙이 없이 깨끗해야 함 국화: 'White Rust' 원인 검역
그린하우스 식물 (선인장, 양란 등)	필요함	필요함	

제6장 수출현안

제1절 2016년 수출 전년 대비 30% 감소

□ 2015년도 기준 연도별 對 캐나다 수출동향

- 2015년 對 캐나다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은 13.8천만불로 전년동기 10.9천만 대비 26.4% 신장하였다.
 - 그중 對 캐나다 농식품 수출실적은 10.8천만불로 전년동기 8천만 대비 34.9% 증가하였으며 기타조제농산물, 면류, 과자류, 소스류, 음료, 버섯류, 과실류, 채소류, 인삼류 순으로 수출액이 증가했다.
 - * 주요수출품목 : 핵산(56백만불, 전체수출의 40.5%), 김(11,7.9%), 게(7), 라면(6), 오징어(4)
-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對 캐나다 수출증가율은 약 24%이다.
 - 對 캐나다 농식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음료, 인스턴트면, 아이스크림, 비스킷, 새송이버섯,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파스타, 기타동물성생산물이다
-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는 국제무역에서 기본적으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무역장벽이 적은 나라임.
-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 수입 업체들은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어 한국산 농식품 對 캐나다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불공정 무역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입통제 정책은 관세, 기타 무역상대국의 덤핑 및 저가 정책에 대한 엄격한 규정임.

○ 對 캐나다 연도별 농식품 수출 실적

(단위 : 천 US\$)

AG Code	명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7,202	45,433	58,149	60,808	79,887	107,775
169	기타조제 농산물	2,858	4,971	11,987	12,623	31,203	61,050
162	면류	9,092	10,663	10,952	12,173	13,286	13,073
161	과자류	5,827	6,438	6,225	6,856	6,620	6,114
143	소스류	2,362	2,349	3,626	4,363	4,898	5,166
159	음료	2,826	3,835	4,991	4,432	4,244	4,572
123	버섯류	1,909	2,342	3,556	4,244	3,893	4,200
116	과실류	3,788	4,290	4,341	3,912	4,530	4,031
121	채소류	2,584	3,005	3,170	3,237	3,627	3,628
155	인삼류	895	1,421	1,955	2,625	4,033	2,153

출처 : Kati 통계 시스템

□ 2016년 1월~10월 對 캐나다 수출 동향

○ 2016. 10월말 기준 對 캐나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80백만불로 전년대비 30% 감소

- 주요 감소요인은 캐나다 수출 1위품목인 핵산의 감소에 기인함

* 주요감소품목 : 핵산(9.4백만불, 81.3%↓), 오징어(2.3백만불, 43.5%), 인스탄트면(2.3백만, 6.6%↓)

- 핵산을 제외한 전체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8% 증가추세

* 주요증가품목 : 김(9.6백만불, 13.3↑), 계(6.7백만불, 15.8%), 라면(5.4백만불, 14.7%)

□ 핵산수출 감소사유

○ 한국의 핵산수출은 2015년 기준 108백만불로 캐나다가 주수출국

- 주요 공급업체는 대상, CJ가 있으나, CJ는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출

○ 핵산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캐나다 실적이 감소 한 것은 한국산이 미국, 아일랜드 등에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밀려 수입업체 거래중단

제2절 주요품목 수출 동향

- 2016년도 10월말 對 캐나다 농림수산물 수출량은 25,339톤으로 전년 동기 24,924톤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80,593천불로 전년 동기 115,143천불 대비 약30% 감소하였음.
 - * 핵산 감소액 40,964천불(81.3%)
 - 주요증가품목 : 아이스크림(물량101.5%/금액107.7%), 비스킷(물량30.1%/금액28.8%), 팽이버섯(물량29.1%/금액27.5%), 김(물량24.3%/금액13.3%), 음료(물량18.4%/금액15.6%), 배(물량14%/금액20.3%)
 - 주요감소품목 : 핵산(물량-71.5%/금액-81.3%), 오징어(물량-71.9%/금액-43.5%), 납치(물량-4.0%/금액-7.7%), 인스턴트면(물량-5.8%/금액-6.6%)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의 분석 결과 면류, 소스류, 버섯류, 김류, 인삼류는 수출이 유망한 품목으로 도출되었으나 과거 수출이 호조세였던 감귤과 배는 저가의 중국산 등에 시장을 잠식당한 것으로 분석됨
- 아이스크림(물량 101.5%/금액 107.7%),
 - 메로나 등 아이스크림은 캐나다 정부의 수입 통제 품목으로 2015년도에 쿼타 한도 초과 수출로 인한 감소 물량이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며 물량 및 금액이 대폭 증가
 - 현지 마켓 진출 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사료됨.
- 팽이버섯(수출물량 29.1%/수출액 27.5%)
 - LA 및 캐나다산 버섯과의 경쟁과 장기 운송으로 인한 품질 저하에도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물량 및 수출액이 대폭 증가
- 김(수출물량 24.3%/수출액 13.3%)
 - 캐나다 현지 마켓 진출이 확대되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 시장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개발 필요

- 인삼류(수출물량-65.1%/수출액-0.4%)
 - 한국 인삼의 중국계 매장 입점 확대, 한국 인삼 수출업체들의 캐나다 대리점 오픈 등에 힘입어 對 캐나다 인삼 수출 물량은 늘었으나 캐나다 달러의 약세로 수출액은 감소
- 소스류(케첩, 마요네즈조미료, 메주 등)(수출물량-3.8%/수출액-1.1%)
 - 한·캐나다 FTA 체결로 한국산 증명 시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대부분의 소스류 원료가 중국산으로 FTA 체결 전 4%이었던 관세가 원산지 증빙 제출을 못함에 따라 7%로 인상되고 약세인 캐나다달러의 영향까지 받아 소스류 수입이 감소
- 넙치(수출물량-71.9%/수출액-43.5%)
 - 캐나다 신규 법규에 따라 식당에서 활어를 판매 못하고 반드시 냉동 후 판매해야 하고, 마켓에서만 활어로만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수출 물량 및 수출액이 대폭 감소
- 오징어(수출물량-75.9%/수출액-60.8%)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오징어 품절 현상으로 수출 물량이 적고 가격이 올라 수출 물량 및 수출액이 대폭 감소

부 록

(붙임 1)

對 캐나다 한국농식품 수출실적(10월말)

□ 부류별 수출동향

구분	15년	2015.1.1 ~ 10.31		2016.1.1 ~ 10.31		물량	금액
		물량 (톤)	금액 (천불)	물량 (톤)	금액 (천불)	증감률 (%)	증감률 (%)
농림수산식품	138,091	24,924	115,143	25,339	80,593	1.7	-30.0
농림축산식품	110,018	18,824	91,360	22,118	55,969	17.5	-38.7
<신선>	14,643	3,529	10,764	3,841	11,087	8.8	3.0
- 채소류	2,282	628	1,733	611	1,629	-2.7	-6.0
- 김치	1,346	290	1,125	286	959	-1.1	-14.8
- 인삼류	2,153	29	2,079	48	2,070	65.1	-0.4
- 화훼류	52	2	46	1	27	-22.1	-40.6
- 과실류	4,031	1,138	1,984	1,135	2,154	-0.2	8.6
- 버섯류	4,200	1,393	3,253	1,738	4,072	24.8	25.2
- 돼지고기	0	0	0	0	0	-100.0	-100.0
- 가금육류	0	0	0	0	0	-100.0	-100.0
- 산림부산물	577	50	544	20	175	-59.2	-67.8
<가공>	95,375	15,294	80,595	18,277	44,882	19.5	-44.3
- 면류	13,073	4,680	10,487	5,641	11,604	20.5	10.7
- 소스류	5,166	1,929	4,270	2,002	4,221	3.8	-1.1
- 주류	1,299	646	1,125	683	1,164	5.8	3.4
- 과자류	6,114	1,105	4,994	1,378	6,015	24.7	20.4
- 연초류	5	0	5	0	5	9.7	6.0
- 낙농품	739	509	556	648	843	27.3	51.5
- 목재류	498	109	408	91	344	-16.2	-15.7
<수산>	28,073	6,100	23,784	3,221	24,623	-47.2	3.5
- 어류	3,901	596	3,269	737	3,606	23.6	10.3
- 연체동물	4,862	4,441	4,619	1,312	3,112	-70.5	-32.6
- 해조류	11,510	619	9,168	668	10,134	7.8	10.5
- 갑각류	7,149	192	6,132	221	7,262	14.8	18.4
- 기타	651	250	596	283	510	13.2	-14.4

□ 품목별 수출동향(상위 30품목)

품목	2015년 10월		2016년 10월		증감율	
	중량 (톤)	금액 (천불)	중량 (톤)	금액 (천불)	중량(%)	금액(%)
총계	24,924	115,143	25,339	80,593	1.7	-30.0
김	422	8,469	525	9,594	24.3	13.3
혼합조제식료품	453	50,403	777	9,439	71.5	-81.3
기타계	144	5,795	165	6,708	14.9	15.8
라면	1,226	4,705	1,648	5,399	34.4	14.7
기타음료	3,661	3,067	4,334	3,545	18.4	15.6
기타베이커리제품	496	2,079	661	2,575	33.5	23.8
비스킷	336	1,854	437	2,389	30.1	28.8
인스탄트면	1,876	2,500	1,767	2,335	-5.8	-6.6
오징어	4,375	4,031	1,229	2,276	-71.9	-43.5
국수	897	1,622	1,244	2,123	38.7	30.9
아이스크림	392	968	790	2,011	101.5	107.7
새송이버섯	540	1,525	669	1,891	23.9	24.0
기타파스타	602	1,397	915	1,584	52.1	13.4
기타소오스제품	597	1,536	596	1,560	0.0	1.6
팽이버섯	646	1,092	834	1,391	29.1	27.5
고추장	494	1,159	579	1,206	17.3	4.0
기타조제식료품	416	889	501	1,087	20.5	22.3
홍삼	3	1,291	2	1,086	-22.4	-15.9
어류제품	258	750	345	967	34.0	29.0
김치	290	1,125	286	959	-1.1	-14.8
소주	451	788	444	792	-1.7	0.5
기타버섯	207	636	234	784	12.9	23.3
기타채소	130	732	172	724	32.2	-1.1
배	205	599	234	720	14.0	20.3
고추	124	609	126	623	1.7	2.3
넙치	33	654	31	604	-4.0	-7.7
참치	92	659	81	602	-11.8	-8.8
굴	33	224	54	566	61.0	152.2
효소	0	0	12	543	0.0	0.0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발행연도 2016

발행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